



유럽

유럽연합(EU)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노르웨이 러시아 벨라루스 세르비아 스위스 슬로바키아

5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외 교 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발간사

정부는 2013년 6월 ‘신통상로드맵’을 수립한 이래, 한-중 FTA를 비롯한 총 6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총 52개국과 15개의 FTA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무역 10대 국가 중 유일하게 미국, 중국, EU 등 세계 3대 거대경제권과 FTA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한국은 아태 지역 경제통합의 초석을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외수출과 관련한 국내외 여건은 녹록치 않습니다. 최근 신흥국 경기침체, 저유가 및 선진국의 완만한 성장세로 세계 교역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세계 각 국은 자국 산업을 육성·보호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TBT),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반덤핑제도 등 비관세장벽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9월 민관합동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구성하고, 관세부처, 재외공관, 업종별협단체 등이 함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에는 기업이 해외의 비관세조치로 인한 애로 사항을 온라인에서 손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비관세장벽 전문포털(www.ntb-portal.or.kr)을 구축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비관세장벽 이슈 발생시 신속한 현지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국내 7개 무역관을 중심으로 현지대응반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통상제도 및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외교부와 공동으로 무역장벽 보고서(제1권) 및 분야별·국가별 통상환경보고서(제2권~6권)로 구성된 총 6권의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등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큰 주요국에 대하여 우리 기업들이 해외진출에 실질적 애로로 느끼는 비관세장벽 사례를 수집하여 2013년부터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우리 기업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의 문을 활짝 여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책자 발간을 위해 힘써 주신 외교부 및 재외공관, KOTRA, 무역협회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5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목차 | Contents

- 1. 무역장벽 보고서
 - 2. 분야별 통상환경
 - 3. 아시아 · 대양주
 - 4. 아메리카
 - 5. 유럽
 - 6. 아프리카 · 중동
- 

유럽연합(EU)	2
그리스	73
네덜란드	88
독일	104
불가리아	125
스웨덴	133
스페인	154
영국	182
오스트리아	226
이탈리아	244
크로아티아	260
터키	288
포르투갈	292
폴란드	308
프랑스	325
헝가리	348
노르웨이	359
러시아	371
벨라루스	416
세르비아	434
스위스	447
슬로바키아	467

유럽

유럽연합(EU)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노르웨이 러시아 벨라루스 세르비아 스위스 슬로바키아

5



유럽연합(EU)

통상정책 및 무역관리제도 개관

EU의 신통상투자정책

EU 집행위는 2015년 10월 신통상투자전략(Trade for, Towards a more responsible trade and investment policy)을 발표하여, 옹커 집행위 체제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상투자정책은 EU시민을 위한 성장지원 정책으로써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효과적인 통상정책, 투명한 협상진행, EU의 주요가치 보존 등을 신통상투자전략의 3대 기본원칙으로 내세우면서 EU-미국간 TTIP 협상의 타결, EU-캐나다 CETA의 유럽의회 비준을 통한 조속한 발효, 일본과의 FTA 협상 및 중국과의 투자협정체결 마무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동 보고서에 제시된 주요 이니셔티브로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강조 및 전자상거래, 정보이전 등 새로운 경제현실을 반영 △협상과정의 투명한 공개 △ 정부규제권한 확보를 통한 환경, 노동 등의 가치보존 등이 있다. 특히 TTIP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투자자-정부간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하여, EU는 투자법원(Investment Court System) 창설을 제안하면서 이를 글로벌 규범화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에 앞서, EU는 2006년 “Global Europe Strategy”를 채택하고, 기존의 WTO를 통한 다자적인 무역자유화와 함께 FTA 등을 통한 양자적인 시장 접근 확대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1)WTO DDA 협상

타결 및 인도, Mercosur, ASEAN 등 현재 진행 중인 주요 국가와의 FTA 협상 타결, 2)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전략적 동반자 국가와의 통상관계 심화, 특히 비관세장벽 철폐 등 규제조화, 3)정부조달, 서비스 등 분야에서 EU 기업의 세계시장 접근을 개선, 4)주요 교역 국가와의 포괄적인 투자협정 협상 개시, 5)공정무역 및 지식재산권 등 정당한 권리 보장강화, 6)무역이 개발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되었다.

EU는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자유화 협상의 중요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협상의 진도가 당초 예상보다 더딤을 감안, 주요국과의 FTA 추진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오고 있다. 과거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지중해권, 과거 식민지 지역 등 역내 또는 인접 국가들과의特惠무역협정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이후 FTA 협상을 아시아와 아메리카 지역까지 확장하여 추진하였다. 우리나라와의 FTA 발효, 싱가포르·캐나다 등과의 FTA 협상이 타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FTA(TTIP), 일본 및 아세안 각국 등과의 FTA 협상 및 중국과의 투자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전 세계에 파급력이 큰 거대경제권과의 지역경제통합 협상을 계속 추진 중이다.

대외통상관계 현황

EU에 관한 WTO의 2015년도 무역정책검토(TPR)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투명하고 개방된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세정책과 같이 회원국 별로 운영하는 정책도 있지만, EU 전체가 통합된 단일 시장으로 기능하면서 무역 및 투자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EU 집행위 보고서에 의하면, EU의 상품무역은 2009년 이후 2013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14년에는 지속되는 경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여 수출은 1조7,029억유로, 수입은 1조6,805억



유로를 기록했다. 미국이 EU의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2014년 기준 18.3%)이며, 중국(9.7%), 스위스(8.2%)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수입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수입(18.8%)을 하며, 미국(12.2%), 러시아(10.8%) 순이다.

EU의 서비스무역은 2009년 이후 수출·수입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여, 2014년 수출은 7,348억유로, 수입은 5,834억유로를 기록했다. 미국이 최대의 수출(26.4%), 수입(31.2%) 시장이며, 스위스가 제2의 서비스 수출입 시장이다.

한-EU 교역관계 개관

2014년 기준 EU는 전세계 GDP의 23.5%(17.4조 달러, IMF)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 시장이자, 우리나라의 3대 교역 상대국이다. 2014년도 대EU 수출은 전년대비 5.7% 증가한 517억 달러, 수입은 전년대비 10.9%가 증가한 624억 달러로 전체 교역액은 1,14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은 선박(62.8억 달러), 승용차(55.8억 달러), 자동차 부품(38.8억 달러), 평판디스플레이(28.9억 달러), 합성수지(21.1억 달러)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승용차(59.8억 달러), 원유(26.5억 달러), 의약품(25.0억 달러), 반도체 제조용 장비(20.3억 달러), 자동차부품(17.7억 달러) 등이다.

한·EU간의 상품 무역은 2002~2008년 동안 크게 증가(연평균 16.8% 증가)하였으나, 2009년 남유럽에서 시작된 EU 재정위기가 유로존으로 확산되면서 1,000억 달러 내외의 정체상태를 유지하다가 대EU 수입의 지속적인 증가 및 대EU 수출 회복에 따라 2014년 양측 간 상품교역액은 1,14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EU에 대한 무역수지는 2012년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14년 107억 달러의 교역 적자를 기록하였다. EU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된 것은 이란 제재에 따른 영국산 원유 수입 증가와 한-EU 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와 우리 소비자 성향 고급화에 따라 자동차 및 소비재 수입이 증가한 반면, 유로존 경기부진으로 EU에 대한 주력 수출 품목인 선박, 자동차, 휴대폰 등이 수출이 감소한 것과 유럽 및 동남아 내 자동차 및 휴대폰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의 생산설비 증설로 유럽으로의 수출경로가 다변화 된 것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EU의 무역관리제도

관세현황

EU에 관한 WTO의 2015년도 무역정책검토(TPR)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도 기준 EU 전체 상품(HS 8단위 기준 총 9,379개 세번)의 단순평균 적용관세율은 6.5%이다. 이중 농산물의 관세는 14.6%, 비농산물의 경우는 4.4%이다. 전체 품목 중 23.9%가 무관세 품목이며 이들 무관세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평균관세율은 8.6%이다.

2011.7.1, 한-EU FTA 잠정발효에 따라 EU측은 전 품목의 94.0%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고, 쌀을 제외한 나머지 9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협정 발효 후 5년 내 철폐하기로 하였다. 승용차(관세10%)의 경우 중·대형(1,500CC 초과)은 협정 발효 후 3년 내 철폐하기로 하여 2013.7.1부로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소형(1,500CC 이하)의 경우 발효 후 5년이 지난 2015.7.1부로 관세가 철폐되었다. 가솔린 자동차용 엔진, 기어박스 등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되었다. 전기 전자제품의 경우 컬러TV(관세14%) 등 EU측의 고관세 품목 관세도 발효 후 5년 후인 2015.7.1부로 철폐되었으며, 전기·전자부품의 관세는 즉시 철폐되었다. 섬유의 경우 품목 수 기준 99.4%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고, 신발류 관세도 대부분 즉시 철폐되었다.



원산지 규정

EU는 제품의 원산지 판정과 관련하여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을 운영하고 있다.

비특혜원산지규정이 반덤핑조치, 수량제한 등 통상정책조치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원산지 판정에 적용되는데 반해, 특혜원산지규정은 FTA 등 특혜 무역협정, GSP 등 관세혜택이 주어지는 특정 국가의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EU의 원산지 관련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원산지 판정에 있어서는 제품의 최종적, 실질적, 경제적으로 정당화되는 공정 또는 작업(last, substantial, economically justified processing or working) 및 중요한 제조공정이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졌느냐가 핵심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한편, 지난 2005년 섬유·의류 쿼터제가 폐지됨에 따라 EU는 중국산 제품의 급속한 유입을 막아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기준을 수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섬유·의류 시장의 전면 개방에 따라 중국산 제품들의 유럽시장 점유율이 급증한 데 대해 SAARC(남아시아 국가연합;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몰디브, 스리랑카 7개국으로 구성) 등 섬유·의류산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누적원산지기준이 인정되는 ASEAN이나 SAARC의 경우 동 지역공동체에 속하는 국가 간에만 누적원산지기준이 인정됐으나, 신제도에서는 만일 이해당사국이 요청하면 다른 지역공동체 소속의 회원국 과도 교차 누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방글라데시 의류 제조업체가 인도네시아산 직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방글라데시를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중해 연안 국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 지역(Euro-Mediterranean)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해 당사국이 요청하면 교차 누적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인정국가와 인정시기를 관보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통관절차

EU 회원국의 통관절차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통관에 관한 규정은 EU 집행위에서 제정하는 반면, 이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통관업무의 처리는 각 회원국의 세관당국이 맡고 있어 세관당국에 따라 원산지, 품목분류 등의 판단이나 업무처리 절차, 신속도, 민원인 응대 등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특히 2004.5.1. 신규로 EU에 가입한 헝가리, 폴란드 등 10개국과 2007.1.1. 신규 가입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그리고 2013.7.1. 신규 가입한 크로아티아의 경우 세관 규정의 해석·적용, 통관업무의 신속한 진행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EU는 1968년 관세동맹을 발족하였으나 관세업무를 전담하는 EU 기구를 창설하지는 않고 전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관세 관련 규정·지침을 집행위가 제정하고 실제 집행업무는 각 회원국의 세관당국에 위임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따라서 세관당국별 서류양식이나 업무절차가 상이하어 역외뿐 아니라 역내 통관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집행위는 관세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1968년 이후 채택된 각종 관세관련 규정 30여개를 통합한 공동체관세 규정(Community Customs Code, Council Regulation 2913/92)을 1992년에 채택하였다. 이 규정은 원산지 분류 원칙, 품목분류 방식, 관세평가 기준, 구제절차 등 세관당국이 통관업무 처리시 준수해야 할 각종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여 통관절차의 통합을 기하고 있다. 동 규정은 2008년 개정(Regulation (EC) No 450/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되어 발효되었으나 회원국 세관당국과 경제 운영인

등의 전산 시스템의 미구비, 리스본 조약 발효에 따른 EU 집행위에 실행 규정 제정권 위임, 세관절차 간소화 및 시행상 문제점 보완 필요 등의 사유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상기 공동체관세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2012.2월 새롭게 UCC(Union Customs Code)를 마련하여 유럽의회에 송부하고, 관련기관 및 경제 운영인 등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동 UCC는 EU 집행위에 세관 절차와 관련된 세부적인 실행 규정의 제정을 위임하고, 수출입 물품의 물류흐름에 부합하도록 세관 규정을 정비하였고, 세관 절차 간소화 등 경제 운영인의 권리 확대와 세관 업무의 전산화 전면 시행 및 회원국 세관 당국의 감시 강화 등 의무를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유럽 의회는 2013.9.11, 동 법령을 일부 수정하여 EU 이사회에 통보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13.11.1, UCC가 발효되었다. 다만, UCC의 대부분의 조항은 2016.5.1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EU 세관에서는 자의적인 품목분류로 인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일례로 2008.8월 네덜란드 세관당국이 우리 업체의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를 화학연료로 분류하는 BTI(Binding Tariff Information)를 발급하고 6%의 관세를 부과하였다가 우리 정부의 항의를 받고 2009.11월 이를 철회한 바 있다. 또한 EU 회원국 세관당국이 2008.4월 우리 기업이 EU 회원국에 수출한 DMB폰을 TV로 분류하여 14%의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2009.8월 EU가 다기능 휴대폰 규정 및 해설서를 채택함으로써 해결된 바 있다. 또한 2010.5월, 폴란드 세관당국이 우리 업체의 LCD 모듈에 대해 일방적 품목분류를 통해 관세를 부과하여,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관세유예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일단 품목분류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를 번복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최초 제품 수출시 품목분류에 대한 세심한 준비와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EU는 통관절차 간소화, 통관 우대 조치 부여, 자료 제출 축소 등을 보장하는 공인경제운영인(Authoris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운영

하고 있으며, AEO 지위는 EU 개별 회원국이 이해당사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AEO 제도는 EU 역외에서 설립된 자연인이나 법인에게까지 개방된 것은 아니나, 다만 EU와 AEO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설립된 자연인이나 법인의 경우에는 AEO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EU는 회원국 세관당국의 업무 표준화를 위하여 1988년 통관서류 양식 통일, 2003년 전산처리시스템 도입(NCTS: New Computerised Transit System)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각 회원국 세관당국의 판정(원산지, 품목분류 등)이 여타 회원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회원국 세관당국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통관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세관 당국간 의견 조정 및 협의를 위해 집행위 내에 통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EU 회원국별 세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이나 제소는 1차적으로 해당 회원국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원국의 사법 결정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U는 관세행정의 간소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테러 및 조직범죄 대처 등 국경안보를 강화하는 조치(COM(2003) 452)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 조치는 관세행정과 관련하여 공동체 안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출입화물 사전신고, 위험성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U는 또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역내 회원국 세관당국간 전산정보 교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관직원들의 직무교육 및 인력 교류를 통해 EU 차원에서의 통관업무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Customs 2007 프로젝트를 추진한 데 이어, 2008.1월부터는 2013년 완결을 목표로 Customs 2013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는 회원국 세관당국 간 일체성 제고, 역내의 통관 안전(security and safety)의 강화, 통관사기 방지노력 강화, 통관 절차의 신속화 등을 목표로 하였다.



한편, 2008.1월 ‘전자통관결정(Electronics Customs Decision)’이라고 불리는 “종이 없는 통관”에 대한 결정(70/2008/EC)과 2008.4월 ‘신통관 규정(Modernized Customs Code: Regulation(EC) N 450/2008)’이 채택되었으며, 2008.4월, EU 집행위는 심화된 관세동맹으로의 발전을 위한 조치(COM(2008)169)를 채택한 바 있다. 이 결과 향후 EU 회원국의 세관당국 간 전자통관이 더욱 효율화되어 위조상품 적발, 환경보호, 보건 등 통관 관련 새로운 이슈에 대한 범 EU 차원의 대처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구제 조치

EU는 2015.8월말 기준 81건의 반덤핑 조치와 14건의 보조금 상계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총 46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시행 중인 반덤핑 조치 중 중국산이 51건으로 가장 많은 무역구제 조치를 받고 있다. 또한 보조금 상계조치의 경우, 중국이 5건으로 가장 많고, 인도(4건)가 그 다음이다.

2011년부터 2015.8월말까지의 무역구제 신규 조사를 제품 분야별로 보면 철강과 화학제품이 주요 대상이 되어 왔으며, 철강제품의 경우 2011년 이후 총 31건에 대해 신규 조사가 개시되어 동기간 중 총 신규 조사개시 건수의 42%를 넘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화학제품 분야에 대한 신규 조사가 16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8월말 현재 EU로부터 총 3건(철강제 관연결구류, 강철사, 실리콘)의 반덤핑 규제 조치를 받고 있으며, 이 중 강철사와 실리콘은 우회덤핑 규제대상 품목이다. 상계관세나 세이프가드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데 EU 수출품은 없다.

2013년 강철사에 대한 우리 기업의 신청으로 신규수출자 재심 및 중간재심 등 2건의 재심이 개시되었으며, 그 결과 두 기업 모두 반덤핑 관세 면제 판정을 받게 되었다. 2002년부터 이어져 온 철강제 관련결구류에 대한 종료재심이 2013년 개시되어, 최근 반덤핑 관세가 2018.1월말까지 연장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또한, 2015.2월, 철강제 관련결구류에 대한 1개 기업에 대한 중간재심이 개시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2014.8월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 신규조사가 개시되었으며, 이는 2009년 이후 최초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규조사 개시이다. 2015.5월 발표된 예비조사 결과, 한국산 제품에 대해 덤핑의 존재 및 이로 인한 산업피해가 인정되어 잠정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다. 하지만, 9월에 내려진 최종 판정에서는 방향성 전기강판(특히 고품질 제품군)의 공급 부족에 따라 조사기간 이후 동 제품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종가세 형태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EU의 공익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 제품군별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는 형태로 최종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도 취소가 되었으며, 최저수입가격 이상으로 팔 경우에 추가적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EU는 2015년 중 8월말까지 신규로 6건의 반덤핑 조사와 2건의 보조금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무역구제 신규 조사대상이 된 국가는 중국으로 총 32건의 조사를 받았으며, 동기간 EU 전체 총 조사 개시 건수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EU로부터 무역구제 신규 조사대상으로 지정된 국가는 인도(9건), 러시아(4건), 인도네시아(4건), 터키(4건) 순이다.

표준 및 여타 기술적 장벽과 위생 검역 조치

기술적 장벽

유럽연합의 규제관행과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 그리고 적합성 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는 EU 시장접근에 중요한 결정요소가 되고 있는데, 때로는 교역에 있어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우리 기업의 대EU 수출 관련 장애가 되는 사항에 대해 EU 집행위와 협의 중에 있는데 EU의 타이어 관련 E 마크 및 인증번호 표기법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EU에 타이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EU 기준상의 내구성 및 에너지 효율 인증을 받고 인증마크(E마크)와 인증번호를 타이어에 몰딩 방식으로 각인해야 하는데, 관련 요건이 강화·변경될 때마다 인증번호 몰딩을 새로 제작해야 해서 우리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인증번호의 서면 제출 등 부담 경감을 위한 양측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는 개별 회원국과 EU차원에서 채택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완전 조화 입법(fully harmonizing legislation)의 적용 대상이 아닌 제품은 회원국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 절차가 적용되며, 조화입법은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공동결정절차(co-decision procedure)에 따라 채택된다.

EU 집행위는 관련 규정(No. 764/2008)에 따라 공동체의 조화 입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제품의 목록을 발간하며, 관련 규정(Directive 98/34/EC)에 따라 회원국들은 집행위와 다른 회원국에게 기술규정 초안을 도입 필요성과 함께 고지한다.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집행위는 투명성 및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회원국에게 기술규정에 상호 인정 조항(mutual recognition clause)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WTO TBT 협정의 이행은 EU 집행위가 담당하고 있으며, TBT inquiry point는 집행위 기업·산업총국(Enterprise and Industry Directorate-General)이 담당하고 있다.

2013.1월부터 2014.12월말까지 EU는 196개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 절차를 WTO에 통보하였으며, 통상 최소 60일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EU FTA TBT 챕터는 제·개정하고자 하는 기술규정안을 WTO에 통보한 후 최소 60일의 서면의견 제출기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기간 중 개별 회원국은 68개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를 통보하였는데, 이 중 프랑스 18건, 체코 18건, 리투아니아 8건, 스웨덴 7건 등 순으로 통보건수가 많았다.

EU 차원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는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공동으로 채택하는 법규에 따르거나, 집행위가 해당 법규의 위임을 받아 채택한다. EU 집행위는 기술규정 관련 정책이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홈페이지(http://ec.europa.eu/yourvoice/index_en.htm)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법규안과 채택된 법규는 EU 관보(EU Official Journal)에 게재된다. 따라서 EU의 규범 제·재정에 따른 교역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범 제·개정 초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며 집행위가 실시하는 의견수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범의 공표와 실제 적용 사이의 기간은 다양하며 회원국 입법 조화의 경우에는 최소 18~24개월이 소요된다.

아울러, 제안된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 중에 사회적, 경제적 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영향 평가(impact assessment)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EU 집행위의 지침에 의하면 교역 및 투자정책의 국내외 기업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WTO의 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 EU는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EU는 영향 평가의 범위에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 평가(SME test)를 포함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대상으로 관련 절차 및 비용을 간소화하는 노력을 전개 중이다.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요건들은 집행위의 Export Helpdesk (<http://exporthelp.europa.eu>)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012.6월 우리 정부는 EU 집행위와 무역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데 합의하였고, 2013년부터는 TBT 관련 요건들을 포함하여 EU와의 교역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우리의 통합무역정보서비스 웹사이트(www.tradenavi.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U는 1980년대 중반 기술조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하여 EU 차원의 기술규정에는 performance에 기반을 둔 지표(indicator)나 목표만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은 제조업자가 자유로이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새로운 접근법은 전기·전자제품, 가스기구, 의료 기구, 통신기기, 장난감, 기계류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경우 예외로써, 구체적인 기술요건을 해당 규범에 상세하게 규정한다. 의약품, 화학물질 및 화장품 등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접근법이 개발되어 왔다.

자동차의 경우 EU는 CARS 21(EU의 고위자동차위원회: EU 자문기관으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과 고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의 제안에 따라 2007년 새로운 자동차의 형식승인에 관한 기본 지침(2007/46/EC)을 채택, UN ECE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1.7월 발효된 한-EU FTA 협상 결과, 우리 주요 안전기준 중 32개의 조항은 해당 UN ECE 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29개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발효 후 5년 내에 해당 UN ECE 기준과 조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 자동차 안전기준과 UN ECE 기준과의 조화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한편 2012.11월에 발표된 CARS 2020 계획에 따라 자동차 형식

승인 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 및 개선 등을 포함하여 자동차 관련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전문가 작업반 회의가 진행 중이다.

새로운 접근법이 적용되는 낮거나 중간 수준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상당수 제품군에 대해 EU는 “공급자 적합성 선언(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을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전기·전자제품, 장난감, 통신장비, 기계류, 개인보호장비 등이 이에 해당되며, 섬유류, 유아제품과 일부 소비재 등 특정 안전규범이 없이 일반 제품 안전 지침(General Product Safety Directive)이 적용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역시 공급자 적합성 선언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 등 고위험 제품에 대해서는 독립 인증기관(notified bodies)에 의한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기관은 개별회원국이 일정한 기술평가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독립 인증기관 목록은 집행위 홈페이지(<http://ec.europa.eu/enterprise/newapproach/nando/index.cfm?fuseaction=directive.main>)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식품안전

1990년대에 유럽에서 발생한 광우병 파동, 돼지고기 다이옥신 오염파동 등 일련의 식품안전사고(food scares)는 소비자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EU 식품안전당국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이를 계기로 EU는 식품·사료의 가공 및 유통단계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으며, 생산에서부터 식품의 제조, 가공, 저장, 운송, 소매에 이르기까지 식품망(food chain)의 모든 단계에서 식품안전 문제를 엄격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이에 따라 EU는 2000년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인 ‘식품안전백서(White Paper on Food Safety)¹⁾’를 발표하였는데 EU의 각종 식품위생관련 법규를 보다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현대화

1) COM(1999) 719 Jan. 12, 2000, 이하 ‘백서’라 한다.

하고, 농장에서 밥상까지의 식품위생관리를 보다 강화하며, 식품위생에 대한 과학적인 자문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건강과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EU는 이른바 “농장에서 밥상까지(farm to table)”라는 구호아래 식품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괄적·종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통합적 방법(integrated approach)을 운용하며,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행정조직 구성의 기본이념을 종전의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지향으로 변경하였다. 이를 위해서 첫째, 유럽식품안전청을 신설하며, 둘째, 농장에서 밥상까지의 식품위생과 관련된 법규를 일괄되게 개선하며, 셋째, 사료와 식품의 운영자(business operators, 생산자 및 사업자)가 식품위생과 관련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이들 식품을 다루는 자들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EU는 이와 관련한 회원국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감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백서에 포함된 실행계획의 하나는 식품안전에 대해 EU차원의 기본법(General Food Law)을 제정(2002년)하는 것으로, 그 기본법이 바로 Regulation(EC) No 178/2002이다. 동 법에는 백서에서 강조하는 대부분의 내용과 정신이 포함되어 있다. Regulation(EC) No 178/2002의 제2장에는 EU 및 회원국 차원에서 식품 및 동물사료에 적용되는 적용범위(제4조), 일반원칙(제5조), 위험분석(제6조), 사전예방원칙(제7조), 소비자 이익 보호(제8조), 의사결정의 투명성(제9~10조) 등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한 기본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제3장에서는 식품교역의 일반 의무에 대한 사항으로 역내 수입(11조), 역외수출(12조), 국제기준(13조), 식품안전 조건(14-15조), 식품표기·광고·프레젠테이션(16조), 운영자 책임성(17조, 19- 20조), 이력추적제(18조)를 규정하고 있다.

EU는 식품 기본법을 기반으로 기존에 산재되어 있던 각종 식품위생 법규를 통합하여 단순화한 새로운 식품위생규정(New Hygiene Package)을 2006년

부터 시행하고 있다. 식품위생규정(Regulation 852/2004), 동물유래식품 위생규정(Regulation 853/2004), 식용목적의 동물유래제품의 통제에 관한 규정(Regulation 854/2004), 식품 및 사료의 통제에 관한 규정(Regulation 852/2004)이 그것이다.

이밖에도 EU는 소비자들에게 식품의 성분과 내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식품표기(labelling) 제도 관련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EU는 2011년부터 식품표시일반에 대한 규칙(2000/13/EC)과 식품 영양표시에 대한 규칙(90/496/EEC)를 일원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4년 12월 13일부터 ‘소비자 대상 식품정보 제공에 관한 규칙(Regulation No. 1169/2011)’을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가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규칙에는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원료 강조 표시, 알레르기 성분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포장되지 않은 식품까지 확대, 원산지 표시 대상 범위 확대, 가독성을 위해 최소 글자표시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영양표시의 경우 2016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되는데, 포장식품의 경우 총열량, 지방, 포화 지방,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염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EU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와 자문을 해줄 새로운 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과 함께 식품안전기본법(Regulation 178/2002)에 유럽 식품안전청(EFSA) 설립(2002.1, 이탈리아 Parma 소재) 및 식품 및 사료에 관한 신속 경보시스템(RASFF)의 기능 확대를 명문화했다.

유럽식품안전청은 2003년 초부터 식품안전에 관한 EU의 정책 및 의사 결정권자들에게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와 자문을 해왔다. EFSA는 과학적 평가(scientific assessments)와 함께 새로운 정보의 전파, EU 회원국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광범위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의회와 회원국들이 제기하는 식품안전 사안에 대응하고, 식품안전



이슈 전반에 대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편, 식료품체인의 글로벌화에 따라 식품안전의 위해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EU집행위와 EFSA는 모든 잠재적 위해요인을 사정, 관리,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되, EFSA는 위해요소평가(risk assessment)를, 집행위는 위해요소관리(risk management) 및 통제조치 제반 사항을 각각 분담하고 있다.

RASFF는 EU27개 회원국간 정보교환 네트워크 도구(Information Exchange Tool)인데 회원국의 식품 및 사료의 안전담당 기관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위해요소 발생시 상호 정보교환을 긴밀히 함으로써 식품 안전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RASFF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이행법령(Regulation 16/2011)이 마련되어 있으며, RASFF 회원국은 비상연락망(contact points)을 가동, 24시간/7일 상시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RASFF는 위해수준의 정도에 따라 경보통지(alert notification), 정보통지(information notification), 통관 거부(border rejection)의 3가지 유형의 통지를 발령한다. Regulation 178/1772 제50조 및 53조에는 통지발령을 위한 기준과 긴급조치에 대해 정하고 있다.

최근 EU는 IT기반의 iRASFF로 개편을 완료하였다. 기존 시스템은 회원국과 EU RASFF팀간 이메일에 기반하여 상호 정보교환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회원국이 바로 온라인 iRASFF 시스템에 접속하여 통지내용을 입력하고, RASFF팀이 최종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개편되어 보다 편리하고 빠른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EU집행위원회는 식품업체 등록시스템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2004. 4월 새로운 규정(Regulation 854/2004)을 제정하여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EU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식품업체가 EU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등록시스템의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EU는 세계 최대의 수산물 수입국이다. EU에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의 생산 과정의 위생을 감독할 수 있는 정부(competent authority)가 EU에 수출가능 제3국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동 정부기관에서 확인하여 EU에 등록한 수출작업장(establishment)에서만 수출이 가능하며, 수입 통관시 동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은 수산물 수출 가능 제3국으로 EU에 등록되어 있다. EU는 수입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EU집행위 식품수의국(Food and Veterinary Office)에서 수시로 수출국의 현장을 점검해오고 있다.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UU fishing)

EU는 고갈되어 가는 해양수산 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ing))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오고 있다. 2008년에 이를 위한 EU 법규(1005/2008)를 제정하였으며, 동 법규는 2010.1.1. 부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서 EU로 수출하는 모든 수산물에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어획증명서(catch certificate)가 첨부되어야 한다. 즉, EU 수출 수산물에는 상기한 위생 증명서와 함께 적법한 어획행위를 증명하는 어획증명서도 첨부되어야 하며, 한국 정부에서는 두 증명서의 발급 업무를 해양수산부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2013.11.26, EU는 불법어업에 대한 낮은 제재수준 및 어선 통제시스템 미흡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불법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을 2차례 개정(1차 : 2013.7.30.개정, 2차: 2015.1.6.개정, 2015.7.7. 시행)하여 원양어선 위치추적발신장치 설치(2014.3.20) 및 조업감시센터 설립(2014.3.28.), IUU어업 처벌강화(500만원 이하 과태료 → 1차 개정 : 3년 이하 징역 등



→ 2차 개정 : 5년 이하 징역 등), 해외수역에서의 IUU어업금지 등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해 왔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적극적 개선조치 결과, EU는 2015.4.21. 우리나라에 대한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 지정을 해제하였다. 이를 계기로, 우리 정부는 EU와 IUU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 공조 등 양자협력 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관련 규제(무역규제 효과를 수반하는 주요 환경정책)

신화학물질 관리정책(REACH)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 생산량이 가장 많은 EU는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대한 보호와 함께 EU 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2007.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REACH는 화학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해 등록/신고/평가/허가/제한 등을 통하지 않은 연 1톤 이상 제조·수입 화학물질의 시장 유통을 규제하고 있으며, 등록/허가/위험물질의 사용 및 시장유통 제한 조치 등 유럽 차원에서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설치되어 2008.6월부터 REACH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① 사전등록(Pre-registration): 연 1톤 이상 수입·제조되는 기존물질을 제조자와 수입자가 유럽화학물질청(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에 2008.6.1~12.1일 동안 실시, 사전등록시 양과 물질특성에 따라 3.5년에서 11년까지 본 등록 유예가 가능하다.
- ② 본 등록(Registration): 화학물질의 특성, 용도, 생산량 및 관리방안을 ECHA에 제출하는 것으로, 기존물질은 물질별 특성과 양에 따라 등록 시기가 규정되어 있으며 신규물질은 EU내 제조 또는 수입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신고(Notification): 완제품에 함유된 고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의 관리를 위하여, 비의도적 배출로서 제품중량기준 0.1% 이상 함유되고 연간 1톤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하며, 2011.6.1일 부터 시작되었다.
- ④ 평가(Evaluation): ECHA는 대량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과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평가를 시행하며, 대상은 유해물질 또는 연 100톤 이상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이다.
- ⑤ 허가(Authorization): ECHA는 유해물질 관리를 위하여 허가대상 목록을 작성하고, 서류제출 시 허가 또는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 필요시 대체물질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대상물질의 종류는 고위험성 물질(SVHC)-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 독성 물질(CMR) category 1, 2, PBT, vPvB 물질 등인데, 22종이 지정되어 있다.
- ⑥ 제한(Restriction): 건강·환경 위해성이 높은 물질에 대하여는 특정 용도로의 사용 및 수입을 제한하며, 카드뮴과 납·석면 등 의 물질이 이에 해당되며, 약 63종의 물질이 지정되어 있다.

연간 100톤 이상 제조·수입된 화학물질은 등록이 2013.5월까지 완료되었으며, 2014년 8월말 기준으로 39,767건의 7,877개 화학물질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법률에 따른 등록도 9,963건 5,292개 화학물질에 달하고 있다. 국가별 등록건/화학물질 수는 독일(10,252건/4,390개)-영국(4,731건/1,954개)-프랑스(3,482건/1,702개)-네덜란드(3,399건/1,557개)-이태리(3,098건/1,537개)-벨기에(2,871건/1,534개) 순이다.

한편, EU는 유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회원국과 연계하여 비식품을 대상으로 Rapex(Rapid Alert System, http://ec.europa.eu/consumers/safety/rapex/index_en.htm)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9.6월부터는 REACH 규정 위반제품들도 게시하고 있다. 매주 각종 규정 위반 제품의 목록과 사유를 게시(Notification)하는 데, 규정위반 제품은 판매

금지, 자발적 회수, 소비자들에 대한 리콜(recall), 세관당국에 의한 반입 거부 등의 조치 등이 취해지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기업들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REACH대응센터(Helpdesk)를 운영하고 있다(www.reach.me.go.kr).

유해물질의 분류, 포장, 라벨링 규정

유해물질의 분류/라벨링/포장(CLP: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등에 관한 규정(Regulation(EC) No 1272/2008)은 2008. 12월 제정되어 2010.12월부터 시행되었다. 동 지침은 EU의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유엔 GHS(Globally Harmonised System)에 적합하도록 한 것으로서, 1톤 미만의 물질에도 적용된다. 단일물질은 2010. 12월부터 적용되며, 혼합물질은 2015.6월부터 적용된다. CLP 물질목록은 REACH 대상물질과 상이하므로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동 체계 하에서 단일물질과 혼합물은 유해성분에 따라 분류되고,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표지에는 물질 또는 혼합물의 이름(또는 숫자), 양, 공급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름이 표시되어야 한다.

수은사용 규제

EU는 2005년 수은전략을 채택하여 측정기기/전지/전기전자제품 등 제품 내에서 수은과 수은화합물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수은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EU는 국제수은협약을 2013.10월 서명하고 비준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 2016년 비준 예정이다. EU는 일부 분야에서 수은 협약보다 강화된 규제 채택이 예상되는 데, 역외로부터의 수은 수입금지 등에서 무역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승용차와 경상용(Van)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EU 집행위는 자동차업체의 자율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만으로는 획기적 감축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7년 승용차와 경상용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후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 규정(Regulation(EC) No 443/2009)은 2009.4월, 경상용차(van) 관련 규정은 2011.3월 제정되었다.

장기적으로는 단일 유럽 교통지역 로드맵(2011년)을 통해 2050년까지 교통부문 온실가스 60% 감축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초 동 규정들을 개정하였고 2025년 이후 승용차/밴의 배출기준을 2015년까지 검토하여 필요시 집행위가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제도는 EU내 신규등록되는 승용차(M1 category)의 이산화탄소 평균배출량(fleet average)의 2015년 130g/km, 2020년 95g/km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평균배출량 130g/km은 EU 전체의 목표이며, EU 전체의 차량 평균중량과 제작사별 평균 차량무게를 고려하여 제작사별 세부배출기준이 결정된다. 아울러, 제작사들의 제도 적응과 기술개발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적용하게 되며(phase-in), 50g/km 이하의 초저배출차량에 대해서는 배출량 계산시 인센티브(수퍼크레딧)를 부여한다. 제작사는 평균 배출량이 해당 제작사의 세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배출량 g당 최소 5유로에 전년도 판매·등록 차량수를 곱한 초과배출 부과금(Excess emissions premium)을 부담하여야 한다.

❖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평균배출량 규제제도 시행 일정

구분	'12	'13	'14	'15	'16~'19	'20	'21	'22	'23
평균배출량 목표	130	130	130	130	130	95	95	95	95
단계적적용	65%	75%	80%	100%	100%	95%	100%	100%	100%
수퍼크레딧 부여	3.5	3.5	2.5	1.5	1.0	2	1.67	1.33	1

경상용차(van)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Regulation 253/2014)도 시행되고 있다. 대상차량은 국제차량분류 N1 카테고리(적재중량 최대 3.5톤)로서 공차중량 2,610kg인 차량으로서, 경량차량(light-duty vehicles) 시장의 12%와 EU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단기목표는 2017년까지 EU평균 175g/km을 달성하는 것으로 2007년 평균배출량 203g/km 보다 14% 적으며, 2020년 장기목표는 147g/km이다.

제작사별 세부배출기준(Specific emission targets)은 각 차량별 배출 기준을 평균하여 산출하며, 제도 적응과 기술개발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2014~2017년까지 단계적(phase-in)으로 단계별로 적용하는데 2014년에는 차량대수의 70%의 평균, 2015년에는 75%의 평균 그리고 2016년에는 80%의 평균이 배출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경상용차의 이산화탄소 평균배출량 규제제도 시행 일정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배출량 목표	175	175	175	175	175	175	147
단계적 적용	70%	75%	80%	100%	100%	100%	100%
수퍼 크레딧 부여	3.5	3.5	2.5	1.5	1	1.5	1

국내 제작사는 2015년 승용차 평균배출량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화된 2020년 목표 달성과 2017년으로 예상되는 측정방식 변경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통해 차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한편 차량 판매상황 모니터링과 배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시기별 차종 판매전략 등이 필요하다.

대형차량(HDVs)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EU는 1990~2010년간 36% 증가로 도로교통 배출량의 1/4과 전체 배출량의 5%를 차지하여 항공/해운보다 큰 배출원인 버스/트럭 등 대형차량(heavy-duty vehicle)에 대한 규제 도입도 준비 중인데, 집행위는 2014년

5월에 대형차량의 연료소비와 온실가스 감축전략에 관한 대화문을 채택하였다.

집행위는 동 전략을 통해 초기에 대형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측정/보고/모니터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2015년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측정/모니터링을 통한 대형차량의 배출량 정보가 축적된 후에는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배출량 기준치가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부문 및 해상운송부문 온실가스 규제

(1) 항공부문

EU는 전체 배출량의 3%를 차지하는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ETS) 지침을 개정하여 항공부문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부터 EU회원국에서 출발·도착하는 모든 항공편에 대해 적용하며, ETS 제3기의 항공부문 배출총량(Cap)은 역사적 배출량(2004~2006년간 평균)의 95%인 2.1억톤(2014에 크로아티아의 가입을 반영하여 일부 조정)이다. 항공사별로는 무상할당 82%, 경매(유상할당) 15%, 신규 진입자 등에 대한 특별유보(special reserve) 3%로 배분되며, 배출량 초과시에는 여타 산업부문과 마찬가지로 탄소배출권을 시장에서 구입·충당하여야 한다. 제도시행을 위해 유럽경제권(EEA) 30개국과 역외 62개국 900여개 이상 항공사가 무상할당을 신청하였으며,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도 무상할당량을 배정받은 바 있다.

한편, EU 집행위는 ICAO에서 진행중인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시장기반 조치 논의의 가시적 성과 도출 지원을 위해, 2012년에 대해서 비회원국으로부터 도착하고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배출권 정산을 1년 연기하였다. 이후 EU가 동 조치를 2016년까지 연장함에 따라 항공부문 배출권거래제는 당분간 EU역내에서 운항하는 항공편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2016년 ICAO 총회의 결과에 따라 EU가 2017년부터 항공부문 배출권거래제를 전면 시행할 가능성도 있음에 따라,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사전노력이 필요하다.

(2) 해상운송부문

EU는 해상운송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도 강조하여 왔지만, 항공분야 처럼 바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대신 인프라의 우선 구축후 국제해사기구(IMO)의 관련 노력 진척여부에 따라서 배출권거래제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모니터링/보고/검증(MRV) 시스템 구축을 법안이 2013. 6월 발표되어 의회/이사회 채택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EU 항구에 입출항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은 국적에 관계없이 2018년부터 온실가스(CO₂)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배출량을 모니터링한 후 검증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집행위는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을 통한 연료효율성 관심 제고 효과로 인해 BAU 대비 2%의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2030년에는 연간 12억 유로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 및 비도로 운행기계 배출가스 규제

자동차 배출가스에 관한 기본지침은 Directive 70/220/EEC이다. 승용차(Category M) 및 2.5톤 이하 소형화물차(Category N1)에 대한 배출가스 지침(Directive 98/69/EC)에 따라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및 미세먼지(PM)에 대하여 2000년부터 Euro 3 기준, 2005년부터는 Euro 4 기준을 적용한 바 있다.

2007년 채택된 Regulation(EC) No 715/ 2007을 통해 신규차종 승인은 2009.9월부터, 신규차량 등록에 대해서는 2011.1월부터 Euro 5 기준이

적용되었다. 2014.9월부터는 디젤 차량의 분진(PM) 배출량은 80%(기존 25mg→5mg/km) 감소시키고, 질소산화물(NOx) 배출량도 180mg/km에서 80mg/km로 강화한 Euro 6 기준이 신규 차종의 승인시 적용되고 있으며, 신규차종의 등록에 대해서는 2015.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버스/트럭 등 대형차량(HDV)의 배출가스 관련, Regulation(EC) 715/2007에서는 배출가스 통제시스템의 내구성 확보 및 자가진단시스템(OBD) 장착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2008.10월부터 적용된 Euro 5 기준에 이어 2013년말부터 Euro 6기준(Regulation(EC) No 595/2009)이 적용되고 있다. Euro VI는 Euro V보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80% 감소시키고 분진은 66%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존층 보호 및 불화 온실가스(F-gas) 규제

EU는 오존층 파괴물질(CFCs, 할론 등)의 단계적 사용금지를 위하여 관련 규정(Regulation(EC) No 1005/2009)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존층 고갈물질의 생산, 무역, 사용, 회수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소불화탄소(HFCs), 육불화화 등 오존층파괴물질(ODS)의 대체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지구온난화효과가 이산화탄소 대비 최대 2,3만배에 달하는 불화 온실가스의 사용규제도 진행되고 있다. EU는 불화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개 법규를 운영 중인데, 자동차용 냉방시스템 지침(MAC Directive)와 불화 온실가스 규정이다.

자동차 에어컨 사용 냉매 규제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6/40/EC)은 2011.1월부터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 150 초과 불화 온실가스를 사용한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금지하고, 2017.1월부터는 GWP 150 초과 가스 사용 자동차에 대한 적합성 승인과 등록, 판매, 운행 등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집행위는 불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현재의 2/3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불화온실가스 규정 개정안을 2012.11월에 제안하여 2014.5월 채택되었다.(Regulation (EU) 517/2014). 동 규정에 따라 2015년부터 몬트리올 의정서와 유사한 수소불화탄소(HFCs)의 단계적 감축제도(Phase-down) 제도가 도입되며, 불화 온실가스 함유 장비의 시장출시를 단계적으로 제한하게 된다.

포장재 폐기물 관리

EU의 포장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지침은 Directive 94/62/EC로서, 이를 통해 포장재(packaging)의 개념기준(3가지)을 구체화하고 예시(부속서 I)하고 있다. 주요대상은 산업용, 상업용, 가정용, 상점용, 서비스용, 가정용의 모든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회원국은 폐기물 발생예방(prevention)을 위해 생산자 책임제도 도입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집행위는 포장재의 환경적 악영향 최소화를 위한 유럽기준(Europe standards) 마련을 지원하고 포장재 생산자의 의무이행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동 지침은 2004.2월 Directive 2004/12/EC로 개정되었는데, 중량기준 회수율(recovery)을 60% 이상으로, 재활용율(recycling)은 55~80%로 상향조정하는 등 회원국이 2008.12.31일까지 달성하여야 할 포장재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목표를 강화하였다. 포장재관련 최소 재활용율(중량기준) 목표도 기존 15%(일률적)에서 유리(60%), 종이 및 합판지(60%), 금속(50%), 플라스틱(22.5%), 목재(15%) 등 재질별로 강화하고, 재활용/회수 촉진을 위해 포장재에 재질(nature of the packaging materials)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집행위는 버려지는 플라스틱 봉투의 환경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두께

0.5mm이하 경량 플라스틱 봉투 사용량 감축을 위한 지침 개정안을 2013.11월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회원국에 대해 소비 감축대책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은 2015.10월부터 소매점에서 플라스틱 봉투를 유상판매하고 있다.

동 지침은 역외 국가에 대한 추가 부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치금, 생산자책임제도 등 동 목표 달성을 위한 회원국별 세부 정책수단이 관련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를 유발하게 되므로, 우리나라 포장재를 포함한 제품 수출 업계도 동 지침의 내용 및 회원국의 구체적 이행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에코라벨링(eco-label) 제도

소비자 선택을 통한 환경친화적 생산과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EU차원에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자발적 인증프로그램인 에코라벨링(Eco-Label)제도는 Regulation(EC) No 66/2010에 따라 1992년부터 시행중이다.

2015년 3월 기준 2,010개 회사가 에코라벨을 획득하고 있으며, 세제, 섬유, 전자제품, 정원용품, 가정용품, 유탄제, 종이류, 숙박업소 및 캠핑장 서비스(식품, 음료,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는 제외) 등 26개 제품 및 서비스 군에서 44,051개 제품과 서비스에 에코라벨이 부착되고 있다(세부품목은 <http://ec.europa.eu/environment/ecolabel/>참조).

EU는 부여대상 품목군을 2015년까지 40~50개로 확대하고 다른 회원국 및 제3국 환경라벨링제도와와의 통합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조달에 있어서도 에코라벨 획득제품 구매를 독려하고, 에코라벨이 유럽 소비자들의 제품·서비스선택에 주는 영향력이 커질 것이므로, EU 에코라벨링 제도 및 획득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나노물질에 대한 정의 및 규제가능성

EU집행위는 2011.10월 나노물질(nanomaterial)에 대한 정의를 집행위 권고문(Commission Recommendation)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나노물질에 대한 명확한 정의 채택으로 인하여 나노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식품, 화장품 등)에 대한 위해성평가가 가능해지고 이에 따른 규제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현재 EU REACH 제도가 나노물질에도 적용되고 있는 바,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나노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 REACH 등록과 관련한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고문에 따르면, 나노물질은 “결합되지 않은 상태 또는 혼합물(aggregate) 또는 덩어리(an agglomerate)로서, 크기 분포상 50% 이상(입자수 기준)이 1 ~ 100 nm 범위에 있는 자연적, 우연적 또는 제조된 물질”로 정의되며, 특별한 경우 그리고 환경, 보건, 안전 또는 경쟁측면에서 인정되는 경우에 크기 분포상 입자수 기준 50%는 1~50% 사이로 대체될 수 있다.(EU집행위 권고: 나노물질에 대한 정의 제2항). 집행위는 위의 정의를 경험, 과학·기술적 발전의 측면에서 2015년 말까지 재검토(review)하고 2016년 새로운 정의를 발표할 예정이다.

집행위의 권고가 회원국과 경제주체들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나, EU집행위·회원국들이 향후 법령 제·개정시 동 정의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영향력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나노물질 등록제도를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벨기에, 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에서도 등록제도를 도입하였고, EU차원에서 등록부 설치여부를 영향평가를 거쳐 2015년 말까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 나고야 의정서 이행법률

EU는 2014.5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EU내 이행법률을 채택하고 나고야 의정서를 비준하였다. 회원국 중에서도 2015년 10월 기준 덴마크/헝가리/스페인/크로아티아가 비준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회원국도 2016년에는 비준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나고야의정서는 유럽국가와 개도국 등 50개국 이상의 비준으로 2014년 10월 발효되었으며, 2015.10월 현재 92개국이 서명, 68개국이 비준하였다.

동 이행법률에 따라 유전자원의 사용자는 유전자원에 대해 원산지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접근하고 타당한 이익을 공유해야할 의무를 부여 받게 되며, 관련 제품의 시장출시 승인을 받거나 상업화시 이를 선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법률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관련 절차 준수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보조금 및 그 밖의 정부 지원

EU는 역내 시장에서 자유경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EU가 역내 시장에서 회원국 간 공정한 경쟁여건(level playing field)을 확보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EU와 제3국 간 경쟁의 공정성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EU의 개별 회원국들은 자신의 중요한 산업정책 수단인 하나인 국가 보조금(state-aid)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EU 이사회(Council)의 멤버로서 EU 법령을 제정하는 기능도 행하기 때문에 EU 차원의 국가보조금 규제정책과 관련하여 집행위와 갈등을 노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산업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기업총국과 경쟁총국 등 집행위 각 총국(Directorate General)간 이견이 존재하고, 집행위원들 간에도 출신국가에



따라 개별 사건에 대한 견해 차이를 보이는 등 집행위 내부의 갈등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여타 경쟁정책 분야와 달리 국가보조금 규제에 있어서 집행위의 권한은 아직까지 제한되어 있는 편이다.

따라서 실제 보조금 지급 사례에 있어서도 집행위가 회원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EU는 중소기업·R&D·직업훈련·고용지원·낙후지역개발·일부 수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회원국의 집행위에 대한 사전 통보의무를 면제하여 주고 있다.

집행위가 회원국별 국가보조금 지급현황 분석을 위해 2001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스코어보드(State aid Scoreboard)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EU 회원국의 국가보조금(non-crisis aid)은 627억 유로(EU GDP의 0.5%)로 그 비중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국가보조금의 대부분은 특정 분야 지원이 아닌 지역 개발, 연구, 환경보호 등 수평적 목적(horizontal objective)을 위해 지원되고 있으며, 분야별 보조금은 농업 분야에 84억 유로, 교통분야(철도제외)에 14억 유로 등이 지원되었다.

정부조달

2014.8월 발간된 EU 집행위 보고서(Annual Public Procurement Implementation Review 2013)에 따르면, 2011년 27개 회원국의 연간 공공조달시장 규모를 TED(Tenders Electronic Daily database)를 통해 EU 관보(OJ)에 게재된 규모를 통해 추산한 결과, 약 4,254억 유로에 달하며, EU 전체 GDP 대비 약 3.4% 수준에 해당한다.

한편, EU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회원국의 정부조달 중 EU 정부조달지침을 적용받는 이들 규모는 GDP 대비 약 2~12% 수준이나 EU의 지역개발정책(regional policy)으로 신규 가입국들에게 제공될 개발자금이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에 투자될 전망이다 만큼 EU 전체 공공시장조달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EU FTA가 발효되어 기존 WTO 정부조달협정(GPA)상의 양허 이외에 1,500만 SDR(222억 원) 이상의 민자 사업을 개방하였으며, 과거 낙찰 실적 요구 금지 등을 명문화하면서 우리 기업의 EU 정부조달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되었다.

또한, EU의 확대에 따라 신규가입국(예: 2014.7.1부로 가입한 크로아티아)에 한-EU FTA와 WTO 정부조달협정(GPA)이 적용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동 협정에 의거, 신규 가입국 공공조달 시장에서 동 협정의 허용 한도 내에서 내국민대우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로써 우리 기업들도 신규가입국을 중심으로 EU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적극 도모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EU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정부조달 시장 개방 촉진을 통한 EU 기업의 시장접근성을 높이고, EU 자체의 정부조달시장의 법적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정부조달정책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4.4월 공공계약(Public Contracts), 공공시설(Utilities), 공공사업실시협약(Concessions) 등 3가지 형태의 공공 조달을 관할하는 새로운 지침을 채택하였다.

동 조달지침은 공공조달 절차가 간편해지고 보다 유연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느 회원국에서나 동일한 포맷(European Single Procurement Document)을 활용하여 조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종 필요 자격 증명 시에도 조달 참여에는 자기선언(self-declaration)만으로 충분하고, 낙찰자만 실제 자격 증명을 위한 서류 작업을 하는 등 행정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행정적인 편의를 증대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는 전자조달(e-procurement) 역시 2016년 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다. 2016.3월까지 전자공고(e-notification) 및 조달 관련 서류에 대한 전자적 접근이 의무화 되고, 2017.3월까지 중앙조달기관에 대해 전자서류 제출(e-submission)이

의무화되고, 2018.9월까지 전 조달기관에 대해 전자서류제출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특히, 전자조달 관련 주목할 만한 것이 E-Certis라는 무료 온라인 정보시스템인데, 동 서비스는 각 조달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관련 정보, 자주 요구되는 증명서 및 증명서간 상호동등성 인정 등 관련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새 지침은 낙찰기준과 관련해서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자(MEAT: 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tender)’라는 단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종래의 최저가 낙찰 기준을 벗어나서, 가격 외에도 비용(특히 비용-효율 접근 및 제품생애주기비용 등 고려) 및 생산 과정/사회·환경적 기준/혁신적 성격 등을 고려한 품질 기준 등을 종합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조달 자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배려하는 정책도 도입하고 있다. 대규모 계약의 경우, 여러 개의 작은 계약(division into lots)으로 분할해서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토록 하게 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apply or explain” 원칙 적용) 또한, 조달 참여에 대한 재무상태(financial standing) 증명을 계약 금액의 2배 이내로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넓혔으며, 공정한 조달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도입하였다.

상기 지침은 회원국에 의한 이행입법이 되어야만 실제 적용이 될 수 있으며, 2년간의 입법기간을 거쳐서 2016.4.17부터 이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달지침의 개정은 우리 기업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낙찰자 선정기준에 가격 외에 사회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한 것은 다수의 응찰자들이 같은 조건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EU 역내 업체, 특히 발주국의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서, 결국 제3국 기업들의 응찰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기업이 가격 경쟁이 아닌 품질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바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개요

EU는 지식재산권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 그 하나는 회원국간의 지식재산권 정책의 통일화이며 또 하나는 EU의 지식재산권을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이다.

지식재산권 정책의 통일화는 회원국간의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과 경쟁을 통해 단일시장의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로 특허와 상표 등 산업재산권 정책과 관련이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도 지식재산권 통일화 정책의 일환이다.

또 하나의 정책의 방향은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보호정책이다. 이는 주로 저작권이나 위조품 단속과 관련된다. 위조품이나 저작권 위반이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보호 시스템을 일 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실효적 집행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지재권 정책의 통일을 통해 엄격한 위조품 방지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 그렇지 않은 국가가로의 위조품 유입을 방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EU 집행위와 EU 회원국들은 특허, 상표, 저작권, 지리적 표시와 집행 등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보호를 지지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EU의 지식재산권이 EU 이외의 지역에서도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U의 지재권 법 규범은 EU 관련법과 회원국의 법률에 의해 정해지며, EU는 지재권의 소진과 관련하여 지역소진(regional



exhaustion)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바, 제3국으로부터의 병행수입은 허용되지 않으나 EU 국가로부터의 병행수입은 허용하고 있다.

특허

EU에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 방법은 각 국가마다 특허를 출원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특허를 등록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유럽특허청(EPO: European Patent Office)에 특허를 출원하면서 특허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들을 지정하고, 심사결과 특허를 받게 되면 이 특허를 당초에 지정하였던 국가들에 등록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국제특허조약(PCT)에 의해 국제특허를 신청하는 방법이다.

유럽국가들은 1973년 유럽특허에 관한 유럽특허협약(EPC: European Patent Convention) 체결을 통해 유럽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zation)를 창설하고 그 업무 실행기관으로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을 설치하였다. EPC의 회원국은 27개국인 EU회원국보다 범위가 넓은데, 2013.9월 현재 터키, 노르웨이, 스위스, 알바니아, 세르비아를 포함하여 38개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EPC에 의한 유럽특허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개별국가마다 특허취득 절차를 별개로 거칠 필요없이 유럽특허청에 하나의 출원서류를 제출하면 개별 EPC 회원국들을 대신하여 유럽특허청이 특허여부를 통합하여 판단한다. 즉 EPC에 의한 유럽특허는 출원 및 심사단계까지는 통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특허는 출원과 심사단계까지만 통합된 제도일 뿐 정작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한 권리의 등록 및 분쟁은 여전히 개별국가별로 진행하여야 한다. 유럽특허를 이용하더라도 출원인은 여전히 유럽특허청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회원국 특허청에 개별적으로 등록하여야만 해당 국가내에서 특허권을 행사하게 된다. 또한 개별 국가별로 각각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국마다 별도의 중복된 제도 운영은 많은 특허획득 비용을 초래하고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고비용 저효율의 유럽특허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단일특허제도가 도입하게 되었다.

(1) 단일특허제도 설치 논의

가. 개관

EU회원국에서 특허를 획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타 국가의 경우보다 훨씬 많다. EU가 많은 수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국가들에서 사용되는 공식 언어가 20개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각각의 회원국들이 별도의 특허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번역비용, 대리인 비용과 서로 다른 규정에 따라 특허를 등록하는 절차를 위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3개 EU 회원국을 지정하여 유럽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평균 20,000유로의 비용이 소요되며 이 중 14,000유로가 오직 번역에만 소요되는데,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약 10배의 비용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유럽특허의 취득은 평균 5개국으로 제한되고 있다. 특허소송의 경우에도 개별 사건에 대해 여러 국가에서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하여 고비용, 복잡한 제도, 국가간 상이한 판결의 가능성 등으로 비효율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000.8월 EU 집행위원회는 공동체특허에 관한 규정안을 최초로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EU에서의 특허와 관련된 복잡한 체계를 단순화하여, 발명자 및 기업의 부담을 대폭 덜어 주자는 것이었다.

2009.12.1일 발효된 리스본조약에는 공동체 차원의 통일된 지재권 제도 설립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공동체특허의 논의가 진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한편으로 논의진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왔던 사용언어문제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단서

규정으로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논의의 획기적인 전환을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있었다. 리스본조약의 발효 이후 공동체특허는 EU 단일특허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나. 단일특허규정안의 내용 및 추진 상황

단일특허 규정안의 목적은 기존의 특허제도(개별 국가의 특허제도 및 유럽 특허제도)와 병용되는 EU회원국에 적용할 새로운 단일의 특허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EU특허는 EU 전역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EU 전체에 걸쳐서 부여되고, 이전되며, 무효 또는 포기될 수 있는 것이다. 동 규정안은 EPO에 출원하고 EPC의 실질적인 규칙에 따르게 된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는 회원국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회원국간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EU특허의 논의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은 특허절차 중의 사용언어, 회원국 특허청의 역할 및 EU특허의 재판관할 등 3가지 사항이었다.

사용언어의 경우, 번역비의 절감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EU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용언어를 최소화하여야 하는 반면, 각 회원국들의 입장에서는 국민적 정서나 자국민들의 EU특허 이용시의 비용 및 편의성 측면에서 자국의 언어가 공식 언어로 채택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공동체상표청(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OHIM - ‘역내시장에서의 통일을 위한 사무소’라는 의미의 명칭이나 편의상 ‘공동체상표청’이라는 명칭으로 표기함)이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및 이탈리아어 등 5개 언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으나, 결국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현재의 유럽 특허청과 같이 공식 언어를 영어, 불어 및 독일어 등 3개 언어로 하거나 아예 영어 하나만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2009년 결정문의 채택과 2010.7월 번역요건에 대한 절충안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EU통합특허에 대한 진전이 없자 스웨덴, 네덜란드를 비롯한 10개 EU 회원국들은 언어문제에 대한 만장일치를 도출하려는 노력은 소진되어 더 이상의 논의가 무의미함을 주장하면서 집행위가 “강화된 협력절차(Enhanced cooperation)”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2010.12.08일자 집행위에 제출하였다. Michel Barnier 역내시장담당 집행위원은 EU에서 높은 특허획득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평균적으로 27개 회원국 중 단지 5개국만 등록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비록 일부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통합특허를 지체 없이 도입하는 방안을 집행위가 마련해야 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례적으로 절차를 앞당겨서 2010.12.14일자 “강화된 협력” 제안서를 이사회와 의회에 곧바로 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동 절차의 사용이 언어적 차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단일시장의 붕괴를 조장할 것이므로 합의도출 노력을 더 지속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대하였지만 이들 두 회원국을 제외한 25개 회원국은 동 절차의 사용에 찬성하였고 2011.2.15일 유럽의회도 EU통합특허의 도입을 위하여 이사회가 동 절차를 사용하는 것에 압도적 표차²⁾로 동의하였다.

EU 이사회는 2011.3.10일 통합 EU 특허의 발족을 위하여 25개 EU 회원국간 강화된 협력 절차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동 승인에 기초하여 2011.4월 EU집행위는 기존 EU특허안에서 “EU특허”라는 용어를 “단일 효과를 갖는 유럽특허(European patent with unitary effect)”라고 교체하고 단일 효과 유럽특허에 대한 법안과 그 번역 요건에 대한 법안 등 2개 법안을 다시 이사회와 의회에 상정하였다.

2) 유럽의회는 강화된 협력절차의 사용이 장기간의 합의도출 시도 실패 후 제안된 최후의 수단임이 인정되고 절차에 불참하는 회원국의 권리를 여전히 존중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결국 EU 공동체의 가치를 보호 강화하는 목적에 부합하고 현존하는 EU 조약과 충돌하는 부분도 없음을 검증하였다고 기술하면서 찬성 471표, 반대 160표, 기권 42표로 동 절차의 사용을 승인하였다.



EU 이사회는 2011.6.27일 특별회의를 개최하고 강화된 협력절차를 사용³⁾하여 EU 통합 관련 상기 2개 법안에 합의하였다. EU 집행위-이사회-의회간의 2011.12월 합의에 따라 급진전되었던 통합 EU 특허 관련 논의는 대부분의 안전에 대해 25개 회원국(언어문제를 이유로 불참한 스페인, 이태리 제외)의 합의를 도출하였다. EU 단일특허의 무효사건 전담 1심법원인 중앙법원(Central division)의 유치를 놓고 독일, 영국, 프랑스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 2012. 6. 29.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는 중앙법원의 주요기능을 담당하는 법원을 파리에 설치하되, 특정기술 분야의 사건(런던: 화학 및 의약품), (뮌헨: 기계 및 법원행정)을 분리하는 3원 체제 운영에 합의하였다.

EU특허의 재판관할문제는 별도 전속법원을 설치하는 방안과 기존 법원을 이용하는 방안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왔으나, 상기 2009.12.4일 EU이사회 결정문은 유럽특허와 단일특허의 침해 및 무효와 관련한 민사 소송에 대해 배타적 전속 관할권을 갖는 별도 특허법원(EEUPC)을 설치하는 것으로 2013.2월 25개 EU 회원국이 최종 통합특허법원 조약에 서명하였다. 다만 동 조약에는 EU 단일특허제도에 불참하고 있는 이태리는 참여한 반면 스페인은 여전히 불참하였고 자국 산업계의 반대를 이유로 폴란드도 불참하여 2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EEUPC는 1심법원, 항고법원 및 등록처로 구성되며, 1심 법원은 중앙법원(central division)과 회원국법원(local division) 또는 복수회원국 그룹의 지역법원(regional division)으로 구성된다. 소의 원인 자체가 특허무효인 경우 중앙법원에서 심리하게 되며, 회원국 또는 지역법원에 제소된 침해 소송과정에서 반소로서 특허무효항변이 있는 경우는 직접 그 법원이 무효 여부를 심리하거나, 무효판단부분만 중앙법원으로 회부하거나, 당사자 동의하에 사건 일체를 중앙법원에 회부할 수 있다.

3) 동 절차의 사용으로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이사회에 참석하기는 하였지만 의사결정 권한은 없었다.

EU특허의 행정청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유럽특허청(EPO)이 EU특허 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하여 출원, 심사 및 특허부여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회원국 특허청은 자국에 직접 제출된 특허에 관련된 업무는 여전히 수행 하되 EU특허와 관련된 출원을 안내하고 출원서를 접수하여 유럽특허청에 송부하며, 특허정보를 전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EU 단일특허 제도는 영국,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최소 13개국 이상의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통과해야 발효되며, 일단 13개국 이상에서 비준되면 비준된 회원국만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단일특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EU 단일특허(Unitary Patent)의 발효를 위한 EU 회원국들의 의회에서 비준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최초의 EU 단일 특허는 2015년 초 경에나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단일특허에 대한 평가

집행위는 번역비용의 절감으로 25개 회원국 전체서 유효한 단일 특허에 대한 취득 비용이 6,200유로 이하로 획기적으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U 통합특허는 현 EPO의 공식 언어체계를 그대로 도입하게 되는데 영·불·독 이외의 언어로 출원하는 EU회원국 국민은 번역비용을 반환 받음으로 출원단계에서부터 출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 출원인에 대하여는 현 EPO의 공식 언어체계를 유지하게 되므로 적어도 출원 과정에서는 통합특허의 장점을 많이 경험하기 어려울 것이나 등록 단계에서는 번역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등록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많은 출원인이 유럽특허에서 통합특허로 이동할 것이다.

그간 EU의 이산된 특허제도는 비단 EU 내부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EU 외부에서도 지속적으로 EU 시장의 이용에 저해요소가 된다고



그 시정이 요구되어온 만큼 국내외의 많은 EU 시장 이용자들이 통합 특허의 발족 가시화를 반기고 있다.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들이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는 이 제도로 인해 경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기술혁신에 보다 더 투자할 수 있고 유럽에서 특허를 이용한 사업의 시도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2) 유럽특허청(EPO)의 특허활동

유럽특허청은 2013년 13년 특허출원 건수는 265,690건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하였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출원인들은 2013년 16,857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미국, 일본, 독일, 중국에 이어 5위를 기록하였으며, 동 기간 중 유럽특허청 전체 출원건의 6%를 차지하였다. 한국에서 유럽특허청으로 출원되는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10년 12,354건, '11년 13,255건, '12년 14,791건, '13년 16,857) 주로 출원하는 기업은 삼성, LG, 현대, LSIS, SK, POSCO 순으로 출원을 하고 있다. 특히 삼성과 LG의 경우 유럽특허청 전체 다출원 기업중 1위(삼성)와 4위(LG)를 기록하고 있다.

2013년 기술분야별 출원은 의료기술이 1위, 전기·기계·에너지가 2위, 디지털 통신 분야가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기업의 경우 컴퓨터 분야가 9%로 1위, 전자통신이 8%로 2위 그리고 전자기기분야가 7%로 3위로 주로 IT 관련 분야 출원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2013년 미국이 64,967건으로 가장 많이 출원하며 다음으로 일본 52,437건으로 2위, 독일이 32,022건으로 3위, 중국이 22,292건으로 4위, 한국이 16,857건으로 5위를 기록하였다. 2013년 전체 출원건수 중 한·중·일 3국에 의한 출원이 약 35%에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중 한국과 중국은 2012년 대비하여 각각 12.3% 14.0% 출원이 증가하였다.

유럽특허청의 등록현황은 2013년 66,712건의 특허를 부여하였으며, 이는 2012년의 특허 부여건수(65,657) 대비 1.68%로 소폭 증가하였다. 등록된 국가도 미국이 가장 많으며 한국은 전년대비 10.2%가 증가한 1,989건으로 8위를 기록하였다.

상표

EU의 상표제도 역시 EU 공동체상표 등록을 통해 전체 회원국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일개 회원국 내 상표를 등록하여 개별 국가 내에서만 상표를 보호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EU 공동체상표 등록을 신청하여 거절된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 국가의 상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초 공동체상표를 출원한 날짜에 기초하여 개별 국가에서 상표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어떤 기업이 EU 공동체상표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제3자가 타 회원국에서 기신청 동일 공동체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공동체상표의 신청 없이 개별 회원국에만 상표를 출원한 경우, 타 회원국에서 제3자의 동일 상표 획득을 금지할 수는 없다.

(1) 공동체상표의 효력 확대

공동체상표청(OHIM)에서의 상표등록은 1996년에 시작되었다. OHIM은 EU 전체 회원국에서 유효한 공동체상표를 등록한다. 한편, 신규 회원국의 EU 가입일 이전에 출원된 공동체상표 권리자의 법적 지위는 이미 등록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가입국들의 영토에까지 그 효력이 확대된다. 따라서 가입일 이전에 출원된 상표는 심사나 취소청구가 이루어진 날과 관계없이 가입국의 언어로 성질표시 또는 보통명칭이거나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절대적 등록 거절사유만으로는 등록이 거절되거나 등록 후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동체상표가 가입국의 언어로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표의 침해로 피소된 자는 “상표권의 효력을



규정한 공동체상표규정을 원용하여 그 표지가 상표로서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고, 공동체상표가 가입국에서 수요자를 기만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국내법에 의해서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가입국에서 공동체상표보다 선의로 먼저 출원되었거나, 우선권 주장일을 갖는 가입국내의 선권리자는 공동체상표의 사용을 당해 영토 내에서 금지시킬 권한을 갖는다.

2009.5월 공동체상표청(OHIM)은 공동체상표 등록 수수료를 폐지하여 출원인의 부담이 기존의 1,750유로에서 1,050유로로 줄게 되었고, 공동체상표 등록절차도 간소화함으로써 EU의 상표 출원인들이 연간 약 6천만 유로의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다.

(2) 공동체 상표의 출원

2013년 공동체상표청(OHIM)에 출원된 공동체 상표(communitary Trade-mark) 출원은 전년대비 65가 증가한 114,427건을 기록했다. 공동체 상표의 온라인 출원비율은 95%를 상회하고 있다. 공동체상표청 심사관은 공동체 상표출원에 대해 절대적 거절이유(absolute grounds) 유무를 심사하여 심사결과 별도의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동 출원을 공고(publication)한다. 출원공고이후 별도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으면 상표출원은 등록이 된다. 공동체 상표에 대한 한국 출원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1,133건이 출원되어 2012년 807건 대비 40%가 증가되었으며 그동안 총 5,966건의 누적 출원으로 보이고 있다. 한국 출원인은 LG전자, 삼성전자, LG상사, 금호타이어, 현대자동차 순으로 나타났다.

(3) 마드리드의정서 가입

WIPO는 상표소유자가 표준출원으로 회원국들에서 등록을 허용하도록 하는 국제상표 등록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EU는 의정서 가입을 결정한바 있으며, 2004.10월부터 발효되었다.

(4) EU 상표법 개정 방향

EU 집행위는 2013년 3월 상표제도의 현대화, EU차원의 상표제도와 개별 회원국의 상표제도와와의 조화, 출원인의 비용절감, 위조품에 대한 상표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하여 상표제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EU 상표제도 개정의 대상인 세부 법안은 아래와 같다.

- EU의 1989년 제정 상표지침(Directive) 2008/95/EC
- EU의 1994년 제정 공동체 상표규정(Regulation) 207/2009/EC
- EU 집행위의 1995년 제정 공동체상표청 수수료 규칙 2869/95

집행위는 EU상표제도 개정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빠르고 신뢰성이 높으며 예측 가능한 상표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배경을 설명하고 아래의 주요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 EU 공동체 상표제도를 참고하여 각 회원국 상표등록 제도의 조화 및 효율화 추구
-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최신 판례를 반영하고 상표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며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현대화하고 법적 명확성을 제고
- EU의 영토를 통과(transit)하는 위조품에 대한 제재수단 도입
- EU 상표실무의 조화를 위해 공통의 툴을 개발하고 공동체상표청(OHIM)과 회원국 상표청간의 협력을 증진

지리적 표시(GI)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GI)는 특정상품이 타 지역에서 생산, 제조, 가공된 상품과 구별되는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존재하고 그러한 특성이 그 지역 특유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 조건이나 전통적인 생산비법 등의 인적조건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서



본질적으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유럽지역은 농업, 낙농 및 농업가공품 등의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역사적, 기술적 전통을 보유하고 있고 그에 따라 높은 품질과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에 관련된 지리적 명칭들 중 많은 수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이러한 제품의 명칭을 유럽 내에서는 물론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이와 유사한 또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지리적 표시를 아무 관련이 없는 타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하도록 할 경우 이들 상품에 부가되어 있는 명성에 피해가 초래되고 기존에 권리를 누리던 해당 지역의 생산자 등의 경우 영업적 손실을 입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유럽에서는 지리적 표시가 유럽의 매우 중요한 지식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U의 지리적 표시 관련 규정은 와인에 관한 규정(Nos. 1234/2007) 주류에 관한 규정(110/2008) 및 농수산물식품류 관련 규정(510/2006)이 있다. EU는 지리적 표시 제도의 개선을 위해 등록기준을 명확화하고 등록기간을 단축하며 지리적 표시 관련 절차에 생산자 그룹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3국으로부터의 지리적 표시 등록신청도 가능하며 2009년 이래 1건의 비 EU 지리적 표시가 등록되었지만 등록신청 건수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유럽의 지리적 표시 등록에는 평균적으로 약 3년이 소요되고 있다.

2010.7월 EU는 스위스와 양자 협정을 체결하여 각각 800개의 EU 축농식품 관련 지리적 표시와 22개의 스위스 농식품 관련 지리적 표시가 상호 보호받게 되었다. EU는 중국과도 지리적 표시 관련 양자 협상을 진행

중이며 2007년 시작된 ‘텐 플러스 텐’ 프로젝트에 기초하여 중국 시장에서의 10개의 EU 지리적 표시의 보호 및 EU에서 10개의 중국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한-EU FTA에서는 양측의 지리적 표시를 상호 보호하기로 합의하여, 한-EU FTA 발효시 한국은 64개, EU는 162개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가 WTO TRIPS 협정 제23조의 포도주 증류주의 보호 수준으로 강화되었다.

지리적 표시는 EU 공동체 상표 제도 하에서 공동체 단체표장(Community collective trademark)을 통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으며, 기타 부정 경쟁방지법, 소비자관련법 및 무역표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한편, EU는 현재 보호 중에 있는 식품, 포도주, 주류에 관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함께 비농산물(non-agricultural products)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하여 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EU 회원국들에서의 비농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 보호는 독자적(sui generis) 보호시스템을 갖는 국가, EU 단체표장(Community collective trademark) 또는 부정 경쟁방지법에 의한 간접적 보호 등 회원국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EU는 2011.5월 비농산물의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자체 연구를 추진 중이며, 2012년말 연구를 종료하였고 2013년 말경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제도로입을 위한 자체 연구의 범위는 크게 이하의 3가지로 요약된다.

- EU 차원 및 회원국, 비회원국에서의 비농산물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현황
- 비농산물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도입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
- 관련 산업계의 의견수렴 및 평가



디자인

(1) 공동체디자인제도

유럽공동체 디자인제도는 소정의 절차와 심사를 통한 등록에 의해 보호되는 “등록 공동체 디자인”과 등록하지 않은 디자인을 보호하는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의 2종류의 보호체계가 있다. 이러한 디자인보호를 위해 EU는 2001.12월에 디자인 보호를 위한 단일의 공동체체계를 도입하는 규정을 채택하였다. 동 규정은 각 EU회원국에 대해 직접 적용되는 두 가지 형태의 디자인, 즉 등록 공동체디자인 및 미등록 공동체디자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등록 공동체디자인 체계 하에서는 스페인 알리칸테에 있는 공동체상표청(OHIM)에 디자인을 등록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최대 25년간 EU 모든 지역에서 디자인권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한다. 동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미등록 디자인은 디자인이 공개된 날로부터 3년간 자동적으로 보호된다.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은 디자인이 ‘공중에게 이용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음’을 조건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지 않고 보호하는 제도이다. 제3자에 의한 디자인의 복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보호하는 제도로서 권리 행사하는 경우는 디자인으로서의 적격성, 신규성 등 자체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한국출원인들의 공동체 디자인 출원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대체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3년 2,981건으로 2012년 1,620건 대비 무려 84%나 증가하였으며, 그동안 총 출원건수는 10,913건으로 삼성전자, LG전자, 이노텍,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순으로 출원을 했다.

(2) EU확대에 따른 공동체디자인의 효력 확대

신규회원국의 EU 가입일 이전에 출원된 공동체 디자인의 권리자적 법적 지위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가입국의 영토에까지 그 효력이 확대된다. 다만, 가입국에서 공동체 디자인보다 먼저

출원되었거나, 우선권 주장을 갖는 가입국 내의 선 권리자는 그 권리가 선의로 취득된 경우 공동체의장의 사용을 당해 영토 내에서 금지시킬 권한을 가진다.

저작권

(1) 정보사회의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지침 채택

2001.4월 EU는 정보사회의 저작권 및 인접저작권에 관한 EU지침을 채택하였다. 동 지침은 집행위원회와 의회 및 각료이사회에서 3여년의 토론과 작업을 거쳐 이루어졌다.

동 지침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국경통과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새로운 멀티미디어 상품과 서비스분야에서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용이하게 하고, 복제, 배포, 공중전달권 및 복제방지장치의 법적 보호를 통일하고자 제정되었다. 또한, 동 지침은 어떤 조건에서 네트워크 운영자를 위한 인터넷상의 기술적 복제에 대한 의무적인 예외, 즉, 사적 복제(회원국의 선택사항)에 대한 열거적인 목록화, 권리소유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개념의 통일, 복제방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사용자를 위한 예외규정 확보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또 다시 현행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지침(Directive)에 대한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2012.7.11일 EU 집행위원회는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관리단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온라인상에서의 음악저작물 이용에 관한 다국적 이용허락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침안을 발표하였다. 온라인 음악 사업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저작권 보호 프레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EU 집행위원회는 권리관리단체의 사용료 징수에 대한 새로운 규제 체제를 제안하고, 디지털 음악 시장을 부흥시키고 온라인 침해를 경감시킬 것이라 생각되는 다국적 이용허락(multi-territorial licensing)을 규정한 지침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상기 지침안은 총 5개의 장, 44개조,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제3장의 온라인상에서 음악저작물의 다국적 이용허락 내용이 가장 핵심적이며, 다국적 이용 허락시 준수해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EU 회원국들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권리관리단체의 경우에는 다국적 이용 허락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권한당국이 검토하도록 보장하고, 다국적 이용허락 저작물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 정확성 및 실제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저작자에 대한 적절하고 지연 없는 배분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동 지침안에 의하면 권리관리단체는 다국적 이용허락을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해당 지침이 국내법으로 수용된 후 1년까지 권리관리단체가 다국적 이용허락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권리자는 권리관리단체에 다국적 이용허락을 승인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다른 권리단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지침안이 입법화되면 단일시장을 추구하는 EU의 가치와 디지털 시대 음악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다국적 이용허락(multi-territorial licensing) 지침은 음악 산업에 있어 거래 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권리자단체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분명한 법적 틀과 신뢰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저작권자 파악이 어려운 경우 협회가 대금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5년까지 허용한 점, 권리자를 빨리 찾아서 돈을 지급하도록 협회를 강제하는 수단이 없다는 점에 대해 일부 창작자들이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009.12월 EU는 소위 인터넷 조약이라 할 수 있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저작권 조약(WCT)과 실연·음반조약(WPPT)에 가입했는데, 이러한 조약의 내용은 EU의 정보사회의 저작권 지침(2001/29/EC)에 반영되어 실행되어 왔다. 최근 EU가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유럽의 문화유산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여 유럽 전역의 연구자와 소비자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술발달과 인터넷 이용의 확대에 따라 온라인상의 데이터 보호와 저작권 보호는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EU는 온라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침(Directive 2004/48)과 전자상거래 지침(2000/31)을 제정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면책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집행

(1) 개요

위조품 및 저작권 위반이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난 수년간 집중적인 주목을 받아오고 있다. EU는 신 리스본 전략상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성장과 일거리 창출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실효적 집행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EU 집행위는 최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상거래의 급속한 성장으로 지식재산권 집행 분야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분야로 온라인상에서의 위조상품 거래와 불법 다운로드의 방지를 거론하고 있다.

위조품과 불법 저작물의 실제 경제적 영향을 측정하고 기존의 대응체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집행 위원회는 단일시장에서의 위조품 및 불법 저작물 추방에 관한 녹서를 통해 여론수렴을 하였으며, 회원국간의 집행수준의 차이가 이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에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집행을 통일하기 위한 지침을 채택하였다.

또한, 집행위는 해마다 국경단속을 통해 적발, 압수한 위조물품의 수량, 금액 및 공급 국가별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2) 지식재산권 집행관련 제안들

2003.1월에 집행위원회는 EU 국경 내에서 지식재산권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안하였다. 동 제안은 8년 동안 EU의 외부국경에서의 위조품 및 불법저작물에 대한 세관의 단속을 규정한 관세 규정(EC/3295/94)을 보충한다. 또한, 2003.1월에 관세규정을 대체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의심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행위와 지식재산권을 침해해온 것으로 알려진 상품에 대해 취할 조치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

가. 지식재산권 집행지침

집행지침의 주요 목적은 회원국 특히 최근 집행이 약한 회원국들의 집행 조치에 관한 국내법을 통일하는 것이다. 또한, 동 제안은 권리소유자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일련의 조치와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일차적으로 상업적 이용으로 제한하도록 제안하였으나, 유럽 의회 법사위원회는 지침의 범위를 모든 불법저작물 및 위조품으로 확대 하였다.

나. 지식재산권 관련 세관 규정의 개정

개정의 목표는 기존 규정의 내용을 개선하고 명확히 하고 적용범위를 새로운 지식재산의 영역으로 확대하며, 권리자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본 원칙은 양자가 동일하다. 법적 장치에 의하면 권리자는 당해 세관에 상품이 통관되는 것을 금지하여 압류하도록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단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세관은 그 상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한다. 그 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10일 이내에 실질적인 결정을 내린다. 만약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사전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세관은 그 상품을 통관시킨다. 침해자에 대한 조치에는 상품의 폐기가 포함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규정의 적용범위가 지리적 표시 및 식물 품종과 같은 새로운 지식재산에까지 확대되었다.
- b) 적용범위는 그 상품이 대규모 운반의 일부로 간주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이론상 개인 여행자가 운반하는 비상업적인 성격의 상품에까지 확대되었다.
- c) 그 규정은 세관이 3일 동안은 권리자의 사전 신청이 없이도 임의로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d) 권리자가 제공해야 할 수수료와 보증금은 폐지되었으며, 대신에 권리자는 세관에서 상품을 억류 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데 동의하여야 한다.
- e) 신청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신청서식도 표준화되었으며, 컴퓨터 신청도 장려되고 있다.
- f) 세관은 권리자에게 상품의 성격, 출처 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세관은 소송제기를 위해 필요한 샘플도 제공할 수 있다.
- g) 권리자는 당해 사건의 승소에 관한 사전조치 없이도 20일 이내에 그 상품을 즉각적으로 폐기할 수 있다.

동 규정은 집행위원회의 제안 후 6개월만인 2003.7월에 각료이사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04.7.1일부터 발효되었다.

아울러 EU는 2008.9월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계획을 결의하고 이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3년간 수행할 지식재산권 침해와의 전쟁을 위한 세관의 액션플랜을 승인하고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2009.4월 27개 회원국의 40개의 민간기업, 집행위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유럽 위조 및 불법복제 감시기구”를 발족하여 범 유럽 차원의

위조상품 감시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감시기구의 발족은 회원국 관계 당국과 이해 관계자 간 아이디어, 전문성 및 침해정보를 공유할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운영재원의 부족, 지재권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의 부족 등으로 감시기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11.5.24일 EU 집행위는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에 위조상품 및 도용에 관한 감시기구의 기능을 OHIM에 위탁하는 규정(regulation)⁴⁾을 제출하였으며,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압도적 지지로 상기 규정안을 채택하였다.

2012.6.5일부터 OHIM은 기존의 EU 집행위에서 수행해 오던 지재권 침해 감시기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2013년 업무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2012.9.27~28일 EU 집행위, EU 회원국, 기업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스페인 알리칸테에서 제1차 총회를 개최하였다. OHIM의 심판원(Boards of Appeal)장을 역임한 Paul Maier가 초대 감시기구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동 감시기구의 2013년 주요 업무계획으로는 지재권 관련 산업이 유럽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EU 회원국 내 지재권 집행기관 및 사법당국의 집행결과 기록 데이터베이스, 집행관련 베스트 프랙티스의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3)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권침해에 대한 대응

EU 집행위는 EU 역내지역 내에서는 물론 그 외부 지역(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EU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EU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저작권 및 지리적 표시의 침해 상황을

4) Draft regulation entrusting the Office for Harmonisation in the Internal Market with certain task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he assembling of public and private sector representatives as a European Observatory on Counterfeiting and Piracy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그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관련 국가들과 이의 대처 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WTO를 통한 국제규범의 개정 등을 통해서도 EU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EU는 중국과 같이 위조품의 주요 원산지로 판단되는 국가의 기업들에 의한 유럽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 국가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지재권 집행분야의 국제협력 강화

지재권의 보호수준 강화 및 집행, 국경조치 등을 위한 세부 지재권 관련 규정은 EU가 협상해 온 다수의 무역 협정에도 반영되어 왔다. EU는 2007년 이래 칠레, 멕시코, 남아프리카 등과 FTA를 체결 하였으며 2010년에는 한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또한 EU가 중미국가인 콜롬비아, 페루 등과 체결한 FTA는 지재권의 효율적인 보호와 집행을 위한 세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2012.9월에는 한-EU간 지재권 이슈의 양자협의를 위하여 IP 다이얼로그가 브뤼셀에서 개최되어, 지재권 입법 및 정책 진전 상황과 관련하여, EU측은 EU 단일 특허 추진, EU 상표법 개정, 음악저작권 대행산업 개혁안, 고아저작물 관련 법안, 비농산물 지리적 표시 연구 등에 대한 동향을 설명하고, 우리측은 한-EU FTA 및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개정사항을 설명하였으며,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의 협력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및 상표 집행에 관한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EU는 2007년 개시된 위조방지무역협정(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의 논의에 참여하여 2008년부터 공식 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며, 2010.10월 최종 협정문에 합의하였다. 순탄하게 진행되어 오던 EU의 ACTA 가입과정은 2012.1.26일 EU 22개 회원국이 일본 동경에서 ACTA 조약안에 서명한 이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시작된 EU 시민들의 ACTA 반대운동은 독일, 폴란드, 슬로베니아 등 일부 동·중유럽 국가에서 반정부 시위로 확산되었다.

ACTA의 반대진영 측은 인터넷 접속의 자유 및 시민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ACTA에 대한 유럽의회 동의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유럽의회는 2012.7.4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ACTA 비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다수 의원의 반대로 ACTA가 최종 부결되었다. ACTA의 유럽의회 동의를 최종 무산됨에 따라, 2012.1월 EU 27개 회원국 중 22개국이 서명한 비준안 자체가 무효화되어, ACTA의 EU내 발효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경쟁정책

개요

EU 경쟁정책의 목표는 시장에서 경쟁을 보호하고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기업 및 사회전체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도록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유럽의 지속가능한 성장, 일자리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EU경쟁당국은 경쟁정책 및 경쟁법 집행을 더욱 더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카르텔 및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제재, 기업결합 심사 등 경쟁법집행 활동뿐만 아니라 EU 회원국의 국가보조금을 심사하여 국가에 의한 인위적 장벽설정을 견제하며, 시장 감시(market monitoring)와 업종분석(sector inquiries) 활동을 통해 시장개선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법령 제·개정 등을 통해 끊임없이 정책개발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U경쟁당국은 단일시장의 건전한 작동과 경제회복, 나아가 성장 및 고용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기조 하에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다양한 정책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주도해왔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2014년 11월 새롭게 Margrethe Vestager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취임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카르텔

우선, 카르텔규제(Fighting Against Cartels)는 EU집행위 최우선순위 업무로 설정하고 있다. EU경쟁당국의 연례보고서(2013.5) 서문에도 “No time to relax the enforcement of competition rules”라고 강조하면서 법집행강화를 천명하고 있다. 또한 EU경쟁당국은 리니언시 제도(카르텔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카르텔의 신속한 처리와 시장경쟁 회복을 위해 카르텔 합의처리제도(settlement tool) 활용을 증대시켜나가고 있다. EU는 1990-1999 10년간 카르텔에 대해 총 6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이후 국제카르텔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여 2000~2004년간에는 31.6억 유로, 2005-2009년간에는 총 과징금액이 무려 79.7억 유로에 달했으면, 2010년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져 2014.12월까지 89.3억 유로의 과징금을 카르텔 위반사업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등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부과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주요 사건을 보면, 2013.7월 자동차 부품인 와이어 하네스 시장에서의 카르텔에 1.4억유로, 2014.3월 차량용 베어링 카르텔에 대해 9.5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013.12월에는 8개 금융기관들간 유로표시 및 엔화 표시 이자율파생상품시장에서의 카르텔에 대해 EU경쟁법 사건 사상최대 금액인 17.1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우리기업관련 사건들을 보면, 2012년말 TV나 PC에 사용되는 CRT제품 담합에 대하여 우리기업 포함 6개 업체에 14.7억 유로(2.2조원)라는 천문학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2014년에도 4월에 고압전선시장 카르텔혐의로 우리기업포함 11개



업체에 3억 유로, 9월에는 스마트칩 카르텔혐의로 3개 업체에 1.4억유로 과징금 부과 등 카르텔 적발 및 제재가 잇따르고 있다.

카르텔외의 수평적·수직적 합의행위 등과 관련하여, EU는 IT, 제약 분야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애플, 맥밀란 등 5개의 글로벌 출판사들이 연루된 e-book 사건의 경우 2013.7월 사업자들의 획기적인 개선약속에 따른 합의절차를 통해 종결한 바 있다. 특히 제약분야에 있어서 역지불합의라는 특정유형의 반경쟁행위에 대한 경쟁법집행이 활발했는데, 2013.6월 역지불합의를 통해 복제약의 시장출현을 지연시킨 Lundbeck 등 몇몇 제약사들에 대한 제재에 이어 13년 Johnson & Johnson사의 반경쟁 합의에 대한 제재 및 14.7월 프랑스 제약사인 Servier사와 5개 제네릭약품 제조사간 역지불합의 등에 대한 4.3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 등 지속적인 적발 및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EU경쟁당국은 디지털경제 관련 IT분야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구글의 온라인 검색시장에서의 반경쟁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EU 경쟁당국은 2013.7월 구글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대하여 시장의견수령 등을 거치면서 수차례 시정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하여 2015.4월 동의의결절차를 종료하고, 범위반협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구글측에 송부하여 정식절차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와 동시에 구글에 대해서는 안드로이드 OS관련 반경쟁행위 혐의에 대해서도 공식 조사에 착수하였다. 금년 7월에는 미국의 쉘컴사가 3G 및 4G 관련 일부 칩셋시장에서 자사와의 배타적 거래를 위해 칩셋 구매업체에게 리베이트 등을 제공했는지 여부 및 경쟁사업자 축출 의도로 약탈적 가격설정행위를 했는지 여부 등 2가지 EU경쟁법 위반혐의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하였는바, 거대 IT기업들에 대한 경쟁법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 외 표준특허남용관련 삼성전자가 관련된 사건은 법위반 판단 없이 2014.4월 동의의결(committment)방식으로 마무리되었다. 2012.1월 EU경쟁당국의 공식조사착수 이후 통상 사건처리기간에 비해 짧은 약 2년만에 합의종결 된 것으로 EU경쟁당국의 주장인 Joaquin Almunia집행위원은 삼성측이 합의종결안으로 제시한 라이선싱프레임웍이 모범적이며, 다른 산업분야에 유사한 분쟁해결메커니즘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15.4월 EU경쟁당국은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업체인 Gazprom이 중부 및 동유럽 가스공급시장에서 EU경쟁법을 위반하여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예비적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Gazprom 측에 송부하였다.

기업결합 규율

EU경쟁당국은 경쟁제한성이 미미한 기업결합은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경쟁제한우려가 큰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 등을 활용하여 경쟁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고 있다. 2011년 EU경쟁당국은 1건의 기업결합(그리스 항공사간 합병)에 대해 불허조치를 내렸으며, 웨스턴디지탈의 히타치 HDD부문 인수 건, 인텔의 맥아피 합병 건은 동의의결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결정을 내렸으며 삼성전자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매각관련 기업결합은 승인조치를 내린 바 있다. 2012년에도 독일증권거래소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간 기업결합 건에 대해 불허결정을 내렸으며, 2013년에는 글로벌 운송사업자인 미국 UPS사의 네덜란드 TNT Express사 인수건 불허결정 등 경쟁제한 우려가 큰 사안에는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2014.1월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범위를 확대하고 기업결합 신고시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등의 합병관련 제도개선을 단행하였다. 현재는 소수지분 취득(minority shareholdings)에 대한 기업결합심사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정책 및 제도개선

EU는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유럽에서 활발하게 실현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는바,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13.6월 EU집행위가 경쟁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antitrust damages actions)제정안을 발의한 후, 2014.4월 유럽의회는 동 지침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11월에 각료이사회에서 통과되어 입법이 마무리되었으며, 회원국들은 2년내(2016.12.27. 일까지)에 해당지침의 내용을 자국법률에 반영해야 한다. 정보접근권한 강화, 경쟁당국의 결정의 증거력 강화 등 손해배상소송제기시의 장애물들이 많이 제거되어, 피해자들의 소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카르텔 자진신고서류에 대해서는 절대공개불가임을 규정하는 등,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경쟁당국의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이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집단손해배상청구제도(Collective redress)와 관련해서는 EU집행위는 2013.6월 집단소송에 관한 권고안(Recommendation on common principles for collective mechanisms)을 발표하였는바, 이는 경쟁법위반행위를 포함 EU법상의 권리침해 모두에 적용되는 집단소송제에 관한 것이며, 회원국들에 대해 법적구속력은 없다. 아울러 EU 경쟁당국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관련 법령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고 있는 바, 이미 2011년 EU경쟁당국은 절차규칙 개정에 초점을 맞춰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모범관행, 청문관의 임무에 관한 규정 개정을 완료하였고, 기업결합심사시 회원국간 협력에 관한 모범관행안도 채택한 바 있다. 아울러 EU는 유럽경쟁당국네트워크(ECN) 소속 개별회원국 경쟁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한국 공정위, 미국 경쟁당국과의 양자협력 및 국제 포럼(ICN, OECD, UNCTAD 등)을 통해 경쟁법 집행의 국제공조 및 경쟁정책의 국제적 수렴촉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한국 공정위는 2001년부터 공정거래위원장과 EU 경쟁담당 집행위원간 경쟁정책분야 양자협의회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고, 2009년에는 ‘한-EU 경쟁정책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그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강화해오고 있다. 그 외 2011년 EU경쟁당국은 미국-EU간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협력 지침을 개정하였고, 러시아 경쟁당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12년에는 스위스, 중국과도 경쟁법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국가보조금

EU경쟁당국은 금융·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보조금 심사권한을 활용하여 회원국 정부에 금융 및 실물경제 지원 가이드라인 제시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 방안을 심사·승인하면서 위기극복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바, 2014년에도 경쟁당국의 활동 가운데 국가보조금 심사 부분이 업무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U경쟁당국은 회원국의 국가보조금 지급 억제(less aid by the Member States), 양질의 국가보조금 지급 유도(Better aid by the Member States), EU조약과 양립하지 않는 보조금 방지 및 회수(Prevention and recovery of incompatible aid)라는 3가지 세부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보조금 심사와 관련 규정정비를 시도하였다. 우선 2005년 집행위가 설정한 국가보조금의 감축과 양질화를 위한 액션 플랜에 의거,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조금의 전반적인 수준을 줄여 국가간 보조금경쟁을 억제하고,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단일시장화, 고용, 환경보호, R&D와 혁신촉진, 중소기업 발전 등 분야에서 경쟁력, 고용, 성장과 전체사회복지 기여 등 유럽공동체 이익과 부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국가보조금이 역내 교역에 인위적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예방하되, 이미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회수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럽의 경제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국가보조금 분야에서도 새로운 프레임워크 창출을 위한 상당한 제도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2.1.30 발효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보조금 규칙(State aid for Services of General Economic Interest)은 공공당국으로 하여금 에너지, 교통, 통신, 우편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고안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EU경쟁당국은 대규모 정부 지원을 받는 공공서비스에 심사의 초점을 맞추게 된다. 2012.5월에 EU 집행위는 국가보조금현대화(State Aid Modernization: SAM)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국가보조금 통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주창하였다. 단일시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과 제한된 공적예산을 실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타깃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 두 가지 큰 목적이다. 동 프로젝트에 따라 2013.6월 'Regional Aid Guidelines', 2014.1월 'New Risk Finance Guidelines' 등이 채택되었다.

경쟁법의 역외적용

EU는 미국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통해 외국사업자들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jurisdiction)이란 일국가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국내 자국법을 적용하여 규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과거에는 이러한 역외 적용에 대해 주권침해 논란과 함께 강대국이 자국의 시장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쟁법을 이용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률상 명시적으로 또는 판례 규범을 통해 외국사업자의 국제카르텔이나 기업결합에 대해 자국 경쟁법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제 경쟁법의 역외적용은 확립된 국제규범(settled law)으로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EU경쟁당국은 유럽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경쟁법을 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IT, 자동차, 제약 등 주요 산업에 걸쳐 카르텔 및 시장지배력 남용사건들에 대한 제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향후 유럽기업은 물론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제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개관

EU의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EU 전체 GDP의 70%를 상회한다. 이와 같이 방대한 EU 서비스 산업이 이루어지는 시장 환경은 대외 시장 개방 정도와 내부 시장통합정도 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U의 서비스 시장은 거의 대부분이 개방되어 있어 첨예한 시장개방 문제는 야기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GATS 2조에 의거 상당 부분에 있어 최혜국 대우 부여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그 제한 정도와 대상 산업은 각 회원국별로 상이하다. EU가 개방하고 있지 않은 서비스 산업은 공공, 의료, 교육, 시청각 서비스 등으로 어느 나라나 민감하게 취급하고 있는 분야이다.

EU 상품 시장의 통합정도는 매우 높은 반면 서비스 시장의 통합 정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EU 경쟁력 제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EU 서비스 단일 시장 달성을 위하여 EU는 서비스 시장 통합을 저해하는 EU 회원국의 규정을 2009년까지 철폐하도록 아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일 시장 서비스 지침을 채택하였다.

- ① 서비스 제공업자의 영업개시자유(freedom of establishment)에 대한 제한 폐지
- ② 서비스업에 대한 각종 행정법규의 대폭 간소화
- ③ 회원국 정부간 협력 의무 대폭 확대
- ④ 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한 각종 자격조건(requirements)의 폐지
- ⑤ 국적국의 영업허가 전 회원 국내 적용 등

이 지침은 우편, 전기, 가스 등 상업적 성격의 공익서비스에는 적용되고, 사회보장 등의 공익서비스, 라디오·TV 방송 등의 시청각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원산지국 개념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⁵⁾

한편, 2010.10월 서명된 한-EU FTA에서 EU측은 WTO 서비스 분류 155개 분야 중 총 139개 분야를 개방기로 하였으며 ①수의서비스를 포함한 전문직 서비스, ②장비 임대·유지·보수서비스, ③자문·조사·회의 진행 등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 ④위성방송 등 통신서비스, ⑤건설 및 건설 엔지니어링 서비스, ⑥환경서비스, ⑦금융서비스, ⑧내수운송 등 운송 서비스, ⑨운송보조 서비스 등 분야의 양허 수준은 WTO DDA 협상에서 EU가 제시한 수준 보다 높다.

주요 서비스 산업 시장 동향

(1) 통신

1980년대부터 자유화되기 시작한 EU 통신 서비스 시장의 경우 1998년에는 대다수의 EU 회원국에서 공공통신망 독점이 종료되어 경쟁 체제가 도입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EU의 통신 서비스 규제가 EU 회원국별로 통일적으로 집행되지 않아 범유럽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EU 집행위는 EU 통신 서비스 시장 통합을 저해하는 EU 회원국별로 상이한 규제와 도소매 가격 차이를 해소하는 등 EU 통신 서비스 시장 발전을 위하여 2010.5.19일 Europe 2020 Strategy 내에서 Digital Agenda를 채택하고 디지털 경제발달, 고속통신망 구축 가속화, single online market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5) 금융서비스, 전자통신서비스, 운송서비스 등은 동 지침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동 서비스에 대한 시장 통합은 다른 EU 법령으로 진행된다.

그룹에도 불구하고, EU는 타 선진국에 비해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률이 매우 뒤쳐져있다. 일례로 미국인의 90% 이상이 4G 무선통신 접근이 가능하나, 유럽인의 경우 25%만 접근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회원국별로 고립된 국내 시장, 회원국간 통신망 규제의 비일관성 및 주파수 대역 상이, 농촌 지역 투자 부족 등 난제가 산재해 있다.

EU 집행위는 유럽 내 디지털 시장의 각종 규제 장벽을 헐고, 28개국의 단일시장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2015.5.6일 「디지털단일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을 발표하였는바, EU는 2016년말까지 제반 통신 규정을 개혁하고, 회원국간 주파수(Spectrum) 분배방식 조율을 위한 EU의 공통기준을 마련하는 등 초고속 무선망 구축 투자를 위한 통신업체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 금융

EU는 자본의 효율적 배분, 경쟁촉진,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한 경제성장 기여를 목적으로 금융시장 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된 ‘금융서비스실행계획(Financial Service Action Plan, FSAP)’은 회원국 간 금융시장 통합의 기본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FSAP는 단일 도매금융시장 완성, 개방적이고 안정된 소매금융서비스의 제공,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 시장통합에 장애가 되는 조세제도 폐지 등 42개 항목에 달한다. 또한 2005년에서 2010년까지는 금융서비스 백서(white paper on Financial Service, 2005-2010)를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보다 통합되고 개방적이며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 시장 구축에 노력하였다. EU의 소매금융서비스 통합은 현재까지 다른 회원국 내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는 전통적인 방법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 기술 발전과 on-line 등 새로운 유통경로가 금융서비스 제공 및 원격지 판매(distance marketing)를 촉진시킴으로써 소매금융시장의 통합에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금융상품별로는 저축이나 UCITS (Understanding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와 같은 소수 분야에서 통합이 다소 진전되었으나 가계 대출 분야 등은 여전히 매우 분화되어 있는 등 통합의 정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EU의 금융서비스는 은행들에 의해 주도되며 보험회사와 증권회사들이 그 뒤를 따르는데, 은행이 보험 업무를 취급하고 보험회사나 증권회사가 은행 업무를 하는 등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행 은행 시스템에 대한 규제는 감독의 주책임을 본국 감독기관에게 부여하는 ‘모국 통제 원칙(home country control principle)’과 한 회원국에서 인가를 얻은 경우 공동체 전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일 면허(single passport) 원칙’, 회원국 금융법규에 대한 ‘상호인정원칙’에 기초한다. 외국은행들은 지점을 설립하거나 다른 나라 은행과의 합병을 통해 EU 내에서 영업할 수 있으며, 회원국들은 공동체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은행의 지점에 적용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규정을 외국 은행 지점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보험 및 재보험 분야는 여전히 EU 회원국의 감독을 받는다. 역외국 보험 사업자가 EU 회원국에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그 자회사는 단일 면허 원칙에 따라 다른 회원국 고객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나 EU 역외 지역에서 본점을 가지고 있는 역외국 보험사업자가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사업을 할 경우 EU 회원국에서 직접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점 설치가 요구된다. 아울러, 보험과 재보험의 직접적인 국경간 공급은 해당 EU 회원국의 WTO 의무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다.

한편, EU는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 유럽 차원의 금융위기 방지 및 대응 강화를 위해 전례 없는 금융감독시스템 개혁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2년여에 걸쳐 논의한 끝에 2010.9월 최종 합의를 도출하고, 동 개혁방안을 2011.1월부터 시행하였다.

동 개혁 방안의 핵심은 전체 유럽 금융시장에 대한 거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urope System Risk Board)를 설치하여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대처방안 권고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하고,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분야별 금융회사에 대한 미시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3개 부문별 유럽 감독청을 신설하여 EU 차원의 단일 감독법규 및 관행 마련 및 회원국들의 일관된 적용 확보, 다국적 금융회사 감독을 위한 중재, 위기시 특정 금융 거래행위의 일시적 금지 또는 제한 등의 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3개의 감독청은 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 보험연금 감독청(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및 증권감독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으로 불리며, EU는 이들 기관을 런던, 프랑크푸르트 및 파리에 각각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한편, EU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상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유로존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감독시스템 개혁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 및 상품·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바젤Ⅲ 도입을 위한 은행자본규제법 개정, 금융회사의 보수체계 개선, 헤지펀드 규제, 예금보장한도 상향조정, 공매도 및 CDS 규제강화,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강화, 증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등 금융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 또한,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위험 관리를 위해 2013.9월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 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14.1월에는 은행시스템 개혁안을 발표함으로써 EU내 금융부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은행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부문에 대해서 위기극복의 비용분담 등 조세 공정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효율



성과 실물경제에 기여하지 않는 금융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일, 프랑스 등 11개국을 중심으로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도입을 위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부문의 개혁은 EU내 금융부문의 통합 진전으로 회원국간 상호 의존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개별 금융기관 문제의 파급효과(spill over effect)가 확대되어 개별 국가차원의 감독과 규제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EU차원의 통합된 규율을 도입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2.6월 EU 정상회의에서는 EU의 금융부문 통합을 보다 공고히 하고 재정위기와 금융위기간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동맹(banking union)을 청사진으로 제시하였다. 은행동맹의 핵심은 EU차원의 통합된 은행감독과 정리시스템, 그리고 예금보장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있으며, 회원국간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쳐 은행동맹의 큰 골격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다. 은행동맹의 첫 출발점으로 2014.11월부터 유럽중앙은행(ECB)이 단일은행감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ism)로서 금융기관 인가 및 취소권한부터 금융기관 및 임직원 제재, 감독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현장조사 등 감독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통화정책 기능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되어, 실제 감독 기능은 동 은행 내에 별도의 금융감독위원회(Supervisory Board)를 설치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소규모 은행에 대한 감독권은 개별 회원국이 보유하되 필요시 유럽중앙은행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기로 하였다. 2015.1월부터 단일은행정리이사회(single resolution board)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단일은행정리기금도 2016년부터 8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조성되는 등 향후 은행정리시스템도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또한, 회원국간 예금보장제도의 조화를 위한 법안에도 합의가 이루어져 예금보장한도, 예금보장 지급기간, 예금보장기금, 예금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대한 EU차원의 통합된 규율 적용도 가능해졌다.

한편, EU 집행위는 역내 투자부진 해소와 자금조달 창구의 다변화를 통한 고용과 성장촉진을 위해 2019년까지 역내 자본시장을 통합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자본시장동맹(CMU: Capital Market Union) 액션 플랜을 2015.9월 발표하였다. 동 액션플랜은 중소기업·인프라 분야 등으로의 투자기회 확대, 위기에 강한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구축, 금융통합 심화와 경쟁력 제고 등의 원칙하에 스타트업·비상장 기업 지원, 자본시장 접근성 확대, 장기·인프라 투자 확대, 국경간 투자(cross-border investing) 원활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3) 운송

EU 운송 산업은 EU 전체 GDP의 약 5%를 차지하며 약 1천만 명을 직접 고용하는 EU 경제의 핵심 분야 중의 하나이다. 효과적인 운송 시스템은 EU의 지리적 통합을 달성하는 근간인 동시에, EU 기업들의 경쟁력과 직결되어 성장과 고용 창출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운송서비스는 개개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EU에게 있어 큰 중요성을 가진다.

그간 EU 집행위는 공동교통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교통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발전시켜왔으며, 백서(White Paper)를 통해 이를 제시해 왔다. 2001년에는 향후 10년간의 교통정책의 목표, 관점 전략 등을 제시하는 백서(White Paper - European Transport Policy for 2010: Time to Decide)를 통해 60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2011년 EU 집행위는 변화하는 도전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고 자원 효율적인 운송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2050년까지의 로드맵을 담은 교통 백서(White Paper 2011: Roadmap to a Single European Transport Area-Towards a competitive and resource efficient transport system)를 발표하였다. EU 집행위는 이를 통해 유럽 교통의 이동성(mobility)을 증가시키면서도 배출가스(emission)의 양은 감소시키기 위해 2050년까지 통합된 단일유럽교통지역(Single European Transport



Area)을 구축한다는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유럽교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수단별 10대 구체목표 및 세부적인 이행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도시내 재래식연료 사용 차량을 감축(2030년까지 50%, 2050년 0%수준으로)할 예정이며, 도로화물(300km 이상 이동시)을 철도 및 수상 등 여타 교통수단으로 전환(2030년까지 30%, 2050년까지 50%)하고, 중거리 이동의 주요수단을 철도로 전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유럽내 고속 철도망을 현재의 3배로 증설한다. 또한 2050년까지 항공분야에서 저탄소 연료 사용률을 40%까지 증대시키며, 해운 분야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58개국(인구 10억)을 포괄하는 유럽 단일항공지역(European Common Aviation Area) 구축을 완료하고, 현대화된 항공관제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EU는 육상교통분야의 ‘마르코폴로’ 프로그램과 위성항행분야의 ‘갈릴레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03년에 시작된 마르코폴로 프로그램은 육상교통의 혼잡도를 감소(화물차의 도로이용을 줄이고, 바다, 철도 및 육지의 수로를 통한 화물 운송 증대)시키고, 송부문간 연결성(intermodality)을 제고하며, 화물운송에 있어서 환경적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1기(2003-2006)에 이어 2기(2007-2013)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500여개 EU내 기업들이 동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다.

또한, EU의 전지구적 위성항법시스템(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을 구축하기 위한 갈릴레오 프로젝트는 EU 전역에서의 철도 화물 운송추적, 위험물 운송추적 등을 통해 운송의 정시성(punctuality)과 안전성(safety)을 혁신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운송 분야에 있어서 EU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U는 지역간 교통 인프라 불균형 문제 및 증대하는 교통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범유럽교통망(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를 위해 범유럽교통망(TEN-T) 프로그램 기금, 지역개발기금(Regional Development Fund), 통합기금(Cohesion Fund) 및 유럽개발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의 유사개발 자금 등을 활용하고 있다.

(4) 우편

EU의 우편서비스 시장은 연간 1,350억 건, 910억 유로, EU 전체 GDP의 0.72%를 차지하는 시장으로, 그간 EU 회원국 정부 독점 사업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EU 집행위는 1997년부터 시장의 단계적인 개방을 추진해 왔다.

EU 집행위는 단계적인 우편 서비스 시장 개방 추진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우편서비스 지침을 도입하고 개정해 왔으며, 해당 지침의 주요 골자는 정부독점이던 우편서비스 시장의 부분적 개방으로 경쟁을 도입하고, 규제 당국과 우편사업자 분리를 통해 우편서비스 시장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2006.1월부터 50g 이상 우편물에 대한 민간 사업자를 참여를 허용하고 2006.10월에는 2009년까지 EU 회원국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50g 미만의 우편물에 대해서도 2009년까지 민간에 완전 개방하고, 일상생활에 보편화된 우편서비스(2kg 이하 우편물, 10kg 이하 소포)에 대해서는 가격이나 서비스 조건 등을 규제하되, 우편 사업자가 입는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 보조, 정부조달,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EU 집행위의 방안에 대해 프랑스, 이태리 등 다수 국가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어, 유럽의회는 2008.1월 우편시장 자유화시기를 2011년으로 연기하고, 신규회원국 및 소규모 회원국에 대해서는 2012년 말까지 자유화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 지침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15년간의 기나긴 정부독점 개방 및 민영화 과정을 거쳐 2013년부터는 원칙적으로 우편면허를 획득한 민간 사업자의 우편시장 참여가 가능해졌다. 다만, Deutsche Post 및 TNT 등 과거 정부 독점사업자에서 민영화된 사업자들이 실제로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스

개관

그리스는 지정학적으로 유럽, 중동, 북부 아프리카의 3각 교차지점에 위치하여 있으며, 서방 문명의 발상지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스의 2014년 총 국민소득(GDP)은 2,376억불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22,090불이다. 그리스의 산업 구조는 서비스 산업(81%), 제조업 (16%), 농업(3.4%)으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대표적인 산업은 관광업, 해운업 등이다. 아울러, 그리스는 석유, 가스 유전을 적극 개발하고 있으며, 보크사이트, 대리석, 철광석, 벤토나이트, 갈탄 등 광물 자원도 풍부하다. 그리스의 인구는 1,100만 명이며, 고등교육을 받고 영어를 구사하는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하다.

그리스는 2010년 이후 경제위기로 인해 과거보다 국민소득이 25% 정도 감소되었고, 실업률도 25%를 상회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2015년 8월 그리스와 채권단간 제3차 구제금융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할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스 정부가 동 구제금융협정에서 요구하는 경제개혁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만성적인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성장의 길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재건 과정에서 그리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 대규모 민영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경제동향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경제성장률	-3.1	-4.9	-7.1	-6.5	-3.6	0.8	-2.3	-1.3
1 인당 GDP(\$)	29,186	27,662	25,932	24,649	23,653	22,090		
GDP (억\$)	3,220	2,948	2,902	2,491	2,337	2,376		
국가부채/GDP	129.7	148.3	170.3	157.2	175.1	174.5		
재정적자/GDP	-15.7	-10.9	-9.6	-8.9	-12.7	-3.5		
물가 상승률	1.4	4.7	3.1	1.0	-0.8	-1.5	-0.4	0.0
민간소비/GDP	-1.6	-6.2	-7.7	-9.1	-10.0	0.4		
정부지출/GDP	4.9	-8.7	-5.2	-4.2	-6.0	-1.0		
실업률	9.5	12.6	17.7	22.4	27.4	26.5	26.8	27.1
수출 (억\$)	213.4	226.6	281.5	283.1	300.3	310.7		
수입 (억\$)	642.0	601.8	660.5	535.3	530.1	582.3		
무역수지 (억\$)	176.1	175.7	203.6	189.2	223.6	271.6		
총외채 (억\$)	4,176	4,372	4,942	3,908	4,087	3,994		
외환보유고 (억\$)	359.8	516.6	588.0	666.1	260.6	61.6		

※ 출처 : 그리스 통계청, Eurostat, IMF (2015년 10월 기준)

IMF 등에 따르면 그리스 경제는 자본통제, 긴축조치 등의 영향으로 2015년 -2.5%, 2016년 -1.5% 마이너스 성장한 후, 2017년부터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그리스 정부는 제3차 구제금융협정

합의에 따라 기초재정수지흑자규모를 2015년 -0.2%, 2016년 0.5%, 2017년 3.5%로 맞추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국가부채 규모는 2014년 174.5%에 달하며 향후 수년간 계속 증가하다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현재 26%를 상회하는 실업률도 2017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기반이 약한 그리스는 만성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5년에는 경기침체, 자본통제 등의 영향으로 수출입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자본통제 완화에 따라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의 산업 구조는 서비스 산업(81%), 제조업 (16%), 농업(3.4%)으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편이다. 최대 산업은 관광업으로 GDP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그리스를 방문한 관광객들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6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리스 경기 회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스는 세계 화물운송 16%를 차지하는 최대 해운 강국이나, 선주들의 편의치적 등으로 인해 그리스 국가경제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GDP 7%).

그리스 정부는 2010년 재정위기 발생 후 현재까지 구조조정을 통한 공공 부문 합리화, 노동고용제도 유연화, 폐쇄직종 전면개방, 연금 합리화 등 새로운 국가발전모델 설정 및 정치경제개혁을 추진중에 있다. 특히 2015년 8월 체결된 제3차 구제금융협정은 그리스 정부로 하여금 △재정, 조세, 연금 개혁, △금융 안정화, △노동시장, 상품시장 개혁 및 민영화 추진, △공공행정 개혁, 부패 척결 등 4대 분야에 있어 강도 높은 경제개혁조치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조치들이 원활히 이행될 경우 그리스 경제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역 환경

무역 장벽

EU 회원국인 그리스는 대외교역에 있어서 EU의 공동통상정책을 적용하고 있고, 특히 공동역외관세, 반덤핑관세, 수입쿼터제 등을 다른 회원국들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양자간 관세가 철폐되고 원산지 기준, 기술 기준의 조화와 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로 우리나라의 교역 장애 요소는 많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그리스 수출입 동향

■ 한-그리스 교역 동향 : 한국무역협회 통계

(단위 : 백만불)

구분	2012		2013		2014		2015년 8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1,909	41.4	884	-53.7	1,048	18.7	733	-18.9
수입	248	172.7	272	9.9	411	51.1	202	-20.7
수지	1,660	24.2	611	-63.1	637	4.1	531	-16.6

그리스는 우리 조선업체들의 최대 시장 중 하나인바, 그간 우리나라는 그리스를 상대로 비교적 큰 규모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여 왔다. 2014년에는 우리나라가 그리스에 10억불을 수출하였으며, 그리스가 우리나라에 4억불을 수출하여, 우리나라는 6.3억불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대그리스 수출의 80%는 선박 수출에 기인하고 있으며, 철도차량, 합성수지 등 여타 품목도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스로부터 주요 수입 품목은 나프타, 기타비금속광물, 의약품, 기타 농산 가공품, 연초류, 음료 등이며, 최근 농산품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 우리나라의 對그리스 수출 현황 (한국무역협회 통계)

품 목	'14		'15. 8.	
	금액(천불)	증감률	금액(천불)	증감률
총 계	1,048,668	18.6	732,839	-18.9
선박	782,810	17.3	571,521	-21.9
합성수지	52,523	-3.0	27,353	-29.3
커피류	10,214	0.0	20,618	925.5
석유화학합성원료	44,459	2,938.4	17,577	-396
열연강판	0	-100.0	14,647	0.0
축전지	14,275	-2.9	7,823	-4.7
승용차	14,205	-2.1	7,421	-20.9
무선전화기	9,850	9.6	4,633	-29.6
원동기	5,438	48.9	4,014	10.0

■ 우리나라의 對그리스 수입 현황 (한국무역협회 통계)

품 목	'14		'15. 8.	
	금액(천불)	증감률	금액(천불)	증감률
총계	411,435	51.1	202,447	-20.7
나프타	362,944	64.6	178,012	-19.3
기타비금속광물	5,617	71.0	2,504	-42.4
의약품	3,398	283.9	1,872	-16.8
기타농산가공품	1,132	-22.0	1,433	285.2
연초류	8,154	-11.4	1,267	-80.5
음료	2,545	84.3	1,195	-51.2
무기류	818	0.0	1,169	185.3
기타모피	2,305	-57.9	997	-46.9
운반하역기계	2,668	-21.1	790	-68.6
기타 의류(모피)	2.1	43.8	-	-76.1



선박 수출 시장

2014년 기준 그리스의 선박 보유량은 4,894척이며 총 재회중량톤수는 2.9억 톤으로 전 세계 수송량의 16.3%를 차지하여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스의 대형 선주들은 우리나라 조선업체의 최대 고객이 되고 있다. 세계 최대 조선 강국인 우리나라와 최대 해운 강국인 그리스는 조선-해운 분야의 윈-윈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현재 우리나라의 대그리스 수출중 약 75%가 선박 수출이다.

2014년 그리스 선주들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박 구입을 계속 하였다. 2014년에는 우리 A사는 그리스 선주로부터 초대형 선박 5척을 수주하였으며, B사는 74,000톤급 유조선 4척을 수주했다. 또한, C사는 탱커 7척을 수주했다. 이러한 그리스 수출 시장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조선기자재 중소기업은 최근 회복되는 해운업 활황세를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스 선사 및 부품 공급업체와의 더 강화된 네트워킹으로 현지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하다. 또한 그리스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 규제에 따라 향후 선박 부품 수입시 친환경 소재 부품 등을 적극적으로 수입할 계획이므로 새로운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환경

투자 매력도

그리스는 지리적으로 유럽, 중동, 아프리카가 만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이들 지역의 관문 국가이다. 영어 구사 인력이 비교적 풍부하며, EU 국가 중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로 우수 인력 확보가 용이한 이점이 있다. 또한, 2010년 이후 경제위기로 인해 실질 임금이 대폭 하락한 점도 투자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현지 여건상 관료주의, 산업 기반 취약으로 인한 원자재 조달의 어려움, 숙련공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 대규모 투자유치가 여의치 않다. 아울러 도로, 금융, 행정 서비스 등의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노동생산성도 낮은 편이다.

최근 다국적 기업들은 주로 M&A 방식을 통하여 그리스의 통신, IT, 식음료, 담배 및 소매 분야에 많이 진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세금 감면 및 현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공장설립형(Green Field형) 직접투자는 그리 활발하지 못하는데, 관료 행정의 비효율성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불만 해소를 위하여 1996년에 투자청(Invest in Greece)을 설립 운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행정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크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다.

세계은행은 〈Doing Business 2015〉를 발간, 전 세계 183개국을 비교 분석해 비즈니스 환경 및 투자 절차 등의 순위를 매겼다. 그리스의 비즈니스 환경은 경제위기 이후 도입된 구조조정조치를 통해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설립 절차, 프로젝트 투자 절차 단순화 등의 효과로 2013년 78위 → 2014년 65위 → 2015년 61위로 개선되고 있다.

■ 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15 Greece 순위

구분	2015년도 순위
Ease of Doing Business	61
Starting a Business	52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88
Getting Electricity	80
Registering Property	116
Getting Credit	71
Protecting Investors	62
Paying Taxes	59
Trading Across Borders	48
Enforcing Contracts	155
Resolving Insolvency	52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투자 인센티브 법을 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0년도 이후 물가, 임금 연동제를 폐지하고 임금 인상률을 물가 상승률 이내로 억제하였으며,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등의 조치에 힘입어 투자환경은 개선 추세에 있기는 하나 외국인 투자는 절대금액 면에서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1년 발효한 그리스 투자유치법(Law 3908/2011)에 따르면, 외국인의 그리스 투자 시 5천만 유로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경우에 현금지원 정책,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4월 또는 10월 말까지 투자청(Invest in Greece) 또는 재무부에 투자계획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유치법은 일반 기업설립, 기술개발투자, 지역맞춤형 투자, 청년 기업 창업, 대규모 투자, 장기투자, 파트너십 형태의 투자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그리스의 투자유치는 그리스 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별 균형발전, 환경보호 등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 법을 통해 승인받을 경우 자금대출, 이자율 감면, 임대료 및 각종 세제혜택 제공을 주요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의 수혜 폭이 가장 큰 분야는 고용창출의 파급효과가 높은 제조, 생산 분야이며 다음으로 는 관광 등 서비스업종이다. 각종 인센티브는 투자 대상 지역, 분야, 고용창출 효과, 투자유형, 기업의 연혁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인센티브 수혜를 위한 투자의 최소단위는 다음과 같다. 대기업 투자의 경우 최소 100만 유로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50만 유로 이상, 소기업 30만 유로 이상, 마이크로 기업의 경우 20만 유로 이상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스에서 설립될 투자기업의 형태로는 30만 유로 이하의 투자일 경우 단독 투자기업이어야 한다. 30만 유로 이상일 경우 Commercial Companies (상업적 용도의 기업) 또는 Cooperatives의 형태일 경우에 투자가 가능하다.

그리스 정부의 민영화 사업 추진

그리스 정부는 2015년 8월 제3차 구제금융협정(MoU) 합의에 따라 대규모 민영화 사업을 경제개혁조치중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스 자산 개발기금(HRADF)은 피레우스 항만, 테살로니키 항만, 구 아테네 공항 등 23개 주요 국가자산에 대한 민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10월 현재 신규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는 민영화 사업은 △아테네 국제공항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아테네 상하수도 공사, △우정공사, △에그니티아 고속도로공사 등 7개 사업이다. 그리스 민영화 사업 진전동향에 관한 상세 정보는 그리스 자산개발기금 홈페이지(www.hradf.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 제도

그리스의 조세 체계는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의무는 없으나 외국인이라도 그리스의 자원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의무가 부여된다. 2010년 경제위기 이후 그리스 정부는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사치세, 연대세(solidarity tax) 등 세율 인상, △법인 및 개인의 소득세 사전 징수제도 도입, △탈세 근절 조치 등 강도 높은 조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그리스의 개인소득세는 소득구간에 따라 0~45%까지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법인세는 법인성격에 따라 20~25%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2015년 8월 제3차 구제금융협정상 합의에 따라 법인세율을 최고 28%로

인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가가치세율의 경우에도 2015년 입법을 통해 원칙적으로 23%로 상향 조정하였다.

2012년 IMF 보고서는 그리스에서의 탈세 규모가 연간 280억 유로로서, GDP의 약 15%에 해당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 그리스 정부는 탈세 근절을 우선 과제로 삼고, △영수증 신고시 소득세 감면조치, △국민들의 신용/현금카드 사용 촉진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그리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세금탈루 대처방안으로 2종 및 3종 회계장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개인회사, 법인, 또는 지사에 대해 연 300~500유로의 기업세 부과를 결정하였다.

투자 진출시 유의사항

그리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우선과제로 삼고, 외국인 투자 여건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으나, 여전히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대그리스 투자진출의 장애요인은 설립 관련 인허가 기관의 비효율성이라 하겠다. 투자청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대규모 사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사업들은 지자체 등의 행정 비효율이나 부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무 관리와 관련, 각종 법규정이 근로자 위주로 되어 있어 종업원 해고, 휴가 제공, 각종 법정 상여금 지급 등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이 만만치 않다. 또한, 공무원까지도 파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현안 발생시 파업이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재정위기로 인한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의 노력이 현 단계에서는 공공 부문 노조의 파업 및 시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리스 정부의 구조 개혁 노력이 가시화되면 차후의 공공부문과 노무관리 상황은 긍정적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조달 시장

그리스는 EU 회원국으로서 EU 역내 정부조달 지침에 따라 관련 정부조달 규정을 입법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부조달 주무부처인 개발·경쟁부에서 연간 통합 정부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해당분야의 정부조달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스에서의 정부조달은 정부기관의 관료주의, 빈번한 입찰 관련 소송 등으로 인해 입찰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EU 보조금으로 시행되는 정부조달 사업의 경우, 입찰 기술적 사양이 EU회원국 기업 기준으로 작성되다 보니 비EU회원국 기업의 경우 동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입찰 공고시 EU 기관에서 발급한 CE 인증을 획득한 제품, EU 내 국가에 이미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제품 등 EU 국가 기업에 유리한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스 정부 발주 국제입찰의 경우 그리스 국내 협력업체와 제휴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낙찰이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스 내 사무소 설치 등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 대부분의 외국기업은 그리스 현지 업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2009.9월 아테네 지하철 공사에서 발주한 ‘제3기 아테네 지하철 전동차 사업’에서 우리 A사와 B사는 그리스와 지역 연고가 강한 스페인, 이태리 업체들을 물리치고 동 사업(전동차 3대 17편승, 1억 52백만 유로)을 수주함으로써 지난 2004년 제2기 사업에 이어 연속 수주에 성공한 바 있다. 조만간 아테네 지하철 확장 사업 및 제2의 도시인 테살로니키 지하철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향후 우리 기업의 추가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한편, C사는 2014년 그리스 테르나에너지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3억 유로 규모의 아테네 e-티켓팅 사업을 수주하였다. 그리스 교통부 산하의 아테네도시교통공사가 발주한 이 사업은 총 사업기간이 12년인 장기사업



이며, C사가 2016년말을 목표로 아테네의 버스, 지하철, 국철 등 모든 대중교통시설에 교통카드 단말기, 게이트 및 자동승차권발매기를 설치하는 한편, 교통운임 정산을 위한 센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노동 시장

그리스에서는 약 35% 정도의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가장 노조 결성이 높은 분야는 공공기관과 은행권이다. 소매점과 관광업 분야의 노조결성은 일부 제한되어 있으며, 노조는 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설립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통지 후 지방법원에 등록하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된다. 노조 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노동 3권이 완벽하게 보장된 반면, 독일에서와 같은 노조의 경영참여권은 없다.

그리스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5일 기준으로 40~48시간을 근무하도록 되어있다. 현지 노동법에는 주당 40~48시간 근무 시 월 급여 기준 시간당 수당의 25% 추가지급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주당 48시간 이상 근무 시 시간당 100%의 추가지급이 필수이다. 주 5일 근무자는 순수 근무일과 근무시간 기준에 따라 연간 20일~24일이며 주 6일 근무자는 24일~26일이다. 아울러 사회보장세로 월급의 44.06%에 해당하는 보험 연금공단 기여금을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16%, 고용주가 28.06%(고용주 기여금)를 각각 부담한다. 그리스 사회보장은 연금, 의료 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사망시 적용되는 종합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현지 노동법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외의 기타 사유로 해고 시에는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히 요구된다.

한편, 2010년 경제위기 이후 그리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우선과제로 삼고 △공공 부문 정리해고, △직종별 단체계약 폐지, △일반 기업의 대량

해고시 상한선 상향 조정(2%→4%), △해고시 보상금을 50% 수준으로 축소 등의 조치를 추진하여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도입코자 노력하고 있다.

광물 에너지 개발

그리스는 보크사이트, 대리석, 철광석, 벤토나이트, 갈탄 등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갈탄의 경우, 유럽에서 독일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다. 2011.1월 환경에너지부 조사 보고 내용에 따르면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 트라키, 카발라 지방에 금 420톤, 은 2100톤, 니켈 6.5백만 톤, 크롬 1 백만 톤이 매장되어 있으며, 이 자원들의 개발을 위해 지질광물 연구소 설립을 결정하였다.

원유는 1975년에 설립된 국영석유회사(이후 ELPE로 개명)가 1981년부터 북부 에게해의 프리노(Prino) 근해 해저에서 원유시추를 시작하였다. 이 해저유전으로부터 1983-85년 간 하루 평균 2만 6천-3만 배럴, 총 1억 2천 배럴의 원유가 생산되었고 당시 하루 평균 2십만 배럴을 소모하던 그리스 총 수요의 13%를 충당하였다. 현재 Prino 해저유전은 높은 유황 함량의 저품질, 저가의 소량만이 생산되며 고갈되어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리스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국영석유회사(ELPE)의 자회사인 ELDA, EKO 등 정유소에서 처리되고 있다.

이미 1874년부터 그리스 수역에 유전의 존재가 파악되었으나 터키와의 에게해 대륙붕 및 영해 분쟁으로 인해 최근까지 석유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상황에서, 2005년 Royal Dutch-Shell사는 당시 국가 발전부 장관을 방문하여 동사의 위성사진 분석 및 연구를 토대로 그리스 원유시추의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 탐사를 제안하였다. Royal Dutch-Shell사는 탐사가 가능 지역으로 중앙 및 북부 에게해 영역, 일곱 도서지역(Eptanisa)으로부터 북부 펠로폰네소스 반도까지의 이오니아해 영역,

에게해 동부 12도서 영역(Dodekanisa), 그리스 북서부 Ipeiros 영역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로부터 총 20~40억 배럴의 원유시추가 가능하고, 석유 탐사 가능성도 경제성 판단 기준인 0.8%를 훨씬 넘는 3% 이상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부채로 인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그리스 정부는 2015년 터키와의 분쟁을 피하면서 경제회복 및 발전을 목표로 그리스 서부와 남부(크레테 섬 남부)의 영해 내 유전탐사에 대한 국제입찰을 진행하여 개발사를 모색한바 있다.

그리스는 에너지 자원의 개발 및 활용이 부족하여 현재까지 에너지 소비량의 약 80%를 원유 및 천연가스의 해외 수입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까지 풍부한 갈탄을 연료로 많이 사용해 왔으나, 대기오염 문제로 인해 러시아 등으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아제르바이잔-그리스-이탈리아 남부로 이어지는 TAP (Trans Adriatic Pipeline) 가스관, SCP (South Caucasus Pipeline) 가스관 등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가스관 및 LNG 터미널 건설 등을 통해 남부 유럽 에너지 수송 허브로 부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체류허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신이민법에 따라 체류허가와 노동허가 신청 및 발급이 하나로 통합 처리되고 있고, 그간 수 차례 개정 작업을 거쳐, 최초 1년 유효기간의 체류허가를 받은 다음부터는 매 2년마다 허가를 갱신하고, 입국 후 합법적으로 5년 이상 체류할 경우 5년의 체류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10년의 합법적 체류 경력을 가진 자에 한해 10년 장기체류 허가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그러나 그리스 행정시스템의 낙후,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 불법체류자 급증에 따른 행정부담 과중으로 인해 체류·노동 허가에 있어서 외국인 거주분포지역에 따라 관련 규정보다 허가가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체류허가 연장시 불만을 감안, 그리스 정부는 투자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외국법인 파견근무자에 대해서는 동 체류허가 권한을 경제부에서 담당토록 하고, 체류허가 신청서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여 동법에 근거한 지상사 주재원들의 체류 허가 문제는 개선되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 경제동향

전형적인 개방형 강소국인 네덜란드 경제는 과거 20년 간 평균 2.25% 성장하였으며, EU 경기변동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02년 EU 경제성장률이 1.3%로 떨어졌을 때 네덜란드는 0.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05-07년 경기회복 시기에는 EU 경제성장률을 다소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며 네덜란드는 2009년 -3.3%라는 사상 최저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후 네덜란드 경제는 2010년 수출을 원동력으로 경기가 일부 회복되었으나, 2011년 그리스 재정위기를 시작으로 한 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로 2012년 -1.6%, 2013년 -0.7%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14년 국내 재정 건전성이 회복되고 그리스발 재정위기가 진정되면서 네덜란드도 경제 위기로부터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다. 2015년에는 주요 교역국의 경기 호조와 유로화 약세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외 수요 확대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주택시장의 회복은 주택가격을 끌어올려 가계의 부채를 줄이고 있으며, 고용 증대와 임금 상승으로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가계소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네덜란드 경제기획국의 2015.9월 발표에 따르면 GDP는 2015년 2.0% 증가하고, 2016년에는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덜란드 주요경제지표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전망)	2016(전망)
경제성장률	-0.5	1.0	2.0	2.4
민간소비	-1.4	0.0	1.6	1.9
수출증가율	2.1	4.0	3.7	5.1
수입증가율	0.9	4.0	4.1	5.7
실업률	7.3	7.4	6.9	6.7
재정수지	-2.4	-2.4	-2.1	-1.4
정부부채비율	67.6	67.9	66.4	64.5

정보출처: 네덜란드 통계청(CBS), 2015.9월 기준

한국의 對네덜란드 투자동향

네덜란드는 한국의 여섯 번째 투자대상국이며 유럽 내 첫 번째 투자대상국이다. 2015년 상반기 누적 투자신고액은 593건, 141억 달러였다. 한국의 對네덜란드 투자는 2000년 대 후반기에 들어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꾸준히 지속되었다. 2011년 주춤하였던 투자가 2012년 크게 증가하면서 2012년 한 해에만 전체 누적투자금액의 25%에 해당하는 28.5억달러가 투자되었다. 2013년에도 네덜란드를 향한 대규모 투자가 이어졌다. 2013년 유럽으로 투자된 35억 달러 중 41%인 14억 5,000만 달러가 네덜란드로 유입되었다. 2014년에는 유럽에 대한 투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네덜란드로의 투자도 급감했으며, 2015년 상반기에도 저조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012년~2013년 투자가 크게 증가했던 광업과 금융·보험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2014년~2015년 상반기 감소해 전반적인 투자가 줄어들었다.



한국의 투자는 진출 목적에 따라 크게 물류 거점형, 마케팅 거점형, 우회 투자 진출형으로 나눌 수 있다. 물류 거점형 투자 진출은 네덜란드의 지리적 이점과 물류 인프라를 활용하는 형태로 항만물류가 발달한 로테르담과 항공물류가 발달한 스키폴 지역이 중심이 된다.

유럽 마케팅 거점형 투자 진출은 유럽의 소비시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달한 인프라를 가진 네덜란드의 이점을 활용하는 형태이다. 네덜란드에 유럽 총괄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서유럽을 비롯한 동유럽 및 러시아 지역까지 마케팅 관할지로 활용하고 있다.

우회투자 진출형은 네덜란드의 유리한 조세제도와 광범위하게 체결한 조세 조약의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지주회사 및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회사 설립 등이 이에 해당된다.

투자환경

지리상 이점

네덜란드는 유럽의 3대 시장인 독일, 프랑스, 영국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반경 300마일(일일 생활권) 이내 1억7,000만명(유럽 인구의 50% 이상), 600마일 이내에는 2억4,400만의 소비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유럽 주요 기업의 50%가 위치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유럽 주요 공업지역과 수로 및 육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라인강과 마스강 사이에 위치한 로테르담은 바지선(barge)과 근해운송선(feeder)을 이용한 내륙 운송 및 근해 운송 시스템을 갖추고 200개 이상의 유럽지역 항구와 연결되어 있다.

우수한 물류 인프라

네덜란드는 로테르담항, 스키폴 공항 등 인프라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유럽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세계은행이 평가한 155개 국가 중 물류 시설 면에서 2위, 물류서비스 경쟁력과 품질 면에서 3위, 세관 환경 면에서 4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물류 인프라를 보유한 국가이다.

효율적인 통관 시스템

EU 회원국에는 원칙적으로 공통의 관세법이 적용되나 국가별로 집행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네덜란드는 세관 통관 절차가 간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품 반입시 부가세나 통관세 없이 다른 유럽 국가로 수송이 가능하고 보세창고의 허가도 매우 신축적이다.

또한, 로테르담항은 세관망, 기업망, 공공망과 연계된 항만물류 종합 정보시스템(INTIS)을 구축하고 있으며, 터미널의 모든 정보를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EDI)을 통해 처리한다. 따라서 세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물류 대행사에서 세관사이트 접속하여 통관 처리할 수 있다.

한-EU FTA 체결 이후로, 원산지과 생산자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어 투명하고 간단한 원산지 판정(Binding Origin Information(BOI))이 이루어지고 있다. FTA 발효에 따른 변화에 맞춰 네덜란드의 통관 시스템도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어려움 없이 관세 혜택을 받는데 기여하고 있다.

정부의 투자유치기관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대외개방형 국가로 고용 창출 등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네덜란드 투자유치기관은 경제부 산하의 투자진흥청(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NFIA) 외

암스테르담의 투자유치기관인 Amsterdam in Business, 로테르담의 투자유치기관인 Rotterdam Investment Agency(RIA) 등 지역 투자유치기관이 있다.



네덜란드 진출 초기에 투자유치기관은 각 지역 및 산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투자 기업이 법무법인, 회계법인, 그리고 현지 산업별 기관 및 협회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투자 기업 주재원의 현지 정착에 필요한 정보와 행정 처리는 각 지역에 위치한 Expatcenter를 활용할 수 있다.

네덜란드 진출시 유의사항

네덜란드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노무이다. 직원의 채용부터 해고에 이르기까지 노동법에 따른 절차에 유의하지 않으면 노사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노사문화 역시 한국과 크게 다르다. 여름에 2~3주 이상 장기 휴가를 가거나 잦은 휴가 및 병가 사용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또한 사내에서 사회·심리적 업무 부담(성희롱, 인종차별, 직무스트레스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용주에게 직원의 고충을 처리하고 제도적 대응할 의무를 부과한다.

기업의 성공적인 현지화를 위해서는 한국과 네덜란드 기업문화 간 조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노사 간 대화와 이해를 전제로 하되 분쟁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실히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에 직원들의 행동강령 제정, 현지 직원 병가 시 발생 비용을 보전해 주는 병가보상보험 가입, 직장 내 사회·심리적 업무 부담 방지제도 마련 등 준비가 필요하다.

관세,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조치

네덜란드는 유럽의 물류 허브로서 EU 및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재수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도 장려하고 있다. 수입 규제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도 네덜란드는 EU 회원국으로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단독으로 제3국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취할 수 없고, EU를 통해서만 취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제3국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관세 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 조치, 수입쿼터제도 등 수입규제조치에 있어서는 EU 차원에서 결정된 조치를 이행한다. 2011.7월 발효된 한-EU FTA에 따라 EU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철폐 일정에 따라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각 상품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쌀을 제외한 나머지 9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가 5년 내 철폐된다.

한편, 네덜란드의 수입 관리는 국가별 관리와 품목별 관리로 구분된다. EU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자유화되어 있어 수입 허가가 필요 없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의 제품들은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하거나 수입이 제한되어 있다.

- 의약품
- 동물 및 동물성 제품
- 식물, 꽃, 과일 및 채소
- 사료
- 방사성 및 원자력 물질
- 환경 유해 물질
- 폐기물(Waste) 등

관세부과와 수입수량 제한과 같은 전통적인 무역장벽은 감축, 철폐되고 있지만,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관련 규제가 주요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무역기술장벽으로는 CE마크 제도, 에너지 라벨링 및 기타 환경 규제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 유해물질 관리제도(RoHS), 폐가전 처리지침(WEEE), 에너지 사용제품 환경디자인 의무규제(EuP)) 등이 있다.



통관시 유의사항

상품분류번호

모든 상품의 수출입시, 통관 서류에 상품분류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상품 분류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네덜란드에서는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분류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분류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유사한 카테고리의 제품일지라도 세분된 상품분류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관세 환급이나 수입규제 적용 유무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상품 종류에 따라 정확한 상품분류번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EU는 EU 수출입업자에게 수출입 상품의 정확한 번호를 제공하기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Binding Tariff Information; BTI)라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으므로, 물품 코드를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관세청에 BTI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서면 양식을 교부받아 신청해야 하며, 세관당국은 가장 빠른 시 일내 결과(BTI)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한 EU국가의 품목분류 사전 심사제도를 통해 교부된 물품 코드는 타 EU국가에서도 유효하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 BTI를 발행하였다면 이는 네덜란드에서도 유효하다. 네덜란드 관세청으로부터 BTI를 교부받기 원하는 개인 및 법인은 담당 세관에 신청서를 송부하면 된다. 교부받은 BTI는 6년간 유효하나, 도중에 물품코드 자체가 바뀌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다.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네덜란드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물량 제한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EU의 원산지 기준은 매우 복잡하여 품목별로 공정기준, 부가가치 기준이 병행하여 적용되고 있다.

관세 및 기타 조세

관세는 통상 상품의 실질 거래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21%)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물품세(excise tax)가 부과된다. 물품세는 네덜란드 국세청 홈페이지(www.belastingdienst.nl)에서 확인 가능하다.

EORI 번호 (Economic Operation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2010.1.31일 이후, EU 회원국에서 통관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EORI 번호를 제시해야 한다. EORI 번호는 EU 차원에서 도입한 일종의 통관 고유번호로, 특정 EU 국가에서 받은 EORI 번호는 모든 회원국에서 유효하다. 이 번호는 법인, 자연인, 자연인 혹은 법인이 모인 그룹으로 법인격을 갖지 않는 단체(예: 컨소시엄)에만 부여되며 지사에는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사의 경우에는 본사에서 취득한 EORI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네덜란드 역시 2010.1.31 도입 후 유예기간을 거쳐 2012.7.1부터 동 제도를 엄격 시행하고 있어 통관 시 EORI 번호를 제시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물품세 부과품목(알코올 성분 포함 음료, 향수, 담배류, 벤젠 등)을 수입하는 경우로 이미 물품세 품목수입 허가서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EORI 번호를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EORI 번호가 필요한 기업은 네덜란드 관세청에서 신청서(영문 혹은 네덜란드어)를 다운받아 기업 후 명기된 세관주소로 우편 송부하면 된다.

통관절차

직송 통관(Customs Clearance) 절차 흐름도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통관된 후 바이어에게 직접 배송되는 경우는 세관 신고 → 제품의 EU국 안전, 건강, 경제 및 환경 요구 조건 충족 여부 검사 → 수입 관세 납부 → 바이어로의 배송 절차를 거치며, 통관에 약 1.5일 소요된다.

물류창고 경유 절차 흐름도



물류 창고를 경유하여 통관되는 경우는 컨테이너 터미널→물류 창고로
보세 운송(T1)→창고 보관→세관 신고 및 통관→제품의 EU국 안전, 건
강, 경제 및 환경 요구 조건 충족 여부 검사→수입관세 납부→바이어로의
배송 절차를 거친다.

네덜란드는 유럽의 관문으로 세계에서 가장 손쉬운 통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통관은 모두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로
통관 절차를 수행하기 때문에 세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세관 사이트를
접속하여 창고사(대행업체)에서 직접 수행 가능하다.

접속 후 CN번호, Commercial Value, 제품명, 총량(경우에 따라 관세
특혜 대상 품목은 원산지 증명 C/O) 번호 입력) 등을 입력시키면 통관된다.

인증제도

네덜란드 인증제도

네덜란드 시장은 EU 통일 인증 마크인 CE 마크를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나,
네덜란드 자체적인 인증 마크를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KEMA-
KEUR’라는 인증으로서, 수출입 제품 등에 있어 강제 사항은 아니나, 네
덜란드 국민 94%가 인지할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 동 인증 취득을 위해
서는 비교적 까다로운 절차와 고액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1) KEMA-KEUR 인증제도

해당 인증은 네덜란드 KEMA(Keuring Elektrotechnische Materialen
Arnhem, 에너지 컨설팅 및 전기 안전 테스트 회사)가 인증하는 것으로
주로 전기제품의 ‘안전(safety)’ 상태를 검사하는 인증이다. 1924년에 국
제 규정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안전검사를 통과한 완제품 및 부분품에



인증한다.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덴마크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KEMA는 세계 20개국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EU의 CE마크 인증은 시장 진출을 위한 강제 인증이나 해당 인증은 부가적인 것이다. 그러나 수천 종의 제품이 해당 인증을 취득하였다. 해당 인증의 취득에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수천 유로에서 수만 유로가 소요되기도 하며, 인증 취득 후에는 매 1년 해당 제품 생산 공장 및 해당 제품에 대한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정기 검사에도 수천유로가 소요된다.

2) CE마킹 제도

공산품에 대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으로 27개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EFTA 국가에 수출하려면 가스기기, 저압 전기기기 등 20개 카테고리 품목에 CE마킹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하여 부착해야 한다.

3) 에코 라벨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라벨로 2013.9월말 기준 다목적 세제, 침대 매트리스 등 30개 품목군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많은 품목군에 대하여 EU 집행위와 관련 업계 단체들이 에코 라벨 기준 제정의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제정된 품목도 계속해서 기준 수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4) 에너지 라벨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 라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TV, 에어컨, 건조기, 청소기 등이다.

5) REACH-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는 EU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물질에 대해 제조수입량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받도록 하는 화학물질 관리규정이다.

EU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 물질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연간 100톤 이상의 물질과 고위험성 물질(SVHC)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며, 특정 물질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일부 물질에 대해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REACH는 ①화학물질과 ②혼합물(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그리고 ③완제품(Article)에서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화학 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농수산물 등 일부를 제외하면 EU로 수출하는 거의 모든 품목이 적용범위에 해당된다.

6) EU 유기농 인증 로고(Organic farming Logo)

EU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유기농 포장식품(Organic pre-packaged food)에는 유기농 인증 로고가 의무적으로 부착되어야 하며, EU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EU 규정의 유기농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은 선택적으로 동 로고를 부착할 수 있다. 이 로고는 2010.7월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업계가 새로운 규정에 맞도록 패키지를 바꾸는 한편, 기존 패키지를 폐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년 유예기간을 두었다. 동 로고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유기농 원료를 제품 성분의 95% 이상 사용해야 한다.

네덜란드에서 이 유기농 인증로고를 운영하는 기관은 네덜란드의 유기농 검사기관인 Skal이다. 현재 네덜란드에서 1,600개의 유기농 농장과 1,700개의 식품가공업체가 Skal로부터 로고를 획득했다.

네덜란드 조세 제도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네덜란드는 법인세율 20~25%,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 52% 등 높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수익이 20만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이른바 중소기업 세율(mkb-tarief)인 20%가, 20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캐나다, 스페인, 한국, 멕시코, 호주, 네덜란드의 경우 중간 규모 OECD국가로 분류되는데, 2012년 기준으로 네덜란드의 법인세(25%)는 중간규모 OECD 국가의 법인세 평균인 27.6%보다 낮은 수준이다.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개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과세 대상 소득은 직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기업 지분 및 주식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저축·투자로부터 발생한 소득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직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보험료도 부과되는데, 구체 세율은 아래와 같다.

■ 직업소득에 대한 세율

소득구간	세율	사회보장보험료 징수요율	총 세율
0유로-19,822유로 이하	8.35%	28.15%	36.5%
19,823유로 초과-33,589유로 이하	13.85%	28.15%	42%
33,590유로 초과-57,585유로 이하	42%	—	42%
57,586유로 초과	52%	—	52%

참고로, 네덜란드 내 모든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회보장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으나 한국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네 사회보장협약에 따라 한국의 국민연금 납부하는 경우 5년간 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보험의 혜택을 볼 수 없으므로 의료보험 가입 등에 있어 국제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부가가치세(Omzetbelasting, BTW)

부가가치세의 법률상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 실제로는 이를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자가 부담하며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공제되거나 환급받는다. 네덜란드에서는 원료에서부터 최종생산물에 이르기까지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를 통해 발생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업은 세무당국에 주기적으로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

대표 부가가치세율은 2012.10월 종전 19%에서 21%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식품, 물, 의약품, 예술품 등 일부 재화와 서비스의 경우에는 종전대로 6%의 예외적으로 낮은 부가세가 적용된다.

부동산세

부동산세에는 부동산 소유주에 부과되는 세금과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등 두 종류가 있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소유주가 동시에 사용자인 경우에는 양측에 부과되는 세금 두 가지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세는 부동산 가치(WOZ value)와 각 지방정부가 정한 부동산세 요율에 따라 다르다. 암스테르담의 경우 상업용 부동산 소유에 대한 부동산세는 부동산 가치의 0.18044%, 상업용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0.14426%이다.

체류허가

우리 국민이 취업, 학업 또는 가족 결합을 위해 네덜란드에 체류하는 경우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단기체류허가(MVV)를 받은 이후 네덜란드

입국하여 다시 정식체류허가(VVR)를 신청하거나, 단기체류허가를 받는 절차를 생략한 채 네덜란드 입국하여 바로 정식체류허가를 신청한다.

2013.6.1. 네덜란드의 새 이민법인 MoMi(Wet Modern Migratie-beleid/Modern Migration Policy Act)가 발효되면서 기존의 ‘고급인력’ 이민자(주재원 등) 관련 시스템이 변경되었다. 이 법에 따라 고급인력 이민자의 경우 이민법상의 의무와 권리를 ‘이민자 당사자’가 아닌 해당 이민자를 데려오는 측, 소위 이민자를 고용한 회사 등 ‘보증인(referent)’에게 부과한다. 즉, 이민자 당사자가 아니라 보증인이 이민자의 장기체류 취득을 위한 절차의 공식적인 주체로서, 직접 체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민청이 허가를 거부할 시 이에 대한 항의 및 재심 청구 등을 요청하는 당사자가 된다.

금융시장

주요 은행

네덜란드 금융/은행 시스템은 경쟁이 치열하고 성숙한 시장이다. 은행 부문은 총 자산이 3조 3천억 유로에 달한다. 네덜란드 금융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유니버설 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유니버설 은행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은행으로 개인 및 기업 금융은 물론 파이낸싱, 보증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 네덜란드 3대 유니버설 은행으로는 ABN-AMRO, International Nederlanden Group(ING), Rabobank Nederland가 있다.

네덜란드 회사들은 파산율이 높지 않고 금융위기에도 건실한 상태를 유지해 왔으나 신규 투자에는 다소 소극적인 편이라 네덜란드 은행들의 이들 회사에 대한 신규 대출은 그다지 많지 않다. 네덜란드 은행들은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해야 하는 Basel III를 따르기 때문에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보다는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할 수도 있다.

외환거래 및 외국인 투자

네덜란드는 외환거래와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매우 자유로운 편이다. 외국 기업은 네덜란드 기업을 100% 소유할 수도 있으며 자본금, 이익, 기술 로열티 및 수수료 등을 자유롭게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현지 자금 조달도 네덜란드 기업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소재 다국적 은행, 네덜란드 은행 등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가능하며 L/C 결제 등 각종 무역 관련 결제 서비스도 네덜란드 기업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네덜란드 거주자는 네덜란드 중앙은행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공인된 은행을 통해 무제한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5만유로 이하의 국제 송금은 별도의 양식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모든 국제 결제는 네덜란드 중앙은행 관련 부서에서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또는 외국 기업 간 외환 송금 중 5만유로가 넘는 경우는 반드시 중앙은행에 통보되어야 하며 송금시 이용 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건별 송금시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기 위해 중앙은행은 월별, 분기별 또는 연별 총괄 보고도 허용하고 있다.



독일

독일경제는 2013년 0.1%로 낮은 경제성장을 하였으나, 2014년에는 수출 증가와 내수 확대를 통해 EU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은 1.6%의 성장을 하였다. 2015년에는 1.8%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제조업과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독일경제의 특성상 EU의 경제회복 속도와 세계경제의 성장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독일은 미국, 중국, 일본에 이은 세계 제4대 경제대국이며, 무역규모 기준으로는 미국, 중국에 이어 제3대 무역대국이다. 2008년 이후 유로존 위기가 지속되면서 독일이 EU에서 차지하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2014년 GDP는 2조 9,156억 유로로 28개 EU 회원국 전체의 20.9% 비중이며 19개 유로존 국가의 28.8%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독일은 1883년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하여 무역을 시작하였고, 독일은 오랫동안 유럽내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해왔다. 2011.7.1일 한-EU FTA 발효 이후 양국간 무역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독 간 무역액은 2014년 288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 대독일 수출은 75억 달러이고 수입은 213억 달러로 137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한-독간 무역수지가 2006년 이후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매년 100억달러가 넘어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독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은 FTA 또는 무역장벽과 같은 특정 변수나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이고 구조적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경제성장이 저조하고 유로화가 큰 폭으로 절하되는 등 우리의 수출환경이 악

화되었다. 미시적 관점에서는 대독일 4대 수출품목 중 선박수출이 독일의 발주 급감하였고 무선전화기는 베트남 등으로 생산공장을 이전하여 대독일 수출통계에서 빠져나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의 경우, 현대와 기아의 유럽 현지생산이 증가하여 시장점유율 확대가 수출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반면 독일산 자동차 선호도 증가로 인해 수입은 급증하였다.

한독 무역수지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유럽경제의 회복과 이에 따른 유로화 강세 전환이라는 거시경제 환경변화와 함께, 우리 제품의 품질과 기술 경쟁력 제고라는 근본적이고 장기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들의 생산 및 경영의 세계화에 따라 무역수지를 양자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다자적 관점으로 판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

양국간 직접투자를 살펴보면, 독일의 대한투자는 2014년 59건에 2.2억 달러이며 누계기준으로는 117억 달러로 전체 외국인 투자액 2,460억 달러 중 4.9%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독일 직접투자는 2014년 58건 9천만 달러이고 2015년 6월까지 누계기준으로는 46억 달러로 전체 해외투자액 417,455백만 달러의 1.1%를 기록하고 있다. 독일의 대한투자가 자동차부품, 전기, 화학 등 제조업 공장설립과 기업 인수합병 위주인 반면에 한국의 대독일 투자는 판매법인 위주였으나, 최근에 기업 인수합병 또는 제조업 공장 설립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세계 주요 수출국인 독일은 개방형 통상정책을 지향하고 있으며, EU 및 WTO 협정을 위반하여 외국상품의 수입을 정책적으로 제한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유지해오고 있다. EU 조약에 따라 독일의 통상정책은 EU 통상정책으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독일의 수출입 제도는 EU의 통상협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원산지 규정도 EU의 원산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 독일의 수입 정책 개관

- EU 시장 내 상품과 자본의 자유 유통
 -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EU 회원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은 독일 시장에 무관세로 수입된다.
 - EU 시장 내에서는 상품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 EU 관세 규정 적용
 - 독일은 EU 시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세 규정(TARIC)을 적용하고 있다.
 - EU 시장 밖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CIF 가격 기준으로 관세를 적용한다.
 - EU 시장 내에서의 유통과정에 포함된 운송비는 CIF 가격에서 제외한다.
 - EU 시장 내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사용하여 최종 생산된 상품의 경우 CIF 가격 산정시 중간재 가격은 제외한다.
- 일반 특혜 관세(GSP) 적용
 - 독일은 특정 개발도상국 상품에 대해 EU에서 공통으로 정하는 GSP를 적용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통관절차와 관련하여 EU의 관련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이나 제도적인 관점에서 EU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통관절차상의 제한이나 장벽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독일 정부는 소비자 보호 및 환경 보호 차원에서 수입품에 대한 상품 포장 규정을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상품포장 규정은 EU 회원국과 비회원국 및 독일 기업들에게도 공통 적용된다. 예를 들면, 독일 검역당국은 2007년 이후 소독처리마크가 표시되지 않은 목재 수출포장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수출용 화물을 목재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국제기준(ISPM No. 15)에 따라 해당 목재포장재를 소독처리한 후 공인된 소독처

리마크를 반드시 표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출업체들은 동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독일의 공항, 항만 등에서 수출품이 압류 및 검역 조치를 받음으로써 해당 물품의 납기 지연, 기타 경제적 손실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독일정부는 사용 후 포장재 수거를 위해 대량의 포장재 사용 공급자에게 포장재 사용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 독일의 통관 절차

- 독일 수입업자가 통관 신고서와 Invoice를 세관에 제출하며, Invoice에는 하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판매자 및 구매자의 성명과 주소
 - Invoice 발급지 및 발급 날짜
 - 상품의 수량, 종류, 표시
 - 포장 일련번호
 - 상품 내역 설명
 - 상품의 수량
 - Invoice 가격
 - 수송 및 지불 조건
- 통관절차(운송포함)는 통상 4~5일(해상운송 화물의 경우 약 40~45일)이 소요된다.

※ 독일의 상품 포장 규정

- 독일 정부는 2007.11월 기존의 포장규정을 개정, 2009.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상품 정보 제공 및 사용 후 포장재 수거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 독일 정부는 2010년부터 모든 포장재에 사용되는 단위를 미터식(미터, 리터, 킬로그램 등)으로 통일하여 표시토록 하고 있다.
- 또한, 독일 정부는 사용 후 포장재 수거를 위해, 대량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상품 공급자로 하여금 매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포장재 사용 신고서(statement of completeness and accuracy)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상품의 포장재별 수량
 - 독일내 인가된 수거 및 처분 절차에 따른 포장재 처리 방법
- 상기 신고 대상인 포장재 수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
 - 8만 kg 이상의 유리 포장재
 - 5만 kg 이상의 종이 포장재
 - 3만 kg 이상의 기타 재질 포장재



수입 규제

독일은 EU의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 가드 등)를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 관련 장벽

독일시장에 공산품, 식품, 의약품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들이 독일에서 필요한 검사 및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독일의 각종 검사 및 인증 제도는 특별하게 외국상품을 차별하거나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할 수 없으며, 우리기업들이 사전에 관련 제도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제출하는 등 효과적 대응을 통해 독일, EU 및 세계시장에서 상품에 대한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공산품

수출상품에 VDE 또는 GS 표시를 부착하는 경우 해당 공산품에 대한 독일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종래 전기부품 등의 안전성에 대하여 사업자단체인 독일전기협회(VDE)에서 부여하여 오던 VDE 표시나 일반 생활용품의 안전성검사를 필요였음을 확인하는 GS 표시 등 독일 특유의 인증제도는 EU의 제품규격기준 및 국제적인 인증기준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가공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장비 등을 독일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EU 및 독일 정부가 정한 기준을 통과하여야 하며, 특히 「독일 연방 직업 안전 및 보건연구소」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

독일에 식품 및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독일 관련 당국의 검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독일 연방정부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책 수립 및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한다. 개별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는 각 주정부 소관이며, 특정 물품이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선 행정기관(Handelschemiker)의 사실판단 사항에 속한다. 따라서 독일에 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차적 감독권한을 가진 각 주정부 및 해당 상공회의소를 접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편, 독일에 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CE 인증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독일 바이어의 의료 기기 구매는 비용보상정책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사용 의료 기기가 보험으로부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보조기구 리스트(Hilfsmittelverzeichnis)에 등재된 제품이어야 한다. 따라서 독일 의료 기기 시장의 효과적인 진입을 위해서는 해당 의료 기기가 보험 처리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

※ 독일의 표준 및 인증제도

☐ DIN

- 독일 표준연구원(DIN)에서 개발된 표준이 독일 내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으나, 법적으로 강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DIN은 유럽표준위원회(CEN), 국제표준기구(ISO)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DIN EN 기준, DIN ISO 기준 등을 제정함으로써 CEN 및 ISO 기준을 독일 내에 도입하고 있다.

☐ CE

- 독일 시장에 수입되는 상품에 CE(유럽표준) 마크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동 상표의 고장 등을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수입업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 Blue Angel

- 독일 품질보증 및 증명 연구소는 친환경 상품에 대해 Blue Angel 마크를 부여할 수 있으며, 동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독일내에서 친환경 상품으로 공인된다.

- 안전성 표준
 - 독일내 제품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마크로 GS(일반상품), VDE logo(전기 및 전자제품) 등이 있으며, 동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독일내 시장 판매에 유리하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독일내 소매업자들은 제품 생산 기업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거부하는 관행이 있다.

환경 관련 규제

독일은 EU의 환경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내외국인 기업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EU Directive인 RoHS(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와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2005.3월 「전기 및 전자장비법」을 제정하고, 전기 및 전자제품 생산업체에 폐기된 제품에 대한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전기 및 전자제품의 회수는 연방 환경청에서 관련 업무를 주관하며, 연방 환경청은 EAR(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Register) 재단에 회수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독일 내 전기 및 전자제품 공급 및 수입업자는 EAR에 제품을 등록해야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품목별 장벽

우리 기업의 독일시장 주요 수출품목 및 유망품목(자동차, 전자제품 등)에 대한 특별한 무역장벽은 없다.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EU 시장 전체에 공통 적용되는 품목 분류기준에 따라 공동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 정책

농업 등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독일 정부의 각종 수입제한 조치와 보조금 정책은 모두 EU 기준과 부합하며, 그 밖에 환경 관련 규제나 각종 표준·검사 및 인증제도도 사실상 모두 EU 기준으로 대체되었다.

독일 정부는 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신차 구입 보조금 제도를 도입·시행한 바 있으나 동 보조금은 독일 자동차 업체 뿐 아니라 외국 자동차 업체들에게도 비차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독일의 정부조달시장은 외국기업의 입찰참가 및 낙찰을 제한하는 차별이 없고, WTO 정부조달규정 및 EU 기준이 준수되고 있다. 독일정부는 2006. 11월에 정부조달규정(VO: Vergabeverordnung)을 개정하여 EU 역내 조달지침(Directives: Richtlinie)의 국내이행 절차를 완료하였다. 정부조달규정(VO)은 상품조달규정(VOL), 서비스조달규정(VOF) 및 건설서비스조달규정(VOB)으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다.

독일의 정부조달 시장규모는 총 30,000여 공공기관에서 연간 1백만건의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계약 규모는 약 3,500억 유로에 달하고 있다. 독일의 정부조달 입찰공고는 EU지침에 의하여 EU 전자조달시스템에 영문으로 게시되고 있고 독일 내 관보(Bundesausschreibungsblatt, Staatsanzeiger) 및 각종 일간지 및 전문지(Fach-und Tageszeitungen)에 발주내용이 공시된다.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제97조에서는 조달계약 기본원칙의 하나로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Berücksichtigung mittelstaendischer Interessen)’를 명시적으로 규



정하고 있다. 낙찰자 결정시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등 구체적인 우대조항은 없으나, 입찰 공고시 계약대상 및 낙찰기준 등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대기업에게 유리한 입찰공고가 되는 경우(예컨대 'Funktionalausschreibung'의 경우)에는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정부조달시장을 직접 개척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독일어 구사능력이 필수적이고 발주처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주정부에서 발주하는 조달계약의 경우에는 언어와 복잡한 절차와 양식 등을 고려할 때,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독일내 기존 기업과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독일에서 지식재산권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및 유럽특허협약(EPA) 등 국제적인 규범의 범위 내에서 보호되고 있다. 독일은 관련 국내법에 따라 내국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 실용신안, 의장, 저작권, 상표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독일 내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독일 변리사나 변호사를 통해 특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최근 중국 등 제3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독일기업 및 국민경제의 피해규모가 크다는 독일 내 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독일당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 개최되는 각종 박람회에 전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주의할 것을 기우임으로써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 및 전시일정 차질이 초래되지 않도록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중국기업들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독일 세관 및 법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6월부터 프랑크푸르트 무역관내에 IP-Desk가 설치되어 우리 기업들의 독일 및 유럽시장 진출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독일의 서비스시장은 세계무역기구(WTO) 및 EU 기준에 의하여 대부분 개방되어 있다. 다만, 영화산업의 경우는 대다수 EU국가들과 마찬가지로 WTO에 개방양허가 되지 않았고 최혜국대우(MFN) 적용도 배제되고 있다. 영화의 제작과 보급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독일의 영화산업에 대한 보조금 규모는 연간 2억유로 수준에 이르나 프랑스(8억 유로)나 영국(2억 7천만유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다.

독일 시장 내 문화 콘텐츠 분야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비디오 및 온라인 게임 분야의 경우 USK(Unterhaltungssoftware Selbstkontrolle: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의 자체검열기구)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영화, 비디오, DVD 분야의 경우 FSK(Freiwillige Selbstkontrolle der Filmwirtschaft, 영화산업의 자발적인 자체 규제) 인증이 필요하다. USK는 독일 국민에게 공개되는 모든 컴퓨터·비디오 게임 연령제한 및 컴퓨터게임 트레일러 관련 검열 후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FSK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영화를 위시하여 DVD, Blu-ray와 VHS과 같은 디지털 및 아날로그 비디오를 평가하고 연령별 제한을 할당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장벽

독일은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주식회사(AG)와 유한회사(GmbH)로 등록한 외국인 소유회사는 독일인 소유회사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 이사회 주주에 대한 국적 제한이 없고 투자금액을 신고하는 제도도 없으며, 과실을 송금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대한 제한도 없다.



투자절차상의 제한

외국인투자만을 전담하는 허가·감독기관은 없으며, 외국인 투자자도 내국인의 기업 설립 절차와 동일하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업무역사무소(Gewerbeamt) 또는 법원(Amtsgericht)에 등록함으로써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독일기업 또는 동 지분의 인수 시에 시장점유율이 전체의 50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독과점 위반 여부에 대해 당국(Bundeskartellamt)에 사전 승인을 요청해야 하고, 보험업·은행업·전당포업·경매업·도박장 운영·부동산중개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감독관청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투자진출 제한 분야

독일의 대외경제법은 국가안보, 외교정책, 외환관리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외국인의 투자가 제한된 사례는 없다. 다만, 독일정부는 2007.8월 현행 대외경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군수 무기, 특정전략물자나 암호생산 관련 기업들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는 정부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화학, 반도체, 통신, 에너지 등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도 독일정부의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EU 및 EFTA 지역 이외의 외국투자자가 독일 기업을 매수하거나 지분의 25%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정부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동 조사 결과 해당 외국인투자가 공공의 안전과 질서(public security and order)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는 동 거래를 무효화할 수 있다. 독일정부의 조사는 매입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시되어야 하고 조사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외국투자자는 상기 기업매수 및 지분 매입 등 투자내용에 대해 독일정부에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전에 해당 투자가 독일정부에 의해 거부될 수 있는지를 문의할 수 있으며 독일정부는 이에 대해 1개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 독일내 기업 설립 절차

□ 기업 등록 절차

- EU 회원국 국민이 아닌 경우 기업활동을 허가하는 특별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 독일 내에서 항구적 사업체를 설립할 경우 상업 무역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단독 또는 합작 기업은 지방 법원 상업 등기소에 등기(기업공개)하여야 한다. 유한 책임회사 및 주식회사도 등기할 의무가 있다.
- 기업은 직종별로 관련 직장 협회(조합)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관련 협회는 회원사의 사업 활동을 규제 및 감독할 권한이 부여된다.
 - *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은 일반 기업에 적용되는 상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관련 협회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독일내 설립된 기업은 지방 세무당국에 등록하여 조세 ID소속세 관련을 발급 받아야 한다.
- 기업이 현지 직원을 채용할 경우 지방 고용청에 등록하여, 사업자 번호(현지 고용인 사회보장 관련)를 발급 받아야 한다.
- 기업은 직장 사고보험 협회에 등록하여야 직장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상업 무역사무소 등록 절차

- 상업 무역사무소에 등록된 기업정보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지만, 관계기관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동 기관에 제공된다.
- 상업 무역사무소는 기업등록 수수료를 사업 종류별로 10~60유로 부과한다.
- 상업 무역사무소 등록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등록 신청서
 - ID 카드 또는 여권
 - 기술증명서(기술직종의 경우)
 - 상업 등기부 등본
 - 상용 비자
- 상업 무역사무소는 신청 접수후 수일내 관할 지방 상업 무역사무소에 기업을 등록하고 사업 허가증을 발급한다.

□ 법원 상업등기부 등기 절차

- 연간 매출액 25만유로 이상이고, 연간 수익 2만5천유로 이상인 기업과 유한 책임 회사, 주식회사는 법원 상업 등기부에 아래내용을 공증 받아서 등기하여야 하며, 동 등기내용은 일반에 공개된다.
 - 회사명 및 주소
 - 회사 설립 목적
 - 법인 형태
 - 소유권 및 주주
 - 법적 대표
 - 지분 및 연간 재정보고
 - 부도 절차(부도회사인 경우)

- 상기 등기자격을 갖춘 기업이 등기하지 않을 경우 상업 무역청 또는 세무당국이 법원에 제보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상기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선택적으로 등기할 수 있으나, 일단 등기를 한 경우 일반 민법이 아닌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법적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
- 직장협회 등록 절차
- 기업은 직종별로 관련 직장협회(조합)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직장협회는 회원들에게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규정을 제정 및 시행하고, 협회 가입 요건 및 시험 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또한, 협회는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고, 회원의 창업지원, 회원이 관련된 분쟁해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직장협회는 연방 또는 지방단위로 조직되며, 대표적인 직장협회로는 기능인협회, 상공회의소, 전문직 종사자 협회, 농업인 협회 등이 있다. 특정 기업은 사업성격에 따라 둘 이상의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 직장 사고보험 협회 등록 절차
- 자영업자가 아닌 일반 기업의 경우 직장 사고보험 협회에 등록하여야 피고용인의 직장 사고와 관련된 보험(의료, 재활, 사고예방, 연금, 보상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협회에 가입한 기업은 피고용인이 3일 이상의 병가를 요하는 사고를 당한 경우 협회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 직장 사고보험 협회에서 보장하는 보험의 범위는 직종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기업이 지방 상업무역 사무소에 등록시 동 사무소가 관련 직장 사고보험 협회에 등록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기업과 접촉토록 주선한다.
- 고용청 등록 절차
- 현지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은 지방 고용청에 등록하여 사업자 번호를 받아야 한다.
 - 사업자 번호는 피고용인의 사회보장, 의료보험, 직장 사고보험, 고용 허가 등을 받는 데 필요하다.
 - 등록 신청은 우편, 팩스, 이메일, 전화 등으로 가능하다.
 - 지방 고용청은 독일 고용시장 정보, 재취업 정보 등을 제공하며, 지방 고용청 산하 중앙 직업소개사무소(EAV)는 독일인 취업 희망자를 외국 기업에 소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연금보험료 납부의무 면제

2003.1월 「한·독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독일에서 근무하게 되는 상사주재원이 한국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일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과 독일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은 대한민국의 국민연금법 및 독일의 공

적연금보험법에 대해 적용된다(독일의 철강근로자보충보험법 및 농민노령보장법은 최종 합의시 제외되었음).

독일에서 근무하는 상사주재원이 납부하는 사회보장비용(Sozialabgaben)은 2013년 기준 다음과 같으며, 이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반반씩 부담한다.

- ① 의료보험료(Krankenversicherung, 총소득의 15.5% 수준),
- ② 연금보험료(Rentenversicherung, 총소득의 18.9% 수준),
- ③ 노후간병보험료(Pflegeversicherung, 총소득의 2.05% 수준),
- ④ 실업보험료(Arbeitslosenversicherung, 총소득의 3% 수준)

한·독 사회보장협정」이 적용되어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위 4가지 사회보장비용 가운데 연금 보험료에 한한다.

경쟁정책

독일은 EU 기업과 비 EU 기업 간에 EU 관련 협정 범위 내에서 일정한 차별(예: 비자발급, 조세 ID 발급 등 관련)을 두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내외국 기업 모두에게 동일한 경쟁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독일 대외경제법상 국가 안보 등의 사유로 인한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은 있으나, 유통분야를 포함 모든 산업분야에서 내·외국인간 동일한 경쟁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독일 정부는 반독점 관련 규정을 내·외국인 기업에 모두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기업이 독일 기업을 인수하여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독과점 위반 여부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기업이 보험, 은행, 전당포, 경매, 도박, 부동산 중개 등의 사업을 하려면 사전 투자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 독일 내 Marketing 관련 제도

□ 판매망

- 독일내 물품을 공급하는 외국인 공급자에게 판매망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주로 제품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판매망이 활용된다.
- 대부분의 제조업 상품은 판매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되며, 중개업자는 판매 margin 또는 commission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
- 외국 기업이 독일 시장에서 체계적인 판매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락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을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는 시장 조사나 마케팅 활동에 국한되므로, 차후 법인 설립을 위한 사전 단계로 봐야 한다.

□ 무역 및 상품 전시회

- 세계 주요 무역 및 상품전시회의 2/3가 독일 내에서 개최되며, 동 전시회는 내외국인 기업이 모두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는 국제행사로 개최된다.
- 무역 및 상품 전시회 관련 정보는 독일 무역박람회산업협회(AUMA) 웹사이트에 공개되므로, 내외국인 기업이 차별 없이 공유할 수 있다.
- 현재 국내에 있는 한독상공회의소에서 독일내 전시회 참여를 지원하며,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한 프랑크푸르트 메세와 라인메세를 통해 관할 전시회 참여신청이 가능하다.

□ B2B 시장

- 독일내 등록된 내외국인 기업에 관한 정보는 e-trade-center를 통해 제공되며, 이 외에도 독일내 산업별 기업정보 DB가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다.

기타 장벽

독일 내 상거래 규정 및 관행

독일 정부는 독일 내 국제 상거래 활동 관련 독일 국내법인 민법, 상법 등의 관련 규정을 내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동 규정들은 「국제 상품판매 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계약의무법에 관한 유럽 협정」 등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이다.

※ 독일내 상업 활동 관련 규정 및 제도

□ 국제 계약

- 독일내 국제계약과 관련된 관할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독일 민법 27조 규정이 적용되는바, 동 규정은 「계약의무법에 관한 유럽 협정」의 관련 규정을 독일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이다.
 - 상기 규정에 따르면, 국제 계약 당사자는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국가의 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채무자의 거주국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
 - 소비자의 권리가 관련된 사안인 경우 소비자 거주국 법률이 적용된다.
 - 또한, 판매계약의 경우 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국제 상품 판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이 적용될 수 있다.

□ 계약의 종류

- 기본 독일 민법은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노동, 임대 계약 등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 기본 규정은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을 보완한다.
 -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은 모든 계약에 강제 적용되며, 권리 포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 계약의 형식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작성 가능하며 특별한 양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다만, 부동산 판매 계약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
- 계약은 제안자의 제안이 수락되었을 때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며, 새로운 조건이 부가된 수락은 원래의 제안에 대한 거절로 간주된다.

□ 국제 판매 계약

- 독일은 「국제 상품판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 당사국으로서 동 협약을 국내법(민법의 일부)으로 수용하였다.
 - 독일내 국제 상품판매 계약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CISG 규정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 독일 상공회의소는 관할지역내 국제 판매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독일 법원은 상사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권을 갖고 있다.
- 정식 계약체결 전에 작성되는 의향서 또는 양해각서가 계약 체결 의무를 유발하는지 여부는 동 의향서 또는 양해각서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 따라서 의향서 또는 양해각서 작성시 당사자의 계약 체결 의무와 관련된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증 조건

- 결함이 있는 제품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는 결함 보정, 대체품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결함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매계약을 취소시키거나, 구매가격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 소비자 보호

- 독일 민법은 판매 계약과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 제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 판매계약 조건을 명문화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2주간의 구매계약(대출 계약 포함) 철회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판매 후 6개월내 숨겨진 결함이 발견될 경우 동 결함에 대한 소비자의 무과실 입증 책임이 면제된다.

□ 상법

- 독일 상법은 연간 매출액 25만유로 이상이고 연간 수익 2만5천유로 이상인 기업에 적용된다.
- 기업은 소유권, 법적대표, 재정상태 등을 공개하여 법원에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 내용은 인터넷으로 공개된다.
- 독일 상법은 계약상 특별한 합의가 없을 경우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Incoterms (국제 상품 수송 비용부담 및 소유권 이전 관련 상거래 관행)를 존중한다.

장기체류비자 발급 간소화

독일 내 상용 비자 및 운전면허 취득 등 관련, EU 국민과 비 EU 국민 간 EU 협정에 따른 구분이 있으나, 독일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특별히 불리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2004.12월 「한·독 간 입국 및 체류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우리나라 국민들은 독일에서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및 EU회원국과 같은 수준의 편의를 제공받게 되었다.

상사주재원의 체류허가(노동허가 포함) 취득절차가 이원화되어 1) 출국 전 주한독일대사관에 신청하는 절차와 2) 입국 즉시 외국인관청에 신고하고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외국인관청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는 절차가 있다. 주한독일대사관에 신청 시에는 통상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독일은 자국 내 실업자 감소에 주안을 두고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체류 허가 발급을 상당히 경직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IT나 의료 등 일부 업계 고학력 인력 부족현상이 대두됨에 따라 블루카드(Blue Card)를 도입하는 등 체류허가 제도를 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2012.8.1일 이후 독일 대학을 졸업하거나 유사한 외국 학위를 취득하고, 연봉 44,800유로 이상인 근로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외국인은 블루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전문인력부족 분야’에서는 연봉 하한선이 34,944유로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노동부에서 노동 조건 및 연봉이 적당한지 심사를 한다.

독일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은 기존의 12개월보다 늘어난 18개월간 구직 활동을 위한 체류허가가 주어지고, 외국 유학생들은 연 최대 120일(기존 90일) 노동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법에 따르면 독일 대학 졸업자는 2년간 취업생활을 하면서 국가연금보험료 납부를 하면 무기한 체류허가(Unbefristete Niederlassungserlaubnis)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12.8.1일 이후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블루카드를 취득하여 33개월 취업생활을 한 자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B1(중급) 수준의 독일어 능력이 있고 독일 법 및 사회 지식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2009.4월 한·독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체결되어, 18~30세의 한국인은 독일에서 1년간 유효한 취업 관광 복수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취업 관광 복수사증은 주한독일대사관에 신청하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발급되며 동 사증을 발급 받을 경우 독일에서 1년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한편, 2013.6.15일부터 독일의 고용법시행령 제26조가 개정·발효되어 우리나라가 선진국 우대조항에 포함됨으로써, 독일주재 상사 주재원들의 체류·노동허가에 대한 심사요건이 완화되고, 독일에 신규 취업을 원하는 비전문인력에 대해서도 독일내 노동사무소의 심사가 완화되었다.

※ 상용비자 발급 절차

- 상용비자 발급은 외국소재 독일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독일에 이미 체류중인 경우 외국인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상용비자 발급 기준으로 독일 경제에 대한 기여 가능성을 중요시하며, 50만유로 이상 투자하거나 5명 이상의 현지 고용인을 채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외국인 투자자는 자산 또는 신용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45세 이상인 경우 연금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 사업계획서, 자금증빙서류, 이력서, 자격증, 외국어 능력 증명서, 기업 등기부, 사업계약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용비자의 유효 기간은 1년이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3년 연속 비자 갱신을 받을 경우 영주허가를 받을 수 있다.

수출통제제도

독일제품의 수입·가공 및 독일제품의 제3국 중개수출 등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우리기업들은 독일의 수출통제제도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독일은 MTCR, Ausralia Group, NSG, Wassernaar Arrangement 등 4개의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무기제조 등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품목의 수출통제에 관한 바세나르협약이다. 수출통제대상인 이중용도품목은 매우 다양하고 수시로 추가되고 있으므로 독일 상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사전에 수출통제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수출승인에 1달 내외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독일에서 무기 등 방산물자 생산에 소요되는 부품과 장비를 수입할 경우, 우리나라가 최종 사용자이고 기존에 허가를 받았던 품목인 경우에는 수출통제청(BAFA)에서 상대적으로 승인을 쉽게 내주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품목이거나 규모가 클 경우에는 수출통제청(BAFA)를 통해서 경제 에너지부에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거부될 가능성도 있다.

독일산 부품을 수입해서 생산하는 방산물자를 제3국에 수출할 경우, 정치외교적으로 민감한 중동지역 등이 최종 사용자인 경우에는, 총리가 주재하와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 3개월에서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하고 승인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수출승인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독일 수출기업이고 승인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로 취급하기 때문에, 수입하는 우리기업은 수출통제청으로부터 승인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방산물자나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독일 연방정부의 수출승인 여부 및 승인기간 지연에 대한 책임을 독일 수출기업이 지도록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수출통제제도 관련 주요 현황은 매월 업데이트되고 있는 연방경제에너지부 산하 수출통제청(BaFa) 홈페이지를 참고: (http://www.ausfuhrkontrolle.info/bafa/en/export_control/nl_export_control/index.html)

금융기관의 진출에 대한 장벽

독일 금융시장 현황

독일 은행산업 및 보험시장은 총자산 규모 대비 영국과 함께 유럽내 최대 규모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Deutsche Boerse)는 상장 기업 수 약 1,000여개, 시가 총액 약 1조6천억유로 규모로 런던증권거래소(LSE)와 함께 유럽 최대 규모이다. 특히, 동 거래소는 시카고 거래소와 함께 세계최대 규모인 주요 파생상품거래소인 Eurex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금융시장은 건조한 실물경제 및 우수한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은행업의 수익성이 낮고 금융 관련 규정이 신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런던 금융시장에 비해 경쟁력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 자산운용 시장 규모는 약 1조 7천억 유로로서 6,000개 이상의 펀드가 운용되고 있으나 세계자산운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독일 은행은 소규모·고밀도의 지점망을 가지고 있으며 공영은행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편이다. 독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주주로 되어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민간은행의 인수합병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상업은행이 투자은행 업무도 겸업할 수 있는 유니버설 बैं킹 시스템(universal banking system)을 취하고 있으며, 부동산 리츠(REITs) 운용대상 자산에서 주거용 건물을 제외하고 헤지펀드에 대해 엄격한 등록절차를 요구하는 등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은 지난 2010년 유럽 금융시장 불안 대응 과정에서 2010.5월 공매도 금지조치도 유럽국가 중 우선적으로 취한 바 있다.

금융기관의 진출과 관련된 장벽

독일에 진출한 주요 외국계은행으로는 Bank of America, Citybank, Chase Bank, ABN ANRO Bank 등이 있으며, 아시아계로는 우리나라 외환은행, 신한은행 등 2개 현지법인 외에, 일본 8개, 중국 4개, 인도 2개가 진출해 있다. 독일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절차 및 규제 외에 외국금융기관의 진출 및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특별한 장벽은 없다.

불가리아

시장규모 및 특성

불가리아는 과거 소련위성국에서 탈피하여 2004년 NATO에 가입하였고 마침내 2007년 EU에 가입 하는 등 최근 경제 개혁, 민주화, 부정부패 일소 및 시장 개방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불가리아는 전통적인 교역 상대국인 러시아 및 동구권 국가와의 교역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서유럽 및 인근 터키, 그리스 등과의 교역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불가리아는 인구 720만 명에 1인당 국민소득이 7,700달러에 불과한 작은 시장이지만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추진된 경제개혁 및 안정화 정책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여 발칸지역에서 가장 안정된 국가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가 적고 소득 수준이 여전히 낮아 소비자나 기업들의 구매력이 취약하고 가격에 매우 민감한 편이다. 이에 따라 주문량이 한국기업들이 기대하는 정도의 최소 주문량에 못 미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고 지하경제 규모가 공식경제 규모의 36%로 매우 높은 편이며 따라서 현금 거래, 소량구매 등 여러 가지 탈세 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불가리아는 소득계층이 대다수의 저소득층과 일부 신흥 고소득층으로 양분화 되어 있어 저소득층을 겨냥한 저가품 시장은 중국·불가리아·터키 등 개도국산이, 고소득층을 겨냥한 고가품 시장은 이탈리아·독일·오스트리아 등 서유럽 선진국산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여지가 쉽지 않으며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판매가능 품목을 선정하기에 애로가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제품은 비교적 이미지가 좋게 형성되어 있으나 중국산의 저가 품공세가 지속되고 있어 가격 경쟁에서 열세에 처해 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가격 경쟁은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나친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브랜드 이미지의 제고가 요구되며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현지 수입상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對불가리아 수출 시 유의사항

불가리아는 시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지사나 사무소 대신 현지인을 에이전트로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한국과의 거리, 언어 및 문화장벽, 시장규모를 감안해야 하며, 에이전트와 계약 시 동 파트너의 재정 능력, 신용도, 현지인맥 활용 가능성 등 제반 사항을 꼼꼼히 사전 체크해야 한다. 또한, 직접 현지시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시장상황 및 동 파트너의 능력, 영업 실적 등을 체크해야 한다.

품목별로 다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불가리아 시장규모가 협소하여 컨테이너 단위 물량의 한국으로부터의 직접 수입이 어려우므로 암스테르담, 부다페스트 등 인근 국가 물류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서유럽 에이전트 또는 직접 웨어하우스 운영 등의 방식으로 소량씩 신속하게 공급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리아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3분의 1정도로 크며, 수입 시 일부 바이어의 경우 관세 절감을 위해 다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불가리아 레바화 환율은 유로화에 고정(1유로 = 1.95583)되어 불가리아 바이어들은 환위험 회피를 위해 유로화 거래를 선호하므로 결제통화는 달러화보다 유로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리아가 2007년 EU에 가입함에 따라 EU의 규정 및 품질인증 제도에 적합한 제품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인 판매보다

는 공동 발전 파트너로 인식하는 자세를 갖고 카탈로그, 소형 견본 제품 등의 제작을 통해 불가리아 수입상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불가리아에는 투자자금 부족으로 설비투자 및 기술 지원 등 우리나라 기업과의 합작 희망 업체가 상당히 많은 바 이들과의 합작투자를 적극 검토할 필요도 있다. 이 경우 현지업체는 공장건물이나 부지 제공, 한국업체는 설비 또는 기술 제공 등으로 설비 수출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가격제시 시 FOB Korea Port가 아닌 C&F Varna, 혹은 CIF Varna 조건으로 제시하여 수입 업체의 수입가격 산출이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인도 조건은 현지 Varna 도착 기간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한국에서 선적하는 경우 항해 일수를 계산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최근 Varna 항구 이외에도 비슷한 거리에 위치한 불가리아내 Burgas 항구(최근 고속도로 완공), 그리스 Thessaloniki 항구도 이용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환경

1989년부터 지속되어온 입법개혁조치에 의해 불가리아의 해외투자자에 대한 법 및 제도적 환경은 그 자체로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나 동 법 및 제도를 실제 적용 및 운용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량 및 의지가 아직 미약하다고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지난 수년간 외국인 투자자와 불가리아 현지 기업인과의 차별을 없애는 조치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불가리아에 거주하는 기업에 동등한 법적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의무에 기인하고 있다.

해외투자의 규모에 따른 제한

불가리아에 대한 해외 직·간접 투자 및 불가리아 기업에 대한 해외 주



식투자에 있어 투자 규모에 따른 제한 및 차별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

불가리아 법은 외국인의 불가리아 부동산 취득권과 부동산에 딸려있는 건물에 대한 취득권과 건축권을 구별하고 있다. 우선 비 EU 회원국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이 불가하며, 불가리아국적이 아닌 EU 회원국 투자자는 제2 주거지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모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부동산에 딸려있는 건축물의 소유나 신규 건축권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며, 아울러 모기지 계약이나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에 있어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나 제한이 없다. 또한 외국인이나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회사는 농지 구매가 불가하나 현지 법인이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농지를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현지 법인을 인수함으로써 농지를 확보할 수도 있다.

라이선스, 허가권 및 기타 행정적 조치

원칙적으로 현지 불가리아 기업인과는 차별적으로 해외 투자자에 대해 요구되는 라이선스나 허가권과 관련된 행정적 규제는 없다. 불가리아 정부는 라이선스나 허가권과 관련한 행정규제를 가급적 철폐하려는 입장이나 아직까지 에너지, 무기, 비철금속의 거래, 은행 및 보험업 등에 있어 라이선스나 허가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불가리아 기업인과 해외투자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조달 참여

해외 투자자는 불가리아 지역에서 모든 정부조달 입찰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해외투자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원조달충족여부, 몇몇 특

수 정부조달분야에 있어 투자자에게 요구되는 특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하는 기술적인 사전 검토가 있을 수 있다.

조세

불가리아정부는 개인 및 기업에 관계없이 불가리아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 10% 일률과세를 하고 있으며 20%의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

해외투자자가 불가리아에서 금융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외에 송금하는데 있어 제한이 없다. 다만, 해외투자자의 배당수익금 또는 청산금에 있어 적절한 과세납부 절차 이전까지 해외송금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회사 등록

요구되는 모든 서류가 완비되었을 경우 불가리아에서 해외 신규 투자자가 회사설립신고를 하는데 약 3~5일이 소요된다. 유한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 필요자본금은 2레바(약 1유로)이고, 합작 주식회사의 경우는 50,000레바(약 25,000유로)이다.

對불가리아 투자 시 유의사항

불가리아에 투자를 검토 시 우선 EU 회원국이며,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CEFTA), 터키, 이스라엘,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몰도바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이들 인접 유럽 및 흑해연안 국가들과 관세부과 없이 상품 이동이 가능하며, 중동과 유럽을 연결하는 유리한 지정학적 조건이



있다는 장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지 국내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진출하기 보다는 유럽 전체 시장을 겨냥한 진출이 바람직하다.

다만, 불가리아의 전반적인 인프라가 열악하고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투자 시 입지선정을 신중하게 해야 하며,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신용거래 및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가리아는 EU 가입으로 인해 변화의 과도기적 단계에 있으며 규정의 빈번한 변경 및 사회주의 시대에 사용되었던 복잡한 규정이 아직 잔존하여 복잡하므로, 투자 시 법률, 회계 등 전문 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원료, 장비 등 반입 시 CE마크 등 현지 산업 규제 정보에 대해 면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현지기업과 합작 투자 시에는 합작투자 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을 통한 문제해결에는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전에 가능한 현지 유력한 법률 사무소로부터 법적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불가리아가 EU에 가입함에 따라 앞으로 강화예정인 환경 기준, 품질 기준 등에 유의하여야 하며, 원산지규정 및 세관정책의 강화, 노동비용의 상승 등 우리 기업에게 불리한 측면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도 있다.

현지 도로, 철도 등 인프라가 상당히 취약한 편이며 전기를 제외한 에너지의 경우 이용하기가 쉽지 않고, 전기 에너지의 경우 전반적으로 풍부한 편이나 보다 저렴한 대체 에너지인 가스의 이용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상수도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고, 용수공급을 자체 개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전반적인 유틸리티 이용 가능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현지에서 발표하는 임금수준은 상당히 낮은 상황이나 외국기업의 경우 현지 평균임금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불해야 하므로 단순한 현지 평균임금 수치에 의존하지 말고, 해당 사업 분야의 외국업체 임금 수준을 조사하여 참고로 하여야 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불가리아는 WTO 정부조달위원회의 옵저버국으로서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비서명국이였으나, 2007.1월 유럽연합(EU) 가입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EU 회원국으로서 GPA의 대상국이 되었다. 불가리아 정부는 WTO와 EU 기준에 합치시키기 위해 2004년 자국의 조달관련 법령을 개선한 바 있으나, 아직도 조달사업 입찰자들은 조달 절차가 불투명하며, 부패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소송절차 또한 길고 복잡함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불가리아는 2007.1.1일 유럽연합(EU) 가입과 동시에 유럽 특허청(Europe Patent Office)의 멤버가 되었으며 불가리아의 지식재산권, 특허권, 저작권 등에 관한 법률 들은 대부분 유럽연합(EU) 규정들과 일치되어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은 크게 상표, 산업디자인, 특허, 유용 모델, 제약, 저작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불가리아에서 등록상표는 10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무기한으로 갱신할 수 있다. 등록상표 폐지는 다음의 경우에 가능하다.

- 상표 및 지리학적 지표 법률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3자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을 침해한 경우
- 불가리아 내에서 5년간 계속하여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06.8.20일 상표 및 지리학적 지표에 대한 법률 개정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특허청은 상표등록과 관련한 모든 신청서와 등록된 상표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산업디자인 등록절차는 공식 및 실제 조사를 포함하여 12개월이 소요된다. 등록된 디자인은 신청일자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부터는 5년마다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다.

특허권 취득을 위한 요구사항은 신상품(World novelty), 발명 단계, 산업 적용성이며 특허권은 신청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다.

저작권은 등록 및 정식 절차가 없이도 인정되며, 권한은 저작권자의 생존 및 사망 후 70년간 유효하다.

불가리아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리아에는 불법 음반 및 CD, 유명 브랜드 위조품 등이 널리 유통되고 있고, 최근 불가리아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및 불법 복제품 근절을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있다.

서비스 장벽

불가리아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법’은 공중파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predominant portion’)을 유럽 내에서 도입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불가리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쿼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불가리아에 방영코자하는 외국 방송사는 불가리아 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텔레비전 프로그램 공급자와 바터(barter)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기타 장벽

불가리아 기업의 탈세 및 국영기업의 불안정한 경영행태가 외국인 투자가들에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불가리아 인허가 제도의 복잡성과 관련 규정의 임의적 해석 및 법 집행, 공무원의 부패 등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스웨덴

스웨덴은 EU 회원국으로서(1995년 가입) EU 공동통상정책을 준수하며, 통상정책은 기본적으로 EU가 제정한 관련 지침과 이를 반영한 관련 국내 법규 및 정책에 의거한다.

시장 특성

시장규모 및 특성

982만 명의 인구를 가진 스웨덴은 북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다른 외국 시장에 비해 협소한 관계로 기업 창업시 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기술경쟁력을 구축하는 등 수출 의존형 산업구조가 발달하여 대기업 위주의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산업발전을 이루어 왔다. 연간 총 수출은 약 1,644억 달러, 수입은 약 1,626억 달러 수준이다. 한국 관세청 통계 기준 대 스웨덴 수출은 8.7억 달러, 스웨덴으로부터의 수입은 18억 달러로 약 10.7억달러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 3국에서 생산된 우리제품의 수출량을 제외한 수치로,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에서 생산되어 스웨덴으로 수출되는 자동차, 타이어, 전자제품 등이 연간 10억달러 정도로 조사되고 있어,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적자를 보는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주요 스웨덴 기업 : Volvo(268위), ABB(스위스-스웨덴 합작, 284위), Ericsson(363위), Vattenfall(491위), AstraZeneca(영국-스웨덴 합작, 455위) (이상 Fortune Global 500 in 2015)

- 이외에도 Electrolux., Scania, IKEA, H&M, Gambro, Saab, Tektra Pak, Assa Abloy, Atlas Copco, SKF, Sandvik, Envac, Skanska 등 글로벌 기업 다수 보유
- ICT, 패션, 디자인, 생명공학, 신재생에너지, 산업기계류 분야 등에서 두각

소비재 및 산업재의 높은 해외 의존도로 인해 외국과의 교역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며 외국 제품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안정된 수입과 잘 발달된 사회보장 제도로 인해 높은 품질의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선호하며, 자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스웨덴 국민들은 내구성 제품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나 자국산 제품에 대해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품질 수준과 적극적인 A/S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재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품질과 가격을 철저히 비교하는 성향이 있다.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매 후 자유로운 반품, 교환 등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높은 품질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납기일도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소비자 특성

스웨덴인의 소비 특성은 매우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명한 브랜드 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호하지는 않으며, 제품의 품질을 우선시 한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품질이 좋고 가격이 타 유럽 제품에 비해 저렴한 한국산 타이어 등이 현지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최근에는 휴대폰, 승용차, 평면TV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제품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 가고 있다.

스웨덴 비즈니스 특성은 보수성과 정확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일례로 지난 1995년 EU에 가입했지만 아직 유로화를 쓰지 않는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시장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제품 이미지가 나쁘게 된 업체는 또 다시 스웨덴 시장에 발을 들여 놓기가 쉽지 않은데, 이는 동종 업계 종사자 간 정보공유가 빠르기 때문이다.

스웨덴인들은 매우 보수적으로 처음 사귀기는 힘이 들지만 한번 사귀면 평생을 간다는 말이 있다.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한번 거래 관계가 성립되면 거래선을 잘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지속된 사회 민주주의 체제에 익숙한 관계로 일반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을 꺼리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스웨덴 시장을 뚫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는 동시에 가격은 충분히 받는 대신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탕주의(Spot Business)가 절대로 통하지 않는 시장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 상품 인지도

스웨덴 소비자의 대부분(80% 이상)은 한국이 1960~1980년대를 거쳐 급속도로 공업화되었으며, 수출 지향적 경제개발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한국산 제품의 품질이 나쁜 수준은 아닐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는 있으나 상당히 막연한 수준으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특정 한국산 제품의 상표 및 브랜드명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반면, 수입상, 도매상 등 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들과 다른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한국 상품의 기술 수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들의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소비자들보다는 높으나 삼성, LG, 현대, 기아 등 대기업 위주의 몇몇 브랜드를 거론하는 정도이며, 우리 상표에 대한 인지도는 일본산, 유럽산에 비하여 다소 떨

어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 런던올림픽에서 한국의 선전과 협찬 기업의 미디어 홍보, 그리고 스웨덴 시장에서 한국 스마트폰과 LED TV, 승용차 등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한국 브랜드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다.

투자 환경

투자환경

□ 투자지로서의 장점

스웨덴은 스칸디나비아 최대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고, 노르딕 지역의 중심에 있는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다국적 기업의 북구 판매 법인이 많이 소재하고 있다.

산업체-대학·연구소-지자체간의 공동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에 약 65개의 산업별 클러스터가 조성되어서 창업지원부터 입주기업간 공동연구 및 제품개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 시스타 (Kista) Science City : 스웨덴 ICT 산업의 본산지로서 에릭슨 본사가 위치하고 있고, 관련 ICT 기업, 연구소, 대학교 등 ICT 관련 기업만 약 1,100개사가 입주, 미국 실리콘밸리에 이어 세계 2위의 ICT 클러스터 형성
- 그 외, 말뫼/룬드-Medicon Valley(제약, 생명공학), 요테보리-자동차 클러스터, 옘살라-BT 및 제약 클러스터, 스톡홀름-CleanTech(환경 산업) 클러스터 등 운영

스웨덴은 특히 ICT, 자동차, 생명공학, 산업기계, 디자인 및 패션, 의료기기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 다수 포진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과 함께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우편,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도시 근교에 오피스 빌딩과 은행, 우체국 등 기반 시설을 갖춘 비즈니스 단지가 산재해 있어 기업의 입주여건이 매우 양호하다. 개인, 기업에 대한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관리되고 있어 신용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에 맞기만 하면 모든 것을 규정대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예상외의 난관에 부딪히는 일은 거의 없다. 이외에도 철강, 화학, 목재 공업 등이 발달되어 있어 원료 조달이 용이하며, 광활한 국토와 풍부한 수자원, 그리고 발달된 사회 간접 시설로 인해 생산 여건도 매우 양호한 편이다.

스웨덴의 주요 시장은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이며, 이는 총 교역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 자체가 수출 주도형 경제이므로 교역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매너는 상당히 세련되어 있다. 그간 국제 사회에서 쌓아온 신뢰도와 기술 제품 수출국으로서의 명성 등을 고려할 때, 가격 경쟁력을 갖춘 Made in Sweden 제품이라고 한다면 판로 개척에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

□ 투자지로서의 단점

먼저, 고용 비용이 매우 높다. 고용주세 납부로 인해 급여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고, 일단 채용하면 해고가 용이치 않다. 근로자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업무에 적합한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고가 어렵다. 또한 교통, 통신을 비롯한 제반 물가 수준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투자액 대비 생산되는 제품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한하여 투자해야 할 것이다.

□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종래에는 스웨덴의 중요 산업을 보호하는 성향이 강했으나 점차 외국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간 균형 개발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국내 업체와 동일한 대우(지원)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스웨덴 북부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동 지역 투자에 대해 몇가지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업종 제한은 없다.

※ 2013.6월부터 Facebook이 스웨덴 북부 Luleå 지역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북부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 활성화

□ 투자 인센티브

1) 세제 인센티브

- 스웨덴의 법인세율은 22%(2013.1월부터 과거 26.3%에서 22%로 인하)로 다른 유럽국가 및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일반 개도국에 비해선 높은 수준이다.
-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 면제
- 비상장 주식이나 10%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장 주식을 1년 이상 보유시 자본이득과 배당금에 대한 세금면제 등

2) 지역 인센티브

- 한국과 달리 외국인 투자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이 별도로 조성되어 있지 않다.
- 다만, 인구밀도가 현저히 낮고 개발이 부진한 스웨덴 북부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및 외국기업 차별 없이 동일하게 심의를 거쳐 개발 및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 지역 개발 보조금의 경우, 투자지역, 기업규모 및 투자분야에 따라 개별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10~50% 보조
- 고용 보조금은 고용효과, 경제성장, 지역 비즈니스 활동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각 신청 건별로 개별 심의를 거쳐 지원 규모를 산정 (첫 고용후 계속 고용이 증가할 경우를 전제로 최대 3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3년간 최대 120,000 SEK ~ 198,000 SEK의 고용 보조금 지원 가능)

외국기업 투자동향

□ 투자 통계

스웨덴은 인구 982만명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08년 371억 달러의 외국인 순 직접투자(투자액에서 환수액을 제외한 액수)를 유치하였으나, 이후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2011년 129억 달러, 2012년 163억 달러, 2013년 37억 달러, 2014년 107억 달러가 유입되었다.

■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금액 (Inward FDI)

(단위: 십억SEK)

구분	2011	2012	2013	2014
FDI	83.9	110.7	23.9	73.4
순유입액	(129억불)	(163억불)	(37억불)	(107억불)

* 자료: 스웨덴 통계청(2015.8월 기준)

* 연평균 환율(1US\$=): 6.49 SEK('11), 6.77SEK('12), 6.51SEK('13), 6.86SEK('14)

스웨덴의 해외직접투자(순유출액)는 최근 4년간 연간 140~299억 달러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FDI 순유입액을 초과하는 양상이다. 2014년 스웨덴의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1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50% 감소하였다. 단, 스웨덴 글로벌 기업의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거대 내수시장을 갖춘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연도별 해외직접투자액(Outward FDI)

(단위: 십억SE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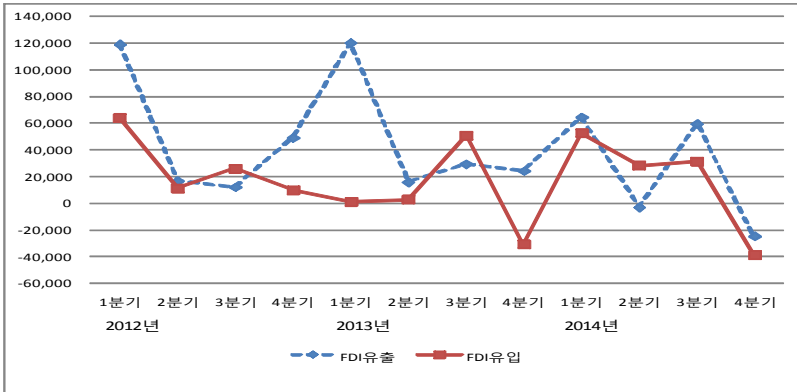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FDI	193.9	196.1	189.4	96
순유출액	(299억불)	(290억불)	(291억불)	(140억불)

* 자료: 스웨덴 통계청(2015. 8월 기준)

* 연평균 환율(1US\$=): 6.49 SEK('11), 6.77SEK('12), 6.51SEK('13), 6.86SEK('14)

최근 3년간 FDI 유입·유출 동향

(단위 : 백만SEK)



* 출처 : 스웨덴 통계청(2015년)

산업별 외국인 순직접투자 현황

업종별 투자 동향을 보면 전통적으로 제조업과 전기/가스/수력발전이 가장 많은 편이다.

산업별 외국인 직접 투자

(단위: 백만 크로나)

구 분	2011	2012	2013	2014
제조업	75,385	43,489	69,928	47,846
전기,가스,수력발전	-25,835	-105	3,229	-17,898
건설업	3,070	4,386		1,296
도소매업, 자동차정비	24,000	10,019	-20,526	41,811
운송	1,754	2,199	185	-1,851
금융업	9,031	4,255		
부동산업	-2,463	8,512	-2,710	-3,191
기타	10,448	59,530	-47,227	9,834
재투자	6,820	8,535	57,299	
총 계	83,920	110,666	53,086	77,841

- * 마이너스(-)표시는 투자 상한액이 투자액을 초과함을 나타냄
- * 공란은 백만SEK 미만으로 통계 미계상을 나타냄
- * 연평균 환율(1US\$=): 6.49 SEK('11), 6.77SEK('12), 6.51SEK('13), 6.86SEK('14)
- * 자료: 스웨덴 중앙은행, 통계청(순유입기준, 2015.10월 기준)

□ 주요 외국 투자 기업

스웨덴은 북유럽, 발틱연안과 EU 시장의 주요 연결 통로로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스웨덴 투자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발틱해와 북유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세계 최대 다국적 기업 대부분이 스웨덴을 지역본부로 선택하고 있다. 현재 스웨덴에 북유럽 지역본부를 설립한 글로벌 기업으로는 General Motors(미), Ford Motor(미), Mitsubishi(일), Procter & Gamble(미), E.ON(독), Unilever(네), Royal Ahold(네), Volkswagen(독), Hitachi(일) 등이 있다.

□ 스웨덴 진출 한국기업 : 총 9개사

현재 스웨덴에 진출하여 영업중인 한국기업은 총 9개사로, 삼성전자, LG전자,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상선, 한국타이어, 대한항공, 넥센타이어, 제일기획(광고) 등이 있다.

업종별로는 전자제품 2개사, 자동차 1개사, 자동차부품 3개사, 운송 2개사, 광고·디자인 1개사이다.

창업절차의 간소화

2015년 발간 세계은행(World Bank)의 국가별 사업환경(Doing business)에 관한 조사(직원 수 50명 이하 기업 창업시 수반되는 법적, 행정적 장애수준 평가)에서 11위를 차지하고 있다(창업 관련 절차 수 3건, 총 16일 소요)

비용

스웨덴 내 법인을 창업하기 위한 최소 자본금은 민간기업 5만 SEK(약 7,680달러), 국영기업 50만SEK(약 76,800달러)이며, 지사(branch)를 설립할 경우에는 자본금이 요구되지 않는다. 스웨덴 회사등록청(Bolasverket)에 대한 등록비용은 법인설립 신고 시 2,200 SEK(약 337달러), 지사 설립 신고시 2,000 SEK(약 307달러)이다.

■ 직종별 월 평균 보수(2014년)

(단위: SEK)

직위/직종	남성	여성
정치인	64,700	63,800
학교 교장	44,500	43,600
건축가	37,800	35,800
경제학자	36,600	34,500
프로그램 개발자	35,600	33,900
엔지니어	35,600	33,400
간호사	33,600	33,200
교사	32,000	32,100
소방관	29,500	27,400
문헌 정보관리자	28,200	28,200
건설노동자	26,300	23,800
승무원	25,900	25,800
IT 기술자	24,400	24,400
청소원	24,100	23,200
식당 종업원	20,900	21,700

※ 출처 : 스웨덴 통계청(2015년)

조세정책

스웨덴의 조세정책은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인세

스웨덴에 소재하는 기업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국가적 차원의 법인세(national corporate tax)만을 납부하며, 지방 법인세(local corporate tax) 및 영업허가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22%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스웨덴의 법인세율은 국제기준으로 볼 때 낮은 수준이다.

- 프랑스 33.33%, 이태리 31.4%, 독일 33.3%, 스페인 30%, 룩셈부르크 28.59%, 오스트리아 28%, 스위스 25%, 핀란드 24.5%, 영국 23% (2014년 21%, 2015년부터 20%), 덴마크 22%, 네덜란드 20% 혹은 25%(수익 20만 유로 이상일 경우 25% 적용), 아일랜드 18%, EU 평균 22.85, OECD 평균 25.32%(출처 : FITA 2013, KPMG 2013)

한편, 스웨덴에 상주하는 외국기업도 영업활동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배당금

일반적으로 스웨덴 기업이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dividend)에 대해서는 30%의 원천과세(withholding tax, kupongskatt)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통해 면세 또는 세율 인하를 적용받을 수도 있는 바, 비상주 외국기업이 스웨덴 기업의 주식을 25% 이상 소유할 경우에는 5%, 여타 경우에는 대체로 15% 수준의 인하된 세율을 적용한다.

* 한-스웨덴 이중과세방지협정은 82.9.9 발효

아울러, 외국기업의 스웨덴 내 지사가 이익을 해외에 송금하는 경우에도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를 제외한 여타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스웨덴 기업이 외국인 소유주 또는 주주에게 송금하는 배당금의 규모도 제한받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동 기업이 영업이익을 보유해야 한다.

사용료

스웨덴 관련법상 사용료(royalties)에 대해서는 원천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비 스웨덴 거주자에 대한 사용료 지급과 관련해서는 순 사용료 이익(net royalty income, 총 사용료에서 사용료 관련 지출을 제한 금액)에 대해 일반적인 법인소득세(22%)를 부과한다.

부가가치세

스웨덴의 부가가치세법(Value Added Tax Act)은 부가가치세 관련 EU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바, 통상 25%의 부가세(moms)를 부과한다. 예외적으로 식료품 또는 호텔 숙박비 등의 경우에는 12%, 교통비, 신문 잡지 및 서류, 상업적 체육시설·문화공연 이용료 등의 경우에는 6%의 인화된 부가세가 적용된다. 한편, 의료·치과 치료, 복지, 은행·금융서비스 등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한편, 2012년부터 청년 실업 감소 및 고용 활성화 차원에서 요식업계 부가가치세가 25%에서 12%로 인하되었다.

개인 소득세

개인 소득세는 지방세와 국세로 나뉜다. 지방세는 거주지 지자체(Municipality)가 징수하며, 세율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균 31% 수준이다. 2015년 기준으로 연간소득이 430,200 크로나(6.2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만 부과된다. 연간 소득이 430,200 크로나(6.2만불)에서 616,100 크로나(9만불)인 사람에게는 국세 20%가 추가로 부과된다. 연간소득이 616,100크로나를 상회하는 사람에게는 국세 부과율이 25%로 증가된다. 한편, 자본 이자(capital interest), 자본 이득(capital gains), 배당금에 따른 순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30%의 개인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본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분의 100%까지 향후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산 총액이 150만 크로나 이상인 사람에 대해 부과되는 부유세(wealth tax)는 2007.1월 폐지되었다.

주요 외국인에 대한 일부 조세 감면 혜택

□ 취지

스웨덴이 필요로 하는 외국 전문 인력 유치 차원에서 이들 외국인들이 스웨덴 내 체류기간 중(최장 3년)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및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에 착안, 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일정 조세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이다.

□ 적용 대상

스웨덴 내 기업에서 근무하거나, 스웨덴 기업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영 관리자, 전문가, 엔지니어, 과학자, 분야별 전문 인력(연구개발, 생산, 관리, 물류, 영업, 재무, 기업 내 IT, 신기술 응용분야 등) 및 스웨덴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능력을 구비한 외국인에 해당하나, 실제 적용대상 직종 및 지위는 인력수요에 따라 가변적이며, 세무당국이 판단하여 결정하기도 한다.

한편, 동 외국인은 스웨덴 기업이나 기업 활동과 관련된 피고용인이어야 하며, 스웨덴에서 활동하지 않는 외국기업이 파견한 직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고용주는 실소유자의 국적 여부를 불문하고, 스웨덴에 소재하는 기업이어야 하며,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스웨덴에 상주사무소(permanent organization 또는 establishment)를 설치하여야 한다. 외국기업이 스웨덴에 파견하였으나, 동 외국기업의 스웨덴 내 자회사(subsidiary)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보수금액에 대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외국인이 스웨덴 기업에서 업무하기 이전 5년간 스웨덴 내 거주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 감면 범위

상기 외국인에 대해서는 실제 총 소득의 75%를 과세 대상으로 하며,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동 감면 조치는 보수 및 기타 혜택(perks)에 적용되는데, 기타 혜택은 주택 지원 및 생활지원 수당, 부임 및 이임에 수반되는 이사비용, 본국 휴가비, 자녀학비 등이 해당되며, 스웨덴 고용주가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스톡홀름 또는 특별상여금에도 적용된다.

기타 세금은 스웨덴 국민과 동일하게 부과되나, 과세는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총 소득의 75%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상기 감면조치는 동 외국인이 최장 5년간 스웨덴에 체류한다는 전제하에 입국하여 지정된 업무 개시 후 3년간 적용되며, 5년이 경과된 후 이민 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할 경우에도 동 감면혜택은 세무 관련 사항에 여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신청절차

고용주 또는 해당 외국인은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스웨덴 국세청 내 담당부서(Research Tax Board, Forskarskattenmnden)에 신청하며, 국세청의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고용주는 국세청에 동 외국인의 소득 신고시 반드시 면세부분을 포함시켜야 한다.

경쟁정책

스웨덴의 경쟁정책은 1993년 제정된 경쟁법(Competition Act)을 근거

로 기업들의 반경쟁적 협력(anti-competitive cooperation) 및 지배적 지위 악용(abuse of dominant position)을 금지하는 한편, 경제·통상 행위의 집중을 규율한다.

스웨덴 경쟁청(Konkurrensverket, Swedish Competition Authority)은 ‘원활히 작동하는 시장을 통한 복지(welfare through well-functioning markets)’를 모토로 하며, 현장 실사(on-site inspection), 위법 여부 결정 및 벌금부과 권한을 행사한다.

공공조달

스웨덴 조달시장의 규모는 연간 500억 유로 수준이다. 스웨덴 정부는 10여 개의 중앙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조달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2011.1월 행정 서비스청(Kammarkollegiet) 산하에 국립조달센터(Statens Inköpscentral)를 설립하였다. 국립조달센터는 중앙정부의 조달업무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ICT 분야 입찰에 대해서는 지자체도 국립조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EU 규정에 의거한 공공조달법(Public Procurement Act, 2008.1월 발효)이 모든 공공조달(중앙정부기관, 지방행정기관, 정부소유기업 등 계약 체결 주체의 판매, 임대차, 구입, 용역, 할부 구입, 공공 토목공사 등)을 규율한다. 스웨덴 경쟁청(Konkurrensverket)은 직접 조달행정을 담당하지는 않으며,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조달행정 투명성을 감독하고 있다.

정부조달 입찰정보는 국립조달센터의 전자입찰정보시스템(www.avropa.se)과 EU 정부조달 통합시스템(www.simap.europa.eu)을 통해서 공지되고 있다.

공공조달은 EU 규정에 의거 비차별(non-discrimination), 동등한 대우(equal treatment), 투명성(transparency), 비례성(proportionality) 및 상호인증(mutual recognition) 원칙이 심사기준으로 적용된다.

비차별(non-discrimination) 원칙은 국적을 근거로 한 모든 차별행위의 금지를 의미한다. 어떠한 계약체결 주체도 특정 현지 기업이 단순히 관찰 지자체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

동등한 대우(equal treatment) 원칙은 모든 공급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를 의미한다.

투명성(transparency) 원칙에 의거, 조달절차는 예측 가능성과 개방성에 따라 취해져야 한다. 입찰자에게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계약문서는 명확하고 정확해야 하며, 조달품목에 대한 모든 요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비례성(proportionality) 원칙은 심사(qualification) 요건과 계약체결 대상에 관한 요건이 조달 대상 공급, 용역, 공사들의 실제 내용에 비추어 적절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상호인증(mutual recognition) 원칙은 EU 회원국의 관련당국이 발급한 관련 서류 및 인증서가 여타 회원국에서 인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스웨덴의 공공조달은 환경, 인권 및 혁신에 관한 고려와 민관 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형식의 도입을 특징으로 한다.

(1) 환경

EU는 ‘지속적 개발을 위한 신전략(EU renewed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증진시키기 위해 환경에 적절한(environmentally -suited) EU 평균 공공조달 수준을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스웨덴 정부는 이에 따른 행동계획을 수립, 실시중이다.

(2) 인권

조달과정에서 작업환경, 양성평등, 인권, 아동노동문제를 고려한 조건을 부과하며, 이는 공급자 심사기준요건, 평가기준 또는 특정 계약조건의 형

식으로 반영된다. 아울러, 공급자는 조달대상 물품이 ILO 8개 주요협약 및 UN 아동협약 의무를 준수하여 생산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혁신

스웨덴 정부는 조달 절차·방식 및 그 내용에 있어서도 혁신 수준 및 혁신에 대한 기여도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4) 민간 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 협력(PPP)이라 함은 조달 획득자(procurer)와 공급자(supplier)간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나 용역 제공 관련 자금조달, 이행, 현대화, 관리운영을 위한 협력의 형식을 의미하고, 통상적으로 공공조달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며, 장기간이 소요되는 고액의 조달계약에 해당된다.

부동산 취득

스웨덴은 외국인 투자자의 부동산 자산 취득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스웨덴 내 부동산 소유와 토지개발사업 참여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스웨덴의 부동산 거래규모는 영국, 독일, 프랑스에 이어 유럽 내 제4위의 투자시장으로 기록되었으며, 이중 외국인 투자는 부동산 취득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대상 및 비율은 사무용, 사무·상업 혼용 쇼핑센터 등 소매상가, 주거용, 산업용, 호텔 등 순이다.

주요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은 노르웨이, 영국, 덴마크, 미국, 아일랜드 순이며, 유형으로는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비상장 자산회사, 기관투자자, 개인, 정부 순이다.

스웨덴의 부동산 관련사항은 토지법(Swedish Land Code, Jordabalken)이 규율하며, 토지, 건물, 기타 부착물의 지적, 등기, 소유권, 저당현황 등 제반사항은 스웨덴 토지 등기소(Swedish Land Register, Fastighetsregistret)가 담당한다.

노동조합 및 근로관계

노동조합

스웨덴은 노사관계의 매개체로서 오랜 노조(trade union)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바, 현재도 대다수 근로자들은 노조에 가입해 있다. 노동직 근로자의 경우 70%가 주로 스웨덴 노조연맹(Swedish Trade Union Confederation: LO)에 가입하고 있으며,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85%가 스웨덴 전문직 근로자연맹(TCO: Swedish Confederation of Professional Employees)과 스웨덴 전문직협회 총연맹(SACO: Swedish Confederation of Professional Associations)에 가입하고 있다.

산업별 노조는 고용주단체와 단체근로협약(collective labor agreement)을 체결하는 바, 동 협약은 개별 기업과 노조간 계약체결의 지침 역할을 하며, 주로 임금 및 직무 관련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여타 사항은 노동법이 규율한다.

고용계약 적용대상

고용보호법(LAS: Employment Protection Law)은 스웨덴 내 적용되는 고용계약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피고용인은 동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 피고용인의 고용계약상 근로조건과 의무가 관리직에 해당하는 경우 (Managing Director, CEO 등)
- 피고용인이 고용주 또는 소유주 가족의 일원인 경우
- 피고용인이 고용주의 가정에 고용된 경우
- 피고용인이 특별고용지원(special employment support) 및 보호받는 고용관계(sheltered employment)와 관련하여 고용된 경우

일시 해고(redundancies)

스웨덴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기업의 재구성, 축소 또는 활동 종료의 사유를 공개해야 할 의무를 지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자신의 재량 하에 기업의 활동을 결정한다. 그러나 스웨덴 고용보호법 및 특히 공동결정법 (Co-determination Act)은 일정한 형식과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피고용인을 일시 해고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LIFO(last-in, first-out) 원칙이 적용되는바, 최장기간 근무한 피고용인을 대신하여 근무기간이 최단기인 피고용인이 해고되며, 해고당하지 않은 피고용인에게 현재 직책에서 만족할 만한 근무평점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된다. 한편, 일시 해고된 피고용인은 9개월 이내 직장 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충원 대상으로서 최우선 순위를 부여받는다.

사회보장비용 분담

피고용인에 대한 사회보장비용은 고용주가 전액 부담한다. 고용주는 관련 법률에 의거 피고용인 월 기본급의 31.41%를 피고용인의 사회보장세 (employer contributions)로 국세청에 납부한다. 사회보장세에는 퇴직연금, 건강보험, 출산휴가수당, 병가수당, 실업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서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직장연금 비용을 납부하

게 되어 있을 경우, 고용주는 민간의 직장연금 관리회사 중 한 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동 비용을 납부한다. 직장연금 납부액은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환경 보호 의무

스웨덴은 정부 및 민간기업 모두 환경보호와 새로운 청정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로 만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환경법에 의거하여, 배출 감소, 독성 화학물질 사용 최소화,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및 폐기물 관리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전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제품선택의 원칙(product choice principle, 생산시 기존의 재료나 공정보다 덜 위험한 대체재나 방법이 존재할 경우, 이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원칙) 등 환경법상 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이 환경침해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히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 impact assessment)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승인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가급적 초기단계에서 환경 관련 기관들과 접촉하여, 환경법 위반 가능성 등에 관한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 웹사이트

- Swedish Competition Authority
(Konkurrensverket, 경쟁청, www.konkurrensverket.se)
- Swedish Customs Service
(Tullverket, 관세청, www.tullverket.se)

- Swedish Patent and Registration Office
(Patent-och registreringsverket, 특허청, www.prv.se)
- Swedish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Naturvårdsverket, 환경보호청, www.naturvardsverket.se)
- Swedish Trade & Invest Council
(Business Sweden, 무역투자위원회, www.business-sweden.se)
- Swedish Companies Registration Office
(Bolagsverket, 스웨덴 기업등록청, www.bolagsverket.se)
- The Swedish Business Link
(기업등록청, 국세청, 경제 및 지역개발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외국 투자자 지원 웹사이트, www.verksamt.se)
- Working in Sweden
(스웨덴에서 근무하는 해외 근로자 지원 사이트, www.workinginsweden.se)
- Swedish Chambers of Commerce
(스웨덴 상공회의소, www.cci.se)
- Swedish Trade Federation
(스웨덴 도소매상 연합, www.svenskhandel.se)
- Open Trade Gate Sweden(OTGS, www.opentradegate.se)

스페인

통상환경의 변화와 특징

세계 금융위기 이전 10년간 유럽연합 지역 평균 성장률의 2배에 해당하는 괄목한 성장을 이뤘던 스페인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건설 부문 거품이 급격히 빠지며 경기침체를 겪었다. 2011년 연속 9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던 스페인 경제는 2013년 3분기 전분기 대비 0.1% 플러스 성장을 하며 경기 회복세에 진입하였다.

2014년 1.4% 연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던 스페인은 2015년 3.0~3.3%, 2016년 2.8~3.0% 경제 성장을 기대하며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시현하고 있다. 더욱이 스페인 정부 및 국내·외 기관에서 전망치를 꾸준히 상향 조정중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페인 경제성장은 2015~2016년 유로존 평균 1.3%, 1.9% 두 배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럽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 EU 집행위원회 경제 전망(2014-2016)

	실질 GDP (%)			인플레이션 (%)			실업률 (%)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영국	2.8	2.6	2.4	1.5	0.4	1.6	6.1	5.4	5.3
그리스	0.8	0.5	2.9	-1.4	-1.5	0.8	26.5	25.6	23.2
스페인	1.4	2.8	2.6	-0.2	-0.6	1.1	24.5	22.4	20.5
독일	1.6	1.9	2.0	0.8	0.3	1.8	5.0	4.6	4.4
유로존	0.8	1.3	1.9	0.4	-0.1	1.3	11.6	11.2	10.6
프랑스	0.4	1.1	1.7	0.6	0.0	1.0	10.3	10.3	10.0
이탈리아	-0.4	0.6	1.4	0.2	0.2	1.8	12.7	12.4	12.4

자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국내외 요인과 정부 정책의 성공적 안착이 경제성장의 주요인이자 2015년 성장 지속의 열쇠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먼저,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하로 소비, 투자가 활성화된 것을 주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ECB는 2014년 6월과 9월 두 차례 0.1%p씩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고, 그 결과 2015.9월 현재 ECB 기준금리는 0.05%로, 추가 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CB는 2015.3월부터 유로존(유로 사용 19개국)내 국채 등을 매입하여 매달 600억 유로를 시장에 푸는 양적완화에 들어갔으며, 2016.9월까지 양적완화를 지속할 계획이다.

유가하락 역시 비용 절감 효과로 소비·투자 성장에 큰 역할 담당하고 있는데 국제유가는 지난 해 6월 중순 106.91\$/B 이후 급락세를 보이며 9월 현재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46.68 달러 선에서, 인도분 브렌트유는 48.92달러 선에서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당분간 저유가 현상이 지속될 전망으로 유가하락에 따른 경기 활성화 효과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요인으로는 스페인 마리아노 라호이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를 들 수 있다. 스페인 정부는 '14년 소득세 인하를 발표하였고, 1차 소득세 인하가 '15년 1월 1일부로 적용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심리 개선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2차 소득세 인하 시행이 2016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세제 개편으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욱이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30%에서 25%로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확대 및 고용창출,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어 세제 개편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 효과가 비중있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M페인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실업률은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수준이 미약하여 여전히 스페인 경제의 큰 골칫거리로 평가받고 있다. 2014년 실업률 23.7%로 마감한 실업률은 2015년과 2016년은 각각 22.3%,



20.3%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4년 실업률 추이는 1분기(25.93%), 2분기(24.47%), 3분기(23.67%), 4분기(23.7%)와 같다. 2015년 실업률은 1분기 23.78%, 2분기 22.37%를 기록하였으며, 실업률 하락이 노동인구 감소가 아닌 고용창출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창출과 관련해서는 2014년 46만개, 2015년 6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 불안정 심화, 높은 청년실업, 숙련공 부재 등의 숙제가 남아있다. 종일 근무자는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고용 형태는 정규직 감소, 비정규직 증가(전체 24.64%)로 고용 불안정 심화 지속되고 있다. 또한 스페인 실업 문제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는 청년 실업률(25세 이하)은 2015년 2분기 기준 49.2%로 경제위기 직전인 2007년 3분기 17.9%와 비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스페인 실업자의 절반이 중등교육을 마치지 못한 비숙련공으로 기업의 중등교육 이상의 직원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고용시장 공급은 미달인 것이 스페인 노동시장의 현 실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스페인의 기대 이상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EU 집행위원회에서 끊임 없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스페인 재정문제는 2014년 GDP 대비 정부 재정적자 비율 5.72%로, 당초 목표치 5.5%에는 못 미치는 수치이나, EU 집행위가 제시한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5.8%는 충족하는 성적표로 분석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스페인의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11년 8.94%, 2012년 6.62%, 2013년 6.33%, 2014년 5.72%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EU 집행위는 스페인의 2015년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4.5%로 전망하고, 스페인에게는 세제개혁을 통한 세수 증대의 불확실성, 고속도로 통행료 적자 및 총선과 맞물린 정부정책 시행 혼돈 가능성 등이 재정적자 축소에 절대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관광-자동차 산업이 스페인 성장 동력이며, 건설업 약진이 관찰되고 있다. 관광업은 스페인 전체 GDP의 약 6.4%차지하는 명실상부 스페인 주요산업으로 2014년 외국인 관광객 수, 관광비용 지출이 모두 증가하였다. 2014년 외국인 관광객 수는 관광객 집계상 최고치인 65백만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7.1% 증가를 기록하였다. 또한, 동 기간 외국인 관광객 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6.5% 증가한 630.94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스페인 자동차 산업은 전체 GDP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 자동차 생산량, 수출 모두 증가하며 호조를 보이고 있다. 스페인 자동차제조협회(Anfac)에 따르면 2014년 자동차 생산량은 2400만대로 전년 대비 11.08% 출하량이 증가하였다. 17개 자동차 제조공장의 성장세에 따라 2017년 연간 자동차 생산량은 3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스페인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생산공장 가동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경제위기 이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던 건설업은 예상외 선전으로 회복이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전 스페인 국내 총생산의 16%, 전체 고용인구 12%를 점하였던 건설부문은 정부의 공공투자 축소와 주택경기 하락으로 '07년 2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며 침체기를 겪었다. 당초 단기간 회복은 힘들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2014년 3분기에 첫 플러스 성장을 보이며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대치를 넘어선 신규 주택건설이 건설업 깜짝 회복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2014년 스페인 교역규모는 5,045억 유로로 수출이 2,206억 유로(전년 대비 1.79% 증가), 수입이 2,645억 유로(전년대비 4.82% 증가)를 기록했다. 스페인은 EU 역내 교역이 49.9%로 가장 비중이 높으며, 스페인의 대 한국 수출 비중은 0.81%, 수입은 0.62%로 양국 경제 규모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치다.



2015년 스페인 수출입 시장은 경기 회복기를 이용한 시장 진출 전략과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스페인 기업을 적극 활용하여 중남미, 아프리카 등 제3국 우회진출 기회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한편, 스페인의 경우, 2015년 12월 총선 결과에 따라 차기 정권의 주요 정책 방향도 어느 정도 보완·수정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스페인 진출(무역, 투자 등)에 관심 있는 우리 업계의 관심이 요구된다.

거시경제 지표(2014년 기준)

- GDP : 1조 2,302억 달러 (세계 14위) (출처: IMF)
- 1인당 GDP : \$26,517(세계 30위) (출처: IMF)
- 경제성장률 : 1.4%
- 실업률 : 23.70%(2014년 4분기)
- 물가상승률 : -0.2%
- 화폐 : 유로(euro)
- 환율 : 1유로=1,328달러 (2014년 평균)
- 이자율 : 0.329% (2014년 12월 기준)
- 교역액 : 수출 3,188억 달러 / 수입 3,514억 달러
- 주요 교역상품
 - 수출 : 자본재, 식료품, 화학제품, 자동차, 반제품
 - 수입 : 에너지, 자본재, 화학제품, 식료품, 소비재

주요산업 동향

스페인은 2014년 기준 생산측면 GDP 중 서비스 분야가 74.4%로 가장 크고 제조업(건설업 제외)이 13.2%, 건설업 5.6%, 농축산업이 2.5%를 차지하는 등 서비스 중심의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1986년 EU 가입 이후 스페인 경제는 급성장하여, 1994년에서 2007년까지 연평균 3.6%를 기록하였으며 산업구조도 변화하여 농업비중이 축소되고 제조업과 서비스 중심국가로 전환되었다. 특히, 관광분야에 있어서 스페인은 2014년 전년대비 7.1% 증가한 6,5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프랑스,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관광객 유치국이다. 이들은 스페인에서 630억 9,400만 유로를 소비(전년 대비 6.5% 상승)하며, 관광업이 스페인 최대 중요 산업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금융 분야에서 스페인은 유로지역 내 최대 은행이자 자본 규모로 세계 41위권인 Santander 은행을 보유하고 있다. 스페인은 Santander 은행 외에도 세계 100대 은행에 5개 은행(BBVA 26위, Bankia 50위, La Caixa 60위, Banco Popular 96위)이 올라갔다. 통신 분야에서도 2014년 2분기 기준 수익 기준으로 유럽 2위, 자본 규모 세계 9위인 Telefonica사를 보유하고 있는 등 통신 서비스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자동차 산업이 스페인 경제 성장 동력이며, 건설업의 약진이 관찰되고 있다. 2012년 중반 이후 세계 주요 완성차 제조업체들은 (Ford, Peugeot-Citroen, Iveco, Nissan) 북유럽의 공장을 폐쇄하거나 축소하는 한편 스페인 내 생산 활동을 강화하였다. 현지 업계에 따르면 노사 간 생산협정 및 노동법 개정 등 유연성 강화가 신차 생산유치 성공에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자동차 제조와 관련된 주변 산업이 잘 발달해 있고, R&D 등 기술력이 높은 점도 강점으로 손꼽힌다. 스페인 자동차 산업은 전체 GDP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14년 자동차 생산량, 수출 모두 증가하며 호조를 보이고 있다. 스페인 자동차제조협회(Anfac)에 따르면 2014년 자동차 생산량은 240만대로 전년 대비 11.08% 출하량이 증가하였다. 17개 자동차 제조공장의 성장세에 따라 2017년 연간 자동차 생산량은 3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스페인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생산공장 가동에 주력하고 있다. 2014년 자동차 수출량은 203만대로 지난해 동기대비 8.5% 증가하였다.



경제위기 이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던 건설업은 예상외 선전으로 회복이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전 스페인 국내 총생산의 16%, 전체 고용인구 12%를 점하였던 건설부문은 정부의 공공투자 축소와 주택경기 하락으로 2007년 2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며 침체기를 겪었다. 당초 단기간 회복은 힘들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2014년 3분기에 첫 플러스 성장을 보이며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매매 또한 2013년 대비 2.2% 증가하며 4년만에 증가세로 돌입하였다. 기대치를 넘어선 신규 주택건설이 건설업 깜짝 회복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스페인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Acciona사, 의류분야 세계 최대 그룹인 Inditex 뿐 아니라 낙농가공업의 Viscofa, 와인회사 Felix Solis 이외에 스페인어권 최대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Oesia사 등 다양한 국제적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스페인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허 관련 세계 5위에 위치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강국이다. 현재 스페인은 태양 에너지 발전 세계 2위, 풍력발전량 세계 4위(유럽 내 2위)로 이 분야에서 Gamesa사, Acciona사 등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고 스페인에는 1,055개의 풍력발전시설에 총 20,190대의 풍력 발전기가 가동되고 있다. 스페인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들의 해외사업은 미국과 호주에 이르기까지 세계무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지지사 설립 또는 M&A 등 다양한 형태로 해외시장 진출 및 사업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2014년 스페인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247억 달러로 세계 10대 투자국이며 주요 투자분야는 금융, 컨설팅 등 서비스 분야 및 제조업 등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위기로 스페인의 2011년도 해외 투자액은 304억 유로, 2012년도에는 156억 유로, 2013년도에는 166억 유로로, 2014년도 247억 달러로 GDP대비 총 해외 투자비율이 3.9%를 기록하였다.

스페인의 해외투자는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중남미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1991년부터 2002

년까지 급속한 對중남미 투자진출이 이루어졌다. 2002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까지 총 투자액의 27.1%를 차지하는 등 투자 추세가 다소 주춤했으나, 2012년 다시 총 투자액의 36.72%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남미지역이 가장 중요한 투자지역임을 입증했다. 그러나 2013년 들어 대 중남미 투자가 전체 투자의 20.8%로 대폭 감소하고, 유럽 역내 투자가 44.3%에서 70.4%로 대폭 증가하였다. 2015년 상반기 스페인의 해외 투자지역은 EU 및 북미 투자액이 전년 동기대비 496%, 219% 대폭 상승하고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오세아니아로의 투자는 각각 67%, 14%, 74% 감소하였다. 현재 브라질이나 중국 등의 극심한 금융위기로 인해 리스크가 비교적 적은 지역으로 투자가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 미국의 금리 인상시 신흥국의 자본유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중남미나 아프리카로의 투자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권의 중남미 투자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1996년 스페인의 BBVA, Santander 은행은 아르헨티나 진출을 시작으로 1998년 멕시코, 브라질, 칠레 및 콜롬비아까지 진출을 확대해 나갔다. 2012년 Santander 은행의 對중남미 부문 수익은 50%(브라질 26%, 멕시코 12%, 칠레 6% 등)이며 BBVA은행의 경우, 2000년 Bancomer 인수 후 2012년의 경우 멕시코에서 전체 수익의 25%를, 그 외의 중남미 국가에서 전체 수익의 24%를 거두어 들었다.

2001년도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한 이른바 “탱고 효과”로 타격을 입었으나, 이후 중남미지역 경기 회복세로 인해 2004년도 스페인 최대 통신회사인 Telefonica는 미국 Bell-South사와 공동으로 중남미 지분을 대규모 매입한 바 있으며, 2005년에는 중국 2대 통신업자인 Netcom 지분을 인수하였고, 영국의 O2 통신사를 인수하는 등 국제화에 성공하였다. 2012년 Telefonica사는 전체 수익의 76%를 스페인 이외 지역에서 거두어 들었으며, 중남미 국가에서는 전체 수익의 49%를 거두어 들었다.



스페인 기업들의 세계화로 인해 1997년 이후 해외투자액이 자본유입액보다 컸으나, 2009년 이래로 자본유입액이 해외투자액을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 현재 스페인의 다국적 기업 수는 2,000여개에 이르고 있고 미국의 포춘지가 발표한 2013년 세계 500대 기업에 스페인은 8개의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분야에서 유로존 내 최대은행이자 중남미에서 가장 큰 금융 프랜차이즈 기업인 Santander와 멕시코 Bancomer를 인수한 BBVA 등 세계적인 규모의 은행이 있으며 통신 분야에서는 고객 수 기준(316백만명) 세계 5위의 Telefonica사, 석유·가스 분야에서는 1999년 아르헨티나 YPF사를 인수한 세계 19위(Forbes지 기준)의 에너지 기업인 Repsol사가 스페인 기업이다. 제조업 분야에서도 전 세계 86개국에 6,000여개의 매장을 보유한 Inditex그룹과 세계적인 신재생 에너지 개발기업인 Acciona, Abengoa 및 세계 4대 풍력터빈 생산회사인 Gamesa 및 ACS, Global Via, Ferrovial 등이 세계적인 스페인 기업이다.

최근에는 동구유럽을 비롯한 신규 EU 회원국에 대한 스페인의 투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14년도에는 프랑스, 네덜란드 및 이태리 등에 대한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2014년 EU-28에 대한 투자 규모는 전체 규모의 41%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금융, 정보 통신 및 정유, 의류 유통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한 · 스페인 교역 동향

양국간 교역은 2008년 전년대비 9.6% 감소하였으며 2009년에는 전년대비 39.6%라는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2010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며 2014년 49억 달러를 기록, 경제위기 이전인 2007년의 48억 달러 수준에 도달하였다. 다만 이 같은 교역증가가 수출 확대보다는 스페인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에 기인한 면이 크다. 2014년의 경우, 상반기에 월드컵 특수와 디지털TV 보급 및 신차 구매 지원제도 등에 힘입어 승용차, 휴대폰,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스페인산 천연가스과 자동차 수입이 대폭 증가하며 1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한국과 스페인 무역은 한-EU FTA 이후 수출대비 수입급증으로 무역적자 상태에 있다. 2014년 한국의 대스페인 수출은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타이 어등의 호조에 총 수출액 20.7억불로 전년비 23.0% 증가했다. 한-EU FTA 체결을 기점으로 대스페인 수입 활동 꾸준히 증가하고,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로 스페인 기업의 대한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스페인의 대한 수출액은 2010년 10억 불에서 2013년 16억 불로 증가했으며, 2014년 28.9억 달러에 도달하였다. 에너지, 석유제품 및 각종 산업용 원 자재 구매가 활기를 띠고 있다. 인근 유럽국과는 달리 스페인은 한국에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나 석유제품 등 각종 산업용 원자재·반자재를 수 출 중에 있다. 지정학적 위치상 스페인은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허브로 알 제리산 천연가스 재수출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르노(Renault) 등 일부 자동차 제조기업들은 스페인에서 생산된 소형 SUV 등을 한국으로 수출인 것이 한국의 대스페인 수입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

2013년 대스페인 수출은 전년대비 0.8% 소폭의 증가를 보이며, 2년 수출 감소세의 고리를 끊어 스페인 경기회복 영향이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으로부터 수입이 23.5% 증가로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며 우리나라의 대 스페인 무역 흑자폭은 2010년 9억 달러에서 2011년 6.9억 달러, 2012년 3.7억 달러, 2013년 8천 5백 만 달러로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그 폭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2014년에 들어 한국의 대스페인 유탄유 수입이 대폭 증가하여 2014년 2분기부터 한국과 스페인 교역은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교역품목

2014년 스페인에 대한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부품(전년대비 351.8% 증가), 승용차(전년대비 1.3% 증가), 휴대폰(19.5%감소), 합성수지(16.1% 증가), 타이어(16.4% 증가) 등으로 스페인 경기회복의 영향을 받고 23.0% 전년 동기대비 성장을 이루고 있다. 한편, 스페인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은 천연가스(997.4%증가), 나프타(415.5% 증가), 승용차(81.1% 증가), 윤활유(18.2% 증가), 의약품(15.3% 증가)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제3국에서 가공되어 대 스페인 수입실적으로 집계되지는 않으나, Zara, Mango, Camper, Adolfo Dominguez 등과 같은 스페인 의류 및 잡화 브랜드도 한국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양국 투자 관계

한국의 대 스페인 투자(신고기준)는 2014년 총 11.5억 달러로, 같은 기간 까지 스페인의 대 한국 투자 누계(신고기준) 11.4억 달러와 큰 격차를 보이지 않는다.

양국간의 투자규모는 최근 10년간 크게 증가하였으며, 투자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스페인 투자의 경우, 종전에는 전자(삼성, LG), 완성차(현대, 기아, 쌍용), 타이어(한국, 금호) 업계 등을 중심으로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판매법인 및 지점 설립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물류창고업(한진해운 알헤시라스 화물터미널), 제조업(KPF, SK루브리컨트), 건설·엔지니어링(GS건설)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단일 투자건별 투자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스페인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최근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스페인의 12대 중점유치 대상국가에 포함되었다.

한편, 스페인의 주요 투자분야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등을 비롯하여 패션브랜드 Zara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류유통그룹 Inditex 등이 꾸준히 투자해 오고 있다. 스페인 신재생 에너지 개발기업인 Acciona는 2007년 경상북도 영양군에 풍력발전소를 건설하였고 2012년 하반기에는 산업폐기물 재활용 전문기업인 Befesa에서 국내 제강분진 처리 기업에 투자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Befesa의 모기업이자 신재생에너지 주요 기업인 Abengoa가 한국시장에 진출하였다. 또한, 스페인 다국적 석유기업인 Repsol은 국내기업(SK)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스페인 내 윤활기유 제조공장을 설립 중에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무역정책

(1) 주무부처

1993.1.1일부터 EU 단일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EU와 동일한 무역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국민당 Aznar 총리 정부시 통상관광부를 경제부 산하로 편입시킨 바 있으나, 2004.4월 Zapatero 총리의 사회당 정부 출범시 다시 별도의 산업관광통상부로 분리하였다. 이후 2011.12월 Rajoy 총리의 국민당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통상·투자를 관할하는 통상차관실을 경제 경쟁력부 산하로 재편입하였다.

(2) 무역진흥책

수출촉진 및 장려책으로 1982년 수출진흥기구(INFE)가 설립되었고, 이후 1988년 대외무역청(ICEX)으로 동 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바 있으며, 각 지방 자치주 내 수출 및 투자진흥기관을 설립 운영 중이다.

스페인인 과거 개발원조기금(FAD)을 통해 정부차원에서 수혜국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 및 신규 투자진출을 지원해 왔으나 2010.10월 개발원조 선진화법인 개발진흥기금법(FONPRODE)을 제정하여 개발협력에 있어서 상업적 이해관계를 차단한 바, 스페인 기업의 국제화 지원은 별도의 기업국제화기금(FIEM)이 담당하고 있다. 한편, 스페인 수출보험공사(CESCE)를 통해 수출 및 투자대상국의 정치적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스페인 대외통상정책은 유럽, 중남미, 북아프리카와 같은 전통 시장과 EU, MERCOSUR와 같은 지역 공동체 가입 및 협력을 통해 통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7년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중국 및 인도 등을 경제·통상 중점 추진 10대 국가로 선정하여 수출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페인 대외무역청(ICEX)은 스페인 산업부문별 수출 강화 및 대외상품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각종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실시 중이며, 주요 내용은 부문별 진출전략, 전시회 개최, Brand Club 운영 등이다. 특히 전시회의 경우 종전 각국별로 순회 개최하던 자본재 전시회 Expotecnica 이외에도 Expoconsumo(소비재)를 신설, 격년으로 주요 거점 국가에서 개최하고 있다.

수입정책

(1) 관세제도 및 장벽

스페인은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 EU 공동 관세를 부과하며 품목별 수입허가 및 쿼터도 EU와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 역내 수입은 관세와 쿼터 규제가 없으며, EU 비회원국가 수입 시 EU 공동관세(CXT)를 적용한다.

관세부과시 HS 분류방식을 기초로 EU 공동 통합 분류 방식인 CN 방식을 채택하며, 종가세 방식이 주도적이나, 일부 품목에 대해 종량세 및 혼합세를 운용하고 있다.

기타 EU 회원국가로서, EU 역외국 중 170여 개 개도국에特惠관세(GSP)를 적용(2014년 중 GSP 수혜대상국을 80여 개국으로 축소할 계획)하고 있으며, 상품가치 평가에 있어 임의적인 관세평가를 배제하고 공정, 통일, 중립된 체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제7조를 적용하고 있다. 공산품의 경우 통상 5~1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국내산 제품 및 수입제품에 21%가 부과되고 있다. 한편, 2011.7월 한-EU FTA가 발효된 바, 관세 철폐·인하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일부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 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수입 부과금(Import Levy)이 부과된다.

(2) 통관절차

스페인으로 물품을 운송 하는 경우, 스페인 내 에이전트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운송업체를 이용하여 통관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Invoice, Packing List, B/L, C/O 등 기본적으로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통관 시기에 맞춰 현지 바이어에게 전달하며, 현지 바이어는 이를 통관 관세사에게 전달한다. 통관대행업체(스페인의 경우 물류업체와 통관업체가 별개인 경우도 존재)가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와 수하인(Consignee)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세관에 접수하고 수입승인번호(DUA No.)를 받고, 수입품을 반입한다. 통관은 통상 3~7일이 소요된다.



스페인 항구까지만 도착하고 현지 통관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착하는 항구를 기준으로 통관업무 처리가 가능한 에이전트를 선정하며 이 경우 가급적 경험이 많은 에이전트를 선정하도록 한다.

우편물 발송시 카탈로그나 제품 샘플의 가격을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관부가세 비율이 바뀔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비록 샘플일 경우라도 스페인 내 시중가격을 적용하여 관부가세가 부과된다. 모든 B2B 거래시에는 통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부가세 및 통관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모든 절차는 시스템화되어, 세관구역에 화물이 도착하면 통관사가 해당 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며, 관련 경비 납부 후 통관을 기다린다. 만일 세관 검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원본 서류들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면 각 단계별 관련법령 및 규정, 제출서류 및 진행 요령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스페인어 검색은 <http://aduanas.camaras.org>
- 영어 검색은 <http://customs.camaras.org>

한편, 스페인에는 수입부가가치세를 수입 시점이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DDA, Depósito Distinto del Aduanero)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 부가가치세를 일차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로 계상함과 동시에 이를 매입 부가가치세로 공제받기 때문에 수입업체의 실제적인 부가가치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동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는 일반적으로 스페인 혹은 EU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기업들에게만 적용된다. 하지만, 다소 복잡한 절차로 인해 국내업체의 동 제도 이용은 전무한 상태이다.

(3) 수입규제 제도

스페인은 EU 회원국으로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으로 제3국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따라서 수입규제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가 타당성을 조사한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농·수산물과 섬유제품, 철강제품 등은 유럽연합에서 EU 내 국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제하고 있는 품목으로 스페인에서는 동 품목에 한해서는 수입에 있어 규제를 받는다. 2013년 초, 무분별한 산림벌채 및 위법벌채를 막기 위해 EU 목제품 수입 규제법이 채택되었다.

가. TBT

현재 EU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으로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을 들 수 있는데 TBT는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현재 스페인을 비롯한 EU는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TBT에 대한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어 TBT를 증가시키고 있다. 그 예로 EU의 TBT 통보건수는 2010년에 52건이었으나, 2년이 지난 2012에는 무려 79건까지 증가했다.

나. SPS

한국과 EU는 FTA 체결 시 SPS양허안을 통해 인간과 동식물의 건강 또는 위생을 보호하면서 SPS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명시했으며, 각자의 축산업 여건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동물 복지에 관하여 협력할 것을 규정했다.

또한, WTO 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양측간 SPS 조치 관련 분쟁은 FTA의 양자간 분쟁해결 절차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하였다.

(4) 반덤핑

수출국의 기업이 덤핑가격으로 수출하여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EU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입규제조치이다. EU집행위는 EU 기업으로부터 특정 수출국 기업이 덤핑 수출을 하고 있어 EU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소를 받으면 반덤핑 규정(1225/2009/ec)에 의거, 조사 후 반덤핑 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한다.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좌우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덤핑 존재 : 해당 수출국(제3역외국) 기업의 EU 수출가격이 자국 내수 가격보다 낮을 때 덤핑으로 간주한다.
- EU 산업에 피해 존재 : 덤핑 수입으로 EU 역내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음이 입증될 때 EU 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EU 역내 산업이 시장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EU의 공동 이익 :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부터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반덤핑 조치가 EU의 전반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EU집행위는 석탄과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또는 확정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나 석탄과 철강제품 이외 상품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의해 확정 반덤핑관세 부과가 결정된다.

EU집행위는 덤핑제소 접수일로부터 45일 내에 사전 조사, 공식 조사를 개시할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제소업체(들)의 생산이 EU 총 생산의 25% 미만일 경우에 공식 조사가 거절된다.

(5) 반보조금(Anti-subsidy) 및 상계관세

보조금에 대한 국제적 규율은 보조금과 상계 조치에 대한 WTO의 협정에 의해 상당히 강화되었다. EU는 WTO의 협정 내용을 EU 보조금 규정에 통합하여 1995.1.1일부터 수출 보조금을 받고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반보조금조치를 적용(EC no 597/2009)하고 있다.

EU 규정은 EU 역외국 정부의 수출보조금을 받고 EU에 수출되는 상품에만 적용되고 해당 제품에 상계 관세가 부과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계 관세가 부과된다.

- 수출보조금 또는 일정 산업, 일정 기업에 한정된 보조금
- EU 산업에 물질적 피해(material injury) 초래 : 수출보조금을 받고 싼 가격으로 들어온 수입 제품으로 인해 EU 역내 산업이 시장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EU의 전반적 이익 :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부터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 반덤핑 조치와 마찬가지로 집행위가 조사하고 잠정 조치를 취하나 최종 조치는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제소와 조사 절차는 반덤핑 조치와 유사하다.

(6) 세이프가드

EU 수입제도는 자유수입을 일반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는데 예외적 경우란 갑작스런 수입 증가의 경우로 EU 역내 산업과 기업, EU 공익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때를 의미한다.

EU집행위는 회원국으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하고 Case by Case 형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반덤핑



이나 상계관세처럼 기업이 직접 세이프가드 조치의 도입을 요청할 수 없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WTO의 세이프가드 조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세이프가드 조치로는 수입쿼터로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조치와 감시조치가 있는데 감시(surveillance)조치는 엄격한 의미에서 수입제한조치가 아니다. 다만, 해당 제품의 수입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수입 라이선스가 요구된다. 현재 중국산 신발, 주방용품, 세라믹 제품에 수입쿼터 조치가 적용되고 감시제도는 일부 국가의 철강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표준, 검사 및 라벨링 인증

CE 마킹제도

28개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의 EFTA 국가에 수출하려면 23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크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 부착해야 한다.

- 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 EEC)
 - 모든 전자·전기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규준을 준수하고 CE 마크를 취득해야 한다.
-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 85/374/EEC(1999/34/EEC 수정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자 포함)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일반제품안전
 - 92/59/EEC(2001/95/EC 수정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환경규격

- 2000/14/EC 지침에 의거하여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동 지침의 소음 발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에코 라벨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는 라벨로 2013.9월 현재까지 29개 품목에 대하여 기준이 제정되어 있으며 8개 품목에 대한 기준 제정이 추진 중이다.

에너지 라벨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고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하며, A+, A++, A+++ 로 추가 등급 표시가 가능하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라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건조기 콤비, 식기세척기, 램프, 전기 오븐, 에어컨 등이다.

정부조달 및 국제입찰 제도

스페인 내에는 정부조달 및 민간입찰에 있어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참여제한 조건이 없으며 정부조달의 경우 정부계약법(LCAP 13/1995, 1995.5.18일 제정 및 3/2011, 2011.11.14일 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조달의 경우 정부 내 한국의 조달청과 같은 중앙구매기관은 없으며 각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대학, 병원, 정부투자기관 등 정부기관 등이 독립적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정부조달 입찰 공고는 최소 28일 이전 스페인



관보(Boletín Oficial de Estado <http://www.boe.es/anuncios/anboe.php>) 및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의 경우 해당 재산권 소유자의 생존기간과 사망시 사후 70년까지 인정한다. 작품이나 지식을 생산하는 순간부터 인정이 되며 신청 즉시 등록한다. 등록처리 기간은 보통 4일 정도가 소요되며 스페인저작자협회에 신청하게 된다.

스페인 정부는 더욱 강력한 저작권 침해 단속을 위해 현행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개정안을 2013년 내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스페인 저작자협회

- <http://www.sgae.es>
- 관련법령은 지식재산권법 1/1996 (1996.4.12. 일)으로 관련조항은 2001/29/CE (2001.5.2일, EU)이다.

스페인의 투자유치 정책

투자관련 법규

외국인 투자유치관련 법규로는 외환관리 및 자본이동 자유화에 관한 법률인 법령 1816/1991(1991.12.27일), 후속개정령 42/1993 (1993.1.15일), 1638/1996(1996.7.5일) 및 현행개정령인 1360/2011 (2011.10.7일)이 있으며 외국인 투자 법률인 법령(Royal Decree) 671/1992(1992.6.2일), 664/1999(1999.5.4일) 및 현행개정령인 Resolución 11144(2010.7.1. 일)가 있다.

2013.9.19일 창업 및 국제화 지원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인이 스페인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는 경우 스페인 거주비자(Visado de residencia)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투자조건은 다음과 같다.

- 2백만 유로 이상의 스페인 정부 채권 매입, 1백만 유로 이상 스페인 기업 주식 매입 혹은 스페인 금융기관 저축 등의 초기 투자
- 50만 유로 이상의 스페인 부동산 취득
- 고용 창출 등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창업 활동

또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거주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이 스페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거주허가(Autorizacion de residencia)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동 거주허가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 투자거주비자 만료 이전, 혹은 만료 후 90일 이내에 신청
- 투자기간 동안 최소 1회 이상 스페인 방문
- 최소 금액 이상의 투자를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

투자유치정책 기초

스페인 투자유치정책의 기본방향은 직접투자 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에 우선권부여, 지역별 균등발전 및 실업률 해소를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 첨단산업, 고품질 고부가가치 산업투자 적극 유치, 對미주 및 아시아 지역 투자유치 강화 등 투자유치선의 다양화 노력, 중앙정부 이외 각 지방정부별 투자유치기관이 투자유치 주도, EU 규정에 부합된 각종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있다. 2011년의 경우, 對스페인 해외총투자는 247억 유로, 순투자는 205억 유로를 기록한 반면, 2012년의 경우 유럽발 경제위기로 인해 해외총투자는 전년대비 38.1% 하락한 184억 유로, 순투자는 109.5% 하락한 -24억 유로를 기록했다.



OECD에 의해서 실시되는 2012년 외국인직접투자규제지표(FDI Regulatory Restrictiveness Index)에서 0.021점(0에 가까울수록 개방적인 경제)을 기록하며 외국인직접투자에 있어서 56개 조사국 중 7번째로 개방적인 환경을 가진 국가로 나타났다.

투자정책 총괄 기관

1992년부터 외국인 투자는 사전허가제 폐지로 일반 업종에 대한 투자허가 감독기관은 없으며 투자제한 업종에 대한 투자허가 심의는 국무회의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재 스페인 내 외국인 투자 관련 업무는 경제경쟁력부에서 투자정책 수립을, 각 지방정부 및 지방개발기관에서 투자유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주무부서는 아래와 같다.

* (투자정책 및 총괄기관)

- 담당기관 : 스페인 경제경쟁력부 “통상투자국”
- 역할 : 중앙정부 차원의 무역 및 투자진흥 정책수립 총괄
- 연락처
 - 주소 : Paseo de Castellana, 162, 28046, Madrid, Spain
 - 전화 : 34-91-349-3656
 - 팩스 : 34-91-349-6008

외국인 투자제한

스페인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 자유화 정책을 유지하나, 외국인 투자 법률인 법령 664/1999에 의해 공권력 행사 및 공공질서·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종, 즉 무기, 군수품, 폭발성 물질, 전쟁 물자 등의 제조 및 거래에의 투자 및 EU 非회원국의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는 국무회의(Council of Ministers)에 의한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사전허가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계획서를 무역·해외투자정책국에 제출, 국무회의의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회신한다. 6개월 내 허가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는 경우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허가를 받은 후 허가서에 명시된 기한 내, 혹은 명시되지 않은 경우 6개월 내 투자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동 허가는 취소된다.

기타 장벽

사회보장세 납부제도

스페인 국민은 사회보장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스페인 국민이 아닌 경우는 해당국과의 협정에 의거하여 가입여부가 정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7월 스페인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었으나, 2013년 초까지 양국의 국내 비준동의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주재 상사 및 교민들이 현지인과 동일하게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했다. 대부분 5년 이내 단기 체류 후 귀국하는 우리 지상사원 및 한국인 파견 근로자는 우리나라와 스페인에 우리 국민 연금과 스페인 사회보장비를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어 스페인 진출 우리기업 및 파견 근로자의 부담이 되어 왔다. 2012.9월 우리측은 국내 비준동의 절차를 완료하였고 스페인측도 2012.12월 국내 절차를 완료한 바, 2013.4.1일자로 동 협정이 발효되었으며, 스페인 진출 우리 기업의 관련 비용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부담이 면제됨으로써 우리 근로자들이 스페인에 파견근무하는 동안 스페인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며,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연금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산정시 스페인에서 가입한 연금기간도 합산된다.

-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에 고용된 경우는 고용지국 법령 적용
- 파견근로자는 일정기간(5년, 연장 가능) 동안 본국 법령 적용
- 어느 한 국가의 가입기간만으로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한국 10년, 스페인 15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수급권 산정
-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연금액은 각국에서 비례방식(자국 가입기간/전체 가입기간)으로 산정

보장범위는 전 국민 대상이며, 각 산업체 작업자 대상 산재보험인 “의료 보장”과 실업 전 근무연수에 따라 실업수당 수혜기간이 결정되는 “실업 보장”(1년 근무 시 4개월간 실업수당 혜택 있음), 최소 15년- 최대 35년간 근무시 67세 이후부터 수혜 받는 “노후연금”이 있다.

스페인 정부는 퇴직연금 부담 증가, 경제난 등으로 인해 연금개혁안을 추진, 2013.1.1일부로 일부 기준이 강화된 바, 퇴직정년이 65세에서 매년 1~2개월씩 점진적으로 추가되어 2027년부터는 정년이 67세로 변동(조기퇴직정년은 60세에서 63세로 연장)되며, 연금수령액 산정 기준 또한 ‘퇴직 전 마지막 15년간의 기준임금’에서 매년 1년씩 추가되어 2022년에는 ‘퇴직 전 마지막 25년간의 기준임금’으로 변화된다. 연금을 100% 수령받기 위한 조건은 사회보장세 38.5년 이상 납입한 경우 65세, 그 이하로 납입한 경우는 67세 퇴직이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2001.2월 발효된 「한-스페인 운전면허 상호인정 각서」에 근거, 스페인에 체류하는 우리 국내 운전면허소지자는 별도의 시험절차 없이 소정의 신청양식에 따라 스페인 운전면허증으로의 교환이 가능하다.

다만, 우리 운전면허증을 스페인 면허증으로 교환 신청하기 위해서는 스페인 당국에 거주허가(residencia normal legal)를 제출해야 한다. 거주허가 취득 시 6개월 내에 교환을 신청해야 하며, 지역에 따라 거주증 발급이 6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추가 6개월 기간 내 신청이 허용된다.

우리 국민에게 발급되는 스페인 운전면허증은 EU 회원국에서 공히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 유효기간이 상이하다(18~65세: 10년, 65세 이후 : 5년 유효).

개선 실적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결(사회보장세 이중부담 면제)

한-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이 2013.4.1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파견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부담이 면제됨으로써 우리 근로자들이 스페인에 파견근무하는 동안 스페인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며,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연금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산정시 스페인에서 가입한 연금기간도 합산된다.

-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에 고용된 경우는 고용지국 법령 적용
- 파견근로자는 일정기간(5년, 연장 가능) 동안 본국 법령 적용
- 어느 한 국가의 가입기간만으로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한국 10년, 스페인 15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수급권 산정
-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연금액은 각국에서 비례방식(자국 가입기간/전체 가입기간)으로 산정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결 노력(상사 주재원 비자/ 거주증 발급)

스페인에 주재하는 상사 주재원은 본사 발령 후 법적 체류문제 해결시까지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며, 구체적으로는 주한 스페인대사관을 경유하여 비자신청(2~3개월), 노동허가 및 체류허가(2~4개월) 과정을 거치게 된다.

- 노동(취업)허가 : 2~4개월
- (장기)비자 : 1개월 이내, 동반가족의 경우 3~5개월
- 체류허가 : 45일 이내

스페인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은 재외공관 및 영사관을 통해 신청·발급한다는 법령에 의거하여 우리 지상사 주재원 및 가족들도 주한 스페인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획득한 이후 스페인에 입국해야 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우리기업이 출국에 임박하여 외국발령을 내는 현실을 감안할 때, 비자취득 이전에 입국하여 활동하면서 주한 스페인대사관에 비자를 신청·발급받는 것이 보통이다.

비자 취득시 애로점으로는 반드시 주한 대사관에서 신청 및 수령(성인의 경우 예외가 없으며, 동반 자녀의 경우 수령 시에만 부모가 대리 수령 가능),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 등이며, 이 중 특히, 최근 5년간 거주국에서의 무범죄증명서 제출 요건은 불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스페인측에 우리 기업의 스페인 투자진출에 따른 경제적 기여도를 감안, 가족 대표자에 의한 대리 신청 및 수령, 무범죄증명서 제출 요건의 완화, 체류기간 연장시(비자취득 후 1년 기간의 체류기간 부여, 이후 외국인사무소에서 갱신 필요) 우편신청 허용을 요청한 바 있으나, 스페인 당국은 2003.12월 이민법 개정으로 불법이민 통제강화 및 EU 전체에 해당하는 이민정책 준수를 이유로 특별대우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므로 당분간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이후 스페인 내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거주증 신청 급증의 여파로 상기 상사주재원 비자발급신청 요건 중의 하나인 스페인 내 노동허가서 발급이 무려 1년까지 장기화에 따라, 대사관이 주재국 외교부 영사국, Invest in Spain, 노동당국 등에 수시로 협조를 요청하여 현재는 한-스페인 상호주의에 의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대부분 EU 국가들의 공통된 비자정책을 감안, 사전발령을 통해 한국 내에서 비자 취득을 완료한 후 주재원을 파견하는 것이 파견 이후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수출 수산물위생검역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또는 우리국적 원양어선 어획 수산물을 스페인에 수출할 경우, 수출업체가 스페인 수산물 수입업체에 수산물위생검역증명서(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를 송부하나 스페인의 검역당국은 우리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의 지부장 서명 및 대결권자의 서명 진위 여부 확인을 수시로 요청하고 있다.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측은 EU위생증명서상의 지원장 서명 및 대결권자 서명 리스트를 주 스페인대사관에 송부하여 스페인 보건사회복지평등부에 전달하여 서명을 대조할 수 있도록 조치함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검역당국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관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회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영국

최근 영국의 통상환경 및 특징

영국은 GDP 기준으로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다. 1970년대에는 제조업이 GDP에서 약 30%를 차지하기도 했으나 이후 금융, 유통 등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재편되어 총부가가치(GVA)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대 수준인 반면, 순수 제조업의 비중은 10%대 초반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전히 생명과학, 제약, 항공우주, 디자인 등 첨단 창조산업의 경우,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 GDP 규모(백만불, 2014, IMF): 미국 17,348,075, 중국 10,356,508, 일본 4,602,367, 독일 3,874,437, 영국 2,950,039(5위), 한국 1,410,383(13위)

영국은 현재 세계 6위 수준의 무역국가이다(한국 7위). 국내 총생산 대비 교역규모의 비중이 약 63% 수준으로 대외교역 지향 국가로 교역비중이 미국, 중국, 일본 보다 높다. 그러나 서비스 수지의 지속적인 흑자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적자로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지속중에 있다.

※ GDP 대비 교역규모(%), 2014, WTO): 한국 107.1, 독일 89.2, 영국 62.8, 중국 55.1, 프랑스 57.3, 일본 29.2, 미국 27.1

영국 정부는 균형잡힌 경제(balanced economy)를 목표로 케머론 현 정부 출범 이후 G20국가 중 가장 경쟁력 있는 조세제도(Tax System) 마련을 목표로 하고 수출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는 등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20개 국가를 고성장

시장으로 선정, 이들 국가와의 무역확대를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힘입어 영국의 총수출량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영국 무역투자청(UKTI)에 따르면 2014/15 회계연도 영국은 총 1,988건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85,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new jobs)하고 23,000개의 기존 일자리를 유지(safeguarding)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2013/14)에 비해 건수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1980년 이후 최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누적 투자액도 1조불을 넘겨 영국은 유럽내 최다 외국인 투자유치국이며 전세계적으로도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영국의 금융산업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런던은 세계 1위의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거래, 국제채권 간접투자거래 규모를 자랑하는 국제금융 중심지이다. 이에 따라 영국정부는 자국의 금융산업 보호를 위해 EU내 경제관련 이슈들에서 여타 EU 회원국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영국정부는 지난 2011년 브뤼셀 회담에서 발의된 EU 27개국 재정통합안에 영국 혼자 거부권(비토)을 행사한데 이어, 세계 금융거래의 절반을 점유한 시티오브런던(city of London) 금융산업 보호를 위해 EU의 금융거래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민문제에 있어서도 거주와 노동의 자유 원칙에 따라 EU출신자들에 대한 자국유입을 제한할 수 없는 영국정부는 2013년 말부터 무제한 입국이 허용되는 불가리아 및 루마니아 이민자 대상으로 영국이민 재고를 호소하는 광고 캠페인 운영하여 타 EU 회원국들로부터 큰 반감을 산 바도 있다. 2015년 재선된 케머론 수상은 EU 탈퇴에 대한 국민투표를 2017년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기도 하다.



시장특성

소비 특성

영국 소비자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또한 높아 외국 기업이 영국 시장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장벽을 넘기 위해 영국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차별화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식품류 및 서적류, 아동의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높은 부가가치세(20%), 고 마진의 유통구조로 인해 가격이 비싼 관계로 소비자들은 주로 부활절(4월), 학교 개학시기(1월, 9월), 성탄절(12월말), 여름과 겨울의 정기 대 바겐세일 시즌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한다. 바겐세일이 시작되면 평균적으로 정가의 30%를 할인하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최대 80%까지 할인하기도 한다.

한국 상품 인지도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에 대한 이미지는 점차 제고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삼성, LG는 핸드폰과 LCD/플라즈마 TV시장에서 연이은 판매성공을 거두며 프리미엄 전자제품 시장을 중심으로 인지도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우도 고객평가에서 높은 평점을 받고 있다. 그 외 한국 중소기업 상품의 인지도도 아시아 국가의 저가 생산품이라는 인식보다는 품질에 기반을 둔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로 인식하는 추세이다.

한류에 대한 인지도는 과거 높지 않았으나 2012.10.1일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영국 음반차트 및 BBC방송 집계 싱글차트에서 수위를 차지한 이래 대중음악, 영화 등을 중심으로 영국인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통 채널

최대 소비지인 런던을 중심으로 한 남동부 지역, 맨체스터 및 버밍엄을 중심으로 한 중부 지역, 글라스고우 등 북부 지역으로 상권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시장 특성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국 유통시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마진이 높은 시장

전통적으로 유통 단계가 복잡하고 마진이 높아 여타 유럽국가와 가격 비교시 동일 제품일 경우 평균 30% 이상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영국 정부도 자동차 및 유명 브랜드 제품의 병행수입제(Grey import)를 도입하는 등 유통 마진 축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펴고 있다.

보수적인 거래 관행

영국업체들과의 거래는 최종 계약까지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인내가 요구된다. 그러나 일단 상대 업체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거래처를 변경하지 않으므로 안정적인 거래를 지속할 수 있다. 대부분의 거래는 소액, 소량다품종 주문 방식이며, 새로운 제품이 영국시장에 출시될 때에는 소량을 주문하여 시장성 평가를 한 후 수요를 측정하여 주문수량을 조정한다.

제3국의 조달선

과거 광범위한 식민지를 경영했던 국가로서 현재까지도 영연방 국가들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구매 조달선으로 막강한 영향력과 비중을 가지고 있다. 조달 품목은 중고자동차, 건설 자재를 비롯하여 의류, 모조



장신구, 신발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품목이 대상이 되고 있다. 바이어들은 해당국가에 본사를 두고 런던에는 1~2명의 구매담당자가 buying office를 운영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 바이어들과의 거래 시에는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L/C 계약 체결이 바람직하며,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입규제 제도

수입규제 조치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으로 제 3국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를 통해서만 취할 수 있다. 즉, 수입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결정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역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수입쿼터제도 등도 EU의 27개 회원국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덤핑관세

수출국 기업이 덤핑 가격으로 수출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EU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이다.

EU 집행위는 EU 기업으로부터 어느 수출국 기업이 덤핑 수출을 하고 있어 EU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소를 접수하면 반덤핑 규정(384/96/ec)에 의거, 조사 후 반덤핑 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다.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을 좌우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① 덤핑 사실의 존재 여부
 - 수출국(제3역외국) 기업의 對EU 수출가격이 수출국의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덤핑으로 간주
- ② EU 산업에 대한 피해의 존재 여부
 - 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EU 역내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음이 입증될 때에는 EU 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 즉, EU 역내 산업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격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된 경우
- ③ EU의 전반적인 이익 여부
 - 반덤핑 조치로 인하여 초래되는 비용이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에는 반덤핑 조치가 EU의 전반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

EU 집행위는 석탄과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또는 확정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나, 석탄과 철강제품 이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확정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된다.

EU 집행위는 덤핑 제소 접수일로부터 45일 내에 사전 조사와 공식 조사를 개시할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제소 업체(들)의 생산이 EU 총 생산의 25% 미만일 경우에는 공식 조사가 거절된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EU는 WTO 협정 내용을 EU 보조금 규정과 통합, 1995.1.1일부터 수출 보조금을 지급받고 수출하는 역외국 제품에 대하여 반보조금 조치, 즉 상계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덤핑 관세와 마찬가지로 EU 집행위가 조사해 잠정 조치를 취한다. 제소와 조사 절차는 반덤핑 절차와 유사하다. 상계관세 부과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역외국의 수출 보조금 또는 일정 산업과 일정 기업에 한정된 보조금 지급 사실 존재 여부
- ② EU 역내 산업에 대한 물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 초래 여부
- ③ 역외국으로부터 수출 보조금을 지급받고 싼 가격으로 유입된 수입제품으로 인하여 EU 역내 산업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격을 줄일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존재한 경우
- ④ EU의 전반적인 이익 여부
 - 상계관세 조치로 인하여 초래되는 비용이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세이프가드

수입이 공정하게 이루어져도 일시적으로 수입이 대폭 증가하여 EU 역내 산업과 기업, EU의 이익에 위협 요인이 될 때 취하는 조치로, EU 집행위는 회원국으로부터의 요청이 있을 때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자발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한다.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와는 달리, EU 기업이 직접 세이프가드 조치를 요청할 수는 없다.

세이프가드 조치로는 수입 쿼터로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조치와 감시하는 조치가 있는데, 감시(Surveillance) 조치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수입 제한 조치가 아니라 수입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해당 제품의 수입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입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있다.

기타 교역관련 규정

수산물과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위생 및 인체 건강 보호를 이유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조건의 수입만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수정을 통하여 군사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첨단기기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역시 제한하고 있다. 해당 품목들은 EU 관보에 게재하고 있다.

영국을 포함한 EU회원국들은 유럽 공동 농업제도(Common Agricultural Policy)에 따라, EU역내 생산 농산품에 대해서는 판매 보조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생산량 제한을 두는 쿼터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자국산 농산품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정책이지만, 보호주의 논란 속에 개혁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정국 대상 경제제재 형 수입금지 조치

EU는 일부 국가에 대하여 해당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으며, 적대국, 테러 지원국, 무정부 상태의 국가 등이 이에 해당된다. 현재 시리아로부터의 석유제품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검역관리 규정

EU는 생태계 교란과 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특정 국가를 원산지로서 하는 일부 동식물에 대한 수입금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나무를 비롯해 120여종의 식물과 200여종의 동물이 이에 해당된다.

관세제도

영국은 EU의 회원국으로서 EU의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영국은 EU의 공동 관세제도가 도입된 1968년부터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한 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EU의 주요 관세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의 관세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양자 간 특혜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에 대하여 수입관세 감면 또는 면제 등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관세는 EU가 매년 발표하는 관세율표에 의하여 각 회원국의 세관당국이 징수한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관세분류 방식인



HS(Harmonized-System)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에는 수입 부담금과 공동 농업정책에 의한 농업 부담금(농산물에만 해당) 등이 포함된다.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표를 EU 관보를 통하여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증가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일부 농산물,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관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가격의 변화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관세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일부 시계 등에는 종량관세로 관세의 상하한선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증가관세를 부과하는 선택관세(Alternative Tariff)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수입 부과금(Import Levy)도 부여한다.

또한, EU는 매년 상,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역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여 EU의 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제품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EU 관보를 통하여 공표된다.

EU는 한국과의 상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으며, 2011.7.1일부터 발효되었다. EU 회원국인 영국은 이에 따라 발효 즉시 약 80%에 달하는 교역품목에 대해 한국과의 수출입시 발생하는 관세를 철폐하였으며, 발효 5주년이 되는 시점에는 약 99%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다만, 2017년으로 예상되는 영국 국민의 EU 탈퇴 국민투표에서 탈퇴가 결정될 경우, 한-영 양국간 교역은 FTA 특혜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상품 분류번호

모든 제품의 수출입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영국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제도(CN CODE)를 적용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상품 분류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품 분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영 교역시, 수출입 제품의 영문 품목 설명을 보고 HS 코드 상의 설명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해당되는 CN CODE를 선택하고 관세율을 확인하여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businesslink.gov.uk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기본 관세 외에 부가세 20%가 추가 적용된다.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 결정을 집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국에는 독자적인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제품의 원산지가 중요한 이유는 관세율 결정의 기초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GSP 혜택, 반덤핑 관세, 수입물량 제한, 심지어 수입금지와 같은 무역정책의 적용에 근거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EU의 원산지 규정은 매우 복잡하여 품목별로 공정기준, 부가가치 기준이 병행 적용되고 있다.

관세 부과가액

제품의 실질 거래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관세 부과가액 산정에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통관 시 관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일부 특정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주요 인증제도

CE 마킹 제도

EU 회원국 모두가 공산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으로, EU의 27개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을 포함한 EFTA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22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킹 지침 (93/68/EEC)에 의거한 CE 마크를 획득, 부착하여야 한다.

CE 마킹 대상품목 및 규정지침 사례

대상 품목	규정 지침
가스기기(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90/396/EEC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안전 규정과 지침이 적용되고 있다.

- 전자파 적합성 지침(89/336/ EEC)
 -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규준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득하여야 함
-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 제조자(수입자 및 유통자 포함)는 85/374/eec(1999/34/EEC 수정 지침) 지침에 의거하여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일반 제품안전
 - 제조자(수입자 및 유통자 포함)는 92/59/EEC 지침에 의거하여 시판되는 상품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하며,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판매해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짐
- 환경 규격
 -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2000/14/EC 지침에 의거하여 소음발생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에코 라벨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인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인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2010.5월말 현재 26개 품목군에 대한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 에코라벨 대상 품목

세제(다목적용 세제, 식기 세척기용 세제, 식기 세제, 세탁 세제, 비누/ 샴푸/헤어컨디셔너), 의류(섬유제품, 신발), Do-it-Yourself(페인트와 바니쉬), 전자제품(PC, 노트북, TV), 바닥덮개 (Wooden Coverings, Textile Coverings, Hard Floor Covering), 가구(목재가구), 정원용품 (Growing Media 및 Soil Improvers), 가정용 기기(전구, Heat Pump), Lubricants, 기타 가정용품(매트리스), 종이제품(복사 용지와 그래픽 용지, 티슈 페이퍼), 서비스(Campsite Services, Tourist Accommodation Services)

KITE 마크 제도

영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안전성 관련 인증제도로, 영국 기준원(British Standard Insitution)에 의해 고안, 발급되고 있으며,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안전성, 내구성 등이 중요시되는 자동차, 기차, 창문, 소화기, 맨홀 등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된다. 영국인의 88%가 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기업의 93%가 KITE 마크를 최고의 안전성 관련 인증으로 간주하고 있다.

- 대상 품목: 아동 안전 SW, 건설 장비 및 자재, 전기, 에너지, 음식 보존 장비, 의료기기, 개인보호장비, 교통, 창문 등
- 취득 절차: www.kitemark.com 에서 제품을 선택하여 온라인 신청하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을 거쳐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KITE 마크 로고를 제품과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또한, KITE 마크 공식 사이트에 인증회사로 등재



지식재산권

영국의 특허신청 및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는 기업혁신기술부(BIS: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의 산하기관인 ‘영국 지적재산권 관리청(The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http://www.ipo.gov.uk>)’이 관장하고 있다.

영국 지적재산권 관리청은 지식재산권을 Copyright, Designs, Patents, Trade Mark 등 4종류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영국의 1977년 특허법은 특허권을 최장 20년 동안 인정하고 있으며, 특허 신청에 대해서는 혁신성이 부족하거나 이미 사용 중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할 수 있다. 영국은 유럽 특허조약 가맹국이고 특허협조 협약의 비준국이다.

유럽 지적재산권 법체계 하에서는 미국과 한국 등과는 달리, “비즈니스 모델”과 같은 무형의 체계나 방식 등에 대해서는 특허를 낼 수 없으며, 반드시 유형의 기술을 접목한 모델이어야 한다.

상표는 7년 동안 보호되며, 이후 14년 마다 갱신할 수 있다. 상표 등록은 제조업체 및 서비스업 모두에 해당되며, 특정한 명사의 사용이나 관련 상품에 대한 서술식의 표현은 허용되지 않는다.

저작권은 문학이나 음악, 드라마 등의 원작의 경우에는 신고나 등록이 없이도 권리가 발생하며, 이는 기타 예술작품이나 녹음, 영화 필름,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등에도 적용된다.

산업 디자인도 1949년 의장 등록법과 1988년 지식재산권 및 디자인,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기술)특허 신청 절차

특허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신청서 1/77 양식을 기재하여 필요 시, 발명품에 대한 설명을 돕기에 용이한 도안(Drawing)이나 상세기술(Description)을 첨부해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 신청서 제출시 수수료는 없으나, 특허 인증 및 발급 절차에 대한 총 비용으로 특허 기술에 대한 배타적 권리 획득까지 200파운드가 부과된다. 신청자가 직접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대행사(에이전트)에 의뢰했을 경우에는 대행사 수수료가 별도로 추가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12개월 동안 무료 임시 특허가 적용되며,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기일이 만료되면 특허는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신청 후 다음 단계의 특허 조치를 위해서는 1년 이내에 9A/77 양식의 원서에 필요한 클레임이나 개요와 함께 접수하여야 한다. 원서접수 비용은 130파운드이다.

그 후, 특허청의 기술 평가관(Technical Examiners)들이 접수된 신청서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의 신규 개발 진위를 판단하게 된다. 기술 평가단은 통상적으로 접수 후 3~7개월 이내에 연구 리포트를 통보하게 된다.

신청된 특허 사양(Patent Specification)은 첫 신청서 작성 후 18개월 이내에 공식 발행되며, 이는 특허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공개 열람됨을 의미한다.

공개 열람은 6개월 동안 계속되며, 신청자는 이 기간 내에 10/77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특허청은 특허 조사를 계속 진행하게 되는데, 신청비용은 70 파운드이다.



특허 신청에 대한 인증 및 발급 종료는 첫 신청일로부터 4년 6개월 이내 또는 첫 기술 평가 후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허 인증을 획득하면, 매년 갱신을 통해 20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허권 갱신 수수료는 연차에 따라 다르며, 매년 납부해야 한다.

특허기술 열람은 특허청 사이트를 통해 가능(<http://gb.espacenet.com/>) 하며, 이 외에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 자문 서비스(Search and Advisory Service)를 이용할 수 있다. 조사 자문 서비스의 이용료는 조사 방법이나 경우에 따라 상이하다.

영국 특허 외에 EU와 세계의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련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The European Patent Office(www.european-patent-office.org)
-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sation(www.wipo.int)

디자인 등록 절차

영국에서 특허 등록된 디자인은 최장 25년 동안 보호되며, 5년마다 갱신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신청료는 60파운드이며(섬유제품의 디자인은 35파운드), 반환되지 않는다.

작품의 디자인 등록이 필요한지와 등록요건을 갖추었는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ipo.gov.uk/design/d-apply/d-should.htm>를 참조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고유 디자인 관련 권리’는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생성되며, 15년 동안 유효하다. 그러나 이는 배타적인 권리(Exclusive Right Against Copying)일 뿐이어서, ‘독점적인 상업적 이용(Monopoly Protection)’의 확대 및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특허 등록

이 필요하다. 또한 기본적인 디자인 권리는 표면장식 등이 배제된 ‘3차원적인 제품의 기본 형태’만을 보호하게 되어 있어, 보다 궁극적인 작품 디테일 보호를 위해서도 등록이 필요하다.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Application Form DF2A’ (<http://www.ipo.gov.uk/design/d-applying/d-apply.htm>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작성 한 후, 수수료 60파운드(수수료 납부 용지: FS2)와 디자인 도해 1부를 첨부하여 지적재산권 관리청에 송부한다.

신청 접수가 이루어지면, 접수 확인과 함께 일주일 이내에 영수증이 발급된다. 그 후 지적재산권 관리청의 심사를 통하여 결과를 받는다.(신청 접수 후 두 달 이내) 디자인 특허 취득에 실패했을 시에는 2달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디자인 특허 취득 허가를 획득하면, UK 디자인 등록소에 자동적으로 디자인이 등록되며, 등록 정보 및 디자인 도해가 ‘Patents and Designs Journal’ 및 ‘Designs in View’에 각각 게재된다.

통관 및 운송

일반 통관

영국의 수입절차를 통하여 수입된 EU 역외국 제품은 영국에서 출시 및 소비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여타 EU 회원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입항 → 하선(보세 운송 또는 타소 장치) → 보세구역 반입 → 장치 확인 → 수입 신고
→ 심사 → 제품검사 → 수입신고 관리 → 관세 등 제세 납부

영국에서는 농수산물과 식품도 원칙적으로 일반 제품과 동등한 관세, 통관, 검역 제도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나, 농수산물과 식품의 위생검역 제도

및 절차는 일반 제품에 비하여 다소 까다로운 편으로 부가적인 통관서류(수출허가서나 위생증명서 등)를 요구하고 있다.

영국의 농수산물과 식품의 수입 제도는 수입통관, 관세, 위생검역, 수입규제 제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WTO와 EU의 규정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입허가 신청 절차

영국의 수입통관은 크게 EU 역내 국가산 상품과 역외산 제품의 수입통관으로 대별되나, 통관 양식은 동일하다.

농수산물과 식품 수입 통관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다.

- SAD 양식
- Health Certificate
- C105a, 105b, 109a 양식
- Commercial Invoice
- B/L
- Payment form(L/C 사본 등)

농산물 중 산동물과 육류 등은 EU 동물 검역제도(Veterinary Checks)에 의거하여 사전 검역과정을 거친 후에야 수입이 가능하며, 식물과 식품, 어류 등은 위생 검역증(Phytosanitary Certificate)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영국은 식물을 병충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Plants, Plant Products, Forest Tree Plants 등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필요한 검역 조치를 취한다.

영국 환경농촌식품부(DEFRA)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식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입 허가서를 발부받도록 하거나, 생산국에서 식물 위생에 문제가 없다는 Phytosanitary Certificate(위생 검역증)을 발부 받도록 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위생검역증을 수반하는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영국 정부가 요구하는 사항이 이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여 이상이 있을 시에는 샘플 테스트를 한다. 위생검역증의 유효조건은 1) 수송일 14일 전의 인스펙션, 2) 위생검역증은 식물이 생육한 지역의 공공 Plant Protection Service 기관에서 발부, 3) 식물 위생검역증의 Plant Protection Service 기관이 지정한 검역관의 서명, 4) EU지역이 아닌 국가에서 위생검역증이 발부되었을 경우에는 영어 번역본 첨부 등이다.

영국의 통관 신고서 양식은 Form C1600이다. 그러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된 서류나 컴퓨터 기록도 수용한다. 수용 가능한 통상적인 서류는 선적 계산서, 항공 계산서, 용기 적하목록, 송장, 탁송 기록(전산화된 제품 목록 시스템) 등이다.

수입 신고서는 제3국에서 수입된 제품을 대상으로 적용되는데, 주로 SAD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다.

영국의 관세제도는 EU의 관세제도와 동일한데, EU 회원국 제품의 통관 시에는 공동 관세를 적용하고, 농산물에는 공동 농산물정책(CAP) 규정에 의한 관세를 적용하며, EU 역외국 제품의 통관시에는 영국의 관세율 표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식품기준법(Food Standards Act)

영국 정부는 1999.6월 식품기준법안(Food Standard Bill)을 하원에 제출하였으며, 1999.11월 영국 의회의 승인과 여왕의 재가(Royal Assent)를 통하여 식품기준법(Food Standards Act)을 공포하였다.

영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은 식품기준법의 일반적인 식품위생 및 식품안전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데, 건강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고, 사람이 섭취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오염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수입식품은 유통, 보관, 보세지역, 소매, 판매, 도매 등 어떤 단계나 시점에서든 안전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식품표시 규정

식품표시 규정은 식품기준청의 식품표시 소비자 보호부에서 관장하는데, 언어는 영어를 사용한다.

식품명은 명칭 또는 종류가 될 수가 있으며, 사업체명, 브랜드명, 또는 기타 원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식품명을 대체할 수는 없다.

수입신고 방법

화주가 직접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다.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대부분 세관과 전산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전산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서류는 전산 입력 후 별도로 제출한다. 수입신고 서류를 세관에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공조달 시장

영국 조달시장 동향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공공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공공 부문이 행하는 물품, 서비스, 건설 등에 대한 지출인 공공조달 규모는 국가별로 GDP의 10~15%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전체 공공조달(government procurement) 규모는 약 1,870억 파운드, GDP의 13% 수준이다.

글로벌 재정위기 이래 영국 정부는 국가채무 감축 및 재정건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출범한 보수당 단독정부도 공공조달을 재정절감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연립정부 시절인

2014년 4월에 내각사무처 산하에 CCS(Crown Commercial Service)를 확대·신설하여, 공공조달의 중앙 통제를 더욱 강화한 바 있으며, 대형 공급사와의 계약시 회계공개(Open-book)를 요구하는 등 협상력을 강화하고, 전자역경매, 상용물품 기본계약(Framework Agreement) 확대 등 공공지출 절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중이다.

특히 세계최대의 의료 바이어인 ‘국민보건서비스(NHS)’는 2009년부터 조달시스템 개혁의 일환으로 기존의 국내유통 중심의 다단계 납품체제를 쇄신, 전체공급물량의 90% 이상인 아시아 소재 제조사들로부터 유럽의 중간상 개입 없이 직접 납품을 받는 ‘제조사직납체계’ DFM(Direct from Manufacture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영국 공공조달 시장 관행상 영국 내에 물류 및 사후관리를 책임질 지사 또는 에이전트가 입찰에 참여하는 주체가 되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가격거품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제조사직납체계는 막대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개혁은 우정/물류사업자인 로열메일, 통신 인프라 공급사 BT 등이 벤치마킹하면서 점차 공공바이어 전반으로 확산추세에 있다.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원천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가능한 계약을 분리하여 발주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입찰정보 제공 및 하도급 기회 제공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제품혁신 지원, 불공정 관행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11년초에 조달공고 통합 조회 웹사이트(Contracts Finder)를 구축한데 이어 에너지, 행정용품, 시설공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향후 3~5년 동안 있을 조달사업을 미리 공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조달품목은 공공기관에 따라 다양하나, 주요 품목은 IT 장비 및 서비스, 통신장비, 군수용품, 의약품, 사무용품 및 가구, 식품, 청소 서비스, 인쇄, 출판물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영국 조달시장 특성 및 진출전략

영국이 유럽연합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공공조달 또한 EU 공공조달지침과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르므로 일정 한도액 이상의 조달건에 대하여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은 없으나 언어장벽 및 A/S 등 문화적·지역적 특성 등으로 인해 한국기업의 진출은 부진한 상황이다. 계약담당자들이 한번 검증된 공급자와의 관계 유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급자들이 들어갈 틈이 작고 아직까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이 낮아 영국 조달시장 진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영국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으며 조달과정 및 절차가 통상적으로 우리보다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군수 및 시설·건축, 플랜트, 저탄소 관련 산업 등에 상대적으로 한국기업들의 진출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수요기관의 하나인 NHS의 경우 영국 정부의 재정감축 정책에 따라 조달금액 축소가 불가피하나, 국제적인 품질 수준을 확보한다면 상대적인 가격경쟁력을 활용하여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중요한 공략 대상이다.

영국의 경우 가격만 써내는 입찰이 거의 없고 통상적인 경우 제안서 제출후 협상에 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달기관이 요청하는 사항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2014년 4월 EU 공공조달지침이 개정·발효됨에 따라, 영국도 그에 준하여 2015년 2월 국내 조달규정(Public Contracts Regulations 2015)을 개정한 바 있다. 전자조달 강화 등 기존에 비해 조달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중소기업 참여촉진을 위한 계약(lot) 분할 허용, 입찰자 보유 전문인력 및 사회적 요소(social aspect)를 평가항목으로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영국 조달시장의 경우 한국의 물품 중심의 공공조달 거래 관행과 달리 물품과 서비스가 혼합된 복합적인 구매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

요하며 하나의 조달구매 건임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분야를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만 초점을 맞춘 중소기업들은 조달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 때문에 조달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주계약자, 즉 대기업이나 현지 유통업체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들에게 먼저 제품 내지 서비스를 어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 조달시장에서 성능과 품질이 검증된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EU 및 국제기구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한국의 조달청에 설치된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헬프데스크’나, 영국 런던무역관에 설치된 ‘해외공공조달 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진출 관련 자문을 얻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투자환경

용이하고 신속한 기업 설립 절차

기업설립은 신고제로 필요한 서류, 정보만 갖추면 2~3일에 설립 가능하며,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당일 설립이 가능하고 설립증도 발급 받을 수 있다. 영국 내 기업설립은 명목상 출자금 1파운드로 가능하며, 등기이사의 수에 제한이 없어 실질적으로 1인 창업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다. 특히 온라인 기업설립 서비스 시장이 발달해 있어 거의 무료로 1시간 이내에 기업을 설립할 수도 있다.

녹지 지역과 개발지 내의 미사용 부지는 물론, 양질의 현대적인 산업 부지도 영국 전역에 산재해 있으며, 복합적인 대규모 산업설비를 신속하고 훌륭한 수준으로 건설한 세계적인 수준의 건설 및 토목공사 산업도 보유하고 있다. 지정된 ‘지원(assisted)’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은 보조금과 기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북아일랜드에는 투자 지원 인센티브가 풍부하다.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영국은 기업에게 낮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경제적 안정, 그리고 성장과 이익을 장려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주요 산업국들 중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익에 대한 부가 지방세도 일체 부과하지 않고 있다.

기업들에 대하여 비록 개별적인 근거에서 과세를 하고 있지만, 영국에서는 그룹 내 한 기업이 낸 이익을 그룹 내 다른 기업이 낸 손실로 상쇄할 수 있다. 과학 연구공제(SRA)는 건물, 공장, 기계설비에 드는 자본경비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개발 비용을 처음 1년 동안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기계설비와 공장에 대한 투자는 수지감소 원칙에 따라 1년에 25%의 세금을 공제받게 된다.

이익금의 해외 송금 등 외환 관리에 어떠한 규제가 없으며, 배당금 해외 송금에 대한 원천 과세도 없고, 이중과세방지협정 역시 원천과세 없이 이익금을 지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계를 갖추고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와 디자인 개발

영국의 대학들과 과학 연구소들은 그들의 학문적 성과를 상업적 영리 사업에 응용하기 위하여 기획된 공동 벤처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기업에 도움이 되는 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외국 기업들이 영국 대학들과의 연구 협력을 통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연구소는 캠브리지 대학의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의 명성으로 인하여 최초의 미국 이외 지역의 연구소 소재지로 영국을 선택했다. 영국은 170개 이상의 계약 연구단체들이 어느 유럽 국가들보다 많은 임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런던, 세계의 금융 중심지

런던은 뉴욕, 도쿄와 더불어 밤낮 없이 움직이는 전 세계의 자금 및 투자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국제금융 중심지로, 자금 조달과 전 세계의 프로젝트 동향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 2014년 기준, 세계 외환거래의 38%, 주식거래의 46%가 런던에서 이루어져 세계최대의 금융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런던이 세계최대의 거래량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품목은 비철금속(80%), 원유(50%), 탄소배출권(94%), 현대미술품(55%), 유물/골동품(35%), 도서(25%), 음악(32%), 상업선박(30%), 해운(60%) 등이 있다.

런던에는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증권 거래소, 외환 사업체, 국제 채권 업체들이 소재하고 있으며, 런던은 유로화 거래, 유로 은행 거래, 보험업, 선물매매, 선택매매, 펀드운용 등의 중심지이다. 은행 수만 보더라도, 파리의 280개, 프랑크푸르트의 250개에 비하여 런던에는 70개국의 550개 이상의 은행들이 자리 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금융서비스 단체들이 브리스톨, 에든버러, 리즈, 맨체스터를 포함한 영국의 여러 도시들에 산재해 있다.

용이한 국내 및 해외시장 접근성

영국에 소재한 외국기업 10개사 중 9개사가 전 세계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영국의 통합 수송망은 유럽 경제구역 전역으로 원자재와 제품들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배달해 주며, 광범위한 무료통행 고속도로와 도로망은 영국의 주요 대도시들과 산업 중심지들을 공항과 항구로 연결해 주고 있다.

영국 전역 어디에나 100마일 이내에 컨테이너 항구가 소재하고 있다. 대부분의 항구들은 민영화되어 있으며, 트럭이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 다량의 컨테이너 운송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영국의 항구에서는 유럽 본토로 향하는 선박의 출항이 매일 300회 이상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5억 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



영국에 기반을 둔 2만여 개의 운송회사 수는 화물요금이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으며, 영국의 물류회사들과 범유럽 중개업체들은 포괄적인 서비스와 계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hannel Tunnel은 육로와 철도로 영국을 유럽지역과 연결하고 있다. 파리와 브뤼셀 등도 런던에서 기차로 3시간 이내에 위치해 있다.

런던의 히드로 공항은 유럽의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많은 100곳 이상의 유럽 도시들과 직항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20곳 이상의 지방 공항들도 영국의 도시들로 취항하고 있다.

투자자를 위한 영국 정부의 지원

영국 정부는 R&D 분야에 상당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세금우대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해외 기업의 R&D 분야 투자를 촉진하고 영국을 이 분야에서 매력적인 투자지역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되어 적용된다. 영국에서는 중소기업은 고용인원 249명 이하인 기업들이며, 영국기업 총수의 99.9%를 차지하며, 250인 이상은 대기업으로 분류한다.

그룹 형태의 기업은 모기업과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모든 계열회사가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대기업에 대한 세금우대 정책

- 대기업은 R&D 분야에 대한 총 비용의 최대 125%까지 세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R&D로 인하여 발생된 지적재산권의 소유 유무와는 무관하게 세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음.
- 해외의 모기업과 영국에 위치한 자회사 간의 연구개발 업무에 대한 계약에 의하여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국 내 자회사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과 대기업 공히 12개월 이내에 소요된 R&D 비용이 최소한 10,000파운드 이상이어야 세금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이러한 비용 중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됨.
- 토지매입을 제외한 R&D 업무와 관련하여 고정자산에 투입된 모든 비용도 세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우대 정책

- 중소기업은 R&D 분야에 대한 총 비용의 최대 150%까지 세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음. 즉, R&D 분야의 세금공제(tax credit) 요건에 해당하는 자본손실(tax losses)이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감면은 국세청(the Inland Revenue)으로부터 현금환불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R&D 비용 100파운드 당 최대 24파운드까지 환불됨. 환불은 원천과세/정산(PAYE/NI) 형식으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처리됨.

■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R&D 분야의 일반적 비용 항목

-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력의 인건비
- R&D 프로젝트에 투입된 외부 용역비용
- R&D 업무에 소요된 소모품 비용
- R&D 세부 분야에 대하여 제3자와 체결한 하도급 비용

세계 공통의 언어인 영어

세계의 공통 언어인 영어 사용국으로서, 제2외국어가 아닌 영어로 원활한 비즈니스와 생활이 가능해 불필요한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임금과 높은 물가수준은 부정적 요인

세계 최고 수준의 고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기업 투자의 기본적인 회피 요인으로 작용한다. 물가수준이 매우 높아 기업의 운영비용 부담이



크고, 특히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하여 사무실 임대료와 주재원 주거비용 부담이 크다.

투자관련 규제내용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

영국에는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 있다. 사업 인허가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업종은 아래와 같다.

- 사업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업종:
 - 금융 서비스, 의약품, 우편, 주류 판매, 유전 개발, 전력, 가스, 통신, TV방송, 항공, 폐기물 처리, 食肉(가공, 소매) 등
- 사업 등록을 필요로 하는 업종:
 - 의료기기, 의료·복지 서비스, 도박장, 폐기물 수송·브로커, 식품 판매, 양계장, 낙농업 등

외자 장려 업종

고부가가치 분야나 영국이 앞서 있는 산업 분야(IT, 전자공학, 바이오 등의 하이테크 산업, 자동차, 연구개발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외국 기업의 투자에 대하여 체재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으며, IT 등 전문직의 노동허가증 발급 규제도 완화하고 있다.

외국 기업의 토지 소유 여부(조건 등은 지역에 따라 상이)

영국에는 외국 기업의 부동산 구입 또는 임차에 대한 규제가 없다. 영국에서는 토지의 최종적인 소유권은 왕실(The Crown)에 있다. 토지 소유의 형태로는 Freehold와 Leasehold가 있고, 각각 소유권과 임차권에 해당한다.

영국에 거점을 설립하는 기업은 공업용 부동산은 Freehold, 오피스 물건은 Leasehold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산업 개발을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있으며, 각 지자체 개발계획국으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상공업 부동산 및 각 지방의 개발, 건축 규제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투자유치 기관에 문의가 가능하다.(투자 제도, 투자 촉진 기관 등은- Ⅲ 투자 촉진을 시행하는 기관을 참조)

영국에서는 비거주자도 국내 규제에 따라 토지 소유가 가능하고, 외국 기업의 토지 소유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다. 토지 소유의 절차는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왕실 토지등기소(Her Majesty's Land Registry)에서 토지 소유권을 등록한다. 상업용 부동산의 Leasehold 기간은 통상 15년이고, 5년마다 갱신된다. Freehold는 무기한 계속될 수 있다.

토지의 구입과 임차 시에는 양도증서 작성 비용, 인지세(구입 시, 상세한 것은 아래 참조), 지방 자치체의 조사비용, 은행 송금수수료 등 법적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물건의 소개를 부동산 업자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로 연간 임대료의 약 10%를 지불하여야 한다.

영국에는 투자 목적의 부동산 구입이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부동산 구입 등의 경우에도 제한이 없는데, 부동산을 구입할 때에는 인지세(Stamp Duty Land Tax)라고 불리는 고정 자산세가 부과된다. 인지세율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가격	인지세율	인지세율(최초주택구입자)
£ 125,000 이하	0%	0%
£ 125,001 ~ £ 250,000	1%	0%
£ 250,001 ~ £ 500,000	3%	3%
£ 500,001 ~ £ 1million	4%	4%
£ 1million 초과	5%	5%



비거주용 부동산에 거주하는 기업이나 그 외 점유자에게는 통일 사업세 (Business Rates)라는 지방세가 부과된다. 과세 평가액은 5년마다 재평가되며, 점유 물건의 임대료 해당 금액에 정부에서 정한 요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하여 각 지방자치체가 설정한다.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의 세액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에 나타나 있다.

- 잉글랜드, 웨일즈: <http://www.local-regions.odpm.gov.uk>
- 스코틀랜드: <http://www.scotland.gov.uk>
- 북아일랜드: <http://www.dfpni.gov.uk>

자본금에 관한 규제

공개유한책임회사(Public Limited Company)는 사업 개시에 앞서 최저 5만파운드의 발행 완료 주식 자본을 소유하면 된다.

영국은 고용창출, 지역개발에 대한 공헌, 신제품 및 신기술의 도입, 경영 관리 기술의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 자본의 진출을 환영하고 있으며, 국내 자본과 차별 없이 자유롭게 경합시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자기 자본금 등의 규제에 관해서는 노동 허가, 입국 허가신청 등을 참조하면 된다.

국산화율 규제

WTO 및 OECD 규정에 따라, 영국 정부는 투자 프로젝트 관련 기계나 조립부품 등의 현지 조달을 강요할 수 없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운영 및 진출 지역에 대한 경제 공헌의 관점에서 현지 조달을 높이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취업비자

외국인이 영국 내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영국 측 입장에서 가치가 높은 이주민을 위한 Tier1 비자, 숙련근로자(skilled workers)를 위한 Tier2 비자, 일시노동자를 위한 Tier5 비자 등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비 EU 국민이 영국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려면 T2(General) 비자를 받아야 한다.

Tier1 비자는 특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Exceptional Talent)나 기업가(Entrepreneur, Graduate entrepreneur), 투자자(Investor) 등에게 발급되며 왕립협회, 예술진흥회, 학사원, 왕립미술원의 추천을 통해 연 1천명으로 한정되어 있다.

기술인력을 위한 Tier2 비자는 일반취업(General), 종교취업(Minister of religion), 스포츠인(Sportsperson), 주재원(Intra company transfer) 등에 발급되며 같은 회사에서 영국지사(혹은 본사)로 발령을 내는 경우는 Tier2(Intra company transfer) 비자를 받아야 하며 통상의 경우 풀타임 취업을 위해서는 Tier 2(General) 비자를 받아야 한다. Tier2 비자의 경우 발급여부가 신속하게(10일 목표) 결정되는 급행제도(Tier2 priority applications)가 있으나 1일 신청건수가 제한되어 있으며 별도로 큰 수수료 부담이 있다.

일반취업 비자인 Tier2(General)는 영국회사로부터 스폰서십 증서번호가 담긴 잡오퍼레터(job offer letter)를 받아서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 최대 3년을 받을 수 있고, 추후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연봉 15만2,100파운드 이상인 경우는 상관없으나, 동 금액 미만 근로자의 경우 현재(2013.4.6~2014.4.5) 연간 비자발급 허용인원이 2만7백 명으로 한정되어 있다.

취업비자의 발급은 기본적으로 점수제(points-based system)의 의해 결정되는데 Tier 2 비자의 경우 스폰서십 증서 획득, 잡오퍼 소득, 영어



능력, 재정증명 등으로 구성되며, 영국회사의 스폰서쉽과 함께 속성 (Attributes; 스폰서쉽 및 소득)에서 50점, 영어능력에서 10점, 재정증명(Maintenance)에서 10점을 최소 득하여야 한다.

Tier 5 비자는 예술·체육 활동, 자선단체 활동, 종교활동, 워킹홀리데이 (Youth mobility scheme으로 불림) 등 영국내 일시적인 취업활동을 위해 발급된다.

Registered Traveller Scheme

영국은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5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입국절차를 간소화해주는 Registered Traveller Scheme(RTS)를 2014년 9월부터 운영중이다. 이는 영국의 국경 안전에 위협 요소가 적은 상기 5개 국가 국민중 비즈니스, 투자, 관광 등 목적으로 영국을 빈번히 방문하거나 영주권 또는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가입이 승인될 경우 입국 절차를 간소화 해주는 일종의 멤버쉽 서비스이다.

이와 관련 주영 대사관은 RTS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되도록 영국정부에 적극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5. 9월 영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을 RTS 대상국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2015년 10월 현재 영국 관계당국은 한국인의 RTS 적용을 위해 시스템 보완 및 테스트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늦어도 2016년초에는 영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도 RTS 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영국정부의 심사를 거쳐 RTS 가입이 승인된 우리 국민은 영국 입국시 입국 서류 작성의무가 면제되고 UK/EU 레인 및 ePassport Gates를 사용할 수 있어 영국 입국시 그간 느껴왔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제도

2005.4.18일 이후 국세청(Inland Revenue)과 관세청(HM Customs & Excise)이 통합되어 HMRC(HM Revenue & Customs)가 새로 출범하여 업무를 통합하게 되었다. 영국의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Income Tax)

- 과세 년도: 매년 4월 6일~다음해 4월 5일
- 과세 대상: 영국 내 소득 발생 내, 외국인
- 원천징수 제도와 소득 신고
 - 원천징수(PAYE, Pay As You Earn): 대부분의 영국 납세자가 이에 해당된다. 근로 소득과 경비, 후생적 급여 보고 체계를 통해 전체 납부해야 할 세액이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종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자진소득신고(Self Assessment): 자영업자는 SA Form을 작성해 제출하여야 함.

■ 소득세율

소득	소득세(예금소득 제외)	예금 소득세	배당 소득세
0 ~ £31,785	20%	20%	10%
£31,786 ~ £150,000	40%	20%	10%
£150,000 초과	45%	20%	10%

- 회계연도 2014/15년 비과세 소득(Tax-Free Allowances): 10,600 파운드

법인세(Corporation Tax)

■ 법인세율

Rates for Financial Years Starting on 1 April				
	2012	2013	2014	2015
Small Companies Rate*	20%	20%	20%	20%
Small Companies Rate can be claimed by qualifying companies with profits at a rate not exceeding	£300,000	£300,000	£300,000	£300,000
Marginal Small Companies Relief Lower Limit	£300,000	£300,000	£300,000	£300,000
Marginal Small Companies Relief Upper Limit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Marginal Small Company Relief(MSCR) Fraction	1/100	1/100	1/100	1/100
Main rate of Corporation Tax	24%*	23%	21%	20%
Special Rate for unit trusts and open-ended investment companies	20%	20%	20%	20%

법인 신고

회사가 영국 회사 등기소(The Registrar of Companies)에 등록을 하면 동 사실이 영국 국세청(Inland Revenue)에 통보되며, 영국 국세청은 통상 CT41-G 서식을 당해 회사로 발송한다. 영국 내 해외법인의 연락사무소, 지점 및 영국 자회사의 법인세상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사무소가 지점, 대리인 또는 조세 조약상의 고정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즉 영업상의 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연락사무소의 경우 영국에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음.
- 지점(Branch): 지점이 영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점의 소득에 대해 영국 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음. 지점의 소득이란 영국에 귀속되는 소득을 의미함.

- 영국내 자회사(Subsidiary): 해외 법인의 영국 자회사는 영국 거주 법인이므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영국에서 법인세를 부과함. 단,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일정 한도 내에서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영국에서 설립되지 않은 회사라도 영국에서 주로 관리되고 통제되는 회사라면 영국 거주법인으로 간주되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영국에서 과세함.

부가가치세(VAT)

영국 정부는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VAT를 인하, 2009년에는 한 시적으로 VAT 세율로 15%를 적용하였으나, 2010년에 17.5%, 2011년에 20.0%로 다시 인상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1979.10.24일부터 금융, 보험 등 서비스 부문의 흑자 확대를 겨냥, 정부의 외환 통제를 전면 철폐하고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에 의한 환율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누구나 목적에 관계없이 자유로이 외환을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자유로이 파운드화를 차입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 금 또한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다.

과실 송금

영국은 외국 투자가가 정당하게 취득한 이익금의 대외 송금, 곧 과실 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배당, 원본, 이자, 로열티의 송금이 자유롭다.

영국에서의 자금조달 제도

1979.10월에 외국 외환 규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국내 자금, 해외 자



금 모두 무제한으로 조달 가능하다. 이는 파운드에 한정되지 않고 유로, 미달러 등 외국 통화도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영국에서는 외국 기업의 국내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관한 제한이 없다. 단, 금융 기관과의 각각의 거래에 따라 조건이 다르고, 모회사로부터의 보증이나 그 외 다른 형태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다. 대외 차입에 대해서도 규제는 없고 영국 통화 이외의 외화로도 차입도 가능하다. 하지만 국제 연합이나 유럽 연합의 정치적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와의 거래는 금지되고 있다. 또한 통상의 유가 증권이나 금융 상품의 규제가 없고, 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한은 없다.

은행이나 신용금고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신규사업 등록자나 기 영업 중인 사업체들을 상대로 폭넓은 사업자금 대출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지 자금조달이 필요할 때 현지 거래은행이나 전국 상업금융중개인 협회(NACFB)에 등록된 브로커를 통하는 방법이 보편적이며 한국 업체들의 경우 영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은행들의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현지 진출한 국내은행 현지법인 및 지점들의 경우 보통 개설 3년 미만의 현지 진출 업체에 대한 최초 대출 시는 한국 본사의 보증을 요청하는 예가 많으며 이후에는 신용 평가 기관을 통한 등급에 따라 대출 사안을 결정하고 있다. 현지 지사의 경우 올 4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부과에 따라 대출시 기존 대출 금리에 0.36%의 추가 금리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노무 관리

고용관련 규제

영국 내 종업원 고용은 신문 광고, 지역 직업안정소(Job Centre), 전문

직업소개소(Recruit Agency)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 경제분석가 등의 고급 인력 채용은 Recruit Consultancy로 불리는 전문업체를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 조건

종업원은 고용계약이 시작되기 전에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고용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장 일반적인 고용 조건으로는 의료 진단(Medical Examination), 영국 내 취업이 합법적임을 입증하는 여권 사본, 노동 허가증(Work Permit-비 EU 국민 해당) 제출 등이 있다.

고용주의 고용 조건에 대한 문서화 의무

고용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고용주는 고용조건에 관한 문서를 작성, 근무 시작 후 2개월 내에 종업원에게 전달할 법적 의무가 있다. UK Employment Law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없음을 명기해야 한다.

- 고용 개시일
- 급여액, 급여 계산 방법, 급여 지급일
- 근로 시간
- 휴가
- 병가
- 연금
- 고용 계약 만료를 위한 통지
- 직책(Job Title) 및 담당 업무
- 근무지
- 징계 정책 및 불만 사항 처리 방법

상기 고용 조건들을 보다 상세한 고용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상세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고용주와 종업원 간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고 보너스 지급의 재량권이 고용주와 종업원 중 누구에게 있는지 등과 같은 발생 가능한 분쟁 사항도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 특히 상위직 종업원과의 고용계약시 이러한 상세한 고용 계약서의 작성이 권고되며, 고용규모가 클 경우 법률회사로부터 계약서 내용을 자문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업원의 법적 보호권(Mandatory Rights)

영국의 고용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고용주는 고용 조건에 관한 문서를 종업원에 전달해야 하며, 이러한 고용 조건은 법령이 정한 최소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최소 기준 또는 법적 보호권은 종업원의 국적에 관계없이 통상 영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에게 적용된다. 종업원의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다.

- 고용 종료 통지권(Right to Notice of Termination): 1개월 이상 근무한 종업원은 최소 1주의 고용 계약 만료 통지 기간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통지 기간은 2년의 근무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매년 1주씩 증가(최고 12주까지)함. 즉, 1개월 이상 근무한 종업원은 최소 1주의 고용 만료 통지 기간을 가질 권리가 있음.
- 평등 지급권(Right to Equal Pay for Equal Work): 지급 평등법(Equal Pay Act 1970)에 따르면, 모든 종업원은 동일한 업무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음.
- 유급 휴가권: 종업원은 최소 연 5.6주(28일, National Holiday 포함)의 유급 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음.

❏ 최저 급여(Minimum Wage)

대상	최저 급여(2015년 10월부터)	비고
21세 이상	시간당 £6.70	21세 이상
18세~20세	시간당 £5.30	18세~20세
16세~17세	시간당 £3.87	16세~17세
견습생	하루당 £3.30	19세이상 경우, 첫째만 적용

※ 2016년 4월부터 만 25세 이상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가 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이 의무화되었으며, 시간당 £7.2 적용 예정

비정규직 근로자(Agency Workers)의 지위 향상

영국 정부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등한 대우에 대한 법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가 12주 이상 근무하게 되면 적용된다. 포함되는 혜택으로는 유급 병가, 연금 등 있다.

출산, 육아관련 휴가

영국정부는 출산, 육아관련 휴가에 대한 여성근로자 권리 향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을 발표하였다. 이 법은 2008.10.5일 이후 출생 자녀를 둔 여성들에게 적용된다.

출산 휴가는 총 52주로 26주의 기본 출산휴가와 26주의 추가 출산휴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존의 경우 26주 기본 출산휴가 기간만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기존에 제공하던 인센티브(개인의료보험, 생명보험, 회사 자동차, 육아 지원금)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으나, 개정법에 의하면 총 52주의 출산휴가의 모든 기간에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기존에 제공하던 모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출산휴가 기간의 실적 보너스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의 타협이 필요하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많다.

성차별 금지

영국 정부는 1975년부터 성차별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고, 영국 정부는 강화된 성차별 금지법을 2008.4.6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강화된 주요 내용은, 고용주는 근로자가 회사 내 직원이 아닌 제3자에게서도 성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가 임신, 출산 휴가와 관련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할 때 임신전의 대우와 임신후의 대우에 대한 차이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진다.

근로자의 추가 출산휴가 기간(26주) 동안에도 고용주는 그 이전과 같은 대우(각종 혜택)를 제공해야 하고, 근로자의 의무 출산휴가 기간에는 그 기간 동안의 실적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고용 종료(Termination of Employment)

고용주가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고용 종료와 관련된 종업원의 권리이다. 고용 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종업원이 계약상 또는 법령상의 고용 종료권을 갖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1) 상호 합의에 의한 고용 종료

고용 계약서에 고용 기간을 명시한 경우, 동 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로 종업원은 이에 불구하고 적법한 소송 제기 가능하다.

2) 종업원의 자발적인 고용 종료

종업원은 고용 계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정한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고용주가 종업원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3) 고용주의 계약상 고용 종료 통지

고용주가 고용 계약에 따라 종업원에게 고용 종료를 통지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종업원은 적법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해고

고용주는 고용 계약 종료를 종업원에게 적절히 통지함으로써 고용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법정 최소 통지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은 종업원의 근무 기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통지 기간은 계약상 통지 기간이나 법정 최소 통지 기간 중 긴 기간이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또는 계약서상 통지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종업원은 타당한 기간 동안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통지 기간은 관련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항상 법정 최소 통지 기간은 준수되어야 한다.

5) 고용계약 종료시 수당

종업원은 정리 해고에 의한 고용 종료의 경우가 아니면 고용 종료 시 법정 수당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종업원이 정리 해고로 해고된 경우, 동일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법정 정리 해고 수당 (Statutory Redundancy Pay)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정리 해고수당은 주급(현재 최고 270파운드)에 근무 연수(현재 최고 20년)와 연령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현재 최고 법정정리 해고수당은 8,100파운드이다. 종업원은 또한 특정한 경우 고용 계약 종료 수당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향상된 정리 해고 정책을 운영할 경우 계약상의 권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있는 경우 종업원은 법정 정리 해고 수당 외에 퇴직 수당과 같은 혜택을 갖게 될 수도 있다.

6) 해고 관련 규정

고용 계약에 의하여 통지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복리 후생비가 있다면

복리 후생비 포함)을 함으로써 통지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실제로 고용주들은 종종 계약서상 언급이 없지만 통지 기간 동안의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함으로써 통지 기간 없이 계약을 종료한다. 통지 없이 그러한 지급을 할 계약상의 권리가 없는 경우, 이는 기술적으로 계약위반이 되며 종업원에게 수당 지급이 사실상 손해배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당 해고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종업원이 계약서상 의무를 매우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예: 중과실) 고용주는 통지 수당 지급 의무 없이 즉시 통지(Summary Notice)로 고용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계약서상에 즉시 해고에 대한 특정한 상황을 기재할 수 있다. 종업원은 부당한 해고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공정 해고 조건(이유)

- 무능(Capability): 예를 들어, 종업원이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바람직하지 않은品行(Misconduct)
- 정리 해고(Redundancy): 보통 고용주가 전체적으로 또는 특정 지역에서 사업을 중단한 경우, 특정 작업에 필요로 하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적어진 경우, 또는 특정 위치에 필요 없는 경우
- 불법 행위(Contravention of a Statutory Enactment)
- 기타 해고를 정당화하는 상당한 이유(Some Other Substantial Reason)

8) 부당 해고

고용주가 정당한 통지 조치 없이 종업원을 해고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러한 일방적인 해고 조치가 종업원의 심각한 부정 행위에 기인된 것이 아닌 이상 고용주가 고용 계약을 위반한 것에 해당, 고용주는 통지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와 복리 후생 급여는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종업원은 적법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9) 인정 해고(Constructive Dismissal)

고용주가 고용 계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종업원은 사임하고, 이러한 사임이 고용주에 의한 부당한 해고 조치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고용주의 심각한 위반의 예는 직급의 하향 조정 및 일방적인 급여 삭감 등이 있다. 종업원은 고용주의 고용 계약 위반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영국 노동시장 통계

내용	2012	2013	2014	2015(8월)
고용인구(16~64세)	29,600,000명	30,090,000명	30,760,000명	31,030,000명
고용률	71.2%	72%	73%	73%
주간 총 노동자 근무시간	934.9백만 시간	949.2백만 시간	987.3백만 시간	996.4백만 시간
고용인구내 실업자 수	2,510,000명	2,390,000명	1,970,000명	1,850,000명
실업률	7.8%	7.4%	6.0%	5.6%

노동관리 유의사항

영국에서 고용주와 종업원의 법적인 권리는 주로 영국의 판례법에서 파생한 계약법과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법령은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고용계약은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많은 영국의 법령이 EU지침의 요구에 따라 발효되었으며, 유럽 법원의 판결이 영국에서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고용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영국에서 고용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보편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며 반드시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사회보장 제도 - 국민보험

영국의 공적 사회보장 제도는 크게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과 국민보건 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로 나누어진다. 동 국민보험 등 록은 종업원이 국민보험국의 지역 사무소에 하도록 되어있으며, 외국인 도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보험은 소득세와는 별도로 소득에 부과되는 강제 보험으로 보험료는 국민보험국(DSS)을 대신하여 국세청(Inland Revenue)에서 징수한다. 보험금 납입 후 65세 이상 남자, 60세 이상 여자로 당시 영국에 거주하 고 있으면 연금 형태로 보험금 혜택을 받게 된다.

- 종업원 부담분: 국민보험 규칙에 따르면 외국 회사에 고용된 종업원이 해외로부터 영국에 파견된 경우 영국에 도착 후 최소 52주간에 대해 서는 국민보험료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음. 동 면제 조건을 충족시 키기 위해서는 종업원이 영국 통상거주자가 아니어야 함.
- 고용주 부담분: 고용주 부담분은 종업원이 국민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함. 그러므로 최소 52주간의 면제 기간에는 고용주 부담분 납부 의무가 없음.

한-영 워킹홀리데이

한-영 양국 청년 대상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 2012.7.9일부터 개시되 었다. 우리나라는 영국의 청년교류제도(Youth Mobility Scheme, 이하 YMS)에 가입함과 동시에, 영국 청년들에게 한국의 워킹 홀리데이 프 로 그램 참여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청년들이 2012년 하반기부터 YMS를 통해 영국에서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18~30세 청년들은 YMS를 통해 2년간 취업 활동을 하면서 영국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영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YMS 인력을 활용하여 노무관리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스트리아

수입정책상의 장벽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으로 역외 제 3국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고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의 결정을 통해 하고 있다. 즉, 수입 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가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역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조치, 수입쿼터 조치 등도 동일하게 취해진다.

통관

개관

수출입 통관 절차는 대부분 운송 회사와 세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필요한 서류로는 Invoice, Packing List, B/L, 원산지증명 등이 있으며 제품에 따라 수출입 허가서가 필요하다. 오스트리아는 내륙국가로서 자국 내에 바다에 인접한 항구가 없는바, 선박을 이용한 화물은 보통 독일의 함부르크 항,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 슬로베니아의 코페 항 등을 통해 수출입 절차가 진행된다.

수입

1995.1.1 유럽연합 가입과 함께 유럽연합 규칙이 오스트리아 법에 우선한다. 오스트리아의 수입 관련 절차 및 규제 사항은 대외무역법(Aussenhandelsgesetz, 2011년 개정) 및 경제부 장관령(1987/630)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 법규에 따르면 수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물품들이 있는데, 동 물품들을 Freiwaren이라고 부른다. 동 물품들은 상기 경제부 장관령 별표 3에 'F'자로 약칭되어 있다. 예를 들면 코코아, 바나나, 원재료, 어류 등이 그것이다.

한편 HS 코드 25-97류, 즉 대부분의 제조 물품은 특별한 요구 없이 세관의 통관 과정에서 수입 허가를 받게 되는데 이같이 수입 허가가 필요한 제품은 다음과 같다.

- 대부분의 농산물(HS 코드 1-24류): 농산물에 관해서는 공식적인 수입 승인서를 신청, 교부 받는데 담당관청은 연방 농업부이다.
- 다국간 섬유 협정(MFA)에 의거한 섬유 및 의류 제품: 셔츠, 블라우스, 니트웨어 외 의류 등 주로 쿼터 규제가 행해지고 있는 품목으로서 연방 경제부를 통해 수입 승인서를 사전에 교부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다.
- 갈탄 및 의약품
- 다만, 363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소량에 대해서는 상기 수입 승인 요건이 면제된다.

수입 통관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선하 증권(B/L, Bill of Landing)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 증명서(Packing List) 및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이다.

통관 절차와 관련하여, 제1단계로 수하인(Consignee)이 수입 통관 대행업체에 세관 등록 번호(Custom Office Register)와 함께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송부한다. 제2단계로 통관 대행업체(Forwarding Company)가 주로 수행)는 선적 서류(Shipping Document)와 수하인(Consignee)의 위임장을 가지고 세관 통관 시스템에 등록(HS 코드, Origin, Invoice Value 등을 입력) 후 수입 승인 번호(ATA No.)를 발급받는다. 3단계에서는 보세 구역(항구 내 창고 등)에서 관세선을 통과한 후 수입품을 반입한다. 물품이 도착한 후 통관 절차를 거쳐 운송에 이르기까지 통상적으로 2~5일 정도 소요된다.

수출

오스트리아의 수출 관리 제도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며 대부분의 수출품은 수출 허가서가 필요 없으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경제부, 농림부)의 수출 라이선스가 요구된다.

수출 허가가 필요한 제품으로는 수출 할당량이 있는 제품 이외에 국내 경제상 수급 조절이 필요한 품목과 같은 특정 농산물 그리고 무기류, 생화학 물질, 민간 및 군용으로 모두 가능한 제품 등과 같은 특수 품목이며,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988.1월부터 대외무역법에 List C를 신설하여 동 리스트 상에 기재된 하이테크 제품을 수출할 경우 경제부의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상품 분류 번호

모든 상품의 수출입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시 정확한 상품 분류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스트리아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주요 인증 제도

CE 마킹 제도

CE 마킹 제도는 공산품에 대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 제도이다. 27개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EFTA 국가에 수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22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킹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부착해야 한다.

CE 마킹 대상 품목 및 규정 지침

품목	규정 지침
가스기기(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2009/142/EC
사람수송용 케이블(Cableway Installation to Carry Persons)	2000/9/EC
저압 전기 기기(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2006/95/EC, 2014/29/EU(2016.4.20.부터 적용)
발화 제품(Pyrotechnic articles)	2013/29/EU(2015.7.1.부터 적용)
민간용 폭발물(Explosives for Civil Uses)	93/15/EEC, 2014/28/EU(2016.4.20.부터 적용)
유류 및 가스 사용 온수 보일러(New Hot-water boilers fired with liquid or gaseous fuels)	92/42/EEC



품목	규정 지침
승강기(Lift)	95/16/EC, 2014/33/EU(2016.4.20.부터 적용)
기계(Machinery)	2006/42/EC
의료기기(Medical Devices)	93/42/EEC
의료용 임플란트(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90/385/EEC
시험관 치료용 기기(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8/79/EC
수동저울(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90/384/EEC, 2014/31/EU(2016.4.20.부터 적용)
무선전신 및 통신 말단기기(Radio Equipment &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99/5/EC, 2014/53/EU(2016.6.13.부터 적용)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89/686/EEC
단순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2009/105/EC, 2014/29/EU(2016.4.20.부터 적용)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	97/23/EC, 2014/68/EU(2016.7.19.부터 적용)
여가용 보트(Recreational Craft)	94/25/EC, 2013/53/EU(2016.1.19.부터 적용)
장난감 안전(Safety of toys)	88/378/EEC, 93/68/eec, 2009/48/EC
건축 관련 제품(Construction products)	205/2011/EU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2004/108/EC, 2014/30/EU(2016.4.20.부터 적용)
측정기기(Measuring Instrument)	2004/22/EC, 2014/32/EU(2016.4.20.부터 적용)
폭발가능성 대비를 위한 장비 및 시스템 (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s intended for use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94/9/EC, 2014/34/EU(2016.4.20.부터 적용)
RoHS2 지침	2011/65/EU

이외에도 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 EEC)을 적용하여,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기준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득해야 한다. 결합 제품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85/374/eec(1999/34/EEC 수정 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 포함)는 결합이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 제품 안전에 대해서는 92/59/EEC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소음과 관련하여, 2000/14/EC 지침에 의거하여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동 지침의 소음 발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에코 라벨링(ECO-labeling)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라벨로 2014.11월 기준 57개 품목군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 에코라벨 대상 품목

- 세제(다목적용 세제, 식기세척기용 세제, 손식기세제, 세탁세제, 비누/샴푸/헤어컨디셔너)
- 의류(섬유 제품, 신발)
- Do-it-yourself(페인트와 바니쉬)
- 전자제품(PC, 노트북, TV)
- 바닥덮개(wooden coverings, textile coverings, hard floor covering)
- 가구(목재가구)
- 정원용품(Growing media 및 Soil improvers)
- 가정용기기(전구, heat pump)
- Lubricants

- 기타 가정용품(매트리스)
- 종이제품(복사용지와 그래픽용지, 티슈페이퍼)
- Laundry detergents, Detergents for dishwashers for professional use
- Ecolabel-Eup project(washing machines, refrigerators)
- 서비스(Campsite services, Tourist accommodation service)

에너지 라벨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7등급으로 구분, 해당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 라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기-건조기 콤비, 식기 세척기, 전구, 전기 오븐, 에어컨, 온수보일러, 자동차 등으로 대상 품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력 소모제품의 기술 진전에 따라 현행 등급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냉장고와 냉동고 등 가전 제품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A++, A+ 등이 나오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개관

2002년 이전 오스트리아에서는 연방정부, 주(州)정부별로 조달을 담당하는 부서가 각각 존재하여 왔으나 200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모두 폐지되고, 현재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세워진 국영 기업인 연방조달 유한회사(BBG)가 조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주(州) 정부 및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에 있어서 반드시 연방조달 유한회사에 대행을 의뢰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州) 정부별로 있던 조달 부서가 폐지됨에 따라 조달에 따른 관련 비용의 절감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규모가 큰 조달의 경우 연방조달 유한회사에 입찰대행을 의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연방 정부 및 각종 국영 기업, 정부 산하 기관 역시 연방조달 유한회사에 입찰을 대행시켜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규모가 큰 입찰이나 공동 입찰의 경우 주로 연방조달 유한회사를 이용하고 있다.

장벽

오스트리아 조달 시장은 외견상 연방조달 유한회사의 설립으로 인해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에 비해서 외국 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평가도 있으나 실제로는 여전히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응찰자 등록회사인 ANKO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낙찰을 받는 경우가 거의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수물자를 제외한 전체 조달 시장에서 다국적 기업의 오스트리아 현지법인을 제외한 순수한 외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5% 이하로 추정된다.

아울러, 국내 입찰의 경우 모두 독일어로만 공고되고 각종 증빙 서류를 비롯한 응찰서류 역시 모두 독일어로 작성해야 하므로, 비독일어권 국가 기업들의 경우 언어적 장벽이 큰 걸림돌 중의 하나이다. 국제 입찰의 경우 외국 기업들이 일부 낙찰을 받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같은 독일어권인 독일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비 방안

정부 조달 입찰의 경우 해당 공고 및 입찰 관련 서류들이 모두 독일어로 되어 있어 오스트리아 현지에 법인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실질적으



로 단독 입찰 참여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역량 있는 오스트리아 현지 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참여하는 오스트리아 유통 바이어를 통한 우회 공급이 바람직하다. 또한, 제품 홍보 및 현지 업체들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되는 관련 전시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 또는 참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오스트리아 바이어들은 장비 관련 제품 구입시 기능성 및 품질에 대한 신뢰를 가장 우선시하는바, 시장 진출에 필요한 관련 인증 및 기술 데이터(Technical Datasheet) 등을 사전에 구비해 놓는 것이 좋다.

특히 한국산 제품 등 시장 인지도가 낮은 제품들의 경우 품질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초기 시장 진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오스트리아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EU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크게 3가지가 있다. 각 회원국 정부, EU 집행위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별히 설치되어 있는 제3의 기관인 유럽특허청이 그것이다.

EU 집행위는 유럽 공동체 상표, 유럽공동체 디자인,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각 회원국 정부는 이를 이행하는 동시에 여타 지재권보호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이와 관련된 법규를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EU 차원에서 통일된 제도의 경우에도 자국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제도를 병행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특허권

유럽에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오스트리아를 포함하여 각 EU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허제도이며, 둘째로는 유럽특허청을 통해 특허를 허락 받는 방법이다. 유럽특허청을 통해 취득하는 유럽특허제도의 경우 출원인이 지정하는 여러 국가에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 특허제도는 27개 EU 회원국 전역에서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 제도와 별도로 현재 공동체 특허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공동체 특허제도란 하나의 출원을 통해 등록 받은 특허로 EU 회원국 전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특허의 무효 또는 침해에 대한 재판도 공동체 특허법원이 전담하는 개념이다. 현재 EU에서 특허권을 보호받는 방법에는 보호지역의 범위에 따라 회원국에 국한된 방법과 EU 전체 차원에서 보호받는 방법이 있다. 즉 보호범위를 회원국에 국한하려면 해당국 특허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고 유럽 차원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민헨에 있는 유럽특허청(EPO)에 출원하여 유럽전역에 걸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유럽특허청이 출원서류 심사를 거쳐 일단 특허를 부여하면 특허소유자는 특허 클레임(scope of protection)의 텍스트를 출원 시 선택한 언어 외 나머지 두 개 공식 언어로 번역된 번역본을 EPO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유럽 전역에서 특허권 보호를 받기에는 충분치 않다. 즉, 대부분의 유럽특허협정(EPC: European Patent Convention) 국가에서는 특허권 보호를 받으려면 또 다시 각국 특허청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 특허소유자는 각국 특허청에 비용을 지불해야 함은 물론 각기 상이한 요구 사항들을 충족해야 하며 각국 공식 언어로 번역한 번역본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추가 비용은 물론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각 회원국 당국에 갱신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다가 특허권을 이전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사용권을 허용할 때 각 회원국 당국에 이를 등록해야 하고 등록 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유럽특허 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것이 큰 단점이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엄청난 유럽특허권의 관리비용을 절감키 위해 유럽국가 가운데 일부 국가 들은 2008년에 일명 런던 협정(2008.5월 발효)이라는 정부간 협정을 맺고 협정국간 특허 내용의 자국어 번역본 요구를 일부 또는 전면 해제함으로써 특허비용을 줄이려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동 협정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EU공동 특허제의 주요 내용〉

- 1회 출원으로 25개 회원국에서 특허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유럽특허제도와는 달리 EU 공동 단일특허를 받은 후에 각국에서 인정받기 위해 다시 행정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 EU 공동 단일특허 출원방법은 현행 유럽특허 출원방법과 동일하다. 즉, 유럽특허청(EPO: European Patent Office)에 출원하여 동 기구로부터 일단 특허를 받아 관보(European Patent Bulletin)에 공고되면 특허 소유자는 동 기구에 유럽특허 등록대장(European Patent Register)에 단일효과(unitary effect)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단일효과가 등록되면 해당 특허권은 각 회원국의 추가 인정 요구 없이 전 EU 25개 회원국에서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유럽특허청은 단일특허효과를 등록하고 특허권이 소멸될 때까지 갱신비용 지불 등 특허권 유지와 관련된 행정을 취급한다.
- 유럽특허법원 창설로 단일제소에 의한 분쟁 해결이 가능해졌다. 즉 EU 단일 특허제도의 또 다른 핵심은 특허 침해시 한 법원에 제소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단일 제소제도(unified litigation system)의 도입이다.

상표권

오스트리아를 포함하여 EU에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각 개별국가의 상표보호 담당관청을 통해 상표를 출원하

고 등록한 후 권리를 행사하는 소위, 국별 상표권이다. 다음으로는 유럽 공동체 상표청에 상표를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를 이용하는 유럽공동체상표이다.

공동체 상표제도는 회원국 특허청이 자국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기존의 상표제도와 병행하도록 하여, 기존의 국가별 등록제도와 공존하고 있다. 공동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표장은 문자, 도형 등은 물론이고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인 입체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동작상표 등도 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체 상표에 대해서는 EU 회원국 내에서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되고 등록 후 10년간 유효하며 계속해서 갱신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체상표 출원은 공동체 상표청, 회원국의 특허청, 또는 베네룩스 상표청을 통해 출원이 가능하며 EU 회원국 언어로 출원하되, 공동체 상표청 공식언어인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중 하나를 제2 언어로 지정해야 한다.

디자인

EU는 디자인의 경우에도 회원국 전역에서 보호될 수 있는 공동체 디자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동체 상표청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공동체 디자인은 물품 자체의 선, 윤곽, 색채, 형상, 질감, 재질 및 장식의 특징 등을 디자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보호기간은 등록 디자인 이 출원일로부터 5년간 단위로 연장하여 최장 25년까지 보호된다.

저작권

EU는 문화적 또는 예술적 작품의 저작권을 작가의 사후, 또는 저작자가 익명이거나 가명인 경우 일반대중이 그 작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다음 해부터 70년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화 및 시청각 작품도



감독 등 저작자의 사후 70년 동안 보호되도록 규정하였다. 음반 저작권은 보호기간이 음반에 고정된 때로부터 50년간이다.

저작자에 대한 재 판매권도 보호되어 판매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재 판매를 통제하고 있으며, 이 재판매권 보호기간도 저작자 사후 70년 동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기간 역시 저작자 사후 또는 최초 공개된 이후 70년간 보호된다.

투자 장벽

투자환경 개관

오스트리아는 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고용증대 기여산업, 수출산업, 수입 대체 및 첨단 기술 산업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 일반적으로 내국인과 다른 특별한 혜택은 없으며, 일반 오스트리아 기업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오스트리아는 국내 및 외국인을 불문하고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하이테크 산업 및 자본 집약적 산업에서 신규 고용 확대가 가능한 분야의 투자 유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섬유, 철강, 종이 산업 등 과도한 시설 투자가 이미 이루어진 산업의 경우 신규 투자 유치 활동은 소극적이다.

오스트리아 내 특정 지역에 대해 외국 기업 유치를 선호하는 정책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개발이 후퇴된 지역, 동구권과 인접한 국경 지역, 철강 산업의 생산 축소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역, 도산 기업 속출 지역 등에 투자할 경우 지방 정부 차원에서 우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오스트리아 투자의 장점으로서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안정, 완비된 인프라스트럭처, 서구 및 동구 시장의 접근 용이성, 안정된 노사 관계와

높은 생산성, 중계 무역지로서의 강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높은 임금 수준과 임금 부대 비용, 느린 행정절차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투자 허가

오스트리아는 거의 전 산업 분야(99.7%)에 걸쳐 외국인 투자가 개방되어 있다. TV 무선 방송은 2002년부터 자유화되었다.

금지 대상 종목은 환경 오염 산업, 국가 독점 사업 등 극히 일부분이다.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 회원국인 만큼, 유럽연합 관련 규정에 부합되게 금지 대상을 통일할 예정이다.

투자 인센티브

첨단 기술 및 고용 효과가 큰 산업, 지역 발전에의 기여 정도에 따라 투자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다. 투자 인센티브는 현금 지원, 사원 교육비 지원, 대출 시의 책임 보증, 우대 금융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특별히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는 없으며, 오스트리아 국내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가 외국인의 투자에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 오스트리아는 고율의 세금이 전반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나, 외국인 직접 투자 증대를 위하여 2005년도 회사 법인세를 34%에서 25%로 인하하였다. 오스트리아 동부 및 남부 국경지대 등 일부 저개발 지방에서는 투자자에 대한 재정 및 세제상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 인센티브에 관한 개별 주(州)정부 차원의 내용을 반드시 사전에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체류허가

3개월간 관광 목적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나, 오스트리아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립을 위한 장기 체류를 신청할 경우에



는 오스트리아 외국인 체류법상 체류허가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한국에서 체류허가를 취득한 후 입국해야 한다.

2006년부터 매 1년 단위로 고용허가를 갱신하도록 주재국 고용체류허가 연장제도가 변경되어 상사 주재원들의 불편이 증가되었다. 단, 체류허가 만료 이전에 갱신을 신청할 경우, 신규 체류허가가 발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 신청인의 체류권리는 최종결정이 날 때까지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운전면허

오스트리아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한국 운전면허증을 오스트리아 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한다. 단, 1997.1.1일 이전에 발급된 한국 운전면허증은 추가적으로 주행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소유한 차로 운전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경쟁정책

오스트리아에 대한 최근 'OECD Economic Survey'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서비스 산업, 회사 설립, 외국인 투자, 경쟁정책 등에 있어서 신규 진입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매거래에 있어서는 자유화를 실시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여타 국가들에 비하여 뒤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오스트리아의 상품규제지수(PMR)는 2008년 기준 OECD 평균 1.34 수준으로, 주요 비교 대상국인 네덜란드(0.97), 덴마크(1.1), 핀란드(1.2), 스위스(1.3), 스웨덴(1.3)에 비해 높으며, 회사 등록 절차 수, 등록 비용, 소매무역업 관련 승인 회수 등에 있어서도 이들 국가보다 부담이 큰 것으로 기술되었다.

외환관리 및 자금 조달

개관

1991년 말부터 외환 거래가 완전 자유화되었으며, 따라서 내국인의 외국 은행 계좌 운용, 국내 기업의 외국환 표시 채권 발행 등이 자유화되었다. 외환 관리는 오스트리아 국립은행(연방중앙은행)에서 집행하나 경상 거래, 자본 거래 등이 모두 자유화되었다.

외환 거래

14,500유로 이상의 외환 거래의 경우에는 실명을 밝혀야 한다. 투자 자금에 대한 과실 송금에 제한이 없으며, 외자에 대한 특별 우대 조치는 없지만 국내 기업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며, 경제적 후진 지역이나 특별 산업 진흥이 필요한 부문에 지원되는 혜택을 국내 기업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 현지 금융 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있어 법적으로 내국 기업과의 차이는 없으며, 기업신인도, 거래 실적 등에 따라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대출금리는 연 1.63-4.73% 수준인데, 2014년 들어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던 대출금리는 2014년 4/4분기를 기점으로 가계 및 기업 대출 모두 대출 금리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금융기관들이 신규 대출에 매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 개인이나 기업 고객 모두 과거에 비해 신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나 2014년 하반기부터 가계 및 기업 대출 모두 그 신용경색 국면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의 대외 신인도

오스트리아의 금융권은 매우 견실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2008년 하반기에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은행들이 국제 신용평가 기관에서 최고 점수인 AAA로 평가 받아 왔다.

同 금융위기 및 2011년 하반기부터 불어닥친 유럽 재정위기 등을 겪으면서 오스트리아 금융 기관들의 동유럽에 대한 과다한 투자 및 이에 따른 부실 우려로 인해 신용등급이 잇달아 강등되면서 오스트리아 금융 기관들의 건전성 및 대외 신인도가 급격히 하락하였다.

2013년 하반기부터 오스트리아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회복되면서 2014년 상반기 들어 국가 및 주요 금융기관들의 신용도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2014년 하반기부터 부실 은행 Hypo의 처리 문제가 다시 표면화되면서 해당 주 정부인 케른텐 주의 신용도가 크게 하락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른 주 정부 및 오스트리아, 주요 금융기관들의 신용도도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외송금 및 환전

기본적으로 해외자본 도입, 수익 송금, 차입금 상환, 로열티 지급 등을 포함한 외국인의 대외송금 및 환전에 제한이 없다. 단, 14,500유로 이상의 외환거래의 경우에는 실명을 밝혀야 한다. 또한, 오스트리아 중앙은행에서 통계처리를 위해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한-오 사회보장협정

사회보장협정

2010.10.1자로 「한-오스트리아 사회보장협정(2010.1.23 서명)」이 발효

됨으로써 5년이하 기간 동안 오스트리아에서 근무하게 되는 상사주재원들은 한국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오스트리아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우리는 연간 10억원, 오스트리아는 연간 1.6억원 상당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 면제 효과 예상). 또한 동 협정 발효로 인해 양국간 연금가입 기간 합산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오스트리아 장기 체류자 및 동포 약 2,000명의 연금수급권도 개선되게 되었다.

진출 유망 분야

오스트리아 시장은 외국 기업 입장에서 전통적인 하이테크 산업, 예컨대 정보기술, 사무 자동화, 전자 및 전기/의료기기, 계측기기 등의 수요가 많아 이들 분야가 상대적으로 진출하기 좋은 여건을 지니고 있다. 화공약품 분야도 진출 전망이 비교적 밝으며, 최근 들어 환경 이슈가 큰 관심을 모으면서 에너지 절약형 제품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호텔 체인을 비롯한 여행 대리점, 패스트푸드 체인 등 서비스 분야도 진출 전망이 좋다. 통신 장비, 항공기 부품, 방송 장비 및 부품 등 주요 프로젝트의 입찰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 분야의 입찰 참가도 검토해 볼 만하다.

오스트리아는 GATT 정부 조달 협정을 준수하고 있어서 각종 정부 조달 혹은 주정부 조달 형태로 많이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들 건설 시장 혹은 정부 입찰 등에 참가하는 것도 오스트리아 시장 진출의 유망 분야 중 하나이다.

이탈리아

경제동향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경제위기 위축은 이탈리아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을 초래했다. 2008년 -1.3%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탈리아 경제는 2009년 -5.5% 성장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2010년 1.3%의 성장을 기록하여 이탈리아 경제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는가 했으나, 그해부터 시작된 유로존 국채위기가 2011.6월말에는 이탈리아로 확산되면서 이탈리아 경제는 2011년 0.4% 성장했으며, 2012년에 -2.4%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뒤 2013년 -1.9%, 2014년 -0.3%로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었다.

■ 이탈리아 주요경제지표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GDP 성장률(%)	0.4	-2.4	-1.9	-0.3	0.5
실업률(%)	8.4	10.7	12.2	12.7	12.4
청년실업률(%)	29.1	35.3	40.0	42.7	-
공공부채/GDP(%)	119.8	127	132.6	133.8	133.1

자료 : 이탈리아 정부, IMF * 전망치

2014.2월 취임한 Renzi 총리는 보다 과감하고 광범위한 제도개혁을 통해 이탈리아 경제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노동 유연화, 관료주의적 병폐 축소(행정절차 간소화), 세금제도 개혁 등 세 가지 목표를 공약하고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5년에 들어 1분기 0.4%, 2분기 0.3% 성장을 연속해서 기록하였고,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15.9월 실업률 11.8%, 청년실업률 40.5%)이나 Renzi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로 떨어짐으로써 본격적인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다만 수년간 유럽 평균을 밑도는 경제성장률은 국내총생산(GDP)의 130%가 넘는 공공부채와 함께 이탈리아가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이다.

이탈리아와의 교역환경

이탈리아 경제상황의 악화는 구매력 위축을 초래하여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08년 35억 달러를 기록한 우리의 대 이탈리아 수출은 2009년 28억 달러로 감소하였다가 2010년 35.6억 달러, 2011년에는 41억 달러로 회복되었으나 2012년 수출은 32.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이후 2013년에 31.3억 달러, 2014년에는 34.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탈리아는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28번째 수출대상국이자 19번째 수입대상국으로, EU 국가중 독일, 영국, 네덜란드에 이어 제4위 교역상대국이다.

■ 한국-이탈리아 교역현황

(단위 : 백만 달러)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우리수출	3,569	4,107	3,261	3,126	3,473
우리수입	3,723	4,374	4,827	5,383	6,261
교역액	7,292	8,481	8,088	8,509	9,734
수지	-154	-266	-1,566	-2,257	-2,788

출처 : 한국무역협회

이탈리아 재정위기는 정부 재정지출 삭감을 초래하여 세계경제 둔화와 더불어 이탈리아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우리의 이탈리아 수출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1.7.1일부터 잠정 발효된 한-EU FTA가 우리와 이탈리아 간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한-EU FTA 발효 이후 우리의 대 이탈리아 무역수지는 적자를 이어오고 있으나, 이는 경제위기로 이탈리아 구매력이 감소하여 우리 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떨어진 반면, 관세효과로 이탈리아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우리 수입이 늘어난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이탈리아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되면 FTA 효과가 본격화 되어 무역수지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인 선박, 열연강판, 자동차 부품과 같은 제품수출은 이탈리아 내수경기가 서서히 회복되어야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 대 이탈리아 무역적자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U 회원국인 이탈리아는 대외교역에 있어서 EU의 공동통상정책을 적용하고 있고, 특히 공동역외관세, 반덤핑관세, 수입쿼터제 등을 다른 회원국들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한-EU FTA가 잠정 발효됨에 따라 양자간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되고 원산지 기준, 기술 기준의 조화와 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로 교역 장애가 많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업체의 이탈리아 수출 시 유의사항

이탈리아와의 교역에 있어서 상기 EU 공동의 정책적인 사항 외에도 이탈리아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조세특혜 비대상 증명서’라고 할 수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2002년 통합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이탈리아 기업이 조세특혜지역 소재 외국기업과 상거래시 관련 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기업이 조세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였는데, 우리나라가 일부 조세특혜지역으로 포함되었

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경우, 우리 수출업체는 대한상의에서 발급한 ‘조세특혜 비대상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동안 우리 대사관은 이탈리아 정부와 교섭하여 우리나라를 조세특혜지역에서 제외시켰으며, 2011년 상거래부터는 더 이상 조세특혜 비대상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였다.

투자환경

이탈리아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탈리아의 투자환경은 사회보장기여 등 높은 노동비용, 노동시장 유연성의 결여, 높은 공공요금, 관료적 형식주의(red tape)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느림의 미학’이 비즈니스 문화에도 만연하여 빠른 속도에 익숙한 우리 문화와의 차이로 인해 투자환경의 어려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2014-2015년도 글로벌 경쟁력 평가에서 이탈리아 순위는 총 144개국 중 49위(참고로 한국은 26위)를 차지함으로써 EU내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GDP 경제 규모면에서는 세계 8위(2.15조 달러, 2014년)로, 부가가치가 높은 명품 소비재 중심의 고급제품 생산 체인과 전 세계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산업 클러스터가 높게 평가되었다. 반면 이탈리아의 문제점으로는 열악한 인프라 상황, 경직된 노동시장, 높은 노동비용, 분쟁해결에 있어서의 비효율적인 사법 체제, 신용대출의 어려움, 조직범죄와 부정부패, 저조한 외국인 직접투자 및 기술이전 등이 언급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신규 고용창출과 기업 성장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Wall Street Journal지와 Heritage Foundation은 2015년 경제자유지표에서 이탈리아를 세계에서 80번째로(한국은 29위) 자유로운 경제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유럽내에서 43개국 중 34위에 해당된다. 경제자유지표 보고서는 노동자유(labor freedom), 청렴도(freedom from corruption), 무역자유(trade freedom) 항목에서 다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GDP의 130%를 웃도는 공공부채, 관료적 형식주의, 행정 비효율 등을 여전히 이탈리아의 거시경제를 악화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요인으로 열거하였다.

2011.11월 취임 후 몬티 총리는 재정안정화조치, 연금개혁, 노동법개정, 행정간소화, 시장자유화 등 경제·사회 구조개혁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이후 2013.4월 취임한 레타 총리 역시 이러한 개혁조치들을 계승하면서 긴축과 성장을 동시에 추진하여 이탈리아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많이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공공부채와 재정적자 비율, 노동시장 경직성, 관료주의, 정치의 불확실성 등이 이탈리아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한편 2014.2월 취임한 렌치 현 총리는 투자증진을 위해 ‘Unblock Italy’라는 혁신적인 정부개혁안을 정부령(decree) 형태로 통과시키며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한 이탈리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Unblock Italy 경제개혁안

2014. 8. 29(금) 이탈리아 내각은 그간 이탈리아 경제에 중대한 부담으로 여겨지던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고, 투자를 증진시켜 경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부 개혁안인 Unlock Italy를 정부령 형태로 통과시켰다.

정상적 집행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관료주의적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정체되었던 현장 시공 개시, 공공사업 건설, 전국적인 전산화, 행정절차 간소화, 생산활동 속개 등을 이루어내기 위한 긴급한 조치들이 포함된

Unlock Italy는 법률화되는 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통해 개혁안 세부내용은 일정부분 수정이 예상되나, 현재 상기 법안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회기반시설) 이미 재정이 확보된 사업의 경우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해소시켜 예정보다 조기 사업개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집행 방안을 승인하였다.

(건축) 대규모 부동산 임대계약에 대한 자유재량을 확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독립적으로 계약 기간과 조건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이탈리아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상업·관광 임대시장 분야에서 발전을 가로막아 왔던 장애요소를 제거하였다.

(EU기금 국내적 관리 강화) EU기금을 국내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활용하고, EU 기준에 부합하는 기금사용을 담보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대한 조사 및 감독권 등 새로운 권한을 총리에게 부여하였다.

(수출 및 투자유치) 이탈리아 상품(Made in Italy) 판매촉진 및 대이탈리아 투자유치를 위한 계획(Plan for the extraordinary promotion of Made in Italy and the attraction of investment to Italy)을 포함시켜, 2015~2017년간 기업들의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농식품분야에서 이탈리아산을 사칭하는 제품에 대한 단속 조치를 강화하였다.

(초고속 통신망) 100 메가바이트의 속도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속칭 ‘시장 실패 지역’으로 불리는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투자비용의 30%까지 세제혜택을 부여하였다.

(에너지) 해외로부터의 에너지 공급을 증대하고 공급처를 다양화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새로운 규칙이 포함되었으며, 먼저절차 간소화 및 국내 에너지(석유, 가스) 매장지역에 대한 투자 제한을 해제하였다.



그 외에도 그간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투자 저해요인으로 지적하여 온 민사소송기간 단축을 위한 개혁조치를 승인하였으나, 동 정책의 확정과 이행이 얼마나 이탈리아에 대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외국인 투자의 일부 제한

이탈리아는 EU 회원국으로서 이탈리아의 투자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EU의 관련 조약과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 1957년 로마조약에 따라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및 여타 EU 회원국에 진출한 외국 투자자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EU 규정에 근거하여, 정부의 영화산업 보조금, EU 역외국 은행에 대한 차등적인 자본금 요구, EU 역외국 항공사의 국내노선 취항 등 분야에서는 내국민 대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조선 분야에 있어서도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 정부는 일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EU와 이탈리아의 반독점법에 근거하여 EU와 이탈리아 당국은 일정 금액 이상의 M&A를 사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국가 경제에 중대한 이유’ 또는 외국 투자자 소속 국가의 이탈리아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외국 투자자의 이탈리아 기업 합병(mergers) 조치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국방 및 항공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경우에는 법령 규정과 관계없이, 관련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해당 정부부처가 투자를 승인해 주지 않을 가능성과 여러 불투명한 절차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 투자자는 국방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영화되는 이탈리아 공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황금주(golden share)를 보유하거나 핵심적인 이탈리아 투자자 그룹이 특정

기간 동안 자신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여 왔다. 이탈리아는 민영화 과정에서 자국이 주요 황금주를 보유토록 하는 유일한 EU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이탈리아 정부의 투자 유치 노력 : 투자청

이탈리아 투자청(Invitalia)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부 기관으로 외국 투자자에게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모든 투자 단계에서 해외 투자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투자청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된다.

이탈리아 정부는 투자지원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지원 재원과 EU 지원 재원을 통합·운영하여 2007~2013년 기간에 투자지원기금 1,250억 유로를 조성하였으며, 남부지역에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차원의 투자지원 대상 분야는 기업 창출 및 확대, 산업지역개발을 위한 투자, 과학기술 연구개발, 새로운 투자 등이며, EU 지원 대상 분야는 지식 및 혁신, 수송, 환경보호, 인적자원, 기업 경쟁력 강화, 경제의 현대화 등이다.

이탈리아 정부의 국가차원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고용 창출 분야로서, 제조업, 광물추출, 에너지 생산, 농수산물 가공 분야 기업들이 연구 활동과 관련된 기업 계획(총경비 4천만 유로 이상)을 이행하여 고용을 창출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탈리아 재경부는 투자청(Invitalia)을 통해 이들 기업들과 프로젝트 계약(Contratto di Programma)을 체결, 정부지원금(grants)과 금리보조(Interest subsidy) 형태로 지원한다. 투자청은 프로젝트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둘째로, 지역기업의 투자 활성화(1989년도 법 제 181호)를 위한 지원으로, 재산업화 및 산업지역 개발을 통해 지역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지원조치이다. 총 투자액의 30% 이상을 자본금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동 혜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형태는 정부지원금 제공과 저리대출(총 투자액의 30%까지)이다. 정부지원금은 중부 및 북부지역 기업에게는 총 투자액의 25%까지, 남부지역 기업에게는 40%까지 지원 가능하다. 투자청은 동 기금 운영을 전담하여, 지원금 책정을 위한 기업계획 평가에서 지원금 지불까지의 전 단계 업무를 수행한다.

셋째로, 과학기술 혁신 및 연구 분야로서, 경제개발부의 과학기술혁신 기금, 교육부의 연구촉진 기금, Industria 2015 등의 정부 조치를 통해 관련 기업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신규 투자와 연구 분야로서, 신규 투자와 연구 활동을 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감면(Tax relief) 해 주는 지원 조치이다. 국립연구소 및 대학과 연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구비의 추가 감면이 가능하다.

이탈리아 투자청은 이탈리아의 Logistics 분야, ICT, 생물공학,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 유망 분야로 추천하고 있다.

이탈리아 투자청의 대표 전화는 (39) 06 421601이며, 웹사이트 주소는 www.invitalia.it 이다.

한편, 레타 정부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2013.9월 외국인투자유치정책(Destination Italy)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투자관련 조세와 절차 개선, 중소기업 재원 조달 방안 확대, 투자 유치 유망산업의 육성과 국가브랜드 제고 등이 기대되는데, 동 정책의 이행이 현행 렌치 정부의 Unblock Italy와 더불어 얼마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다.

노동시장

이탈리아 정부의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노동 시장은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노조가 정치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다, 노동 관련 제반 조건이 관련 법령은 물론, 산별 노조와 고용자 협회측간의 단체 교섭 결과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중시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업 인건비 중 사회보장금 지출 비중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은 정도로 고용주의 사회보장금 부담도 큰 편이다. 아울러, 고용주가 상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해고 등에 따른 노동 분쟁 소송이 빈발하고, 해고 소송 등의 경우 1심 재판에만 평균 2년 정도 소요되고 재심재판에 평균 3-4년이 소요되어, 기업의 인력관리 및 효율적 인사관리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근로자 해고

2012년 6월 몬티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자권리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그동안 기업 투자의 큰 부담으로 작용해온 고용부담을 완화시켜 장기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개정안에는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판결로 인해 해고 근로자를 복귀조치하는 경우 해고기간 임금보상에 대해 최대 24개월만을 보상하게 하는 임금보상상한도제를 도입하였다.

고용주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정당 사유(just reason)와 정당화 사유(justified reason)에 따른 해고가 가능하다. 정당 사유에 의한 해고(회사물품 절취, 허위 병가, 범죄 행위 등 직원이 중대한 잘못을 범한 경우) 시에는 고용주는 사전 예고없이 노동자를 해고할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불해야 한다. 정당화 사유에 의한 해고(부실한 성과, 경영진



의 중요한 지시 불이행, 장비 등에 대한 물적 손실 유발, 기업 구조조정 및 운영상 사유 등)의 경우에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사전 고지를 해야하며 퇴직금을 지불해야 한다.

집단해고(collective dismissals)는 고용주가 필요에 따른 인원감축 또는 사업 구조조정 및 폐업 등의 사유로 연속 120일 이내에 최소 5인 이상을 정리 해고(collective redundancy)하는 것으로, 15인 이상 기업의 고용주는 집단해고와 관련해서 반드시 직장 내 노조와 협의를 해야하며 그 절차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집단해고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법원이 판결하는 경우 고용주는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고 최대 12개월의 보수를 보상해줘야 한다.

고용주가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해야하며, 사전 고지기간은 단체협약이나 개별 노동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지나, 당해 노동자의 재직기간 및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2015년부터는 렌치 정부가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및 고용촉진을 위해 추진해온 노동개혁안(Jobs Act)이 시행된다. 노동개혁안의 중요 내용중 하나인 표준계약제(standard contract)에 따르면 동 계약에 의해 고용된 노동자에 대해서는 첫 3년간 해고요건이 완화되며, 고용주가 경영상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경우 법원은 복귀명령을 내릴 수 없고 고용주는 일정수준의 보상(최대 24개월치 월급)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표준계약제를 통해 정부는 고용주에게 인력운영에 있어 보다 강화된 자율성을 보장하고, 표준계약제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한편 렌치 정부는 노동개혁안을 통해 고용계약의 종류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지급을 확대하고, 근로소득세를 감면(월 80유로)하는 등 노동자 보호 정책도 함께 시행한다.

조세 제도

이탈리아는 높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 조세 부담률(세수/GDP)이 42.6%에 달한다. 현재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조세는 직접세인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가 있으며,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 물품세, 등록세, 관세 등이 있다.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조세로는 직접세인 생산활동 지방세와 간접세인 부동산 보유세가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재정안정화조치의 일환으로 2011.8월부터 부가가치세율을 20%에서 21%로 인상한데 이어 2013.10월부터 22%로 재인상 하였고, 연간 수입 30만 유로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 3%의 특별소득세를 부과하고, 자본 소득세율을 20%로 인상하였다.

렌치 정부는 주요 개혁조치 중 하나로 세제개혁을 내걸고 대대적인 실질세 감면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근로소득세 감면(월 80유로), 생산활동 지방세(IRAP) 감면(10%) 조치 등을 시행하였다.

주요 조세

법인소득세(IRES)의 경우, 법인의 영업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7.5%를 과세한다. 동 세율은 국내법인 및 외국법인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탈리아 법인에 대하여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외국 법인에 대하여는 이탈리아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된다.

개인소득세(IRPEF)의 경우, 이탈리아 거주 개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며, 비거주 개인은 이탈리아 내 발생소득에 대하여만 세금을 납부한다. 누진소득세 체계로 세율은 소득에 따라 22%~43% 까지 적용된다.



생산활동 지방세(IRAP)의 경우, 각 주별로 소재하는 이탈리아 국내법인의 고정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생산·매출액에 대해 일반적으로 3.5%를 부과한다. 다만 일부 분야의 경우에 대하여는 주별로 1% 범위내에서 상이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IVA)는 EU 부가가치세 체계를 수용하고 있으며, 생필품에 대해서 4%, 특정 식품과 관광 서비스에 대해서 10%, 그 밖의 일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 22%가 부과된다.

물품세(Excise tax)는 이탈리아 내에서 소비되는 각종 유류, 주류, 담배 등에 부과되며, 세율은 품목에 따라 다양하다.

부동산 보유세(ICI)는 시군별로 부동산 등기가치에 따라 연간 0.04~0.07% 부과되며, 몬티 정부에 의해 재도입되었던 1가구 1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레타 정부가 연립정부의 한 축인 자유국민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동 보유세를 폐지하고 2014년부터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세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등록세 및 이전세는 등록사안과 해당 자산 가치 등에 따라 과세율이 상이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는 해당 재산 가치의 4~8%가 부과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이탈리아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 보호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을 모두 구비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주요 국제 협약에도 모두 가입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외국기업도 이탈리아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게 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

상기 법령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 집행 조

치는 다소 느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법원에 제기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법원도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경미한 범죄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위한 검찰의 조직망도 다소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해적 단속을 위한 조치는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이탈리아는 2010.3.15일 지식재산권 분야의 포괄적 협력에 관한 특허기관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금융시장

이탈리아 금융시장에서의 자본의 흐름은 자유로운 편이며, 외국인의 이탈리아 금융시장 진출에 제한은 없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시장에서 자본이나 다양한 종류의 신용을 조달하는데 제한은 없으나, 주식관련 자본(equity capital)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은 편이다. 이는 이탈리아에서는 여전히 신용금융(credit financing)이 선호되고 있으며,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발달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주식시장(Borsa Italiana)은 비교적 소규모인 것으로 평가되며, 2015년 하반기 기준 342개 기업이 상장되어 있다. 이는 대부분 이탈리아 기업들이 중소기업인데다가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 조달을 모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포트폴리오 투자

외국인의 이탈리아 내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제한이 없다. 다만, 이탈리아인이건 외국인인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이탈리아 기업의 주식을 2% 이상 매입할 경우에는 증권감독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단순한 신고절차로서, 구입에 대한 증권감독당국의 승인을 받



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은행의 주식을 5%이상 매입할 경우에는 이탈리아 중앙은행(Bank of Italy)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은행 기업은 이탈리아 은행의 주식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다.

토빈세

단기자본의 급격한 이동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협하여 유로존 재정위기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탈리아는 프랑스 등과 함께 초단기 빈번한 투자에 대한 조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금융시장이 발달한 영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와 프랑스만이 토빈세를 도입하고 있다.

2013년도부터 도입된 토빈세는 애초 기대와 달리 세수확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작은 규모와 자금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탈리아 금융시장을 더욱 경색 시키고 있다는 평가로 인해,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현행 토빈세에 대해 세율인하 등 제도변경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현재까지 구체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다.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E-commerce)가 이탈리아 내에서 매우 빠르게 성장 중이나, 아직 우리나라만큼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

이탈리아 인터넷 사용자는 약 3,659만 명이며, 그중 900만 명이 온라인 구매자에 해당한다. 사업장의 인터넷 보급률은 95%에 가까우나 기업들 중 약 65%만이 자체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다. 가정 내 인터넷 보급률은 59.92%이며, PC보급률은 약 60%이다.

피고용인 10인 이상 사업장 중 83%가 초고속인터넷을 연결하고 있으나(EU 평균 84%), 일반 가정이 초고속인터넷을 가입해 사용하는 경우는

49%로 EU 평균 61%에 못 미친다.

이탈리아의 전자상거래 이용자는 전체 인구의 약 28.2%로, 서유럽 평균 52.9%, 특히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 영국 72.7%에 비해서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편이나, 온라인 이용자의 약 90% 이상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탈리아에 이동전화기는 널리 보급된 편이다. 약 9,400만 개의 SIM카드가 작동중이며, 4,650만 명의 고객이 가입중인데 이는 이탈리아 전인구의 4분의 3에 해당된다. 이탈리아는 또한 약 2,000만 명의 스마트폰 사용자를 확보하여 유럽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률이 가장 높은 편이다.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와 우리나라 간 교역규모는 2015년 9월 현재 1억7천만달러(우리측 통계기준)로 2014년 총 교역액(1억9백만 달러)을 초과하였다. 2009년 양국간 교역이 급감한 이후, 크로아티아의 경제침체가 지속되면서 2013년에는 교역액이 63백만달러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2014년부터 한-EU FTA 효과 및 크로아티아의 경기 회복으로 대크로아티아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2015년 9월 현재 우리나라의 對크로아티아 수출은 1억6천2백만달러, 수입은 8백만 달러로 우리나라가 1억5천4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對크로아티아 수출은 선박(68.1백만달러), 의약품(53.8백만 달러), 합성수지(12.3백만 달러)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크로아티아로부터는 주로 방송용 통신기기, 축전지, 편직제 의류 등을 수입하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2013.7.1일자로 EU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으며, EU 회원국으로서의 크로아티아 시장은 많은 변화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EU 가입 이후 구조기금 수령이 대폭 증대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데, 2013년 하반기 구조 및 지역개발기금(structural and cohesion fund) 6.9억 유로를 수령한데 이어 2014-2020년 기간 중 117억 유로의 EU기금이 배정될 예정이다. 크로아티아는 이러한 구조기금 재원을 바탕으로 항만 개발, 환경 관리, 에너지 분야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옹커 신임 EU집행위원장은 EU 회원국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3,150억 유로 규모의 신규 투자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는바, 크

로아티아는 용커 프로그램 대상 프로젝트로 총 77개(201억 유로 규모) 사업(수송 분야 31개, 자원 및 환경 분야 15개, 지식 및 IT 분야 7개, 에너지 분야 21개, 보건 및 사회시설 분야 3개 등)을 신청하였으며, 2015.2월 EU집행위는 이중 25개 프로젝트(90억 유로 규모)를 유망 프로젝트로 지정, 향후 추가적인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對크로아티아 진출 유망분야는 에너지, 인프라건설, 관광, 물류 및 교통 분야, 수처리 분야 등이다.

크로아티아는 연간 소비 에너지의 50%(석유 80%, 가스 40%, 전기 20%, 석탄 100% 등)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량은 매년 3%씩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아드리아해 및 내륙의 석유·가스전 탐사 개발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에너지 수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크로아티아는 2009년 에너지전략계획을 수립, 에너지 자원 공급의 다변화 및 에너지 소비효율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 관련 주요 추진사업은 △Zagreb 가스화력발전소(90-150MW급) 건설, △Krk섬 LNG 터미널 건설, △Sisak 및 Rijeka 가스화력발전소(각각 500MW급) 건설, △Senj 수력발전소(240MW급) 보수, Benicanci 지하가스저장소 건설 등이다.

크로아티아는 지리적 위치, 항구 접근성, 발달된 도로체계 등 측면에서 구 유고권 국가로의 물류운송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연간 1천만 명 이상의 외국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대국이다. 크로아티아의 EU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인프라 현대화,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기술 적용 및 ICT 네트워킹 활용 확대 등은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시경제 및 경제동향 일반

■ 거시경제지표

구분	2011	2012	2013	2014
GDP(EUR백만, 경상가격)	44,737	43,959	43,591	43,110
GDP 성장률(% ,불변가격)	-0.3	-2.2	-0.9	-0.4
1인당 GDP(EUR)	10,453	10,300	10,242	10,129
연평균 인플레이션율(%)	2.3	3.4	2.2	-0.2
수출(US\$백만)	13,352	12,377	12,671	13,632
수입(US\$백만)	22,708	20,850	22,016	22,423
대외부채(EUR백만)	46,397	45,297	45,958	46,710
외환보유고(EUR백만)	11,195	11,236	12,908	12,688
평균환율(HRK:EUR)	7.4342	7.5173	7.5735	7.6300

※ 출처: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통계청, Global Trade Atlas(수출입 통계)

■ 한-크로아티아 교역추이

(단위: 천달러)

연도	대크 수출	대크 수입	수지
2009	61,962	13,200	48,763
2010	117,762	19,352	98,410
2011	79,404	20,296	59,108
2012	49,784	20,702	29,082
2013	46,307	16,603	29,707
2014	93,728	15,328	78,400
2015.1-9	162,118	8,078	154,040

※ 출처: 대한민국 무역협회

통상환경 일반

크로아티아 경제는 1990년대 중반까지 유고내전으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동 지역내 평화가 정착되기 시작한 1990년대 말부터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을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정치적 안정과 더불어 물가 및 환율이 안정되고, 주요 산업인 관광산업 부흥

과 도로건설 등을 비롯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규모 자본지출 등에 힘입어 2003년 이후 5년간 연평균 5%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시현하였으나,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이후 발생한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2009년부터 마이너스성장을 계속해 오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교역량은 2003년 총 200억달러 규모에서 2008년 444억달러 규모로 급증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침체의 여파로 2009~2010년 교역량이 약 315억 달러대로 급감하였다. 최근 크로아티아의 경기회복과 함께 대외교역량도 점차 회복되는 추세에 있으며, 2014년에는 약 360억달러의 교역액(수출 136억 달러, 수입 224억 달러)을 기록하였다.

주요 국가별 수출입 현황을 보면 크로아티아 수출과 수입의 약 70%가 여타 EU 국가와의 교역이다. 특히 독일 및 이탈리아와의 교역이 전체 교역 비중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국은 독일,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등이고 주요 수출국은 이탈리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슬로베니아, 독일, 오스트리아 등이다.

크로아티아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온 EU 가입은 2011.6월말 EU 가입협상이 종결되어 2011.12월초 EU 가입협정에 서명하였으며 2012.1월에 가입협정 국민투표가 통과되어 각 EU 회원국의 기준을 거쳐 2013.7.1 EU의 28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EU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크로아티아는 2013.7.1부터 EU의 공통통상정책(Common Commercial Policy)의 적용을 받게 되고 EU가 체결한 무역협정에 구속되는 한편, 크로아티아가 개별국가와 체결한 무역협정들은 효력을 잃게 되었다.

크로아티아는 그간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CEFTA) 회원국으로서 역내 국가와의 교역이 활발했으나, EU 가입과 함께 CEFTA 회원국을 탈퇴하게 되어 CEFTA 7개국(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



고비나, 몬테네그로, 몰도바, 코소보)과의 교역시 적용되어 온 관세 혜택이 사라짐으로써 단기적으로는 대외교역에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EU 회원국으로서의 대외 이미지 제고, 여타 EU 회원국과의 교역 증대, EU가 체결한 무역협정 적용에 따른 대외 진출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한국에 대한 별도의 관세장벽은 없으며, 크로아티아는 2013.7.1부터 우리 상품에 대해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대외무역에서 EU 공통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EU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절차가 생략된다.

부가가치세는 세율이 종전 23%에서 2012.3월 25%로 인상되었으며 관광 분야 서비스·정기 간행 인쇄 신문 및 잡지·식용 동물성 기름 및 지방·유아용 식품·플라스틱 등 포장 용기·생수를 제외한 식수·사탕수수나 사탕무로 제조된 백설탕에는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빵·우유·도서·과학 잡지·전문 잡지·예술, 문화, 교육적 내용을 담은 교과서 및 시청각 교재, 크로아티아 의료보험 기금 결정 의약품 품목, 수술로 인한 신체 이식 품, 공공 필름 상영 서비스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별세(Special Tax)는 자동차, 이륜차, 선박, 비행기, 석유·가스 등 에너지류, 주류가 아닌 음료수, 커피 및 사치품 등에 부과되며 수입시에는 세관에서 부과하고, 국내 생산시에는 제조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다.

- ▶ 자동차와 이륜차(motor cycles)의 경우 5만 kuna에서 50만 kuna 가격대인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이전 차량가격의 13~40%에 이르는 세금을 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50만 kuna 이상의 차량은 177,500 kuna와 50만 kuna 초과 금액의 6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특별세로 납부하게 된다.
 - ※ 중고 승용차와 이륜차의 경우 50% 세율이, 실린더 용량이 1,600cc 이상인 승용차와 실린더 용량이 250cc인 이륜차의 경우 100% 세율이 각각 적용됨.
- ▶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 20만 kuna에서 4백만 kuna 가격대인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이전 선박·항공기 가격의 5~11%에 이르는 세금을 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4백만 kuna 이상일 경우 445,000 kuna와 4백만 kuna 초과 금액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특별세로 납부하게 된다.
- ▶ 보석류, 시계류, 모피의류, 가죽신발, 폭죽 및 무기류 등은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부과 이전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물품세(Excise Tax)는 주류, 주류성 음료, 담배, 석유·가스, 전기등 에너지에 대해 부과되며 품목별로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다.

- ▶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리터당 0에서 2,40 Kuna의 세율이 적용된다.
- ▶ 담배 제품에 대해서는 쥘렌(cigarette)은 1,000개당 180Kuna, 담배(tobacco)는 킬로당 38kuna, 시가(ciga)는 개당 1,10kuna, 엽쥘렌(cigarillo)는 팩당 4,40kuna 의 세율이 적용된다.
- ▶ 맥주는 알콜성인 경우 헥타리터당 200kuna, 무알콜성인 경우 60kuna의 세율이 적용된다.
- ▶ 알콜성 주류나 증류주의 경우 알콜 함유량 기준 리터당 40kuna의 세율이 적용되며 알콜이 함유된 와인의 세율은 0이다.



- ▶ 커피는 품목에 따라 순수 커피 중량 기준 킬로당 5Kuna 또는 20kuna 의 세율이 적용된다.

통관절차 및 원산지 규정상의 장벽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에 따라 2013.7.1부터 수출입 물품에 대해 EU 공통의 통관규정이 적용되며, EU 국가에서 통관을 마친 물품은 추가적인 통관절차 없이 크로아티아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통관시 필요한 서류는 선적서류(Transport documents: Certificate of origin, Bill of lading/Airway Bill),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등이며, EU와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용되는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s(SAD: “Jedinstvena carinska deklaracija”)도 크로아티아에서 통용된다.

통관절차 처리를 위해서 수입업자는 크로아티아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대리인 입증 서류(Documents of representation)가 통관 서류로 추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품목에 따라, 식품위생증명서(Sanitary inspection certificate for food: 음식, 음식 포장품, 개인 위생 및 청결용품), 수의위생증명서(Veterinarian certificate for live stock), 품질보증서(Quality certificate/Certificate of conformity) 등이 추가로 요구된다.

음식물, 가공·처리·수리용품 등을 제외한 물품을 임시 통관할 경우 수입 상태 그대로 다시 수출한다는 조건으로 크로아티아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ATA Carnet를 발급받으면 통관 서류 및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ATA Carnet이 해당되는 대상은 샘플 용품, 전문 기기, 전시회 및 박람회용 물품 등이다. 통관 편의를 위해서는 현지 운송업자를 지정하여 통관 수속을 대행시키는 것이 편리하다.

통관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 SAD(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s)
- ▶ 품목 리스트(List of items)
- ▶ 수입 서류
 - 발송인(전체 법인명 및 식별 번호(Identification No))
 - 수취인(전체 법인명, 주소, 연락인)
 - 영수증 번호 및 발급 일자
 - 품목 명세서(개별 수량 및 가격과 총액)
 - 총/순 중량
 - 총 수량 및 포장 방식
 -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2000과의 비율 (Parity)
 - EUR 1(Movement Certificate): 6,000유로 이상 물품
- ▶ 식물병리학 통제 증명서(Phytopathological Control Certificate)
 - 식물 및 식물 제품
 - 목재 포장 재료
 - 농업 번식용품(씨, 감자, 과일, 관상용 식물 등)
 - 삼림 번식용품
 - 식물 보호 제품
- ▶ 수의위생 통제 증명서(Veterinary Control Certificate)
 - 수입일 최소 30일 이전에 동물, 동물 제품, 동물성 원료 함유 제품, 난자(ova), 태반(embryos), 동물 사료, 부화 알, 동물 사료 원료, 전염성 질환 전파 또는 공공 보건을 위협할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경우 크로아티아 농업부에 수입허가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 ▶ 수입 계획(Import Disposition)

수입규제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은 없으며, 수입 허가가 필요한 품목은 무기/탄약, 군대 및 경찰 장비, 무전기, 마약·향신료, 골동품, 귀금속, 폐기물, 원자력 기술, 화학무기 제조용 성분, 오존층에 해로운 물질 등이다. 이들 수입허가 필요품목 리스트는 Narodne Novine: www.nn.h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없으며 다른 WTO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일부 농산물 및 식품류 수입 시 수입쿼터를 적용받게 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련된 사례는 없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크로아티아 정부가 EU 지침(Directives)과 자국의 기술 표준을 조화시키기 위해 2010년 제정한 생산품의 기술 규격과 품질 적격 평가법(The Law on technical requirements for products and conformity assessment(OG 20/10)에 따르면 수입업자는 생산품이 기술 표준에 부합하고 생산자에 의한 품질 적격 평가가 수행되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시장에 출하되기 전 크로아티아어로 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품질 적격 평가를 위한 서류로는 검사 보고서(examination reports), 품질적격인정서(conformity certificate), 리뷰 보고서(review reports), 품질 적격 설명서(declaration of conformity), 기술 서류(technical documents) 등이 있다.

EU는 생산자가 제품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자 보호 및 환경 안전 규정에 따른 품질적격평가 요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옵션들 중 생산자가 선호하는 옵션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new approach)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필수 요건 충족을 위한 기술 표준은 EU 관보(official journal)에 게재된다.

반면, 생산자가 이미 규정된 세세한 기술적 규격을 충족해야 하는 이른바 예전 방식(old approach)은 식품, 화학제품, 의약품, 화장품, 자동차 등에 적용된다. 크로아티아 경제부에서 2012.1월 게재한 새로운 접근방식(new and global approach)과 예전 방식(old approach)에 의한 기술 표준 및 품질 적격 평가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다.

(New and global approach 방식 대상 품목)

1. Low Voltage Equipment
2. Simple Pressure Vessels
3. Safety of Toys
4.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EMC)
5. Construction Products
6. Machinery
7. Lifts
8.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9. 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10. Medical devices, General
11. Medical devices, 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12. Medical devices, in vitro diagnostic
13. 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14. New hot-water boilers fired with liquid or gaseous fuels
15. Placing on the pyrotechnic articles, Explosives for civil use
16. 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s in potentially explosive atmosohers(ATEX)

17. Recreational crafts
18.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19. Radio and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20. Pressure Equipment
21. Transportable pressure equipment
22. Cableway Installations Designed to Carry persons
23.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s for household electric refrigerators and freezers
24. Measuring instruments
25. Marine equipment
26. Noise emission in the environment by equipment for use outdoors, Environmental Noise Management
27.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s for Ballasts for Fluorescent Lighting
28. Eco-design requirements for energy-using products(EUP)

(Old approach 방식 대상 품목)

1. Medical Products
2. Veterinary Medical Products
3. Cosmetic Products
4. Textile
5. Footwear
6. Crystal glass
7. Chemicals
8. Drug precursors
9. Detergents
10. Aerosol dispensers

11. Fertilisers
12. Metrological and Technical Equipment
13. Pre-packaged products and bottles used as measuring containers
14. Units of measurement
15. Motor vehicles; two-or-three wheel motor vehicles; wheeled
16. Emission of pollutants from engines installed in non-road mobile machinery, agricultural or forestry tractors

라벨(Label)에 기재되어야 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으며, 모든 정보는 시장에 판매되기 전 크로아티아어로 표기 또는 병기되어야 한다.

- 생산자명(name of product)
- 생산자 주소 및 원산지(full address of the importer and the country of origin)
- 순 수량/무게/부피(net quantity/weight/volume)
- 성분(ingredients)
- 보관 방법(manner of storage)
- 소비자 정보(GMO 성분 포함 여부)

(1) 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 웹사이트

- State Inspectorate(국립 검사소)
 - Website: www.inspektorat.hr
- Croatian Standard Institute(크로아티아 표준 기관)
 - Website: www.hzn.hr
- Croatian Accreditation Agency(크로아티아 인증 기관)
 - Website: www.akreditacija.hr/index.php

(2) 크로아티아 인증 심벌

2007년 이전까지는 EU의 통합인증마크인 “CE” 인증이 있더라도 크로아티아 인증인 “C” 마크(아래 그림)를 제품 포장에 부착하여야 했다.

2007년부터 정부 부처 등에서 소관 제품에 대해 케이스별로 “CE” 인증으로 “C”마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 널리 적용되지는 않아왔다. 그러나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으로 “CE” 인증은 자동적으로 크로아티아에서 인정되게 되었다.



“C” symbol

(3) 일반적인 전기 및 전자제품의 경우, EMC(Electro-Magnetical Compatibility) 및 전기안전 인증 획득 필요

- 공식 인증실험 및 발급기관
 - 기관명: ZAVOD ZA ISPITIVANJE KVALITETE ROBE d.d.
 - Website: www.zik.hr

크로아티아 법령에 따르면 가전제품 및 전자제품의 경우, 무상 품질보증 기간이 1년이며 수입 후 5년간 관련 부품의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품질보증서는 크로아티아 수입상이 독점 발급한다.

환경 관련 규제

환경에 관련된 법은 2006년부터 여타 EU국가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었으며 수입에 대한 특별한 환경 관련 규제는 없다.

품목별 장벽

우리나라 제품의 對크로아티아 수출 시 장벽은 없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크로아티아 수입상이 수입 전 수입허가를 받고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만성적자를 안고 있는 조선, 철도 등 국영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오던 관행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보조금 지급률을 낮추고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크로아티아 정부는 EU의 정부조달지침(Directives)에 부합하는 새로운 Public Procurement Act(Narodne novine, 크로아티아 관보 90/2011)을 제정, 2012.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새로운 정부조달법은 수도, 에너지, 운송, 우편 서비스 부문도 EU 정부조달지침과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공공 건설 계약, 공공 서비스 계약, 공공 물품 조달 계약 등에 있어서 전자 입찰 공고, 특정 입찰 절차 규정, 7만 kuna 이상 조달시 전자 입찰 공고 게시 의무화 등을 통해 EU의 정부조달법에 부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공공입찰에는 공개경쟁 입찰,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 등이 일반적이나 건설 공사의 경우 설계공모(design contest)가 추가되기도 한다.

7만 Kuna(약 9,210유로) 이상의 모든 공공계약에는 Public Procurement Act가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조달(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며 동 법은 건설공사 계약(Works Contract), 물품조달 계약(Supply Contract), 서비스 계약(Service Contract)에 모두 적용된다. 7만 Kuna 이상의 입찰일 경우 크로아티아의 전자 관보인 Electronic Public Procurement Classifields에 입찰공고를 반드시 게재하여야 하나, 7만 Kuna 미만의 입찰일 경우에는 반드시 Electronic Public Procurement Classifields를 게재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2013.7.1일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이후 주요 정부 조달 입찰 공고는 EU의 관보(Official Journal)에 자동으로 게재 된다. 크로아티아의 해외 대사관이나 영사관용 입찰의 경우 90만Kuna 이상인 경우 Public Procurement Act에 따른 입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입찰을 실시하는 주체(정부부처,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는 조달절차를 명확히 정하고 입찰 초청서를 크로아티아어로 준비해야 한다. 공공입찰에 응찰하는 참가자는 입찰주체가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로아티아어가 요구됨)된 입찰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해 외국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 조달시 공고문은 아래 내용을 공지하게 된다.

- contract notice
- design contest notice
- prior notice of intention to award a contest
- periodic(indicative) notice
- notice of the publication of the prior(indicative) notice on the contracting entity(buyer) profile
- contract award notice
- notice of the results of design contest
- notice for additional information, cancellation of the procedure or correction

Public Procurement Act는 입찰 참가기업의 대표자나 임원 등이 범죄 조직 가담, 부패, 뇌물수수, 돈 세탁 등의 각종 범죄행위에 관해 유죄판결을 받거나, 사회보장세나 각종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배제사유가 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입찰 참가자가 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입찰참가자가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Evidence of legal and business capacity(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with the business, court(commercial) etc, the authorization related to the subject-matter of procurement, the certificate of membership in a specific organization)
- Evidence of the non-existence of a criminal record
- Proof of technical and professional ability
- Proof of compliance with certain quality assurance standards

지식재산권 보호

크로아티아는 EU 가입을 위해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법률을 EU 법규에 부합하도록 개정해 왔다. 크로아티아는 WTO 회원국으로서 Uruguay Round Agreement on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 당사국이기도 하다. 그리고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의 회원국으로서 21개의 관련 협정에 가입해 있다.

특허권(Patents)은 Patent Act(Narodne Novine, No 173/2003, 87/2005, 76/2007, 30/2009)에 따라 부여되며 특허 담당 기관인 State Office for Intellectual Property(SIPO: www.dziv.hr)에 등록이 되어야 특허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특허권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최신의 고안품이



어야 하고, 산업적으로 활용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특허요청서, 발명에 대한 기술, 권리에 대한 주장, 도면(필요시), 발명 개요 등이 담긴 신청서를 행정 수수료와 함께 SIPO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권은 신청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되나, Consensual Patents의 경우에는 10년간 보호된다.

상표권(Trademarks)은 Trademark Act(Narodne Novine, No 173/2003, 76/2007, 30/2009)에 따라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화할 수 있을 경우 어떤 형태라도 등록될 수 있다. 문장, 구절, 심벌, 디자인 또는 이들의 조합, 제품의 형태 또는 포장, 3차원 형상물, 색깔도 등록될 수 있으며 등록 절차는 특허권 신청절차와 유사하며 State Office for Intellectual Property(SIPO: www.dziv.hr)에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상표권은 10년간 보호되며 10년 주기로 계속 갱신될 수 있다. 상표권을 획득한 이후에는 크로아티아 영토 내에서 5년 이내에 사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다.

산업디자인권(Industrial designs)은 Industrial design Act(Narodne Novine, No 173/2003, 76/2007, 30/2009)에 따라 부여되며, 제품의 외관이 시각적인 차별성을 가져야 산업디자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등록 절차는 특허권 신청절차와 유사하며 SIPO에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산업디자인권은 5년간 보호되며 25년을 한도로 매 5년마다 갱신될 수 있다.

저작권(Copyright)은 Copyright Act and Adjacent Act(Narodne Novine, No 167/2003, 79/2007)에 따라 부여되며, 문학적, 학술적, 예술적 창작품이 대상이 되고, 아이디어, 절차, 일처리 방식, 수학적 개념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저작권은 다른 지식재산권과는 달리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저작권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까지 그 권리가 보호되고, 공동 저작의 경우 마지막 생존자 사후 70년까지 보호

된다. 저자는 제3자나 기관에게 저작권을 양도할 수는 있지만 저작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

반도체 제작기술(Topography of semi-conducting products)은 Act on Protection of the Topography of Semi-Conducting Products (Naodne Novine, No 173/2003, 76/2007)에 의해 보호되며, 그 제작 기술이 지적노력의 산물이어야 하고 반도체 산업계에 일반적인 기술이 아니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이 권리는 상업적 이용일 또는 신청 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된다.

생명공학, 제약, 식물보호물질(Plant protection products: PPPs, 농약)과 관련된 특허와 관련, 크로아티아는 2001년부터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UPOV)의 회원국이며 산업적 활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의 경우 특허가 부여될 수 있다.

서비스 장벽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없으며 다른 WTO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일부 농산물 및 식품류 수입 시 수입쿼터를 적용받게 된다.

투자 환경 일반

크로아티아 정부는 2013.7.1 EU 가입을 앞두고 정치, 경제, 사법제도 등 모든 부문에 걸쳐 EU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크로아티아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보다 많이 유치하고 국영기업을 민영화 하여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관련 크로아티아 정부의 주된 목표는 에너지·인프라·관광·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greenfield 투자 유치를 확대하는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크로아티아 정부는 크로아티아가 가진 천혜의 관광 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적이고 부가가치 비율이 높은 수출 지향 제조업과 지식 서비스 분야에 투자를 촉진시키고, 신기술과 Know-how의 도입을 권장하며, 미개발지역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또한, 투자유치를 통한 고용확대와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시키는 것도 크로아티아 정부의 중요한 투자유치 방향이다.

2012.9월 크로아티아 의회는 새로운 투자진흥법(Investment Promotion Law)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을 통해 투자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새로운 투자진흥법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투자 금액 요건을 종전 30만유로에서 5만유로(소기업) 및 15만유로(중소기업 및 대기업)로 대폭 경감하였으며, 관광 분야를 인센티브 수혜 대상 분야로 새로이 포함시키고, 재투자된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전면 감면하는 우대 조치를 제공하며, 투자금액, 투자 분야 및 고용창출 인원 등에 따른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설된 투자 및 경쟁청(Agency for Investment and Competitiveness)은 투자 프로젝트 관련 인허가 및 투자 절차를 간편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투자 유치 선호 분야

- 제조업
- R&D 센터
- 전략적 기업 지원 분야(고객관리센터, 물류센터, 데이터처리센터, 소프트웨어 개발센터 등)
- 관광 프로젝트 분야(4성급 이상 호텔, 리조트, 스포츠 및 헬스 센터)

- 투자 인센티브
 - 세금 인센티브
 - 관세 혜택
 - 고용 및 고용 보조금
 -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관련 인센티브
- 해당 투자비용
 - 기기 및 기계류(Equipment, Machinery)
 - 무형 자산(특허권, 라이선스, Know-how 등)
 - 2년간의 총 임금
- 세금 인센티브

투자금액(유로)	신규 고용인원	감면법인세율 부여기간	고용기간	감면법인 세율
100만 미만	5명 (소기업은 3명)	최장 10년	3년(중소기업)~ 5년(대기업)	10%
100~300만까지	10명	최장 10년	3년(중소기업)~ 5년(대기업)	5%
300만 초과	15명	최장 10년	3년(중소기업)~ 5년(대기업)	0%

○ 고용 보조금 인센티브

투자지역 실업률	신규 고용 창출비용 인센티브율	기술혁신 및 개발센터의 추가 인센티브	비즈니스 지원 전략적 활동시 추가 인센티브	혁신 및 개발 활동 인센티브
10% 미만	10%(3천유로 한도)	50%(천5백유로)	25%(750유로)	기계·장비 구입비용의 20% (50만유로 한도)
10~20%까지	20%(6천유로 한도)	50%(3천유로)	25%(천5백유로)	
20% 초과	30%(9천유로 한도)	50%(4천5백유로)	25%(2천2백5십유로)	

※ 장비수입 관세: 무관세 적용

- 투자 프로젝트 초기 자본 지출 인센티브
 - 지원 대상: 500만유로 이상 투자 및 50인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

투자지역 실업률	자본 지출 인센티브
10~20%	투자비용중 아래 해당 분야의 1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가 지원됨. • 신규 공장 및 생산시설 건설 • 신규 기계 구입(예: 생산 설비) (최대 50만유로 한도로 인센티브 지원, 단 기계·설비 구입비용이 총 투자액의 40% 이상이 되어야 하며, 동 기계·설비의 최소 50%는 첨단 장비여야 함.
20% 미만	투자비용의 아래 해당 분야의 2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가 지원됨. • 신규 공장 및 생산시설 건설 • 신규 기계 구입(예: 생산 설비) (최대 100만유로 한도로 인센티브 지원, 단 기계·설비 구입비용이 총 투자액의 40% 이상이 되어야 하며, 동 기계·설비의 최소 50%는 첨단 장비여야 한다.)

○ 직업 훈련 인센티브

신규 고용 창출 인원	신규 고용업체 창출 보조 증가
100명 이상	25%
300명 이상	50%
500명 이상	100%

2013.11.14 전략투자법(Strategic Investment Act)이 발효되어 투자 금액 및 분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허가 절차 간소화, 행정적 지원 제공, 국유 부동산 불하 등 투자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그간 외국인 투자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지자체의 건설 관련 규제 권한을 중앙정부(건설부)로 이관토록 하였다.

○ 전략투자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 투자 금액

- 2천만 유로
- EU기금이 공동투자(co-financed)된 경우 1천만 유로
- 저개발 분야 투자의 경우 3백만 유로

○ 전략 투자 분야

- 생산 또는 가공 분야
- 혁신 분야(생산 공정, 기술 및 상품의 개량 또는 개발과 관련된 분야)
- 비즈니스 지원 분야(고객지원센터, 물류센터, IT, 통신개발센터 등)
- 고부가가치 분야(건축, 디자인, 예술 등 창조활동, 관광, 비즈니스 컨설팅, 교육, 산업엔지니어링 등)

채용 및 고용 계약의 경우 외국기업은 신문 광고를 통한 공개 채용이 일반적이며, 고용 계약서 작성 후 노동부에 보고하는 것이 요구되며, 개인 소득세 납부를 위해 세무서에 소득 신고 및 매월 급여 지급 시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세 납부가 필요하다.

고용 계약서 작성시 근로장소, 근로 계약자의 직위, 역할 및 담당 업무, 계약기간, 근무시간, 휴일,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고용 기간을 한정하는 기간제 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최대 6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동 수습기간 내에는 1주일 전의 통지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법정 퇴직금 제도는 없으나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했을 경우 근무기간 1년당 월평균 급여의 1/3을 Severance Pay라는 명목으로 급여의 최대 6개월분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010년 개정된 노동법에 따르면 연간 유급 휴가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4주 이상이며, 기타 경조사(결혼, 자녀 출산, 가족 사망 등)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는 추가 휴가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초과근무 시간은 1주에 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관련, 기업은 근로자 급여의 15.20%를, 근로자는 급여의 20%를 납부하여야 하며, 근로자 부담분은 회사가 원천징수 후, 해당 기관에 납부하게 된다. 기업(고용주)이 부담하는 15.20%에는 근로



자 의료보험 기여금 15%, 고용세 1.7%, 작업장 상해보험 0.5%가 포함되며 근로자는 별도의 의료(건강)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외국인 직접 투자 관련 서비스인 HITRO,HR 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가 HITRO-공증 사무소-상사 법원의 3단계로 단축되었으며 소요되는 기간 또한 4일 근무일(4 working days)이내로 많이 단축되었다. 그리고 최근 온라인 회사창립 서비스인 “e-company”를 이용할 경우 HITRO측은 공증 사무소 등록과 상사 법원 등록이 각각 1일내에 이루어져 2일 근무일(2 working days)이내에 회사 창립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 HITRO,TR 서비스 사이트: www.hitro.hr

크로아티아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누적액은 1993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약 291.7억유로이며, EU 가입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2014년 상반기에만 21.7억유로(잠정치)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다. 주요 외국인 투자 형태는 다른 동구권 국가와 달리 그린필드 투자유치는 저조한 반면,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 유통, 정유, 부동산, 통신 등의 분야이며, 오스트리아(전체 외국투자의 24.8%), 네덜란드(21.0%), 독일(8.2%), 헝가리(7.9%) 등 EU 국가가 투자 상위국을 차지하고 있다.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제약기업에 대한 외국투자자의 인수 및 지분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호텔 및 리조트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크로아티아가 2013.7.1 EU 회원국이 됨에 따라 우리 기업도 인구 약 450만명의 크로아티아 시장을 넘어 구 유고연방인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보스니아-헤르츠고비나 시장까지 포함하는 인구 약 2,000

만 명의 시장을 염두에 두고 크로아티아를 구 유고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크로아티아는 비엔나, 부다페스트 등을 통해 유럽 어느 지역과도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지정학적으로 커다란 이점을 갖고 있는 국가이며, 크로아티아가 갖고 있는 기존 구 유고국가들과의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 및 체코와 슬로바키아 등과의 언어적인 소통이 가능함에 비추어 우리 기업의 크로아티아 진출은 주변 유럽 국가들로의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의 유럽 지역내 적극적인 투자진출 활동 실적과 높은 기술 수준을 잘 살릴 경우 크로아티아에게 한국은 신뢰 높은 파트너(reliable partner)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기업의 향후 투자 검토 분야로는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를 들 수 있다. 크로아티아의 국내 에너지 생산은 전체 소비량의 50%정도를 충족하는 수준으로 크로아티아 정부는 2011년 EU와 20-20 협정을 체결, 2020년까지 에너지 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풍력과 태양광 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진출 노력이 요망된다.

또한 부족한 에너지 생산을 위한 화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시장 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입찰 참여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크로아티아는 세계은행(WB)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공동으로 하수도 처리, 재활용 및 쓰레기 소각, 절연, 에너지 소비 효율성 제고, 이산화탄소 배기량 절감 등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도 눈여겨 볼 사항이다.

아울러 크로아티아를 유럽 물류 및 유통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동구권까지 확대된 EU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대부분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주로 동부유럽에 위치해 있어 원활한 원·부자재 조달과 물류기지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크로아티아 제1의 항구인 리예카(Rijeka)항은 북부 아드리아해안에 위치한 뛰어난 입지 조건으로 우리나라의 부산항 등 아시아 항구와 최단거리 상에 위치하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으로 그간 여타 EU 회원국에 비해 불편했던 통관절차상 어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부다페스트-리예카 구간 철도가 부설될 경우 현재 건설되고 있는 고속도로망 등과 함께 중유럽 도시와 리예카항을 잇는 운송 인프라가 완성되게 되어 크로아티아의 EU 지역에 대한 물류 센터로의 입지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동 유럽의 교역 관문인 크로아티아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물류거점 기지로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근 트리에스테(이탈리아), 코페(슬로베니아) 항구의 대안 항구로서 리예카항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 검토가 요망된다.

아울러 크로아티아는 의료비 지출 수준이 현재로서는 인근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의약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크로아티아의 의약 시장은 EU 및 중동부 유럽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교두보로서의 잠재력이 있어 우리 업계의 진출 검토가 요망된다. 또한 크로아티아 정부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갖춘 관광지로서의 매력에 더해 저렴한 가격 대비 높은 의료 서비스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크로아티아의 의료 관광국으로서의 잠재력을 인식, 이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도 눈여겨 볼 사항이다.

■ 최근 10년간 외국인 직접투자동향

(단위: 백만유로)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467.8	2,575.6	3,606.9	4,063.1	2,427.4	377.9	1,070.1	1,076.0	525.4	2,899

출처: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투자 장벽

크로아티아는 외국 투자에 개방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법적으로 내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크로아티아 정부는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투자에 방해가 되는 제도 및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복잡한 행정절차와 관료주의, 사법제도의 비효율성 등 구시대의 잔재들이 아직 남아 있어 외국인 투자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크로아티아에 설립, 등록된 크로아티아 법인은 법인 명의로 크로아티아 내 부동산을 아무런 제약 없이 소유 또는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비EU 국가의 외국인은 크로아티아와 상호 호혜주의(양국의 개인이 상대국에서 부동산구매 가능)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개인 자격으로 부동산을 구매 또는 소유할 수 없다. 현재 한국과 크로아티아간 상호 호혜주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크로아티아내 부동산 거래시에는 소유권 여부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등기제도 미비, 토지와 건물을 따로 소유하는 관행 및 소유자가 다수인 복잡한 소유 구조 등으로 부동산 매입 후 제3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상의 제한

외국투자기업의 본국으로의 과실송금은 100% 가능하며, 별도의 제한이 없다. 일반 외국인은 개인자격으로 현지에서 자금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외국인투자 기업으로 등록된 경우, 크로아티아 기업과 동일한 자격으로 현지법인명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대출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중은행들이 대출받으려는 기업의 재정상태와 영업실적을 장기간에 걸쳐 모니터링 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할 때 진출 초기에 현지에서의 자금조달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의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계좌 개설시 보통 외환 계좌와 현지화 계좌를 동시에 개설하게 된다. 한국이나 제3국으로의 송금에는 세금 납부 등 법적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전혀 어려움이 없으며, 계좌에 외환잔고만 있어도 현금인출기에서 예금인출시 자동으로 현지화로 환전하여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세금부과

외국인 기업에 대한 차별은 없으며 원칙적으로 현지법인으로 기업을 설립하면 크로아티아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또한 투자금액과 투자지역, 투자업종에 따라 법인세 감면 및 면세, 고용 및 훈련 보조금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사법제도의 비효율성

크로아티아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무역장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에 수년간 시간이 소요되는 등 사법제도의 비효율성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크로아티아 정부가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미해결된 소송건수가 80만건에 달하는 등 소송 지연으로 인한 투자비용 증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장진입 전략

상품, 서비스 시장에 대한 외국기업 차별은 없으며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은 통관 수속, 서류작업, 창고 보관 등의 일을 대행하는 크로아티아 기업에 에이전트/디스트리뷰터로 선정하여 시장진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현지 상관을 잘 이해하고 판매망을 갖춘 유능한 에이전트를 선정하는 것이 신규 진출 기업이 주경쟁대상인 유럽지역 기업과 경쟁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A/S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유통업자들이 기존 거래선과의 거래를 선호하는 점을 감안, 장기간에 걸쳐 거래선과의 신뢰를 쌓아가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기타 장벽

크로아티아의 경우 제조업 분야가 취약하여 다양한 부품 및 부분품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의 경우 인근국가로부터 부품 조달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 영국, 일본기업들의 투자진출이 미약한 편이며 주로 인근 국가인 독일, 이태리, 오스트리아 등으로부터의 투자가 대부분이어서 미국, 영국, 일본식 기업 풍토에 보다 익숙한 우리 기업에게는 다소 낮은 기업 환경이 될 수 있다. 그러나 2011년 상반기 제1위 투자국 지위를 미국이 차지하는 등 미국기업의 對크로아티아 투자가 유통업, 제약업 등을 중심으로 증대되고 있음은 주목된다.

인근 동구권 국가에 비해 높은 인건비와 복잡한 행정절차 및 비효율적 사법제도 등이 對크로아티아 투자시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최근 행정 및 사법 분야 처리 속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잘 교육된 전문적인 노동인력, 현대적 인프라, 쾌적한 생활환경, EU 및 동구시장 접근 용이성, EU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 국민들의 높은 영어구사율 등은 대크로아티아 투자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다.



터키

터키와 한국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이후로 양국 간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한·터키 FTA가 발효된 이후 교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2013년 5월 1일 한·터키 FTA 상품협정 발효 직후 우리나라의 對터키 수출은 2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터키 리라통화 가치하락 등으로 인해 터키 시장의 수요가 위축되면서 2015년 7월 기준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전년도 동기 대비 5.4% 감소한 37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對터키 수입액은 4억 5천만 달러로 17.7%증가하였다.

2015년 상반기 기준, 우리 나라의 對터키 수출증가 품목은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원료, 원동기·펌프, 연선·로프·케이블, 스테인리스강의 평판 압연제품, 미용제품 등이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 의류, 의약품, 일부 금속 등의 터키 제품 수입이 늘어났다. 합성수지와 화학제품의 수출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들 품목은 터키에서 자체 생산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출 전망이 어둡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제품은 대규모 거래로 인해 관세 인하폭이 다소 낮지만 FTA효과가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관세인하 보다는 현지 시장수요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4년 7월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이 실질적으로 타결되고 2015년 2월에 정식서명이 이루어짐에 따라 향후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허가

외국인 투자 관련, 주요한 애로사항 중의 하나는 노동허가 문제이다. 2003년 2월 27일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법”이 시행되면서 종전에는 재무부와 문화관광부에서 취급하던 외국인 노동허가 업무가 2003년 9월 노동부로 일원화된 이후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와 관련한 문제가 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과거 재무부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노동허가를 비교적 수월히 처리하였던 반면에 노동부는 국내 노동시장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규모, 사업실적, 납세실적, 터키 노동자 고용실적, 사회보장보험 가입 여부 등 각종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노동허가 발급심사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허가 발급이 지연 또는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0년 8월 2일 노동허가법 시행령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외국인 1명의 노동허가 신청 시 최소 5명의 터키인을 고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터키인 5명 고용원칙’규정을 신설하여 노동허가 취득에 애로가 있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터키 정부는 2011년 4월 20일 일부 예외조항을 신설하였다. ①터키 당국이 시행하는 프로젝트 사업의 입찰을 탄 경우, ②터키인 전문가를 고용하기 힘든 첨단기술을 요하는 분야인 경우, ③외국인 직접투자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위의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터키인 5인 고용원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노동부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투명하지 않은 편이다. 이 때문에 현지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이나 주재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비스 장벽

건설서비스

도로, 건물 등과 같은 단순한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터키 건설업체들이 맡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화학시설, 공항, 항만, 교량, 고층건물 등과 같이 보다 높은 기술 수준이 필요한 공사는 일반적으로 외국의 선진 건설업체들이 설계, 감독, 감리를 하고, 터키 건설업체들은 주로 시공에 참여하거나 하청으로 시공공사에 참여하여 노동력과 건설자재를 공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터키 건설업체들은 계약에 합의한 사항 외에도 추가사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해당 터키 업체가 외국 업체와의 사업경험이 많고 신용도가 높은지 여부와 계약서 작성 시 문제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한 규정 등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광서비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터키인 관광객은 2만 명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비해, 터키에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248,910명으로 10배 이상 많다.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 될 전망으로 터키 내 한국인 가이드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터키에서는 터키 국적의 관광가이드가 의무적으로 동행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업계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투자 장벽

터키는 2003년 6월 외국인 직접투자법(Law No. 4875)을 제정, 종전에는 회사 설립을 위해 재무부 등으로부터 받던 사전허가제(pre permit) 및 5만

달러 이상의 투자하한선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였다. 외국인 투자는 거의 모든 분야에 개방되어 있으나, 금융, 석유, 에너지 등 주요 산업분야에 진출하려면 여전히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행정 시스템 내 지나친 관료주의, 불투명하고 자주 바뀌는 각종 지침, 정부 부처 간 커뮤니케이션 미흡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터키표준인증(TSE)

터키의 경우 일부 자동차 부품 및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EU회원국 제품에 대해서는 유럽인증(CE) 위주로 요구하나, 비EU 회원국 제품에 대해서는 유럽인증 뿐만 아니라 터키표준인증(TSE)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한다. 터키표준인증을 수출 전에 미리 획득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현지 벤더가 발급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세관 심사 시 아시아산 수입품의 경우 갑작스럽게 수입물량이 늘어나는 경우 Red Line⁶⁾을 적용하여 까다로운 심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서류 내용과 실제 물품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시 통관이 지연되어 현지 바이어로부터 납기 지연 등으로 인한 클레임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6) 터키 세관심사는 Red Line(물품검사), Yellow Line(서류검사), Blue Line(간단한 서류검사), Green Line(세관신고서 제출만으로 통관 완료) 등 4단계로 진행되는 데 Red Line이 가장 엄격한 등급이다.



포르투갈

포도주, 코르크, 올리브, 대리석이 대표적 생산물인 포르투갈은 EU 및 OECD 회원국으로 경제규모 및 산업발전 정도를 볼 때 호텔, 요식업, 도소매 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과 유통업이 발달한 반면 제조업 등 공업기반은 다소 취약하다. 유럽과 브라질·앙골라 등 인구가 2억이 넘는 포르투갈어권 국가들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바, 우리 대기업의 경우 판매법인 중심의 투자진출이 바람직하고, 중소기업은 레저용품, 소형특수기계 등 틈새시장 진출이 유망하다. 한편, 2011.7 한-EU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철폐의 효과도 포르투갈 시장 진출에 적극 이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포르투갈은 브라질 등 다른 포어권 국가들과 달리 영어가 널리 통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비즈니스에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한-EU FTA 발효 즈음에 2011년 포르투갈 재정위기가 발생하여 초긴축 정책 시행의 여파로 민간 소비수요가 급격히 위축되어 경기에 민감한 자동차, 무선전화기, 가전 등 우리의 주종 상품 수출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으나, 2014년에 이어 2015년 상반기에도 양국간 교역량이 전년 대비 우리의 대포르투갈 수출액은 301백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 수입액은 102백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를 기록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수입규제

포르투갈에 화장품과 의약품 등을 수출할 경우, 포르투갈 식품의약품(INFARMED)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관련 규정상 반드시 포르투갈내 전문가(technician)의 소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한-EU FTA 시행에 따라 수출 건별로 6천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은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아야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투자장벽

투자환경 개황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별한 조세혜택은 없으며, 포르투갈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2000년대 동구권의 EU 가입 등 주변 여건의 변화와 국제적으로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포르투갈에 투자했던 많은 외국인 기업들이 낮은 생산성과 노동 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중부유럽과 아시아 등지로 이동하거나 투자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포르투갈 정부는 혁신적인 노동법 개정을 통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적, 세제적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하여 외국인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Golden Visa

포르투갈 정부는 국내투자를 최소 5년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투자하는 -
① 50만 유로 이상 상당 부동산 매입 ② 100만 유로 이상 자본 이동 ③
일자리 10개 이상 창출 - 외국인(셴겐조약 가입국 출신 제외)에 대하여



장기거주를 허가하는 “Golden Visa” 발급 프로그램을 2012.10.8. 발효시키고 2013.3.5. 동 비자 발급을 개시했다. 2015.7.1.부터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골든비자 발급 대상을 과학연구, 예술활동 지원, 국가문화유산 복구·유지보수, 중소기업 자본확충 등을 위한 35만 유로 이상 자본 이동까지 확대하였다. 포르투갈은 동 제도 시행이후 2015.8월까지 총 14.9억 유로 상당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다(총투자 건수 2,465건).

외국인 직접투자 개황

(투자규모) 포르투갈내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3~94년 Volkswagen 계열사 생산공장 설립으로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여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포르투갈 중앙은행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외국인의 순직접투자액을 보면, 2011년과 2012년 각각 53억 유로와 64억 유로에 달했고 2014년은 약 46억 유로(2013년 대비 216% 증가)를 기록했다. 2015년 상반기는 이미 전년 동기 대비 38.9% 증가한 약 59억 유로를 기록한 바, 연간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포르투갈 무역투자청 통계).

(분야 및 국가) 2005년 이후 산업별 외국인 직접투자는 주로 제조, 부동산, 도소매업에 집중되었으나, 2014년에는 서비스가 80.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어 제조업(6.5%), 전기·가스·물(4%), 건설(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금융·보험업이 63%로 가장 많고 컨설팅(12.7%), 도소매업(10%), 부동산업(5.6%) 등의 순이었다.

최근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에너지, 바이오기술, 전기·전자부문, 화학, 정보통신·IT, 관광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외국인 투자기업들로는 독일 Volkswagen 계열사 생산공장(Autoeuropa), 브라질 항공기 제작업체 Embraer, 프랑스 Renault 자동차 부품공장(Renault Cacia), 미국 Cisco Systems, Nokia Siemens, 스웨덴 IKEA그룹, 프랑스 Leroy Merlin 등이 있다.

2015.6월까지 포르투갈에 대한 주요 투자국은 네덜란드(23.6%), 스페인(23.6%), 룩셈부르크(21.5%), 영국(7.4%), 프랑스(4.1%) 등 EU 회원국들로 총 외국인투자 전체의 90.3%에 달했다. EU 역외 국가들(전체의 9.7%)로는 브라질(2.3%), 앙골라(1.7%), 미국(1.5%), 스위스(1.3%), 중국(0.7%) 등이 있다.

(최근 중국투자 증가) 포르투갈 내 중국 투자액은 2011년 China Three Gorges가 EDP 지분 21.3%를 매입한 이래 이미 100억 유로를 초과했다. 최근 몇 년 동안 포르투갈은 유럽에서 영국, 독일 및 프랑스에 이어 4번째 투자 대상국이 되었다. 2015.3월말까지 포르투갈이 골든비자 차원에서 발급한 거주허가 약 3,500건의 80% 이상이 중국인에게 부여되었다.

(전담기관) 기존 무역관광청(ICEP)과 투자전담기구인 투자청(API)을 통합, 2007년 설립된 포르투갈 무역투자청(AICEP: Agência para o Investimento e Comércio Externo de Portugal)은 포르투갈 기업들의 수출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 전 단계 지원에서부터 인센티브 협상, 산업단지내 입지 제공 등 정착을 지원하고 사후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국 내 AICEP 재외사무소는 2010.5월 폐쇄되었지만, 2014.11.10 AICEP은 북미, 유럽 및 아시아(한국, 중국 및 일본)에 FDI Scouts(외국직접투자 유치 전문가) 네트워크를 개설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사무소 재개설 발표하였다. 그 후 AICEP은 2015.7월에 주한포르투갈대사관내 사무소를 재개설하고 상무관을 파견하여 현재 활동중이다.

노동시장 개황

(노동관련 법규) EU 회원국인 포르투갈의 노동환경은 다른 EU국가, 특히 남부국가들과 유사하다. 현재 적용중인 법은 2014년 6차로 개정된 노동법(Código do Trabalho)으로, 질병 또는 산업재해시 근로자 보호, 성별 또는 인종으로 인한 차별금지, 동등한 기회 제공, 출산 등 여성근로자들의 권리, 교육의 권리, 노조의 권리 등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노동법 개정) 포르투갈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노동법을 2003.12월 1차 개정한데 이어 2009. 2월, 2011. 10월, 2012. 6월, 2013. 8월, 2014.5월 등 수차례 개정하여 왔다. 2011년 재정위기 발생으로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IMF, EU 및 유럽중앙은행과 서명한 MOU 틀 안에서 포르투갈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및 경쟁력 회복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12.6월 해고사유 확대, 실업수당 지급 축소, 휴가 및 공휴일 단축, 해고수당 산정방식변경 및 상한선 설정 등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을 단행하였으며 지금까지 조치 중 가장 혁신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투자 제한 분야

거의 전 산업이 외국인 투자에 개방되어 있다. 단, 수도, 우편, 철도, 항만에 대해서는 양여계약의 조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투자 인센티브

포르투갈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및 포르투갈 내 외국인기업의 해외이전 방지를 위해 법인세(IRC)를 2003년 30%에서 2012년 25%로 인하하고 투자 인센티브법을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2013년 경기부양 조치의 일환으로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시적인 세제개혁을 단행하는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인센티브의 대상으로는 ①인적 잠재성, 경쟁력, 지역개발 등 3가지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 등 금융 인센티브, ②특정 프로젝트 계약을 기본으로 세제 감면 또는 면제, ③일자리 창출, 직업교육 등에 대한 자금 및 세제 지원, ④유망 사업에 대한 벤처자금 지원, ⑤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위한 상호 보증 등이 있으며, 투자에 관심있는 기업들은 사전에 재정 및 세제상의 혜택에 대한 세부 기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역투자무역청(AICEP, www.portugalglobal.pt)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제한적이지만 영문 사이트도 운영중).

한편, 포르투갈 정부는 2010.12.15일 기업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및 비용 감소 등을 골자로 한 “경쟁력과 고용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에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제도

개인소득세(IRS)의 경우 2014년에는 포르투갈 거주자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0-48%까지 누진세율에 의해 부과되며, 포르투갈 비거주자에게는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5%의 일률적인 세금이 부과된다. 법인세(IRC)의 경우, 과세표준 기준 15,000유로 이상인 경우 2013년 25%에서 2014년 23%로 인하하고 2015년 다시 21%로 인하했으며 2016년 17-19%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며, 15,000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17%가 적용된다. 또 이와 별도로 1.5백만 유로 이상의 경우 국가부가세(state surtax)로 3-7%가 부과되고, 150,000 유로 이상의 경우 지방부가세(municipal surtax)로 1.5%까지 추가 부과되고 있으나 2018년 폐지될 예정이다.

국가부가세의 경우 과세표준액이 1.5백만 유로 이상 기업인 경우 3%, 7.5백만 유로 이상 경우 5%, 3천5백만 유로 이상 경우 7%가 부과된다. 따라서 3천5백만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1.5%까지 부과될 수 있다.

Madeira와 Açores 행정자치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법인의 경우 각각 5%와 17.5%의 법인세가 적용된다.

현재 포르투갈 정부는 예산건정성을 유지하는 한도내에서 기업 경쟁력강화 및 투자 유인을 위하여 법인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세는 보유세(IMI)와 양도세(IMT)로 구분된다. 보유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농촌 부동산에 대해선 0.8%, 도시 부동산은 0.3-0.5%, 사법 관



리대상인 법인 소유 부동산은 7.5%의 세율이 적용된다. 각 자치단체는 매년 상기 세율의 30%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인지세의 대상이기도 한 양도세는 양수인이 지불하며 농촌 부동산의 경우 5%, 도시 부동산의 경우 시장가격과 건물의 소재지, 용도에 따라 0~8%까지 차등 부과된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IVA)의 기본 세율은 23%가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식품, 농산물, 전기, 호텔, 운송, 의약품 및 건강식품, 도시재개발 건축 등에 대해서는 6%의 할인 세율, 기타 식료품, 와인, 특정 장비 및 농기계류, 입장료 등에 대해서는 13%의 중간 세율이 적용된다.

인지세는 계약, 서류, 명칭, 서적, 규정 등에 대해 부과되며 각 부문별 세율을 보면, 부동산 소유권 및 기타 권리의 취득의 경우 0.8%, 개인기부 등에 의한 물품의 취득은 10%, 부동산의 임대 또는 재임대는 10%, 계약 등의 보증은 기간에 따라 0.04~0.6%, 신용의 사용도 기간에 따라 0.04~0.6%, 금융이나 신용기관의 이자, 커미션 등은 3~4%, 재산권 또는 백만유로 이상의 도시재산권에 대한 용익권 또는 지상권의 경우 거주 목적일 때 1%, 법인 보유시 7.5% 가 적용된다.

기타 세로는 주류세, 유류에너지세, 담배세, 차량세 등이 있다.

사회적 생산기반

포르투갈의 인구는 2014년 약 1,05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평균 학력이 서유럽 국가 중 상대적으로 낮아 노동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높은 고용보호 등 제도적인 환경이 고용을 제약하는 한편 생산성 증가를 약화시키는 이중적인 노동시장을 야기하였으나 2012년 개혁적인 노동법 개정과 노사정 협약 체결 등 긍정적 방향으로 가고 있다.

WEF 국가경쟁력지수 보고서에서 포르투갈의 경쟁력 순위는 2013년 51위에서 2014년 15단계 상승한 36위를 기록했으나, 2015년 38위를 차지했다. 2015.9월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포르투갈은 창업 편의 부분에서 4위(2006년 89위)로 상승하고, 인프라(15위), 고급수준 직업훈련(28위) 등에서도 향상된 반면 노동시장 경직성(114위), 재정적자(103위), 공공부채(135위)를 기록하는 등 분야별 편차가 컸다. 동 보고서는 포르투갈이 높은 재정적자(103위), 거대한 공공부채(135위) 등 거시경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개혁노력을 완화하지 않도록 권고하면서, 대출 용이성(107위) 강화는 물론 교육의 질(40위)과 혁신 능력(35위)의 향상을 위한 개입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은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으나,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2007년 403유로, 2008년 426유로, 2009년 450유로, 2010년에는 475유로였다. 2011년에는 500유로로 상향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재정위기로 인해 485유로로 재조정되고 이 금액은 2013년까지 동결되었다. 이후 2014. 10월부터 505유로로 인상되었다.

포르투갈은 지리적으로 유럽서남부 끝에 위치하고 있어 아프리카와 중남미와의 연결은 용이하나, 포르투갈산 제품을 여타 유럽국으로 수출하는 데는 운송비용 부담이 크며 2002년 유로화 도입 이후 물가가 많이 오른 국가 중 하나이다.

항만 시설

포르투갈의 리스본, Porto, Setúbal 등 기존의 항구에는 초대형 선박이 출입할 수 없고, 교통편이 양호한 리스본 항구에는 노조의 파업 등으로 통관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으며, 파업시에는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추가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



한편, 남서부에 위치한 Sines항은 수심이 깊고 천혜의 항만여건은 갖추고 있어 있어, 최근 포르투갈 정부는 Sines항 주변 인프라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파업과 종이 없는(paperless) 수속 등 효율적인 항만관리운용을 통해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물류 중심항구로 육성하고 있어 앞으로 국제 항구로서 도약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포르투갈 정부(경제부)는 최근 Sines항 개발과 관련, 한국과 항만·해운협력 MOU 체결을 제안하는 등 한국측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진출 외국기업이 원자재를 구입하여 상품을 생산·수출하는 경우 원자재 구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IVA)에 대해서 사후 환급하여 주고 있으나, IVA 환급에 따른 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IVA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보증서와 제품전량 수출보고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보증의 경우 환급금 예상액의 1%를 사전 보증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수출증명서를 모두 구비하는데 복잡한 행정관행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기업 활동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타 장벽

체류허가, 운전면허 및 각종 증명서 취득 절차

포르투갈은 쥬스겐협약 가입국으로 쥬스겐국가 최종 출국일(단속일)로부터 180일 기간 중 90일간 쥬스겐국내 무비자 여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90일 이상 장기 체류를 할 경우, 사전에 주한 포르투갈 대사관에서 체류목적에 따른 입국사증(단기체류사증 Visto de Estada Temporária 또는 거주증 발급용 사증 Visto de Residência 등)을 발급받아 입국하여 카관사증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 포르투갈 이민국(SEF)에서 체류비자를 연장받

아야 한다. 또한, 쉥겐 회원국을 경유하여 포르투갈에서 입국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 후 3일 안에 포르투갈 이민국(SEF)에 입국신고를 하여야 한다(EU 또는 포르투갈의 6개월 이상 체류허가를 받은 자와 호텔 등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여행자는 제외. 위반 시 벌금 부과). 체류허가를 발급·연장받는데 보통 1개월이 소요되나,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별도로 2014.4월 양국간 워킹홀리데이 비자 MOU를 체결하여 매년 18세-30세의 양국 청년 각 200명에 대해 최대 1년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운전면허증의 경우, 포르투갈 입국 후 한국 운전면허증의 대사관 확인서와 체류허가 또는 180일 이상 유효 비자를 첨부하여 포르투갈 교통국에 제출하면 포르투갈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 발급기간은 보통 1개월에서 2개월이 소요된다.

이외에도 현지은행 계좌 개설 후 직불·신용카드 발급까지 보통 2~3주가 소요되며, 전화·인터넷 설치는 2~3일이 소요된다.

한편, 포르투갈 정부는 시민들과 기업들에게 더욱 편리하며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규제간소화 프로그램인 “Simplex Project”를 2006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공공행정기관(특히 민원처리기관)에서는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는 한편, 복잡한 문서작성의 간소화, 다양한 서비스를 시민센터내 집중하여 한 곳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민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개선책을 통해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금융시장 관련

포르투갈 은행 현황

포르투갈의 은행은 국립은행인 Caixa Geral de Depósitos(CGD)와 민

간은행인 Millennium BCP(전 Banco Comercial Português), Banco Espirito Santo(BES), Banco Português de Investimento(BPI), Banco Popular 등이 있다. 시장 점유율로는, CGD가 약 30%로 1위이며, 이어 Millennium BCP(약 23%), BES(약 20%), BPI(약 10%) 순이다.

BES은행은 2014. 7월 모회사 격인 Espirito Santo가계의 계열사들의 오래된 부정회계 및 부실 경영이 표면화되면서 포르투갈 중앙은행에 의해 영업활동이 중지되고, 불량은행과 우량은행으로 분리하여 청산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신은행(Novo Banco)으로 명명된 우량은행에 은행청산기금(Resolution Fund)을 통해 49억 유로 한도의 자금(이중 39억불까지 정부 자금 융자)을 투입하여 정상화시킨 후 앞으로 1년 이내 매각을 목표로 하고 있다. BES은행 및 Espirito Santo 그룹 전체의 부실처리는 포르투갈 금융산업은 물론 경제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스페인 은행들은 포르투갈 전체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Banco Bilbao Vizcaya와 Banco Argentaria가 합병된 BBVA, 스페인 은행 Banco Santander와 포르투갈 은행 Banco Totta가 합병되어 탄생한 Santander Totta, 그리고 Caixa Galicia 등이 있고, 영국계 Barclays와 독일계 Deutsche Bank 등도 진출해 있다.

수출유망 품목

한-포르투갈 교역동향

2015(1~6월) 우리의 대포르투갈 수출액은 301백만 불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 수입액은 102백만 불로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를 기록함. 주재국이 구제금융을 통해 재정위기를 극복한 이후 미비하게나마 지

속적인 경제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재국 정부가 계속하여 EU역외 교역상대국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앞으로 양국간의 교역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 한-포르투갈 교역현황

(단위: 백만불)

구 분	2011	2012	2013	2014 (1~6월)	2013	2014	2015 (1~6월)
수출	713	276	334	209	334	493	301
수입	100	156	204	87	204	181	102
무역수지	613	120	130	122	130	312	199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포르투갈은 우리의 수출상대국 73위, 수입상대국 81위(2014)

우리는 포르투갈의 수출상대국 49위, 수입상대국 26위(2014년)

○ 2014년 주요 상품교역 품목(출처 : 한국무역협회)

- 수출 : 기계류(총 수출액의 38.3%), 화학공업제품(29.1%), 전자전기 제품(12.8%), 철강금속제품(10.5%), 섬유류(4.5%),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2.4%) 농림수산물(1.6%) 순임.
- 수입 : 섬유류(24%),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21.9%), 전자전기 제품(14.2%), 화학공업제품(12.2%), 생활용품(10.3%), 농림수산물 (6.2%), 기계류(5.8%), 철강금속제품(3.7%), 광산물(1.7%) 순임.

○ 선박 등 수송기계

- 최근 Sines항 개발 등 물류단지의 개발과 포르투갈이 유럽과 아프리카(앙골라, 모잠비크 등)를 잇는 지정학적인 장점을 활용한 해양 개발과 맞물려 우리 업체들의 선박 등 수송기계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여 2010년의 경우, 특수선박이 우리의 對포르투갈 전체 수출 총액의 70%를 차지한바 있으나, 이는 일시적 수요에 의한 수출로서 2011년 들어 급격한 수출하락을 보였다.

○ IT 제품

- 포르투갈은 유럽국가중 IT 분야에서는 선진국이며, 전자정부 부문에서도 2006년 이래 “Simplex Project”로 명명되는 ICT를 활용한 공공행정 서비스 간소화를 추진하는 한편 “신디지털전략(New Digital Strategy)”을 마련하여 IT산업과 국가정보화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등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률은 급속히 향상되어, 한 가구당 컴퓨터 보유율은 2002년 26.9%에서 2014년 68%, 가구당 인터넷 접속율은 2014년 65%, 가구당 광대역 인터넷 접속율은 2003년 7.9%에서 2014년 63%를 기록했다(포르투갈 통계청). 인터넷 솔루션 및 하드웨어, online 비즈니스 솔루션, DB, 무선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도 한 학생당 한 컴퓨터 정책을 펴며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한국산 휴대폰은 2012년 우리의 對포르투갈 수출에 있어 합성수지, 승용차, 합성고무에 이어 네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포르투갈 내 시장점유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포르투갈 경제위기로 인한 소비수요 감소로 2012년 전년대비 미미한 증가를 보였으나 2013년 9%대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휴대폰 단말기, 충전지 케이스, 블루투스 등 액세서리와 모바일 게임, 음원 콘텐츠 등 모바일 콘텐츠와 동영상 처리, 모바일 플래쉬 구현 등과 같은 모바일 솔루션 부분이 유망하다.

※ 포르투갈의 소프트웨어 시장은 스페인과 미국계 기업들이 대부분 장악

○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부품(제84류)

- 공기조절기(8415)와 기체 또는 진공펌프, 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 후드(8414)의 수출과 냉장고·냉동고(8418)와 계산기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금전등록기(8470),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클러치(8483),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등(8471)의 수출이 호조를 보인 바 있다.

- 포르투갈의 중앙난방용 보일러 수입은 2003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포르투갈 기존 주택들은 대부분 난방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고 있으나 최근 신축건물들에 보일러 설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고급 리조트 건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전기기기 및 부품(제85류)

-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기기 및 영상전화기(8517) 수출의 비중이 가장 크며, 현지 치안이 예전에 비해 다소 불안해 지고 있어 대형 고급빌라의 신축에 필요한 CCTV 카메라, DVR, 출입문잠금장치(Door Lock System) 등 디지털 보안장비(8525) 또는 관련부품(8529)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쇄회로(Printed circuits, 8534) 수입 또한 2001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재고관리를 위해 1997년 이후 전자태그(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활용하고 있으며, 위험한 견종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화가 실시 중으로 추후 모든 애완동물에 대해 확대 적용될 예정인 바, 앞으로 RFID 관련 장비(8542, 8543)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트랜스폰더, 판독기, RFID 소프트웨어, 데이터 품질 및 통제 시스템(Data quality & control), 장치관리(Device Management) 등과 같은 RFID 장비들의 시장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 LCD TV, 세탁기, 냉장고 등 전자제품은 對포르투갈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판매법인으로 진출해 있다.

○ 고무제품(제40류)

- 고무제의 공기타이어(4011)는 對포르투갈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로 대형 자동차용 타이어 수출이 호조를 보여 왔는바, 포르투갈과 포어권 아프리카 국가와의 긴밀한 관계를 감안하여 포르투갈을 통한 對아프리카 수출활로 개척 등 삼각무역을 추진도 검토해 볼 만하다.

○ 승용차, 건설중장비 및 부품(제87류)

- 민간건설 둔화로 포르투갈의 건설 중장비 수입은 다소 감소했으나, 승용차(8703)와 건설 중장비, 농업용 기계(8701) 등은 여전히 對 포르투갈 주요 수출품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섬유 및 의류

- 섬유와 의류는 한국의 對포르투갈 수출의 주요 품목이나, 최근 중국과 동남아시아 제품과의 경쟁으로 일부 품목의 수출이 둔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단, 면사(제52류), 인조필라멘트(제54류), 인조스테이플섬유(제55류), 펠트·부직포(제56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60류) 등의 수출은 여전히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 화학제품(제32류)

- 포르투갈은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우리나라로부터 합성유기착색제와 그 조제품(3204) 수입이 증가해왔다. 특히, 2007년 우리나라로부터 향생물질(2941) 수입이 전년대비 500%에 이르는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고 이후도 꾸준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 포장기기 및 포장재료(3923)

- Sonae(Continente, Modelo), Jerónimo Martins(Pingo Doce) 등 대형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하이퍼마켓이 전국에 확산되고 있어, 포장기계와 포장재료, 'self-checkout(셀프계산창구)' 기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 냉·온수기

-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일반 가정은 물론 사무실에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보급률이 높지 않아 품질과 디자인이 우수하고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한국제품의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의약품

- 우수한 품질에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의약품 수출도 꾸준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 농산물

- 아직까지 수요가 큰 편은 아니지만, 식생활 개선 및 웰빙문화 도입으로, 잡곡, 두부, 김, 미역 등 건강식품과 인삼, 로얄젤리, 은행잎추출물 등 건강보조식품의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여, 시장 개척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 기타 잡화류

- 포르투갈의 문구(특히 볼펜-9608), 완구, 운동용구, 낚시도구, 펠트, 신발류 자재, 단추·단추 모울드와 부분품(9606) 등 일반 공산품 가격은 비교적 높은 편이므로, 양질의 저렴한 한국산 공산품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폴란드

경제 및 한-폴 무역투자 동향

폴란드는 인구 3,800만 명(EU회원국 중 6위), GDP 약 5,00억불로 경제규모 세계 23위(2013년 IMF 통계)로 중·동부유럽 핵심국가이며, 공산주의 경제에서 자본주의로 전환에 성공한 대표적인 경제모델이다. 공산권 붕괴 후 동유럽 국가 중 가장 빠른 성장(90년대 연평균 6% 경제성장으로 유럽 내 최고)을 달성하였다.

특히, 1989년 체제전환 후 급진적 경제개혁(Shock Therapy) 실시하였으며 높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1996년 우리나라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였고, 2004년 유럽연합(EU) 가입 이후 EU자금 및 활발한 외국직접투자(FDI) 유입으로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9년 세계 금융 위기 때에도 유럽연합 회원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 유로존의 재정위기 가운데에서도 유럽연합 27개국 평균 경제 성장률(1.6%)보다 두 배 이상 높은 4.3%의 경제성장 달성하였다. 유로존 재정위기의 여파가 가시지 않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던 2013년도 역시 1.6% 성장률을 기록했다. 유로화 도입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정부재정적자폭의 확대와 높은 물가 상승률 등 유로화 가입조건 충족의 어려움을 감안 서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국과 폴란드의 무역은 폴란드의 2004년 EU 가입을 전후로 하여 최근 10여년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양국 교역 총액은 2003년 4.5억불 수준에서 2013년 양국간 총 교역액은 43.8억불(수출 36억불, 수입 7.8억

불)을 기록하여 10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무역흑자 28억불로 우리의 주요 무역 흑자국이다.

폴란드는 우리의 중·동부 유럽 지역 최대의 투자 파트너이자 우리 기업 유럽 진출의 거점으로, 160여 개의 우리기업이 전자, 화학, 연구개발(R&D) 센터 등 분야를 중심으로 폴란드에 진출해 있으며, 우리의 대 폴란드 투자는 14.8억불(14년 말 누계 기준)에 이른다. 2005년 LG전자의 본격적인 투자 진출을 시작으로 2010년 삼성전자가 브롱키(Wronki)에서 냉장고/세탁기 공장을 인수하였으며, 2011년 만도가 바우브쥐흐(Walbrzych)에 대규모 자동차 부품공장을 건설, 투자 진출하는 등 폴란드 중서부 지방 중심의 가전 부품 분야, 남서부 지방 중심의 자동차 부품 분야 투자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

■ 한-폴 무역 통계

(단위: 백만불, ()는 증감률)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 출	4,147 (0.7)	4,381 (5.7)	4,111 (△6.4)	3,678 (△10.3)	3,601 (△2.1)	3,850 (6.9)
수 입	234 (△23.8)	274 (17.1)	376 (37.4)	535 (42.2)	775 (44.9)	775 (1.8)
무역수지	3,913	4,107	3,725	3,143	2,823	2,823
총교역액	4,381	4,655	4,487	4,213	4,376	4,376

* 출처: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對폴란드 직접 투자 현황

(단위: 천USD)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누계
신규투자(건)	1	12	8	4	7	8	167
투자금액	29,828	55,314	89,840	26,607	21,798	54,962	1,475,765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 EIU 폴란드 2015~2019 경제 지표 전망

주요경제지표	2015	2016	2017	2018	2019
실질경제성장률(%)	3.3	2.9	2.9	3.5	3.3
산업생산(%)	4.0	4.3	4.8	4.4	3.7
고정자산투자(%)	5.0	2.5	2.5	4.0	4.5
실업률(평균)	10.6	9.3	9.5	8.3	8.8
실업률(EU통계청기준)	10.1	10.0	9.5	9.5	9.4
물가지수	7.5	6.8	6.8	5.8	6.3
물가지수(EU HICPI)	-0.8	2.2	2.6	2.3	2
단기대출이자율	5.5	6.5	7	7.5	7
재정수지(% of GDP)	-1.6	-2	-2	-1.8	-1.7
수출(USD억)	212.8	224.5	242.5	263.8	282.6
수입(USD억)	212	231.7	253.9	275.4	293.2
경상수지(USD억)	-3.8	-14.2	-15.3	-12.8	-10.5
경상수지(% of GDP)	-0.8	-3	-3.1	-2.3	-1.7
대외채무(USD억)	344.4	363.5	375.6	384.6	392.4
환율(USD, 연평균)	3.8	4.04	3.88	3.63	3.45
환율(EUR, 연평균)	4.18	4.29	4.34	4.25	4.14

출처: EIU

■ 폴란드의 해외 직접 투자(FDI) 유입 동향

(단위: 백만 USD)

연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투자유입액	23,651	14,978	13,022	14,345	18,887	3,092

출처: 폴란드 국립은행

통관

2004.5월 EU 가입 이후 EU의 요건에 맞추기 위해 폴란드의 세관행정은 대부분 전산화가 됨에 따라 통관수속 및 소요시간에서 개선되었다. 2011. 7.1 한-EU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수출인증자 제도를 활용하여 통관이 더욱 간소화되었다.

관세환급의 경우, 과거에는 환급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으나, 최근 들어 많이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환급의 경우 SAD(유럽 통일무역서식)를 받아 신청서와 함께 환급을 신청하여 세관당국의 검토 후에 환급을 받게 된다. SAD를 받는 데는 보통 7일에서 14일이 걸리며, SAD를 첨부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바로 환급을 하게 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

폴란드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다.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으로는 법제도 정비, 현금지원 및 각종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 제공, 경제특별구역(Special Economic Zone) 운영, 정부투자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2004.8.21일에는 경제활동자유법(Economic Freedom Act)이 발효되었는데 이 법은 기업 설립을 쉽게 하고 설립절차를 간소화하며, 인허가 분야를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제활동자유법에 따라 정부의 인허가가 요구되는 사업 분야는 6개의 카테고리(concession의 경우)로 줄어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허가/인가가 요구되는 업종 또는 사업 활동

인허가의 유형	업종 또는 사업 활동
이권 (concession)	광물 탐사 및 채굴 폭약, 무기 제조, 기타 군용 제품 및 기술 연료 및 에너지의 제조, 가공, 유통, 거래 사람과 재산의 보호 항공 수송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방송



인허가의 유형	업종 또는 사업 활동
등록(register)	통제되는 활동(예: 사설탐정, 외국환으로 상행위 등)의 경우
허가(permit)	주류 도매 주류 및 담배 제조 유독성 물질의 제조 및 판매 방사성 물질의 제조 및 판매 공항 관리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약국 또는 의약품 창고 운영 특정 우편 및 택배 서비스 카지노의 운영 은행 운영 보험회사 또는 중개회사의 운영 통신 서비스 도로 수송 상수 공급 및 하수 처리 폐기물 처리 투자펀드 또는 연금펀드 설립 비료 및 살충제 거래 부동산 중개 서비스 원양 어업 경제특별구역(SEZ)에서의 사업 활동 등
라이선스 (license)	특정 물품의 수입 및 판매에는 라이선스, 증명서 등이 필요: 화장품, 일부 아동용품(크레용, 물감 등), 식수와 접촉하는 물품 등 공공 전화 네트워크 이용 및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공공 통신 네트워크의 이용

회사의 형태

외국인투자와 관련해서 먼저 ‘외국인’의 정의를 보면, 외국에 거주하는 개인, 본점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법인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EU나 EFTA 지역 외국인과 여타 지역의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다소 차이가 있다. EU나 EFTA 지역에서 온 외국인 투자가는 폴란드 시민과 똑같은 조건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반면, 여타 지역 출신의 외국인 투자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y), 유한합작회사(limited partnership), 유한주식합작회사(limited joint-stock partnership) 등의 형태로만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는 지사(branch office) 형태로 영업 활동을 하거나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설립할 수도 있다. 그 밖에 다양한 회사 형태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법인성을 보장받는 회사 형태로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를 꼽을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sp.zo.o.)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설립될 수 있다. 주주 1인에 의해서도 설립 가능하나, 다른 1인 주주 유한책임회사 만에 의해서는 설립될 수 없다. 법인성(legal personality)을 가지며, 이사회에 의해 대표된다. 최소 설립자본금은 5,000 PLN이며, 주식의 최소 액면가는 50 PLN으로 되어 있다. 출자는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가능하다. 유한책임회사는 국가법원등기부(National Court Register)에 등록되면, 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y/S.A.)의 최소 설립자본금은 10만 PLN이며, 주식의 최소 액면가는 0.01 PLN이다. 주식회사는 최소 1인 이상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설립되어야 한다. 주주 1인으로도 설립 가능하나, 1인주주의 유한책임회사에 의해서는 설립될 수 없다. 주식회사는 국가법원등기부(National Court Register)에 등록되면, 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주식회사는 공개 거래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한책임회사와 다르다. 바르샤바 주식거래소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식회사여야 한다. 출자는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가능하나, 현물출자시 감사인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지사(branch office)는 법인성은 갖지 못하나,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단, 지사의 활동은 본사 영업 범위 내의 활동만 가능하며,



국가법원등기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의 활동은 본사와의 연락, 광고 및 프로모션 등으로 제한되며, 상거래 활동은 할 수 없다. 폴란드 경제부가 관리하는 대표사무소 등기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투자 인센티브

폴란드의 EU 가입(2004.5월) 이후 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EU의 요건에 맞춰지고 있다. 대표적인 투자 인센티브로는 소위 ‘지역지원’(Regional Aid)을 들 수 있는데 신규투자(공장 설립, 기존 공장 확장 등)에 대해서 현금 보조, 법인세 감면 및 부동산세 감면 등의 형태로 투자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지원(Regional Aid)의 주요 내용

현금 보조나 법인세 감면의 한도는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데 적격투자비용(유형 및 무형자산 구입비용 등)의 30%에서 50%까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예컨대, 수도인 바르샤바의 경우 지원을 상한선은 30%이며, 외국 기업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남서부 공업지역은 40%, 기타 지역은 50%로 되어 있다.

한편, 중견기업 및 소기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중견기업의 경우 지원을 상한은 10% 포인트 높아지고, 소기업에 대해서는 20% 포인트가 더 높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투자가 최소 5년간 존속되거나 또는 투자에 따라 창출된 일자리가 최소 5년간 유지되어야 한다(중소기업의 경우 각 3년). 적격투자비용은 투자비용(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리스 비용 등) 또는 투자에 따른 2년간의 신규 노동비용으로 계산된다.

현금 보조는 폴란드 당국에서 투자금액, 투자업종(기술수준)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하며, 최종적으로 투자기업과 폴란드 정부(경제부) 사이에 계약도 맺어야 하므로 상당히 까다롭다고 할 수 있다. 2008.8월 폴란드 정부는 폴란드의 산업고도화 및 외국인투자유치의 질적 성과 제고를 위하여 현금지원 제도를 대폭 강화하였다. 현금지원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는 대규모투자, 서비스업 및 R&D투자, 정부가 정한 중점 육성산업분야로의 투자이며 각 대상별 지원조건 및 지원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정부는 중점 육성산업으로 자동차산업, 전자산업, 항공산업, 첨단기술서비스분야(바이오테크놀로지산업, IT 등), 연구개발(R&D) 등 5개 분야를 선정하였으며 동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 현금 지원 강화 내용

지원대상	자격요건	지원내용
대규모 외국인 투자	일반조건 - 투자액: 1억6000만 즈워티 이상 - 고용규모: 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 - 투자액: 10억 즈워티 이상 - 고용규모: 500명 이상	지원액은 경제부와의 협상에 따라 결정
고도산업 분야 고용 창출	전략적 육성 산업 분야 - 투자액: 4천만 즈워티 이상 - 고용규모: 250명 이상 서비스업 - 고용규모: 250명 이상 R&D - 투자액: 3백만 즈워티 이상 - 고용규모: 35명(연구원) 이상	고용규모 250~1000명 : 신규고용인력 1인당 최대 3,200 즈워티 고용규모 1000명 이상 : 1,000명 이상의 신규고용 인력 1인당 최대 18,700 즈워티 추가 지원

출처: 폴란드 경제부

경제특별구역(SEZ) 내 조세감면

경제특별구역(SEZ)은 유리한 조건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별도의 구역이다. SEZ은 조세 감면 혜택이 있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다. SEZ에 입주하여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SEZ의 관리당국은 입찰을 통해 허가증을 발급한다.

SEZ에서 투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가 최소 10만유로가 되어야 하고 적어도 5년간 유지되어야 한다. 현재 폴란드에는 14개의 SEZ(기술단지 1개 포함)가 설립되어 있으며, 유효 기간은 2026년까지이다. SEZ 내에서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는 조세감면인데 전술한 ‘지역지원’(Regional Aid)의 일환이다.

- 대기업은 적격비용(유형 및 무형자산 구입비용 또는 2년간의 신규 고용 비용)의 40% 또는 50%(특구가 위치한 행정구역에 따라 차등)까지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음. (R&D인력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 면제 혜택 부여)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지는데 중견기업의 경우 10% 포인트, 소기업에 대해서는 20% 포인트 높아짐

지방세 면제

부동산세에 대한 부분 또는 전액 면제 혜택이 있는데 이는 해당 지방자치체 의회(municipality council)의 결의가 있으면 받을 수 있다. 단, 이러한 결의는 국가보조금 관련규정에 명시된 지원 프로그램의 요건과 합치되어야 한다. 또한, 차량세도 부분 또는 전액 면제가 가능하다. 차량세는 트럭과 버스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승용차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관련사항을 포괄하는 법규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법’(Act on Acquisition of Real Estate by Foreigners)이다. 부동산은 토지, 토지 구획상의 건물 등으로 구성된다. 폴란드에서 부동산은 아래와 같은 법적인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장기임차 계약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화될 수 있다.

- 소유권(ownership right)
- 장기임차권(the right to a long-term lease) 또는 영구 사용권(perpetual usufruct):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자치체가 가지고 있으며, 임차인이 연간 사용료를 지불하고 40~90년 간 토지 사용권이나 토지 위의 건물 소유권을 가짐
- 사용권(usufruct)
- 임차(lease or rental)

부동산 취득법에서 ‘외국인’이란 a)폴란드 시민이 아닌 사람 또는 b)폴란드 밖에 등록된 법인 또는 c)폴란드에 등록된 회사나 법인으로 a항, b항에 명시된 회사나 개인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지배(controlled)되는 회사로 정의된다.

외국인은 폴란드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의 허가를 받으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무부는 국방부, 농업부와 협의를 거치게 된다. 외국인의 취득 신청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이 국방에 위협이 되지 않는지 여부, 공공질서나 안전에 대한 위해 여부, 사회 및 보건정책에 위반하지 않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허가나 불허 결정을 내리게 된다. 또한, 외국인이 부동산의 장기임차권을 가진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인수하거나 양도받을 때에도 허가가 필요하다. 단, 이 기업의 주식이 주식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한편, 폴란드의 EU 가입일(2004.5.1)부터 EEA(European Economic Area) 회원국의 시민이나 기업가가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의 장기임차권을 보유한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단,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 농지/삼림지 및 제2의 주택(second house)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농지/삼림지는 EU 가입일로부터 12년간, 제2의 주택은 가입일로부터 5년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 허가와 관련, 내무부의 정책은 폴란드에 진출한 기업(또는 외국 기업의 지사)에게만 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현지에 법인이 없는) 외국 기업이 직접 허가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EEA 지역 내 시민 및 기업가에 대한 허가 면제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즉, 다음에 해당될 경우 EEA 이외 지역의 외국인도 허가가 필요치 않다).

- 거주허가 취득일부터 최소 5년간 폴란드에 거주 중인 외국인의 부동산구입
- 폴란드 시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으로 거주허가 취득일부터 최소 2년간 폴란드 거주 시
- 외국인이 직간접 지배하는 법인이 영업 목적으로 미개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0.4ha 이내이며, 도시 경계 안에 위치해야 함)
- 공개 거래되는(상장된) 기업의 주식 취득

단, 위의 허가 예외사항은 해당 부동산이 국경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1ha 이상의 농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부동산 취득법에 위배될 경우 토지매입계약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체가 소유한 장기임차권은 경매를 통해서만 판매될 수 있고, 여타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임차권의 판매가 가능하다.

송금 등 외환관리

폴란드의 경제발전 및 2004.5월 EU 가입 등에 따라서 외환 거래에서 자유화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지 법인(거주자 지위)의 경우 합당한 사유와 증빙이 있으면, 대외 송금(예: 수입대금, 배당 송금 등)에 대한 제한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단, 만기 1년 미만의 단기 대규모 외화 차입 등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중앙은행(NBP; National Bank of Poland)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사회보장제

폴란드의 사회보장보험은 연금, 불구(disability), 사고(산업재해) 및 질병(sickness) 보험으로 구성된다.

사회보장제는 의무사항이며, 월 단위로 기업 소재지 사회보장기관(ZUS) 사무소에 지불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는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모두 납부하며, 고용주의 기여분은 피고용자 급여의 19.48~22.67%에 달하며, 피고용자의 기여분은 13.71% 이다.

■ 사회보장제(ZUS) 체계 및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기여분

구 분	기여분(급여 대비)	기여금 분할	
		고용주	피고용자
연금	19.52%	9.76%	9.76%
불구	8%	6.5%	1.5%
사고(산업재해)	해당 산업의 위험도에 따라 0.67%에서 3.86%까지 차등	0.67%~3.86%	—
질병	2.45%	—	2.45%
추가 기여금:			
노동기금	2.45%	2.45%	—
피고용자복지기금	0.10%	0.10%	—

* 의료보험은 피고용자가 추가로 9% 부담

위와 같은 사회보장제 체계는 2013.1.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단, 남성 1948.1.1일, 여성 1953.1.1일 이전에 출생한 피고용자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구제도를 따르게 된다. 구제도 하에서는 연금을 받기 위해서 남성의 경우 폴란드에서 최소 25년 근무하고 65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여성은 최소 20년 근무, 60세 이상이 되어야 했다.

반면, 2013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연금법(2012.5.11 제정)에는 남녀근로자 정년퇴직 연령을 67세로 동일하게 상향 조정되었다. 단, 남성의 경우 2013년부터 연간 3개월씩 정년을 연장하여 2020년까지 67세로



단계적 연장이 실시되며, 여성의 경우 2040년까지 67세로 단계적으로 정년이 연장된다.

한편, 위의 사회보장제 외에 건강보험도 있는데 건강보험에 대한 기여금은 급여에서 상기 사회보장제 납부액을 제외한 금액의 9%이며, 피고용자에게만 적용된다. 2001.9.27일부로 폴란드 내 법인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의무화되었다.

폴란드에 있는 모든 피고용자는 사회보장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따라서 폴란드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주재원)도 원칙적으로는 사회보장제를 지불해야 한다. 기존에는 이러한 사회보장제 납부 의무가 우리나라에서 폴란드로 단기 파견된 근로자에게도 주어졌지만, 2010.3.1일부로 발효된 한-폴 사회보장협정으로 인해 양국 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 및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법령의 핵심 내용은 근로자와 경제적으로 보다 긴밀한 관계에 있는 어느 한 쪽 당사국만의 법령을 적용하여 기업의 개별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제 납부 의무 중복 적용 및 기여금의 이중 납부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회보장보험료 납부에 적용된다.

- ① 우리나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 ② 폴란드: 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이 협정에 따라 양국 중 어느 한 나라에 고용된 근로자는 그 나라의 법령만 적용 받으며, 자영업자나 양국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통상 거주하는 나라의 법령만이 적용되게 된다.

한국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5년 동안 본국의 법령만을 적용 받게 되어 폴란드에서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의 사회보장제 납부 의무를 면제받게 되며, 추후 이 기간에 대한 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이 한-폴 사회보장협정으로 인해 사회보장세 가입 기간에 대한 합산이 가능해져, 어느 한쪽 계약당사국에서 급여수급자격 등을 결정할 때 연금 대상자가 다른 쪽 계약당사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된다. 만약 양국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서도 연금 대상자가 급여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양국이 공통으로 합산협정을 체결한 제3국 가입기간도까지도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는 한국인 직원이 폴란드에서 연금을 납부할 시 대부분의 경우 폴란드의 최저연금 보장 최소 가입기간 25년을 다 채우지 못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지만, 사회보장협정 발효로 인해 한국과 폴란드 양국에서 납입한 기간을 합산하여 한국 또는 폴란드에서 연금 수급 시 적용 받게 되었다.

폴란드에서 한국기업이 이와 같은 사회보험료 면제를 받으려면 우선 한국에 있는 사용자가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 증명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 국제업무센터에 방문, 우편, 혹은 팩스로 접수한 뒤, ‘한국법률 적용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Fax: 02-3485-9804). 적용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근무 인사명령서 등 파견 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 증명 발급 신청서’는 국민연금공단 본사, 지사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nps.or.kr 연금정보-사회보장협정-사식자료)에서 얻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국제업무센터에서는 관련 제출 서류를 확인한 후 ‘한국 법률 적용증명서’ 2부(사용자 및 근로자용)을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우편송달하게 된다. 이 증명서가 발급되면 파견 근무지의 사용자는 이 증명서에 기재된 파견기간 동안 근로자의 급여에서 폴란드의 사회보장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되며, 만약 폴란드 실무기관의 요청 혹은 보험료 부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 적용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차후 연금 급여를 신청 시 우리나라 체류자는 국민연금공단에 폴란드의 연금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폴란드 체류자는 폴란드의 실무기관에 이를 청구하면 심사 후 매월 말일에 지급되게 된다.



조세제도 개요 및 법인세

폴란드의 조세 시스템은 폴란드 전역에 걸쳐 균등하며, 다만, 지방세의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 납부의 방식이나 세율 등에서 외국인 투자자(법인 및 개인)와 폴란드의 법인/개인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비즈니스 활동을 영위코자 하는 모든 회사들은 소재지 지방 세무서 등록 후 납세자 번호(NIP)를 부여 받게 된다. 법에 의해 회사들은 자신들의 계정을 두고 세금을 독립적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다.

폴란드는 외국인투자 촉진 등의 목적으로 2004.1월부터 법인세율을 19%로 인하하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2003년 법인세율은 27%). 과세대상 소득은 과세연도(tax year)에 벌어들인 모든 수익의 총합에서 공제대상 비용, 추가적인 특정비용(예컨대 공제대상 기부)을 차감한 소득이며, 이것이 과표 산출의 기본이 된다. 본사가 폴란드에 있는 회사(등기 사무소나 이사회를 폴란드에 둔 회사)는 폴란드를 포함한 전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의 대상이 되며, 본사가 해외에 있는 법인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을 경우 폴란드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의 대상이 된다.

공제대상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들어간 비용인데 주된 항목은 각종 경비(원자재 구입, 에너지 사용, 수송비 등), 종업원 급여 및 사회보장세, 감가상각, 리스 비용, R&D 비용, 공제 가능 기부금 등이다. 한편, 공제가 되지 않는 비용(비공제 비용)의 주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자본화대상비용: 자산구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 및 금융비용(외화환산손익 포함)은 자산원본에 가산하고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
-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비용: 매출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폴란드 세법 내 64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비용. 동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손금 불인정
- 접대비성 비용

손실처리와 관련하여 법규에서는 납세 기업이 손실을 미래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손실을 소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매 회계연도에 총손실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차후 5년간 이월 처리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역년(曆年, calendar year)이 과세연도가 된다. 그러나 납세 기업은 12개월을 대상으로 다른 과세연도를 선택할 수 있다.

폴란드는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 협정에 따라 배당, 이자,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낮아지게 된다. 협정에 의거, 한국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현재 배당금 5~10%(수혜업체가 지급업체의 지분 10% 이상 보유 시 5% 적용), 이자 0~10%(정부·지방기관, 중앙은행에 지급 시 0% 적용), 로열티 10%로 되어 있다.

기타 참고사항

체류비자

1993.12.24일 발효한 한-폴 간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에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체류목적이 영리 또는 유급행위에 종사하는 것이 아닌 한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폴란드에 체류할 수 있다. 폴란드에 한해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연중 180일 기간 중 90일 체류가능 내용의 쉥겐조약보다 상기 양국 간 교환각서 내용이 우선 적용되므로, 비영리목적으로 90일 이상 체류를 원하는 사람은 비쉥겐조약국으로 출국 후 재차 귀국 시 추가로 90일 체류가 가능하다.

상용비자는 해외의 폴란드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상용비자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상용비자의 유효기간은 최대 1년이다.



그간 폴란드에서는 노동허가(work permit)와 비자 신청 및 갱신절차가 상당히 복잡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폴란드 정부도 제도를 점차 개선하여 외국상사 주재원 등에 대해 유효기간 최대 2년(연장가능)의 거주허가를 발급하기도 한다. 이미 폴란드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은 비자 만료 45일 전에 회사가 소재한 주 정부에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주 정부는 고용원 수 등 동 기업 활동이 폴란드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유효기간 최대 2년의 체류허가를 발급한다.

그러나 2006.7.21일 폴란드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허가 발급절차 및 조건에 관한 노동부령”을 개정, 노동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직원(주로 폴란드인) 2명 이상을 1년 이상 고용한 경우에만 외국인의 노동허가 신규 발급 및 갱신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2006.8.23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

1999.1.24일 발효한 한-폴 간 ‘국제 및 국내운전면허 상호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는 폴란드 내에서 1년간 유효하다. 단기 체류자의 경우 최초 입국 후 6개월간은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국내운전면허증과 공증번역문을 소지하면 폴란드 내에서 운전이 가능하며, 장기체류자의 경우는 이론 및 실기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폴란드 국내 운전면허로 교환할 수 있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공증번역하여 거주 지역의 교통과에 제출하면, 통상 신청 후 2~4주 이내에 폴란드 국내운전면허가 발급된다.

프랑스

최근 거시경제 및 정책 동향

프랑스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재정위기를 겪으면서 경기부진과 재정 건전성 회복 지연, 높은 실업률,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 있다.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사회 구조개혁 및 경기 진작 대책에도 불구하고 내수와 투자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나, 최근 유로화 약세,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수출 등 일부 지표를 중심으로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경제는 2014년 0.2% 성장에 그친 가운데, 2015년 1.0% 내외의 성장에 이어 2016년에 1.5% 수준의 미미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프랑스 경제가 직면한 고용, 투자 부진과 산업 경쟁력 저하 등 구조적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포함한 고강도 구조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나, 최근 추진한 경제성장촉진법(마크롱법)을 비롯한 프랑스 정부의 제반 개혁조치는 프랑스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 경제성장률(%) : (12) 0.2 →(13) 0.7 →(14) 0.2 → (15 Q2) 0.0
- ※ 재정수지(GDP 대비, %) : (12) △4.9 →(13) △4.1 →(14) △3.9→(15) △3.8^e
- ※ 국가채무(GDP 대비, %) : (12) 89.6 →(13) 92.3 →(14) 95.6→(15) 96.3^e
- ※ 실업률(%) : (12) 9.8 →(13) 10.2 →(14) 10.2→(15 Q2) 10.3

대외통상 관계

프랑스는 2014년 기준, 세계 5위 교역국, 세계 5위 수입국, 또한 세계 7위 수출국이다.

■ 2014년 세계 무역 현황

(단위: 십억 달러)

수출 순위	국가명	금액			증감률		
		수출	수입	교역	수출	수입	교역
	세계	18,401	18,881	37,282	1.0	1.1	1.0
1	중국	2,343	1,963	4,306	6.0	0.7	3.6
2	미국	1,623	2,345	3,968	2.8	0.6	2.5
3	독일	1,418	1,203	2,621	3.6	2.2	3.2
4	일본	690	812	1,502	-3.4	-2.4	-2.9
5	네덜란드	657	584	1,241	-0.4	-0.3	0.1
6	한국	573	526	1,099	2.3	1.9	2.1
7	프랑스	570	664	1,234	0.1	-0.2	-10.8
8	이탈리아	521	451	972	2.2	-0.7	0.8
9	러시아	482	288	770	-8.5	-8.5	-11.0
10	캐나다	475	507	982	3.6	-0.2	1.7

프랑스의 유럽연합 역내 교역 의존도는 2012년 58%에서 2015년 6월 58.6%로 증가했으나 2014년 58.7%에 비해서는 0.1포인트 하락했다.

EU역내 수입의존도는 2014년까지 지속 증가하여 58.2%를 기록한 후 올 상반기에는 57.7%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EU역내 수출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올 상반기 59.6%에 달했다.

프랑스의 EU역내 교역 현황

(단위: 십억 유로, %)

구분		2012년		2013		2014		2015. 상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교역	전체	952.9	100	935.3	100	937.7	100	477.7	100
	EU	557.3	58.0	549.3	58.2	550.2	58.7	279.9	58.6
수출	전체	441.9	100	436.8	100	437.3	100	224.0	100
	EU	257.4	58.3	256.2	58.7	259.2	59.3	133.6	59.6
수입	전체	518.5	100	506.9	100	500.4	100	253.7	100
	EU	299.8	57.8	293.4	57.9	291.0	58.2	146.4	57.7

무역수지는 2011년 사상 최대 적자(745억 유로) 기록 후 4년째 감소하고 있다. 2015년 상반기 적자규모는 217억18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했으며 전기 대비 19.5% 감소했다. 수입이 지난해 0.8% 감소에서 0.9% 증가로 반전했음에도 수출이 3.4%로 호전된 결과이다.

지역별 교역에서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하락에 따른 對 미국 및 기타 유럽 수출 증가 등 제3국 수출이 6.5% 증가한 것과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對 중동, 기타 유럽 및 아프리카 수입이 감소한 결과이다.

프랑스의 총수입규모는 2012년 5,184억유로로 1.2% 증가 후 2년간 지속 감소했는데 올 상반기 0.5%(FOB 기준 시 0.9%) 증가로 반전했다.

20대 수입 품목의 절반 이상이 감소한 데에 기인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감소 요인은 이상 기온 및 불경기에 따른 원유 및 에너지제품 수입 감소이다. 프랑스 관세청 수입통계에 의하면, 프랑스 무역적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던 원유, 석유제품 및 가스의 수입 감소규모가 2013년 55억 유로에서 2014년 100억 유로로 대폭 증가했다.

올 상반기 원유(-26.8%), 석유제품(-29.6%), 가스(-11.6%), 의약품(-6.7%), 기초 유기화학제품(-3.1%), 철강제품(-3.1%) 등 9개 품목의

수입이 감소했으나 항공기·우주장비(21.6%), 자동차(8.7%), 컴퓨터(3.4%), 자동차부품(6.9%), 통신장비(10.7%), 기타 의의류(10.6%) 및 내의류(8.7%), 의료장비(5.4%), 신발 (10.8%), 기타 화학제품(5.7%), 전자부품(13.7%) 등 11개 품목의 수입증가폭이 감소폭을 웃돌아 총수입은 0.5% 증가했다.

20대 수입 주종품목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52.1%에서 2013년 51.4% 및 2014년 50.7%로 매년 0.7포인트씩 하락했는데 2015년 상반기 중에는 6개월 전의 것과 비교해서 이미 1.2포인트 낮아진 49.5%를 기록했다.

20대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십억 유로, %)

품목	2013	증감률	2014	증감률	2015.상	증감률
수입 총계	506.3	-2.2	501.2	-1.0	253.7	0.5
항공기·우주장비	28.9	-4.4	31.5	8.9	18.8	21.6
자동차	30.0	-0.8	30.7	2.2	16.9	8.7
원유	34.4	-7.2	29.2	-15.0	11.0	-26.8
석유제품	29.3	-8.4	26.9	-7.9	9.9	-29.6
의약품	18.2	-3.6	19.7	8.2	9.0	-6.7
가스	16.7	-1.2	13.9	-17.2	6.3	-11.6
컴퓨터	10.7	0.6	10.4	-2.8	5.0	3.4
자동차부품	9.9	-1.1	10.2	2.8	5.7	6.9
통신장비	9.4	4.3	9.5	1.2	4.8	10.7
기초유기화학제품	9.7	-16.6	9.1	-5.6	4.7	-0.4

총수출규모는 2012년 4,343억 유로로 3.1% 증가 후 2년간 감소하여 지난 해 4,267억 유로에 그쳤는데 올 상반기에는 5% 증가한 2,240억 유로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유가 및 석유제품 가격하락으로 석유제품 수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약세로 대미국 항공기 및 우주

장비 수출과 시장 회복세를 보인 대유럽 자동차 수출 증가 등 거의 전반적인 공산품 수출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20대 수출 주종품목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및 2014년 54.2%에서 2015년 6월말 기준, 54.6%로 0.2포인트 상승했다. 5대 수출품목의 비중이 지난해 29.4%에서 올 상반기 30.9%로 1.5포인트 상승한 결과이다. 10대 수출품목의 비중은 40.6%에서 41.5%로 0.9포인트 상승했다. 올 들어 상위 5대 및 10대 수출품목의 편중도가 심화한 양상을 보였다.

■ 주요 수출품 수출 현황

(단위: 십억 유로, %)

품목	2013	증감률	2014	증감률	2015상	증감률
수출총계	427.9	-1.3	427.2	-0.2	224.0	5.0
항공기 및 우주장비	50.8	1.0	52.0	2.3	28.9	12.1
의약품	26.9	3.3	25.5	-5.1	13.3	7.9
자동차	22.9	10.8	23.9	4.8	14.1	12.8
자동차부품	13.1	1.1	12.8	-2.6	6.8	1.2
향수 및 화장품	10.8	1.9	11.3	3.9	5.8	6.8
석유제품	11.9	-12.3	11.2	-6.6	4.4	-20.0
유기화학제품	10.1	-9.3	10.1	-0.5	5.0	-1.2
기초철강,철합금제품	9.1	-9.0	9.4	3.2	4.8	-0.2
원형의 플라스틱물질	8.9	1.3	9.4	4.8	4.7	-3.2
곡물(쌀제외),채소	9.4	12.8	7.8	-16.5	4.8	12.0

양국간 교역현황

한-프랑스 교역규모는 2013년 95억100만 달러에서 2014년 94억6147만 달러로 0.4% 감소했으며 2015년 상반기 기준, 47억97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했다.



대불 수출 규모는 2014년 26억3868만 달러로 2013년 대비 24.3% 감소했으며 2015년 상반기 기준, 13억56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4.4% 감소했다.

대불 수입 규모는 2014년 68억2279만 달러로 13.5% 증가했으며 2015년 상반기 기준, 34억5600만 달러로 105% 증가했다.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14년 41억8411만 달러로 최대 기록을 경신했으며 2015년 상반기 기준, 21억1600만 달러로 35.5%(5억5400만 달러) 증가했다.

■ 한·불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년도	교역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11	12,022	65.0	5,707	90	6,315	47.4	-608
2012	7,523	-37.4	2,599	-54.5	4,924	-22	-2,325
2013	9,501	26.3	3,488	34.2	6,013	22.1	-2,524
2014	9,461	-0.4	2,639	-24.3	6,823	13.5	-4,184
2015상	4,797	1.0	1,341	-14.4	3,456	10.5	-2,116

2015년 6월 기준, 10대 수출 품목인 선박, 승용차, 축전지,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무선전화기, 항공기부품, 편직물, 의약품 및 어육의 수출규모는 8억4300만 달러로 총수출의 62.9를 차지하였다.

10대 수출 품목별 수출 현황을 보면, 1위 선박이 3억400만 달러로 141.7% 증가했으며 2위 승용차는 2억1300만 달러로 40.2% 감소했고 3위 축전지는 8900만 달러로 105.1% 증가했다.

4위 합성수지는 5600만 달러로 11.3% 증가했으며 5위 자동차부품은 5천만 달러로 5.6% 감소했다.

지난해 3위였던 무선전화기는 3900만 달러로 80.1% 감소하여 6위로 밀려났으며 항공기부품은 3천만 달러로 0.7% 감소하여 7위로 1단계 올라섰다.

8위 편직물은 2600만 달러로 40.7% 감소했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의약품은 지난해 56.2% 증가로 45위에 오른 후 올 상반기에 452.5%가 증가한 1800만 달러로 9위에 등극했다. 또한 어육도 지난해 111.7% 증가로 19위에 오른 후 올 상반기 1800만 달러로 13.9% 증가하여 10위로 올라섰다.

■ 품목별 대불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13		2014		2015년 상반기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감률
수출 총계	3,488	34.2	2,639	-24.3	1,341	-14.4
선박	377	477.6	126	-66.6	304	141.7
승용차	682	2.2	534	-21.7	213	-40.2
축전기	76	79.2	126	64.9	89	105.1
합성수지	87	17.1	94	8.4	56	11.3
자동차 부품	93	9.6	107	14.4	50	-5.6
무선 전화기	561	5.1	273	-51.3	39	-80.1
항공기 부품	51	107.4	65	25.6	30	-0.7
편직물	69	4.6	80	16.5	26	-40.7
의약품	7	-1.6	11	56.2	18	452.5
어육	12	26.0	24	111.7	18	13.9

2015년 상반기 중 10대 수입 품목은 항공기, 화장품, 의약품, 펌프, 집적회로반도체, 기타섬유제품, 가죽가방, 승용차, 기타화학공업제품, 원동기로 총수입의 50.8%를 차지하였다.

10개 품목 중 6개 품목의 수입이 증가했는데 특히, 항공기는 최근 2년간 3자릿수 증가율에 이어 지난 상반기 63.3% 증가하여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11%에서 2014년 22.5% 및 올 상반기 26.5%로 지속 확대했다.

집적회로반도체(59.7% ↑), 승용차(94.7% ↑), 기타화학공업 제품(66.9% ↑) 등 수입 순위 5, 8, 9위의 3개 품목 수입이 50% 이상 큰 폭 증가했으며 지난 2년간 감소했던 가죽제 가방(19% ↑) 및 원동기(26% ↑) 수입도 2자리수 증가세로 반전했다.

화장품 및 의약품은 2013년 소폭 증가 후 지난해 각각 16.5% 및 8.9% 증가하여 2, 3대 수입품으로 1단계씩 올라섰는데 올 상반기 각각 0.8% 및 13.4%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펌프는 2013년 66.4% 증가에서 2014년 3.4% 감소하여 수입 순위가 2위에서 4위로 2단계 하락했는데 올 상반기에 다시 18.2% 감소하였다. 기타섬유제품은 2013년 0.4% 증가로 현상유지한 후 지난해 4.9% 감소에 이어 올 상반기 13% 감소하여 수입 순위가 5위에서 6위로 하락했다.

■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품목명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입 총계	6,013	22.1	6,824	13.5	3,457	10.5
항공기	652	143.5	1,536	135.5	916	63.3
화장품	291	1.7	339	16.5	167	-0.8
의약품	265	1.3	288	9.0	120	-13.4
펌프	291	66.4	281	-3.4	116	-18.2
집적회로반도체	105	-36.8	136	29.8	89	59.7
기타섬유제품	196	0.4	186	-4.9	82	-13.0
가죽제가방	135	-13.9	127	-5.7	68	19.0
승용차	64	23.6	80	25.5	68	94.7
기타화공품	62	-20.3	68	10.5	67	66.9
원동기	100	-31.5	96	-4.3	62	26.0

양국간 투자현황

우리나라의 2014년 대불 투자실적은 19건에 68백만달러로 2013년(26건, 53.8백만달러)에 비해 7건이 줄고 금액은 26.4% 증가했다. 2014년 대불 투자 누계 실적은 495건에 14억3,200만달러를 넘어섰다.

대프랑스 투자는 2010년 5억불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다 2013년 회복세를 시현하였다.

우리 기업들은 화장품 제조업과 휴대폰 등 IT제품, 승용차, 섬유, 타이어 등 주력 수출품목 판매 분야에서 프랑스 시장 진출이 활발하며, 최근 그 영역을 확대중이다.

■ 우리기업의 대프랑스 투자 현황(신고기준)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누계
신고금액 (백만불)	36	273	505	142	50	91	68	2,008

프랑스는 1971년 최초투자(한국유리공업) 이후 우리나라에 2014년 상반기 기준 총 70억불 규모의 투자를 하여 EU국가 중 4위를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의 대한투자는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영향으로 대폭 감소(전년대비 79.6%↓)했으나, 이후 회복세를 보여 왔으며 2013년에는 전년 대비 2.4배 증가한 5.3억불을 기록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프랑스무역투자진흥청(Business France)의 최근 공개된 2014년 직접투자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한국 기업의 대불 투자실적은 10건에 148명 고용으로 2013년(2건 및 40명)에 비해 현저히 증가했다. 이는 2014년 프랑스의 직접투자유입 실적의 1%(고용 0.6%)에 해당하며 건수 면에

서 16위이다. 그리고 이는 한국의 대유럽 직접투자 건수의 22%로 15%를 차지한 슬로바키아에 앞서 1위이다.

2014년 주요 FDI 유치 건은 현대백화점그룹이 파리에 설립한 컨셉 매장 ‘Tom Greyhound’ 및 SPC그룹의 파리 제과점 설립 건이다. 2013년 주요 대불 투자 건은 삼성전자의 소피아 안티폴리스 연구개발실 설립 건이다. 이동통신 위치추적 기술 개발을 목표로 영국 캠브리지 실리콘 라디오의 40명 직원까지 인수하는 투자 건이다.

프랑스의 대(對) 한국 직접투자 유입 누계는 2014년 기준 40건, 2,000명 및 8억700만유로로 23위를 차지했다.

대불 직접투자 10건 중 3건이 본부 설립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용규모 면에서는 생산/조립이 72명으로 가장 많았다.

▣ 프랑스의 대한민국 투자 현황

구 분	08	09	10	11	12	13	14.6월	누계
신고금액 (백만불)	538	110	160	236	222	530	10	6,965

관세 및 통관 장벽

프랑스는 EU 회원국으로서 통상정책에 관한 권한을 EU 집행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어 관세 및 수량제한 등 수입규제,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등 무역규제조치, 원산지 등 통관 관련 규정 등에 대해 독자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 한-EU 관세율 참고 사이트

- 관세청 FTA 포털: <http://fta.customs.go.kr>
- 한국무역협회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http://okfta.kita.net>

- ※ EU의 관세, 수입쿼터, 수입제한 등 규제조치 참고 사이트
 - EU의 TARIC 시스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EU HS 8단위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 각종 수입규제 현황 확인 가능)
- *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customs/customs_duties/tariff_aspects/customs_tariff/index_en.htm

표준, 인증 및 라벨링

프랑스의 경우, 공산품,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표준 및 인증은 프랑스 표준협회인 AFNOR(Association Française de Normalisation)에서 총괄 담당하나, 산업별 구체적 인증 업무는 AFNOR 뿐만 아니라 동 기관이 위임한 기관에서도 수행하고 있다.

인증 절차는 당해 인증 신청자가 인증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AFNOR 또는 산업별 수탁기관에 제출하면, 동 기관은 인증 위원회(Commission de normalisation)에 심사를 요청하고, 최종 결과는 AFNOR가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 ※ 상세사항은 프랑스 표준관련 사이트 참조

: <http://www.afnor.org/metiers/normalisation/panorama-normalisation>

프랑스는 가전제품, 의료기기 등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EU 지침(89/336/EEC)에 따른 CE 마크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비율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 등급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자가 자사 제품이 친환경 제품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에코(ECO) 라벨 부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소비재, 식품 및 섬유 제품 등에 대해서는 상표를 프랑스어로 표기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꾸스꾸스’, ‘샌드위치’ 등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특정 외국 상품에 대해서는 프랑스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참고로, 상업상 사용되는 계약서, 송장, 영수증 등 제반

서류, 채용 공고 및 근로 계약 등 노동 관련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무역관련 환경 규제

프랑스는 EU의 신화학물질 관리제도인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s)의 국내적 적용을 위해 화학물질 분류 제도인 ICPE(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를 도입하여,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신청(Déclaration) 대상, 허가(Autorisation) 대상, 감독 및 허가(Autorisation avec servitude) 대상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화학물질별로 신청 대상의 경우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받아야 하고, 허가 대상 물질의 경우에는 연 1회 현장 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환경법은 신고 및 허가 대상 화학물질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까지도 규정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신청 대상의 경우 최소 1,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 대상일 경우에는 최소 75,000유로, 1년 이상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상세사항은 프랑스 환경부 관련 사이트 참조

: <http://www.installationsclassees.developpement-durable.gouv.fr>

정부조달

프랑스의 정부조달 시장 규모는 GDP 대비 2005년 3%에서 2011년 4%대로 확대되어 왔으나, 프랑스 정부가 2013년 7월 재정적자 해소 차원에서 2015년까지 정부의 공공조달 규모를 20억유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당분간 정부조달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는 WTO 정부조달협정 및 EU 정부조달지침(2004/17/EC, 2004/18/EC)을 준수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2006년 공공시장법(CMP, Code des Marchés Publics)을 통해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달업무를 규정하고, 전력청(EDF), 철도공사(SNCF) 등의 조달 관련사항은 특정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조달에 관한 법률명령(Ordonnance 2005-649)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달 대상은 사업(work) 계약, 물품공급(supplies) 계약, 용역공급(services) 계약 등으로 구분된다. 각 계약별 조달방식은 수의계약, 경쟁입찰, 전자입찰 등 다양하며 각 방식별로 조달 절차의 기한이 명시되어 있다. 경쟁입찰 방식의 경우에는 계약별 조달금액에 따라 공사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프랑스 공공시장법(CMP)은 조달계약 체결 단계에서 분쟁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 절차가 일시 중단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 이행과정에서 계약 당사자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적 소송 이전에 중재절차가 먼저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2012년 6월 공포된 정부조달시장 전자 서명화법(l'arrêté du 15 juin 2012 relatif à la signature électronique dans les marchés publics)에 따라 2013년 5월부터 정부조달 입찰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서만 받고 있다. 입찰 진행경과 및 결과 등은 동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 상세사항은 프랑스 재무부 정부조달시장 홈페이지 참조

: www.marches-publics.gouv.fr

지적재산권

프랑스는 지적재산권법(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을 통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청인



INPI(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를 두어 등록, 출원 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자는 INPI에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세관당국에 대해서도 권리 침해 의심 물품의 통관을 일시적으로 중단(최대 10일, 훼손될 염려가 있는 물품의 경우 3일)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특허의 경우, 프랑스는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출원에 대해 별도의 실체적 심사를 하지 않는 대신, 출원 대상 발명이 이미 기 등록된 특허인지 여부, 국제적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관련 문헌들을 조사한 검토보고서를 발행한다.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20년이다. 특허 신청 절차는 신청인의 신청서류 제출(INPI 웹사이트에 신청서류 목록 게시), INPI의 검토보고서 작성 및 추가 작성서류의 신청인 전달(통상 7~9개월 소요), 신청인의 추가 서류 INPI 제출, INPI의 관보 게재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시부터 관보게재시까지 통상 18개월이 소요된다.

상표는 권리보호기간이 10년이며, 이후 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디자인의 권리보호기간은 최대 25년이다. 신청절차는 INPI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특허와 유사하며, 소요기간은 통상 상표의 경우 5개월, 디자인의 경우 3개월이 소요된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droits moraux)과 저작재산권(droits patrimoniaux)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작품에 대한 자격권, 존중권, 공개권 및 수정/철회권 등으로 구성되며, 영구적으로 보호되고 양도할 수 없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복사본의 분량을 제한할 수 있는 재생권과 공개방식에 관한 재현의 독점권으로 구성되며,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프랑스 정부는 인터넷상 저작물 침해 행위 단속을 목적으로 2009년 설립된 HADOPI(Haute Autorité pour la diffusion des oe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를 폐지하고 동 임무를 영상매체고등기관(CSA,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나, 관련 단속의 필요성 증가 등으로 HADOPI를 지속 운영중이다.

프랑스는 저작권의 예외로 개인적 복사를 허용하는 대신 공 CD, 공 테이프, 컴퓨터 외장하드, USB 메모리 등 디지털 멀티미디어 기기에 사적 복제 부과세(copie privée)를 부과하여 예술활동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문화부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인터넷 기기에도 구매액의 1%에 상당하는 일명 '문화세'를 부과하여 동 재원을 문화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현 정부의 추가 증세 불허 방침에 따라 구체 시행계획 마련을 위한 논의는 보류중인 상황이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2013년 9월 중소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총 250여개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기업별로 약 50만유로가 지원될 예정이다.

※ 상세사항은 프랑스 산업재산권청 사이트 참조: <http://www.inpi.fr>

경쟁정책

2009년 1월 프랑스 정부는 경제선진화법(Loi du 4 août 2008 de modernisation de l'économie)을 통해 기존의 경제재정부와 경쟁위원회(conseil de la concurrence)로 분산되어 있던 경쟁정책 수립 및 집행 권한을 하나의 독립적인 관청으로 통합하기 위해 프랑스 공정거래청(Autorité de la concurrence)을 설립하였다. 공정거래청장은 의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프랑스 공정거래청은 카르텔, 독점적 지위의 남용 등 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를 감독하고 규제하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벌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상세내용은 프랑스 경쟁청 사이트 참조
: <http://www.autoritedelaconcurrency.fr>

프랑스 정부의 투자유치 지원정책

프랑스 정부는 경제회복 및 프랑스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업경영환경 개선, 투자 및 고용 활성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3년 1월 공공투자은행 설립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 확대, 2013년 7월 연구개발 및 혁신 촉진과 디지털 경제 구현 등을 위한 미래 투자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9월에는 미래 신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어, 2014년 2월에는 외국인 투자유치 8대 대책을 수립하는 등 기업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적극적인 산업 육성 및 투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 미래 투자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혁신 촉진, 디지털 경제 구현, 에너지전환, 항공우주분야 육성 등을 위해 2025년까지 총 120억 유로를 투자하는 중장기 전략
 - 중점 투자 분야: 연구개발 및 대학 캠퍼스 확충(36.5억유로), 에너지 전환(23억 유로), 기업혁신 촉진(17억유로), 방위산업(15억유로), 항공우주산업(13억유로), 디지털경제(6억유로), 교육시설 현대화(5.5억유로), 보건산업(4억유로)
- ※ 미래전략 산업 육성 정책: 에너지, 건강, 디지털 및 운송 등 4대 분야 34개 산업을 민관 협력에 기초, 향후 10년간 정부예산 35억 유로를 포함하여 총 200억 유로를 투입하여 집중 육성할 계획
 - 주요 육성 산업 분야: 에너지(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식물성 대체연료 등), 건강(바이오 의학기술, 디지털 병원 등), 디지털(로봇,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등), 운송(무인자동차, 미래형 초고속열차, 전기 비행기 등)

※ 외국인 투자유치 8대 대책(안)

- 프랑스 기업의 수출지원 기관인 UBIFrance와 외국인 투자 유치기관인 투자청(AFII)을 통합하여 프랑스기업 세계화 지원기관 설립
- 젊고 능력있는 석·박사, 투자자 등 전문가들에게 4년 유효 재능비자 발급
- 프랑스 장기체류 기업인에게 5년 장기 비자를 발급하고, 비즈니스 출장시 비자 발급 신속화
- 외국인 유학생 및 연구원에 대해 2014년부터 학업기간에 해당하는 체류증을 발급
- 외국 벤처기업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총 2만5천유로 상당 자금을 지원
- 2015년부터 모든 수출입 통관절차를 인터넷을 통해 진행하고, 수입제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지불을 늦출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허용
- 투자기간 동안 적용되는 세금을 사전에 지정, 여타 다른 세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제도화
- 외국인 투자자의 회사설립시 행정절차 간소화

아울러, 프랑스 정부는 투자기업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장 설립형 투자, 고용 창출형 투자, 혁신형 투자 등 투자 유형별, 개발취약 지역 및 일반 지역 등 투자 지역별 및 대기업/중소기업 등 투자기업 유형별 등으로 구분하여 상이한 내용 및 규모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과 산업 재개발 지역에 대한 공장설립형 투자 프로젝트, 고용 창출형 투자, 기업의 R&D 프로젝트, 친환경 투자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낙후 지역 및 산업 재개발 지역내 투자)

프랑스 정부는 지역개발우선지역(PAT, Prime d'aménagement du territoire)을 선정하고 동 지역내 공장 설립형 투자기업 및 고용창출 예정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 보조금 지원: 2007~2013년간 지정된 PAT에 대해 대기업의 경우 전체 투자 금액의 10~15%까지 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35%까지 지원

- ※ 법인세 면제: 동 지역에서 창업하는 신생 기업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의 혜택이 제공되며, 동 법인세 혜택을 받은 기업은 2년간 재산세가 면제

(혁신 및 연구개발 촉진 투자)

우수기술 혁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투자기업이 혁신 및 연구개발을 위해 투자할 경우, 지역적 구분 없이 연간 R&D 지출 규모에 따라 일정비율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개발 활동 단계 별로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R&D 활동을 할 경우,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4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창출된 일자리 규모에 따라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연구개발 세액 공제(CIR, Crédit d'impôt recherche): 최초 투자연도연구개발비의 50%, 이후 40%, 30%씩 연차적으로 세액을 공제
- ※ 보조금 지원: R&D 단계별로 연구개발 관련 인건비, 설비 구입, 특허권 매입, 기타 간접비 등을 포함한 R&D 지출의 일부를 지원
- ※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경우 전체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40%까지 지원
- ※ 일자리 창출 R&D 지원: R&D 프로젝트로 최소 2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 경우에는 창출된 일자리 수 당 최대 15,000유로의 보조금 지원

(친환경 산업 관련 투자)

프랑스 정부는 친환경 산업생태계 육성 차원에서 오염, 소음, 악취 및 기타 환경공해를 줄이고 환경 보호가 가능한 건물, 플랜트, 설비에 대한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해당 지출금액의 최대 35%, 중소기업의 경우 45%까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절약, 열병합발전, 재생 에너지 투자 등 일부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 지출의 40%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참고로, 프랑스 정부는 2005년 이래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11개 업종을 지정·운영하여 왔으며, GE의 알스톰 인수 추진을 계기로 2014년 5월 5개 업종을 추가 지정하여 동 업종 관련 기업 인수시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 16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통화·금융법 R153-1) : 도박, 개인정보, 테러, 도청, 정보통신기기 보안, 정보통신서비스 보안, 전략물자, 암호기술, 방산, 군사기밀, 국방부 납품 기업, 전기·가스·원유, 도로·철도, 수도, 통신, 공공보건

프랑스내 회사 설립 절차

프랑스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은 크게 자회사 또는 지점을 설립하여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방식과 주된 사업활동은 본사에서 수행하면서 프랑스 시장 조사, 제품 홍보 등을 위해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는 방식, 그리고 프랑스내 판매대리인을 통해 제품판매 활동만을 수행하는 방식 등 다양하다.

프랑스내에서 자회사 또는 지점 등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 기업 전략 및 사정에 맞는 법인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인 법인 형태로는 상장이 가능한 주식회사(SA, société anonyme), 상장은 할 수 없지만 설립요건이 완화된 단순주식회사(SAS, société par actions simplifiée), 설립은 용이하지만 상장을 할 수 없고 참여 주주 규모 등도 제한되어 폐쇄적 구조를 가진 유한책임회사(SARL, 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등이 있다.

법인 설립 관련 절차는 기업수속센터(CFE, centre de formalité des entreprises)에서 담당한다. 동 센터는 법인 설립 희망 투자자로부터 정관, 주식납입금 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으면 상업등기소, 통계청, 세무서 등에 관련서류를 송부하게 되고, 상업등기소에서는 ‘K-bis’라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며, 통계청에서는 ‘SIRET’라는 회사등록번호를 발급한다.

2001년 이래 프랑스 투자청(AFII, Agence Française pour les Investissements Internationaux)이 외국인투자유치를 전담해 왔으나, 현 정부는 투자유치 효율화 정책 기조 하에서 2015년 1월 1일자로 투자청과 프랑스 기업의 수출지원 기관인 UBIFrance를 통합하였다.

※ 상세사항은 프랑스 투자청 사이트 참조

: <http://www.invest-in-france.org>

조세 제도

프랑스 조세체계는 과세대상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자본세 등으로 구분되고, 부과징수기관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담세자에 따라 직접세, 간접세 등으로 구분된다.

소득세율은 과세대상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는 비과세이나 동 금액 이상부터는 누진적으로 세율이 증가하며 최고세율은 45%이다. 프랑스의 소득세는 우리나라와 달리 세대별로 종합과세된다. 즉, 가족들의 소득을 합산하여 이를 가족 수로 나눈 후 이에 상응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1인당 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다시 가족 수를 곱하여 세대별 최종 납부 세액을 산출한다. 한편, 지난 10월 의회에 제출된 2016년도 예산법률안에 따른 소득구간별 세율은 아래와 같다.

현행 세율구간(유로)	세율(%)	2016년 세율구간(유로)
9,690 미만	0	9,700
9,690~26,764	14	9,700~26,791
26,764~71,754	30	26,791~71,826
71,754~151,956	41	71,826~152,108
151,956 이상	45	152,108 이상

법인세율은 원칙적으로 33.3%가 적용되며, 매출액이 763만유로를 초과하고 법인세액이 763,000유로를 초과하는 대기업은 3.3%의 추가세를 부담한다. 하지만, 매출액이 763만유로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8,120유로 이하의 영업이익에 대해 15%의 경감된 세율을 적용받는다. (38,120유로 이상의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33.3%의 세율 적용)

부가가치세율은 20.0%이며, 예외적으로 10%(박물관, 여객운송 등)·5.5%(식료품, 장애인용품 등)·2.1%(의료보험 대상 약품, TV 수신장치 사용료 등) 등 3개의 감면세율이 있다.

연소득 100만 유로 초과 소득분에 대해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유세(Wealth Tax)는 2013년 도입되어 2년간 4억 2천만 유로의 세입실적을 거둔 후, 시행 2년만인 2015년 2월부터 폐지되었다.

한편, 프랑스 진출 우리기업 및 국내 거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경우, 프랑스내에서 발생한 사업 및 자본 소득 등에 대해서는 양국간 체결된 이중과세 및 탈세방지에 관한 협약에 의거하여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동 협약은 1981.1월 발효, 1992.3월 개정)

※ 상세사항은 프랑스 재무부 세제총국 사이트: <http://www.impots.gouv.fr>

노동 관련

프랑스는 임금, 노동시간 등 근로조건 조정 및 해고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 유연성이 매우 낮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특히, 3,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노동법으로 대별되는 프랑스 노동법제는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기업의 신규 고용을 꺼리게 하고 기업의 노동비용을 증가시키는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경쟁력 약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실업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2012년에 노동시장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노사간 협상을 거쳐, 2013년 6월부터 ‘고용안정화법(Loi relative à la sécurisation de l’emploi)’을 시행중에 있다. 동 법안은 그동안 기업에서의 해고가 쉽지 않았던 프랑스에서 제한적이거나 정리해고를 용이하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정부는 이를 계기로 프랑스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완화될길 기대하고 있다. 한편 노동쟁송 판결에 장기간(평균 16개월) 소요되고 합의 및 조정비율이 평균 6% 수준으로 매우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크롱법을 통해 노동재판 소요기간 단축, 노동분쟁 조정위원 역량강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 주요내용: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 노사 합의를 통한 근로시간과 임금조정 가능, 법적 노동분쟁 시효 단축(5년→2년) 등

※ 프랑스 노동법 주요내용

- (근로계약)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당시 고용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불확정기간계약과 확정기간계약으로 구분된다. 계약서는 불어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근로자가 외국인일 경우 동인 요청시 번역본을 첨부할 수 있다. 고용계약서상 주요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최저임금) 18세 이상 민간부분 근로자 등에 적용되며 시급으로 결정된다. 매년 1.1일 프랑스 정부가 발표하며, 2015.1.1일자 법정최저임금은 시간당 9.53유로(월 1,458유로)이다.
- (근로시간) 프랑스 노동법은 근로시간을 주당 35시간(연간 1,607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법정근로시간제는 기업체 간부급 임직원, 육아보조원, 경비원 등 일정 직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휴가) 근로자는 휴무일을 제외한 연간 30일(월 2.5일) 기간의 유급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다. 휴가기간은 원칙적으로 5.1일부터 10.31일까지이며, 단체협약 또는 고용주의 결정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여성 근로자 보호) 고용주는 기본적으로 여성 근로자를 임신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근무 시간대가 야간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하였을 경우, 동 여성 근로자는 낮 시간대로 근로시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주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여성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미성년자 노동) 기본적으로 16세 이상부터 취업이 가능하다. 15세 이하 미성년자들도 연극, 영화, TV, 라디오, 패션모델 등 분야의 경우 및 노동관청으로부터 하계방학기간을 이용한 근로에 대해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

(사회보장제도상 고용주 부담)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고용주는 건강보험, 노령연금, 가족수당, 산재보험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2015년 기준 고용주는 근로자의 총 임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경우 12.8%, 노령연금의 경우 8.45%, 가족수당의 경우 5.25%, 산재보험의 경우 기업 규모와 리스크에 따라 평균 2.44% 등을 부담한다.

※ 2013년 9월 프랑스 정부는 연금관련, 8.3%의 고용주 부담분을 2017년까지 0.3%p씩 인상하고, 이로 인한 기업의 부담 증가를 가족수당 부담 비율 인하를 통해 상쇄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 동 방침은 일부 수정되어 시행중인바, 2014년 연금 부담분은 0.15%p 인상된 이후 2017년까지 매년 0.05%p씩 인상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가족수당 부담분도 조정 인하되었다. 한편 2015년부터 시행중인 책임성·연대성 협약(Le pacte de responsabilité et de solidarité)을 통해 2015년부터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사회보장 부담금을 폐지하였다. 또한 최저임금 1.6배까지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가족수당 부담금을 2016년부터 5.25%에서 3.48%로 인하할 예정이며, 2016년부터는 3.5배 한도 근로자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해고) 기본적으로 고용주는 근로자의 상습적 지각, 지시 불이행 등 근로자 개인적 이유로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기업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엄격한 조건 하에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마누엘 발스 총리는 최근 행정대법원 및 고등법원의 현학자(Sages)들에게 간소화한 노동법 개정안을 2018년까지 마련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700여개의 산업분야를 200개로 축소하여 분야별 노사협약을 대폭 축소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는 주 35시간 근로 등 피고용자의 일자리에 대한 안전성은 법으로 보장하면서 기업 사정에 따라 월간(4주간) 노동시간을 조정(주 48시간 내에서 추가 근무하거나 일거리가 많은 월말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월초에 줄이기 등)할 수 있어 기업하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헝가리

통상투자환경 개요

주요 경제지표 동향

헝가리 경제는 2012년도 GDP 성장률이 -1.5%를 기록했으나 2012년 말부터 성장세로 반전하여 2013년도 1.5% 성장을 기록하고 2014년도는 3.6% 성장률을 보였다. 헝가리 경제의 성장은 자동차 제조업의 생산량 증가와 EU펀드 집행기간 막바지로 인한 집행률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헝가리 경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중장기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현재의 플러스 경제성장률은 EU 기금 투입에 따른 일시적 경기부양 효과에 따른 것에 불과하며, 구조적 성장동력 취약,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금융권의 소극적 대출 정책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고 2014년은 3.6%라는 성장률을 보였으나 2015년은 2.9%, 2016년은 2.5%로 예상되고 있다.

▣ 주요경제지표: 2015.9.11자 EIU 자료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망)	2016 (전망)
명목 GDP (US\$ bn)	129.6	139.4	126.8	133.4	137.0	117.2	118.1
명목 GDP (Ft bn)	26,946	28,035	28,549	29,846	31,864	32,962	34,41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망)	2016 (전망)
1인당GDP (구매력평가 기준 US\$)	21,448	22,481	22,406	23,261	24,405	25,190	26,338
실질 GDP 성장율	0.8	1.8	-1.5	1.5	3.6	2.9	2.5
고정투자 증감율	-9.5	-2.2	-4.2	5.2	11.7	2.0	2.8
정부부채비율 (GDP대비)	80.9	81.0	78.5	77.3	77.0	76.2	75.1
재정수지 (GDP대비)	-4.5	-5.5	-2.3	-2.5	-2.6	-2.5	-2.6
인플레이션율	4.9	3.9	5.7	1.7	-0.2	0.6	2.5
실업율	11.2	11.0	11.0	10.2	7.7	7.1	6.8
경상수지 (US\$ m)	3,472	4,072	3,777	4,673	3,590	3,888	3,816
부채규모 (US\$ m)	166,970	168,766	157,369	149,051	145,443	131,280	132,524
외환보유고 (US\$ m)	44,988	48,835	44,670	46,508	42,019	39,632	39,320

시장환경의 특성 및 변화

헝가리의 대규모 기업은 대부분 외국자본 소유이며 동 기업들은 헝가리 내수시장 보다는 유럽을 위한 생산기지로 활용하고자 헝가리에 진출하고 있다.

헝가리는 기본적으로 유럽내 다국적기업들의 조립/생산 거점으로서 헝가리의 수출입은 EU의 수출입과 연계된 생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의 경제상황에 따라 헝가리의 수출입이 동반증가 또는 하락하는 현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헝가리의 경상수지는 지난 6년간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4년 35억 9천만 달러의 흑자를 달성하였다.



2010.5월 출범하고 2014.4월 총선에서 재집권한 헝가리의 현 정부는 EU에 과도하게 연계된 헝가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러시아, 중국 등 신흥 경제권과의 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중이다. 또한, 2008년 중국에 이어 아시아 국가 중 제2위의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한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과 농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의 교역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헝가리와의 유망업종

헝가리는 기본적으로 내수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헝가리 자체보다는 유럽시장을 대상으로 한 생산기지 내지 물류기지로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실익이 있어 보인다. 헝가리 경제가 아직 2008년 경제위기 이전과 같은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헝가리는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여 유럽 전역과 항공·철도·고속도로망으로 잘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시장의 진출 기지로서 매력적이다. 특히 헝가리는 그간 14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중부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공과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등 과학기술분야에 유능한 인력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고급인력의 임금이 서유럽국가의 1/3수준이라는 점도 헝가리가 우리 기업의 투자대상으로 매력적인 이유이다.

헝가리에는 현재 아우디, GM 엔진생산 부문, 스즈키, 다임러 공장이 소재하고 있다. 다임러는 2012년 상반기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생산라인을 가동해 연간 10~12만 대 신차를 생산해내고 있다.

또한, 전자·전기 분야에서도 Flextronics 등 세계 Top 10 EMS 회사 200여개의 산업공장이 진입해 있으며, Samsung, GE 등 주요 전자메이커들의 제조공장이 글로벌 경기 침체속에서도 생산거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에 비추어 헝가리의 전자·전기 관련 분야에서도 우리 업체의 진출가능성이 있는 편이다.

헝가리 대학들은 생명과학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고 있으며, 동 분야의 벤처기업도 많은 만큼, 의약품 개발 및 생명공학 진출도 고려해 볼 만하다.

한편, 헝가리는 전통적인 농업국가로서 현재도 값싸고 품질 좋은 농산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수입업자들에게는 와인, 거위털 제품, 돈육, 그리고 천연 화장수 등의 수입이 유망해 보인다.

헝가리 정부의 경제정책

개요

현 집권 오르반 정부는 2010년 출범 이래 각종 증세, 민간 연금 국유화, 퇴직 정년 연장, 실업수당 축소 등 비정통적 조치(unorthodox measures)를 통해 정부 재정적자를 줄여왔다. 재정지출 축소보다는 조세 징수 확대를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오르반 정부의 정책은 EU집행위 및 경제전문가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2013년 헝가리 경제가 성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각종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이에 대한 비판은 다소 주춤해진 편이다.

외화표시 대출자 규제법안

2014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재집권한 오르반 정부의 경제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과도한 정책 개입으로 시중은행 상당수가 큰 적자를 감수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은 헝가리로부터의 사업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 헝가리 정부의 대표적인 시장개입 정책으로 현재 부각되고 있는 것은 외화표시 대출자에 대한 규제법안의 통과/시행이다.



외화표시 대출자에 대한 규제법안은 현재 시점의 환율을 인정하지 않고 외화표시 대출이 발생했던 시점(2009년 이전)의 환율을 강제적으로 은행에 적용하는 것이 골자이며, 표면적으로는 경제능력이 취약한 대출자들의 환율 변동 위험 부담을 감소한다는 데 있으며, 실질적으로 시장의 기능을 무시하고 은행에 막대한 손실(약1조 포린트(한화 약 4조원))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화표시 주택담보대출자의 채무 문제는 2011년에도 논란이 된 바 있는데, 당시에 헝가리 정부가 채무 이행 시점의 시장환율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 발생 시점의 환율을 은행에 강제적용시킴으로써 시중 은행들이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2011년 9월 당시 포린트화 대비 평균 환율이 유로화는 296 포린트, 스위스 프랑은 240 포린트, 일본 엔화는 2.8 포린트였으나, 헝가리 정부는 시중은행에 유로화 250 포린트, 스위스 프랑 180 포린트, 일본 엔화 2 포린트 환율을 강제 적용함)

제조업 중심 정책

헝가리 정부는 헝가리를 제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표방하고 제조업 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강화하고 있다. 헝가리 정부가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헝가리 진출 다국적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은 헝가리에서의 고용 창출 및 수출 진흥 효과가 큰 다국적 기업(벤츠, 아우디, 한국타이어, 삼성전자, 스즈키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제조기업에 납품하는 헝가리 중소기업을 육성·장려하는 것 또한 목표로 하고 있다.

동방 정책

헝가리 정부는 EU 시장에 의존한 자국의 경제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러시아, 중국, 동남아, 한국, 일본 등과의 무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헝가리 정부는 2013년부터 동방정책(Opening to

the East) 추진에 따라 중국, 일본, 한국에 고위급 인사를 지속적으로 파견하고 관계 확대 및 경험증진을 심화를 도모해 오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가운데 2014년 6월 외교부가 국가경제부의 통상기능을 흡수하여 외교통상부로 확대·개편되었으며, 외교통상부내 동방정책 관련 부서를 2015년 5월까지 별도 운영해온 바 있다.

우리기업 진출 유망산업 및 시장

주요산업 연계 유망 시장

○ 기계 및 설비

- 2015년 헝가리의 산업생산지수는 전년대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8월에는 전년도 동월대비 증가율이 12.3%에 달하였으며, 이러한 산업생산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서는 자동차 산업 및 관련산업의 생산량 증가, 가전소비재의 생산량 증가가 꼽히고 있다.
- 이에 따른 전자제품 부품, 가전제품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건축자재

- 2012년까지 장기간 침체를 보이던 헝가리 건설시장이 2013년 상반기부터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 특히, EU기금의 지원을 받은 도로, 대중교통시설 개선 등 프로젝트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 헝가리 건설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 2014년 건설시장은 두 자리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7월 건축생산은 전년도 동월대비 17.5%에 달하였으며, 이에 따른 건축자재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건축자재

- 2012년까지 장기간 침체를 보이던 헝가리 건설시장이 2013년 상반기부터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 특히, EU기금의 지원을 받은 도로, 대중교통시설 개선 등 프로젝트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 헝가리 건설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 2015년 건설시장은 한 자리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6월 건축생산은 전년도 동월대비 10.2%에 달하였으며, 이에 따른 건축자재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자동차 부품

- 헝가리 소재 3대 완성차업체인 Audi, Suzuki, Daimler가 지속적으로 생산시설을 확충, 생산량을 늘리고 있으며 2014년 생산량은 약 40만대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2013년 대비 37% 증가한 수치이다. 2015년 역시 EU의 양적완화로 소비경제가 점차 회복되며 내구재소비 증가로 헝가리의 자동차 수출 증가가 전망되며, 이로 인한 우리기업들의 기존 자동차부품 수출 증가가 전망된다.
- 참고로 헝가리에는 우리나라의 한국타이어 및 협력업체들이 다수 진출해 있고, 그 외에도 삼양사, 제일모직 등이 현지 자동차 업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시장환경(특성) 연계 유망 시장

○ 의료기기

- 2013년 헝가리의 의료기기 시장 성장률은 약 3.3%로 나타났으며, 인구 1인당 의료시장규모는 59.5 USD로 폴란드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 EPICOM에 따르면 헝가리 의료기기시장이 2018년까지 평균 3.1%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헝가리 내의 중장기 경제계획인 ‘세체니(Szechenyi) 2020’에 따라 많은 공립 병원들의 현대화 및 신기기 구입으로 인한 헝가리내의 의료 검진 기기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며, 헝가리 내의 사설 검진 진료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어 의료 검진 기기 시장에서 영상진단기기들의 수요 증대가 예상된다.

-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중에는 주사기, 붕대 등의 의료소모품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직 정밀의료기기는 수출이 미미한 실정이나 한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은 X선 및 방사선기기 수출량(MTI 8146)은 US\$ 1.1백만을 보이며 전년대비 2배 가량 증가하였다.
 - 또한, 치과용기기는 의료기기 중 유일하게 한국 상위 5위권 품목으로 치과용 의료기기에서 점유율 3.47%을 보였으며, 주수입품목으로는 치과장비(901849), 치과용 피팅재(902129)이다.
- 녹색(대체) 에너지(솔라판넬, 풍력 장비, 수처리 장치)
- EU의 환경규제 조치로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의 목표는 14.65%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이다.
 - 2014-2020년 EU펀드중 하나인 EEOP(환경 에너지 운영 프로그램, Environment and Energy Operating Programme) 아래 헝가리내 환경 프로젝트은 발주될 예정으로, 헝가리의 EEOP 에는 전체 헝가리 EU펀드 기금인 241억 유로중 36억유로(14.9%)가 배정되어 헝가리의 내의 환경과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들에 사용될 예정이다.
 - 특히, 태양광에너지의 경우 2020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2600PJ)의 70%(1838PJ)비율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12년 전체 신재생에너지의 1%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대량의 수요가 예상된다.
- 생명공학 및 신약개발 사업
- 헝가리에는 우수한 의과대학과 생명과학대학들이 다수 소재하고 있으며, 이들 대학에서 배출된 인력을 중심으로 동 분야의 벤처기업도 증가추세에 있다.
 - 헝가리는 이를 바탕으로 중부유럽의 의약품 개발 및 제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신약개발 등을 통해 다수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R&D 센터 설립

- 헝가리는 18세기말 중부유럽 최초의 공과대학이 설립된 곳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다수 배출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에릭슨, GE 등 세계 유수 기업이 헝가리의 이러한 우수 인력을 활용하고자 R&D 센터를 설립하였으며, 현대중공업도 헝가리에 연구법인을 운영중이다.
- 헝가리 연구인력의 임금은 매우 낮은 수준(서유럽 연구인력 임금의 1/3 수준)이지만 이들의 연구성과는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의료 온천 관광산업

- 헝가리는 국토의 2/3가 온천 개발이 가능하며, 이들 온천도 관절염, 피부병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어 유럽전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 또한 헝가리는 치과를 중심으로 많은 우수 의료진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많은 편이다.
- 그러한 최근 경기침체로 이들 온천지역에 개발되어 있는 대규모 관광시설들이 비교적 낮은 가격에 시장에 나와 있는 만큼, 우리 투자자들로서는 헝가리 관광산업 진출도 검토해 볼 만하다.

○ 서비스 센터 및 물류기지

- 외국어에 능통한 헝가리 우수인력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많은 유럽기업들이 콜센터와 서비스센터를 헝가리에 설립하여 운영중이다.
- 또한 헝가리는 유럽전역과 항공, 철도, 고속도로망으로 잘 연계되어 있으며, 시베리아 횡단철도와도 연결되어 있는 만큼 중부 유럽과 발칸반도 진출을 위한 물류기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헝가리의 비관세 장벽

헝가리는 EU 회원국으로서 한-EU FTA 협정이 적용되며, EU의 기준과

규제가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타 EU 회원국과 비교할 때 비관세 장벽이 높은 편은 아니다. 헝가리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으로 아래 사항들이 있다.

공공조달법 개정으로 자국 기업의 수주가 보다 유리

- 2012년부터 공공조달 입찰서류는 헝가리어로만 제출해야 한다. 단, 공공조달 공고가 외국어로 난 경우는 외국어로 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 또한, 아래 사항의 경우 공공조달시 별도의 공고 없이 계약체결이 가능해짐
 - 일반제품: 2천5백만포린트(약 11만달러) 이하
 - 건설: 1억5천만포린트(약 66만달러) 이하
 - 서비스: 2천5백만포린트(약 11만달러) 이하
- 종합적으로 볼 때, 새로 개정된 공공조달법은 자국 중소기업 및 내수 시장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개정되었기 때문에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우리기업 진출이 다소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

식품류 산지표시에 대한 신규 규제 도입

- 헝가리 지역개발부(Ministry of Rural Development)는 2013.9.1 일부로 국내에서 만들어진 식품류에 아래와 같이 ‘헝가리산’, ‘국내산’, ‘국내제조’ 3가지 문구를 기입하기로 결정하였다.
 - 헝가리산(Hungarian Product): 원재료 100% 헝가리산, 자국생산
 - 국내산(Domestic Product): 원재료 50% 이상 헝가리산, 자국생산
 - 국내가공품(Domestically Processed Products): 원재료 수입가능, 자국생산

- 국내 생산 식품류에 대한 소비자 수요 확대, 헝가리산 소비촉진이 주목적이며, 과거 우리나라의 신토불이, 일본 지산지소(地產地消) 운동과 유사하다. 상기 3가지 문구 중 한 가지 표기가 원칙이나 현재는 의무로까지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국내 소매체인에서만 할인쿠폰을 사용토록 신규법안 시행

- 헝가리는 소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일종의 할인쿠폰인 엘리자베스 바우처(Erzsebet Voucher)를 발급해 왔으나, 2012년부터 사용처를 자국 소매체인으로 한정하는 신규 법안인 카페테리아 법(Cafeteria Law)을 시행하고 있다.
 - 헝가리 소매시장은 다국적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국내 소매체인 보호차원에서 동 법안을 도입
 - CBA, Real 등 극히 일부에서만 할인쿠폰이 사용가능해 국수주의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음
 - 단, EU법 위반이 지적되면서, 4월부터 외국계 소매체인인 Tesco에 서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음
- 소매체인으로 수출되는 우리기업의 제품이 많지 않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Tesco, CBA 체인이 앞으로도 큰 시장을 점유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 기업이 현지 소매시장 진출을 고려할 때는 위 체인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노르웨이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노르웨이는 WTO 가입과 EEA 체결 등을 통해 자유무역 정책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농업 분야는 높은 관세부과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외무역은 EEA 협정과 우대협정(preferential agreements)에 의해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산품의 48.9%가 무관세로 거래되며, 공산품의 평균 최혜국대우(MFN)관세는 2010년 기준 0.5%로 매우 낮은 편이다. 반면, 농업 분야에서는 WTO 관세쿼터에 따라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있으나, 농산품의 평균 MFN관세는 49.4%로 매우 높다. 국내에서 생산이 되는 민감한 상품으로 살아있는 동물 및 육류, 유제품, 곡물에 대한 관세는 매우 높은 편이며(각 151.9%, 66.6%, 69.3%), 국내생산이 거의 되지 않는 상품(커피, 차, 향료, 야채추출물, 설탕, 담배 등)에 대한 관세는 거의 무관세에 가까울 정도로 낮다.

2012년 WTO 노르웨이 무역정책검토회의(TPR)에서 참석국들은 노르웨이가 보호무역주의적 조치를 자제하면서 신속하고 단호한 경기부양책을 통해 글로벌 금융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온 점, 농업 등 극히 일부 부문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개방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해 온 점, 다자무역체제를 중시하면서, 특히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및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등의 분야에서 개도국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등 동 체제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온 점 등을 평가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노르웨이가 속한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와 2005.7월 FTA를 체결하였고, 동 협정이 발효된 2006.9.1일 부터는 EFTA측은 모든 한국산 공산품(가공 농산물 포함) 및 수산물에 대해서는 즉시 100% 관세를 철폐하고, 기초농산물 400여 품목에 대해서는 0~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입부과금 등

수입부과금은 없으나, 수입품을 포함하여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25%의 부가가치세(식료품 15%, 교통 및 서비스 8%)가 부과된다. 한편, 국내생산과 수입에 대해서는 소비세(excise duties)가 부과되며, 특히 주류, 담배, 자동차, 석유 및 여타 에너지에 대해서는 고율의 소비세(약40~50%)가 부과된다. 농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검역(inspection)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 FTA 발효 이후에는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및 그 밖의 부과금 등은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통관절차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간소한 편이며, 대부분의 통관절차가 전산망을 통해 진행되므로 간단하고 편리하며, 일반적으로 통관신청 후 1~2일 정도면 통관이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수입업체가 통관 대행업체를 통해 수출업체의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신청하면, 세관에서는 알코올, 담배 등 민감 품목의 포함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함으로써 통관절차가 완료된다. 그러나 농산물과 식품 등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상당히 엄격하게 실시한다.

원산지규정상의 제약

노르웨이에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EEA협정에 따라 EU

시장에 판매되는 일부 제품에 대해 EU의 CE(Conformité Européenne) 라벨을 채택하고 있다. CE라벨은 제품이 EU의 표준이나 지침(directives)에 부합된다는 증명으로, EEA 각국 검사기관의 인증서를 추가로 받지 않고도 EEA 역내에서 자유롭게 거래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WTO에 비특혜적 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사용을 통보하는 등 국제관행을 준수하고 있다.

수입규제

노르웨이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대부분의 완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시장선점 경쟁이 심하지 않아 수입품으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나 시장질서 교란 사례는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농민보호 차원에서 일부 농산물 및 축산물에 대한 계절별 쿼터제도 등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별도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르웨이가 속한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와 FTA를 2005.7월 체결하였고, 동 협정이 발효된 2006.9.1일부터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의 상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입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가 철폐되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관련하여 불공정 사례는 없다. 노르웨이는 1985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이래 현재까지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조사를 실시한 바 없다.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EEA의 인가를 받은 제3국 검사기관의 모든 인증서를 인정해주며, 원칙적으로 수입업자가 수입품에 책임을 지고 관계기관에 규격 준수를 입증



해야 한다. 또한, 수입업자는 가공식품의 수입시 상세한 원료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EEA 국가 간에 인정되는 CE라벨은 제조회사명과 주소, 제품번호, CE표시를 포함하며, 일부제품에 대해서는 유럽기준 표준("European Norm" standard)에 따라 상형표기(pictograms)나 위험표시를 포함토록 되어 있다.

노르웨이는 EEA 협정을 통해 EU의 단일시장에 통합, 기술규제 등에 관한 국내법령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분야 특히 위험물질의 경우 노르웨이의 규제가 EU보다 엄격하다. 예를 들면, 수은 및 카드뮴 함유 건전지, 석면(asbestos)의 사용, 위험물질 특히 발암물질의 분류 및 라벨링에 있어서 그 규제가 상대적으로 매우 엄격하다.

환경 관련 규제

살충제 및 인을 함유한 비료의 카드뮴 성분 등에 대해 건강과 환경 보호를 이유로 EU보다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유전자 변형체)에 대해서도 EU보다 엄격히 규제하여 EU에서 승인된 GMO도 노르웨이에서 다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2% 이상 GMO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식품은 적절히 라벨링을 해야 하며, 유전자 변형 식품이나 새로운 식품(novel foods)은 EU 기준에 기초를 둔 노르웨이 기준에 따라 건강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받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색소, 비타민, 향료 등 식품첨가제를 불필요하게 사용한 식품의 유통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위생, 환경, 안전, 건강 등을 이유로 석면 제품, CFCs 등 오존층 파괴물질, 특정 질병을 옮기는 동물 및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흡, 토탄,

퇴비, 분뇨, 곡물의 수입시 수출국 검역기관의 식물위생 인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유럽 외 국가에서 목재, 톱밥 수입 시 조건부로 수입이 가능한데, 특히 산림에 유해한 해충유입을 우려하여 한국, 중국, 일본, 캐나다, 미국으로부터의 목재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한-EFTA FTA에 의하여 한-노르웨이 간 농수산물의 교역과정상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는 WTO/SPS 협정(Convention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는 EU 및 EEA에 대한 수출이 승인된 기관이나 상품의 경우 노르웨이로부터 별도의 수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노르웨이의 무역상대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농산품 중 노르웨이가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쿼터나 수입금지를 통해 보호하고 있으며, 유제품 등 일부품목의 경우 정부 보조로 인해 국제수준보다 높은 원가로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국내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1995.1월 WTO 회원국이 되면서 수입규제를 종전 수량규제나 금지에서 고율의 관세부과로 대체하였으나, 노르웨이와 경쟁적인 제품의 경우 여전히 관세율이 매우 높다.

높은 관세(평균 38.4%)를 통해 농업을 특별히 보호하는 동시에 곡물, 기름용 씨앗, 과일, 야채, 우유 및 유제품, 소, 양, 돼지, 닭, 계란, 양모에 대해 목표가격 책정(국내가격이 목표가격을 초과할 경우 2~4일 단기간 고시하여 수입 관세를 일시 인하, 가격을 조정하고 있으나, 원거리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경우 인근 유럽국가에 비해 관세인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 등 행정적 조치와 보조금 지원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2012년 WTO 무역정책검토회의에서 참여국들은 노르웨이 농산물에 대한 고관세, 높은 수준의 무역왜곡적 농업보조 등을 지적하였으나 노르웨이는 농업 부문의 개방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처럼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 보호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시장은 GDP의 10%에 육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노르웨이는 WTO의 정부조달협정(GPA) 당사국으로서 국내입법을 통해 GPA 규정을 이행하고 있으며, 한-EFTA FTA에 의하여 정부조달에 관한 양국 간 권리와 의무도 동 GPA에 의하여 규율된다. 공개입찰의 경우는 어느 기업이나 참여 가능하나, EEA나 WTO의 GPA 당사국에 등록된 기업이 아닌 경우 입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불허된다.

노르웨이 정부는 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을 총괄하는 기관을 별도로 설립하지 아니하고 각 수요기관들이 직접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 및 기관, 국영기업 및 지방정부 등 약 5,500여 기관이 직접 입찰을 기획, 시행하고 있으며, 다만 국가 전체적인 입찰기준 및 대외 교섭 업무만을 통상산업부가 책임지고 있다.

연간 공공부문 조달규모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국제입찰에 의한 조달은 약 42%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달규모 중 노르웨이산 제품과 외국산 제품 비율은 대략 4:6 정도로 외국산 제품의 비율이 높다.

노르웨이의 공공부문 입찰관련 정보는 <http://www.visma.com>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요입찰의 경우 각 정부부처나 발주기관들의 홈페이지에도 게재되므로 해당분야 기관들의 홈페이지를 수시로 방문하는 것도 정보수집의 중요한 방편이 된다. 각 정부부처 홈페이지는 영문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국가소유기업에 대한 노르웨이의 입장은 2012년 WTO 무역정책검토회의에서 오랜 기간의 사회정치적 환경 변화와 노르웨이가 지양하는 다양한 목표 및 정치적 고려의 산물인 반면, 민간기업과 동일한 시장 환경 및 경쟁법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국가가 자의적으로 시장에 간섭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노르웨이는 특허법, 디자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주요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들을 WTO에 통보하고 있으며, 로마협약, 베른협약 등 주요 국제협정의 당사국으로 지식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통상 20년간 특허권 보호/사후 70년 저작권 보호). 2005.6월 이후로 EU 2001 Copyright Directive⁷⁾를 바탕으로 온라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감시 및 규제를 두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노르웨이는 한-EFTA FTA를 통하여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WTO협정(TRIPS)’에 규정된 의무를 재확인하고, 상대방 국민들의 지재권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보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상호간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를 지고 있다.

서비스 장벽

원칙적으로 EEA 협정 당사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고 EEA국가에 등록사무소, 행정본부나 주요사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의 자회사에 대해서만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며 기업설립에 대해서는 회사대표자와 이사의 1/2 이상이 노르웨이 영주권자이고 최근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허가하고 있다(거주에 관한 수평적 제약 부과).

7)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EEA 국가에 기반을 두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이 노르웨이에 은행, 증권사, 조합투자기금의 지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노르웨이 은행보험증권위원회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단, 본국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허가). 또한, 외국 금융기관이 노르웨이 은행을 설립하는 경우, 총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TO의 금융서비스의 서약에 관한 양해에 반영되었듯이 비EEA 보험회사는 국경을 초월하는(cross-border) 보험(예: 해운·운송보험, 항공보험, 연안탐사 활동관련 보험, 신용보험 등)의 경우 노르웨이의 승인을 받은 보험중개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노르웨이법에서 규정한 강제 자동차보험 등은 제공할 수 없다.

해운분야에서도 EU 지침을 차용하고 있다. 비EEA 외국해운회사의 경우 본부를 노르웨이에 두고, 대표자와 이사진의 1/2 이상이 영주권자인 경우 노르웨이 국제선박 등록처에 등록할 수 있으나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즉, 노르웨이 항구 간 승객 및 화물운송, 노르웨이 항구와 외국 항구 간의 정기 여객선 운행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투자 장벽

노르웨이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혜 부여는 거의 없으며 외국자유무역 지대를 설치하고 있지 않다. 한편,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거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고기술 분야, 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는 환영하고 있으며 특히 북부 오지의 미개발지역 투자 시에는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1994.1월 EEA협정에 따라 과거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던 일부 분야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 관계부처는 개개 외국인투자(일반적으로 대기업 소유지분의 1/3 이상 보유 시)

에 대해 해당기업, 관련 산업, 고용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공공이익원칙(public interest principle)이라는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며 30일내 관계부처의 회답이 없는 경우 허가된 것으로 간주된다. 허가시에도 명기된 분야 외 사업은 불가하며, 조건부 허가가 내려질 수 있다.

수력 발전, 우편, 철도, 양조업, 금융 분야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자산취득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산림, 광산, 경작지, 휴양지, 수력발전용 폭포 등을 10년 이상 임대하거나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부동산을 소유한 노르웨이 기업의 주식을 구입 시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90년 이래 외국환 이동을 자유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익배당금, 이자, 투자과실 송금시 중앙은행에 통보 절차를 거친 후 자유롭게 반출 가능하다. 외국투자가가 현지에서 금융 조달을 하는데 제한이 없으며, 결제상의 문제점도 없으나, 신용이나 담보가 없는 경우 금융조달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기업 설립 시 대표자 및 이사진의 1/2 이상이 노르웨이 거주자여야 한다는 거주에 관한 수평적 제약을 부과하고 있다. (노르웨이 GATS Schedule of Commitments에 명시) 개인 사업가의 국내 거주 의무는 없으나 사업체는 국내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해외 국적 기업은 반드시 국내 거주 대리인을 고용해야 한다. 또한, 5 million NOK 이상의 영업 수익을 내는 사업체 혹은 유한 책임 회사의 경우 국내 회계 감사원을 고용할 의무를 지닌다. 한편 양성평등법 등에 따라 상장기업은 이사진(Board)의 40% 이상을 의무적으로 여성에게 할당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recreation 용도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동산을 소유한 노르웨이 기업의 주식을 구입 시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송 분야의 경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개인투자자 1인이 정부의 양허(concession)가 없는 한 국내 TV와 Radio의 1/3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경쟁정책

반독점법인 가격통제법(1993년 제정) 및 경쟁법(2004년 제정)에 의거 정부는 생산, 가격,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제한적인 관행을 규제할 권한이 있다. 합산 연간 매출이 50 million NOK 이상인 합병을 원하는 기업은 경쟁청(Competition Authority)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경쟁청은 신고 접수 후 15일 내, 혹은 합병 3개월 내 최종 신고(complete notification)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최종 신고 접수 후 근무일 70일 내 기업에 관한 예비 판결을 통보하고, 기업의 회신을 참고하여, 근무일 30일 내 최종 판정을 한다. 기업합병(특히, 시장점유율이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 대해 경쟁청은 3개월 내 개입여부를 결정하고 6개월 내 최종판정을 한다.

비농업분야에서는 EU의 경쟁정책 지침을 수용, 적용하고 있으나, 농업·수산업·임업분야에서는 정부 보호조치(예외적용)로 인하여 관세와 보조금을 유지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한-EFTA FTA에 따라 노르웨이 내 반경쟁적 기업 활동이 존재할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정부 간 협의를 갖게 된다.

외환관리

노르웨이의 외환관리는 Exchange Act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외환거래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한 1990년을 기점으로 완전 자유화되었다. 따라서 배당금의 송금이나 현지지사 이익금, 로열티 및 각종 서비스대금의 제3국 송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조치 없이 완전 자유화되어 있다. 즉, 국제 환거래나 자금이동 사항은 단지 거래은행에 신고(실제적으로는 은행을 통한 거래자체가 신고에 같음)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이것도 외국 당사자가 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인 노르웨이인(법인)이 신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금문제와 관련된 이익금이나 배당금의 경우에는 세금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대부분의 현지진출 외국기업들은 이익금이나 배당금 중 세금해당 액수만큼을 사내 유보금으로 확보하고 송금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또한, 노르웨이 거주인(법인포함)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누구나 외국환을 소지하거나 시중은행에 외환구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해외 송금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다만 외국환은행을 통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환거래는 외국환은행이 거주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중앙은행인 Norges Bank에 신고하며, 중앙은행은 필요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금지참 출입국시에는 노르웨이 화폐와 외환을 포함하여 총 25,000 NOK 이상의 금액을 지참하는 출·입국자의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내·외국인의 원활한 공항수속 절차를 위해 실제 여행자의 신고를 받는 이외 특별히 여행자의 몸수색을 하거나 소지품을 검색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집행하는 사례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기타 장벽

우리 국민은 국내에서 발급한 1년 유효 국제운전면허증과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노르웨이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3개월간 운전이 가능하다.



3개월 이상 거주하며, 거주허가증(노르웨이내 거주지 등록증)을 취득한 장기체류자의 경우는 일시체류자와 동일하게 노르웨이 입국 후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운전면허증으로 3개월간 운전할 수 있고 노르웨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로 주행시험 응시 접수시 필기시험(Theoretical Test) 및 학원시험(Traffic School Test)이 면제되며, 도로 주행시험을 통과하여야 면허증 취득이 가능하다. 이때 3개월간 도로 연수할 수 있는 임시운전면허증을 1회 한하여 발급해 준다. 만약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로 주행시험을 합격하지 못할 경우 면제되었던 필기시험 및 학원시험을 모두 응시해야 한다.

러시아

거시경제지표

■ 경제성장 · 재정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GDP(억달러) ¹	5,909	7,640	9,899	12,997	16,608	12,227	15,249	19,048	20,161	20,790	18,606
- 1인당 GDP(달러) ¹	4,095	5,313	6,913	9,102	11,631	8,568	10,671	13,320	14,069	14,468	12,718
경제성장률(%)	7.1	6.4	8.2	8.5	5.2	-7.8	4.5	4.3	3.4	1.3	0.6
물가상승 (%, 소비자)	11.7	10.9	9.0	11.9	13.3	8.8	8.8	6.1	6.6	6.5	11.4
연방세입 (억 루블)	34,570	51,250	62,789	77,811	92,759	73,368	83,038	113,660	128,537	130,199	144,968
(GDP 대비)(%)	(20.3)	(23.7)	(23.3)	(23.5)	(22.5)	(18.8)	(18.7)	(20.8)	(20.8)	(19.7)	(20.3)
조세수입 (억 루블)	31,402	31,302	35,957	46,337	52,326	38,965	44,019	58,790	67,374	69,509	77,934
연방세출 (억 루블)	26,310	35,143	42,848	59,866	75,709	96,368	101,156	109,352	128,907	133,429	148,306
(GDP 대비)(%)	(15.5)	(16.3)	(15.9)	(18.1)	(18.4)	(24.7)	(22.7)	(20.1)	(20.9)	(20.2)	(20.8)
재정수지 (억 루블)	8,260	16,107	19,941	17,945	17,050	-23,001	-18,118	4308	-371	-3,230	-3,338
(GDP 대비)(%)	(4.9)	(7.5)	(7.4)	(5.4)	(4.1)	(-5.9)	(-4.1)	(0.8)	(-0.1)	(-0.5)	(-0.5)

* 1. IMF database 기준

■ 경상수지 · 외환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경상수지(억달러)	601	846	947	778	1,037	494	711	973	713	348	584
－ 상품수지(억달러)	858	1,184	1,393	1,309	1,797	1,116	1,520	1,968	1,917	1,819	1,897
· 수출(억달러)	1,820	2,438	3,036	3,544	4,716	3,034	4,006	5,154	5,274	5,233	4,978
· 수입(억달러)	948	1,254	1,643	2,235	2,919	1,918	2,486	3,186	3,358	3,413	3,080
외환보유고(억달러)	1,245	1,822	3,037	4,764	4,262	4,394	4,794	4,986	5,376	5,096	3,855
외채규모(억달러)	2,114	2,585	3,097	4,639	4,805	4,672	4,889	5,389	6,364	7,289	5,990

■ 최근 주요거시지표

(전년동기 대비, %, 천 명)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상반기
실질 GDP 성장률	8.1	5.2	-7.8	4.3	4.3	3.4	1.3	0.6	-3.5
산업생산 성장률	6.3	0.6	-9.3	8.2	5.0	3.4	0.4	1.7	-2.7
고정자본투자증가율	21.1	9.9	-15.7	6.0	8.3	6.6	△0.2	△2.7	-5.4
소매거래량 증가율	15.2	13.6	-5.1	6.3	7.0	6.3	3.9	2.7	-7.9
실업률(기말)	6.1	6.4	8.4	7.5	6.1	5.1	5.5	5.2	5.4
실업자수(기말)	4,600	5,895	6,173	5,400	4,643	3,825	4,190	3,889	4,091
소비자물가상승율 (전년말 대비)	11.9	13.3	8.8	8.8	6.1	6.6	6.5	11.4	8.5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와 특징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2000.10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5 개국은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를 출범시키고, 경제통합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 중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은 2010.1월 관세 동맹(Customs Union)을 출범시키고, 회원국간 관세 철폐, 대외 공동관 세 부과, 상호 통관수속 철폐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1.11월에는 경

제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단일경제구역(Single Economic Space) 창설 조약에 서명하고, 유라시아 경제통합 추진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5.1.1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을 창설 회원국으로 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EU: Eurasian Economic Union)이 출범하였고, 이어서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즈스탄이 가입하여 현재는 총 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EU는 국제법상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로서, 기존의 관세동맹과 단일 경제구역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며, 회원국 간 상품·서비스, 자본, 노동력의 자유로운 상호이동 뿐만 아니라, 공동의 거시경제정책 수립, 분야별 시장통합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경제통합을 달성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EU 창설조약 전문 및 관련 법적 문서들은 유라시아 경제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 홈페이지(www.eurasiancommission.org)에 게재되어 있다.

EEU 창설조약은 총 4장(章) 118조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1~22조)은 EEU의 기본원칙, 조직체계, 예산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23~61조)은 3국 관세동맹에 관한 내용으로, 회원국간 무역·기술·위생·검역·소비자 보호 등을 다루고 있다. 제3장(62~98조)은 단일경제구역에 관한 내용으로, 회원국간 거시경제정책 조정, 서비스 무역, 금융시장 규제, 조세, 에너지, 교통, 정부조달, 산업, 농업, 노동자 이동 등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4장(99~118조)은 잠정조항(Transitional Provisions) 및 종결조항(Final Provisions)으로 이루어져 있다.

EEU 회원국들은 분야별로 상이한 스케줄에 따라 시장을 통합해 나가게 되는 바, 분야별 목표 통합시한은 △ 의료시장 2016년, △ 전력시장 2019년, △ 에너지 및 금융시장 2025년이다.



다만, EEU가 출범하더라도 기존의 관세동맹 및 단일경제구역 등 체계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들 규범이 제3국의 대러 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큼, 동 관련 내용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관세동맹 규범 중 하나인 공동관세율협정(2008)에 의하면, 관세동맹의 상품분류목록(HS Code) 전체에 대한 각국의 수입관세가 일치할 때 무역 정책수단으로서 제3국에 대한 공동관세가 완전히 형성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국에 대한 공동관세는 2009.11월 국가간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채택되었고 2010.1.1일부터 시행중이다. WTO 자료에 의하면 공동관세는 1만1,170개의 세번(tariff line)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서 종가세가 9,208개, 혼합세가 1,746개, 종량세가 216개에 달한다. 공동관세 중 9,024개는 러시아의 수입관세(2009.11월 기준)와 동일하며, 426개(고기, 치즈, 계란, 쌀, 플라스틱, 섬유 등 포함)는 러시아 관세보다 높고, 1,357개(동물, 채소, 화학물품, 금속 등 포함)는 러시아 관세보다 낮다. 공동관세는 시행일(2010.1.1)부터 관세동맹 영역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나, 2008년 의정서에 의거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세동맹 회원국이 일부 수입상품에 대해 공동관세와 상이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즉 관련 회원국의 국내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관세보다 높은 관세를, 해당상품이 부족할 경우에는 공동관세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처럼 개별적인 관세는 일시적이고, 1회 적용기간은 6개월이며, 해당 회원국의 요청으로 다시 6개월 연장될 수 있다. 지금까지 관세동맹 회원국 중 카자흐스탄은 일부 농산품(사과, 배 등), 의약품, 플라스틱, 알루미늄, 종이제품 등 409개의 품목에 대해 2014년까지 상이한 관세를 부과하도록 허가를 받았다.

상기 공동관세율협정은 외국인투자자의 자산, 국제 우주개발·연구 협력을 위한 수입품 등에 대해 수입관세 면제 또는 관세인하를 제공할 가능

성을 인정하고, 화물·승객 국제운송수단, 제3국 자연인의 공식·개인용 물품, 인도적 원조로 수입되는 상품, 통화 등 9종류의 제3국 상품에 대해 관세면제를 부여한다. 또한 국가간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카자흐스탄은 2010~2019년간 국내가공을 위해 수입되는 제3국 사탕수수설탕(HS 170111)을 러시아, 벨라루스로 재수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관세 없이 수입하도록 허용을 받고, 그 외의 무관세수입에 해당하는 사항도 허용을 받았다. 또한 관세동맹은 개도국과 최빈국에 대한 일반특혜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를 두고 있는데, 개도국 수입품의 경우에는 기존 공동관세율의 75%만 적용하고 최빈국의 경우에는 0%를 적용한다. GSP 수혜국과 대상상품은 관세동맹위원회에 의해 정해진다. GSP 수혜국 중 개도국은 일반적으로 세계은행이 high-level income 국가로 분류하지 않은 103개국(한국 포함)이며, 최빈국은 UN 최빈국 목록에 기재된 49개국이다.

관세할당 적용요건 및 메커니즘에 관한 협정(2008)은 단일관세 영역 내의 소비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제3국 농산품에 대해 기존 공동관세율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할당(tariff quota)을 일정한 기간 이내 시행할 수 있게 허용한다. 관세할당의 최대 가능액수는 관세동맹위원회가 단일관세 영역에서 관련 농산물의 소비량과 생산량 간 차이만큼의 수준으로 정하는데 회원국별 할당분배 역시 해당국가의 소비량과 생산량 차이에 따라 정한다. 또한 관세동맹위원회는 필요시 단일관세 영역으로 유입되는 농산물 수입 중 10% 이상을 차지하는 공급자(즉 중대한 제3국 공급자)들과 협의하여 제3국별로 관세할당 분배를 할 수 있다.

관세동맹 역외국가로부터 상품이 수입되거나 역외국가로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동 상품이 3국내에서 이동할 때 부가가치세, 물품세와 같은 간접세를 부과할 수 있다.



2010.1.1일부터 컴퓨터, 핸드폰, 녹음기 등 전자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내장되어 있는 암호화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 기관에서 검사를 시행하여 세관에 결과를 통보한다. 현재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웹사이트(www.eurasiancommission.org)에 컴퓨터, 핸드폰, 녹음기 등 약 2,500개 물품 관련 정보가 게재되어 있는 바, 세관원은 주로 동 정보를 통해 물품수입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다.

관세동맹 통합관세법 제 27장에 따른 물품의 세관신고에 대한 사항은 화물 경우 통관 과정에도 적용된다. 경우 세관신고는 세관신고들 중 한 종류로 분류되며,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종전과 다르지 않다. 경우 세관 신고서에는 관세동맹 상품명 코드에 일치하는 상품코드가 기록되고, 국경을 넘어 화물을 옮길 때 각종 제한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경우 세관신고서에서는 러시아 관세법이 규정한 화물 통과 예상 시간은 요구하지 않는다. 경우 화물의 통관 과정에서 화물 집하 장소에 대해 부과된 조건은 변경되지 않았다.

통관절차는 통합관세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르게 되는 바, 기존 러시아 관세법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상품에 대한 신고서류가 간소화되었고, 가공도가 높은 상품에 대한 수출절차가 단순화되었다. 세관신고서는 신고기업(개인)이 거주하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의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동맹 통합관세법은 수출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의 경우 통관시간을 세관신고 등록시부터 4시간으로 단축했다. 수출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자가 수출상품의 통관시 갖추어야 할 서류의 종류는 14가지에서 다음과 같은 7가지 종류로 간소화했다. 즉, 세관신고서, 대외적 경제 활동을 확인하는 서류들 또는 그에 해당하는 서류들로 소유권과 이용권을 확인하는 서류들, 그리고 대외경제활동에 한해서가 아닌 상품의 처리권을 확인하는 서류들, 그 외에 신고자의 관리에 관한

상업적인 서류들, 운송을 하는 교통수단에 대한 서류들, 금지와 제한을 준수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들, 상품 종류 코드 서류들, 통관 비용 지불 또는 지불 보장을 확인하는 서류들, 관세동맹 국가들의 외화 법에 따른 외화 규제 조건을 준수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들 등 7가지 종류이다. 세관신고를 위한 필수 서류목록은 관세동맹 통합관세법에 정해져 있다. 수출세가 부과되지 않는 수출상품의 통관에 있어서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을 세관이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사적 이용을 위해 개인이 상품을 이동하는 것에 관한 관세동맹 통합관세법 규정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존법과 별 차이가 없다.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관세동맹 운영을 위해 2010.7.6부터 시행된 통합관세법 부속 협정서 Appendix 3, 4 등에 의거하여, 영구거주 허가(permanent residence)를 받은 이민자가 아닌 개인이 직접 휴대하거나 이삿짐으로 러시아 등 관세동맹 체결 3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차량, 에탄올 제외)으로서 1,500유로 또는 50킬로그램을 초과할 경우, 30%의 증가세 또는 킬로그램당 4유로 중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외국인의 경우 보석, 카메라, 랩탑, DVD플레이어, 휴대폰 등 21개 기존 사용한 중고물품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는 바, 우리 교민·주재원·유학생들의 이사화물 또는 휴대 반입화물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서류, 식품류, 의류, 가구, 주방·욕실용품 등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우리정부는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 인력이 반입하는 이사화물(중고물품에 한함)에 대해서는 수량 및 개수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러시아 정부에 요청 중이다.

관세동맹 창설에 따라 벨라루스나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다면 세관신고를 작성할 필요도 없고 세관 조사도 거치지 않는다. 단, 공항 내부의 국제 구역에 들어와 면세점에서 면세품들을 구입할 수 없다. 이는 관세동맹 국가들간의 항공여행객들은 내국을 이동하는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한편, 관세동맹 회원국 출입국시에는 1만 달러 이하의 현금 및 여행자 수표는 세관신고 없이 소지할 수 있으며, 1만 달러를 넘을 경우 서면 신고를 해야 한다.

러시아 국내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화재, 무기, 마약류 등 특별히 금지나 제한이 따르는 물품은 관세동맹 역내이동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

2015년 5월에는 EEU와 베트남간 FTA가 체결되었으며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과의 FTA 체결이 검토 혹은 추진 단계에 있다. 또한 러시아 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러중 FTA 체결 협의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 30개국이 EEU와의 FTA 체결 의향을 표한 상태이다. 뉴질랜드와 노르웨이, 스위스 등과의 FTA협의도 논의된 바 있으나 서방과 러시아 간 경제제재 조치로 당분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WTO 가입 및 최근 동향

1993년 6월, 러시아는 WTO의 전신인 GATT에 가입을 신청한 이후 WTO 가입을 추진해왔으며, 1995년 7월, 러시아와 WTO간 가입협상이 시작되었으나 러시아의 정치적 갈등, 1998년 금융위기 등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2004년 러시아는 EU, 중국, 한국과 양자 협상을 타결하고 2006년에는 미국과도 양자 협상을 타결했으며, 2011년 10월 153개 회원국 중 러시아의 WTO 가입을 유일하게 반대해온 조지아가 스위스의 중재안을 수용함에 따라 회원국과의 양자 협상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2011.11월 WTO 가입작업반 공식회의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 패키지(①각료결정문안, ②가입의정서안, ③상품 및 서비스 양허안, ④가입작업반 보고서)가 승인됐고, 2011.12.16일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이 공식 확정되었다. 2012년 러시아는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했으며, 2012.8.22일부터 WTO 정식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러시아의 WTO 가입 패키지에 따르면, 상품 양허 부분에서 러시아는 수입관세를 현행 평균 10.0%에서 7.8%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고, 특히 공산품 관세를 평균 9.5%에서 7.3%로, 농산물에 부과되는 관세를 13.2%에서 10.8%로 인하하기로 했다. 주요 제품별로는 IT 제품중 컴퓨터 수입관세가 현행 5.4%에서 3년 내에 관세 폐지되며, 무선전화기는 '13년까지 관세가 폐지될 예정이다. 또한, 의약품의 경우 10~15%에서 5~6.5%로, 의료기기의 경우 10%에서 5%로 각각 관세 인하될 예정이다.

■ 한국의 對러시아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율 변화

품목	실행세율	가입전해	최종양허세율	이행안료시점
승용차	30%	25%	15%	2019년
자동차부품	5~15%	5%	0~10%	즉시~2018년
TV 부품	10%	10%	0	2015년
합성수지	5~10%	5~10%	4~6.5%	2013~2014년
냉장고	20%	20%	5~13%	2015~2017년
철강제품	15~20%	5~15%	5~7.5%	즉시~2015년
의료기기	10%	10%	5%	2015년
플라스틱	10~20%	10~20%	5.5~6.5%	2015~2017년
제지	15%	5%	5%	즉시
커피	15%	15%	10%	2016년
쥬스	15%	15%	8%	2015년
의류	10%	10%	5~8%	2014~2015년
가방	15~20%	15~20%	6.5~10%	즉시~2017년

출처: 한국무역협회

러시아의 WTO 가입 이후, EU는 '12년 9월 러시아 정부가 신규 도입한 자동차 재활용세(recycling fee) 부과 조치가 러시아산과 외국산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13년 7월 러시아를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제소했고, '14년 4월에는 러시아의 EU산 돼지고기 금수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 또한, '13년 5월 러시아가 독일, 이탈리아 및 터키로부터 수입되는 일반 경상용차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



에 따라, '14년 5월 EU는 동 조치가 절차적/실질적 측면에서 WTO 규정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WTO 분쟁해결 절차상 협의를 요청한 상황이다.

통관절차(Customs procedures)

러시아 통관절차의 이용 편의성은 세계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통관검사(inspection)비용은 약 44%로서 미국·독일 3%이하, 영국 2%에 대비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통관시 평균 제출서류 건수는 수출 8건, 수입 10건으로 선진국의 약 2배 수준이다. 외국기업들과 관세당국간의 상호 신뢰가 부족하여 외국기업들의 0.5% 정도만 특별 단순 통관절차를 이용하고 있고 대부분은 법률에 규정된 모든 통관절차를 거치고 있다. 러 연방 전략기획청에 따르면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은 실소요 기간이 평균 36일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통관 지연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러 정부는 2012년 12월, 2020년까지의 관세행정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관세행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관세행정 발전 전략에 따르면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2012년 10개에서 2018년까지 4개로 축소하고, 수입통관시간도 2012년 96시간에서 2018년 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종이서류 없이 이루어지는 전자통관신고비중도 2012년 40%에서 2014년 100%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World Bank'에서 2015년 발표한 'Doing Business 2015'를 보면 러시아는 조사대상 189개 국가 중 국경통관 부문에서 155위를 차지하여 여전히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며 비용도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측면을 보면 필요 서류는 9개에 달했으며,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은 21.1일로 조사되었다. 수출입 소요 시간과 비용은 2014년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류 준비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순위		160/183	162/185	157/189	155/189
수출	필요 서류	8개	8개	9개	9개
	소요시간	36일	21일	22일	21.1일
	소요비용(\$/컨테이너)	1,850	2,820	2,615	2,401
수입	필요 서류	10개	11개	10개	10개
	소요시간	36일	36일	21일	19.4일
	소요비용(\$/컨테이너)	1,800	2,920	2,810	2,595

출처: WorldBank Doing Business in 2012, 2013, 2014, 2015

구 분		2016년
순위		170/189
수출	소요시간	
	서류 준비 (시간)	42.5
	국경 통과 (시간)	96
	국내 운송 (시간)	15.3
	소요비용	
	서류 준비 (USD)	500
	국경 통과 (USD)	1,125
	국내 운송 (USD)	744.1
수입	소요시간	
	서류 준비 (시간)	42.5
	국경 통과 (시간)	96
	국내 운송 (시간)	15.3
	소요비용	
	서류 준비 (USD)	500
	국경 통과 (USD)	1,125
	국내 운송 (USD)	744.1

출처: WorldBank Doing Business in 2016(예상치)

러시아에서 통관되는 상품의 분류는 국제 HS Code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관세동맹의 상품분류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기업과 러시아 기업간 수출입에 있어서는 러시아 기업이 통관책임을 지게 되며 러시아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자가 모든 세금을 해당세관에 납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통관절차는 러시아 거주자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선의 소개를 받아 믿을 수 있는 통관대행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확실하고 안전하다.

통관수수료는 통관되는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다양한데 13 Euro에서 750 Euro 사이의 금액이 부과되며 전자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약 25%의 수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통관절차는 외국기업들이 러시아와의 무역에 있어서 자주 거론하는 애로사항의 하나인데 절차가 복잡하고 느린 것은 물론이고 담당자의 규정적용이 자의적이며 부패에 노출되어 있다.

신고가격과 러시아 관세청이 인지하는 적정가격과의 차이 발생시 서류보완제출에 따른 통관지연이 기업들의 큰 애로사항으로 발생해 러시아 관세청과 우리기업간의 간담회 등을 통해 시정을 지속 요구해왔다.

2010.1월 관세동맹 창설에 따라 관세동맹 역내로의 수입물품의 관세가격(customs value) 산정은 다음과 같이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3국간 협정에 따라 결정하게 되었다. 관세가격은 우선 수입하는 상품의 거래가격에 근거하여 산정하나, 실제 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동일한 상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그러나 수입하는 상품이나 그와 동일한 상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제품의 거래가격이나 동 제품의 관세동맹내 판매가격을 준용하거나 상기한 여러 가격을 결합하여 적정한 관세가격을 산정토록 하였다.

그러나 수입물품의 관세가격 산정은 여전히 각국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세수입 확보를 위해 일선세관에서 수입상품 관세가격(customs value)을 가능한 한 높게 책정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따라 각국 기업들은 수입통관에 있어서 러시아 관세청의 일관성 없는 상품가격 산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수입가격이 하락하거나, 동일물품이라도 대량구매 시 신고가격보다 낮게 구입이 가능하나 일선세관에서는 동일물품이나 유사물품에 관한 여러 수입업자들의 신고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일선 세관들은 국제가격이 하락한 품목들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불필요하고 복잡한 증빙서류를 요구하다가 결국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거래 및 판매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일선세관에서 수입가격 결정시 사용하는 다른 회사의 동일제품에 대한 수입신고 가격 등을 공개하지 않아 세관 가격결정의 투명성이 낮다.

2010년 1월부터 통관신고를 전자신고(e-declaration)을 도입하였으며 현재는 거의 모든 통관신고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중앙관 세구역을 비롯한 일부 일선관서에서 전자신고와 함께 종이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러 관세청은 2014년까지 100% 전자신고만으로 통관신고를 처리할 계획으로 있어 조만간 이런 부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는 수입품의 가치에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종가세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상품의 중량 등을 근거로 부과되는 종량세가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종가세와 종량세가 병과되는 품목도 있으므로 수입관세적용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평균 관세율은 상품가격의 5~18%이며 관세동맹의 공동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다만,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 system of Preference)가 있어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로부터 생산되어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율의 75%, 또는 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수입시 부과되는 관세외에 일부 감면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에 수입가격의 18%에 해당되는 수입 부가세(Import VAT)가

추가되며, 주류와 담배와 같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세(excise tax)가 부과된다.

러시아의 WTO가입에 따라 2011년 9.68%이던 가중평균 수입관세율은 2015년까지 5.94%로 인하되며 연간 관세율 변경은 매년 9.1일에 이루어진다.

정부조달 장벽

현행 정부조달은 2006.1.1일부터 발효된 러시아연방 조달법률 N 94-F3이 근간이 되고 있다. 이 법은 1999년에 제정된 구법을 대체한 것으로 연방정부, 주 정부, 시 등이 10만루블을 초과하는 정부물품 구매시에는 동 법률을 따르도록 한다. 동법에 따른 정부조달방식은 경쟁(Tenders), 경매(Auctions), 공개견적요청(open requests for quotations)으로 나누어진다. 참고로 매년 정부조달 금액은 연간 예산액의 30% 수준이다. 연방정부(www.zakupki.gov.ru)와 지역정부(예; 모스크바 www.tender.mos.ru)는 각각의 공식 웹사이트에 각 품목별 조달 계획을 공고해야 하며, 공식 발간지인 Konkursnye torgi (www.gostorgi.ru)에도 게재토록 한다. 조달계획 공고 후, 해당 프로그램별로 5인 이상의 조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임명한다. 위원회는 입찰진행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경쟁’과 ‘공개견적요청(Open requests for quotation)’방식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까지도 책임을 지고 있다. 1999년 제정된 구법에서는 러시아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러시아에서 생산되더라도 경제성이 낮은 상품·서비스에 대해서만 외국기업들의 응찰(참여)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들은 러시아에 자회사를 등록하거나 러시아 에이전트를 통해 응찰(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행법에서는 외국기업들의 응찰(참여)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내국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조직형태, 소유형태 등에 관계없이 응찰(참여) 가능하나, 청산·파산과정에 있거나

러시아 연방법률에 의거 영업이 정지되거나, 세금·관세 미납·채납액이 일정 한도에 이를 경우에는 응찰(참여) 할 수 없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내수 시장 및 자국 제조업체 보호를 목적으로 외국산 자동차, 건설장비 등에 대한 정부 조달 금지 조치(2014년 7월 16일 발효)와 외국산 경공업 제품에 대한 정부 조달 금지 조치(2014년 9월 1일 발효)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벨라루스 및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외국에서 생산된 정부용 및 대중교통용 차량, 구급서비스·공공기관·유틸리티 용도의 특수 장비, 건설 장비, 농기계 등 품목의 러시아 연방 및 지방 정부 조달 구매가 금지되었고,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생산된 원단, 로프, 그물, 의류, 가죽, 모피, 가방, 신발, 신발밑창 등 품목의 러시아 연방 정부 조달 구매가 금지되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의료기기 품목에 대해서도 위와 유사한 정부 조달 금지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기 조치들의 상세한 내용은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홈페이지(rus-moscow.mofa.go.kr, '러시아 경제동향' 게시판)에서 입수할 수 있다.

현재 정부조달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경쟁(Tenders)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이루어지며 참가비는 없으나 공고되는 최초 가격의 5% 이하 공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응찰서류 개봉일자 30일전에 최초 가격, 평가항목 및 기준, 응찰서류 등을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한다. 응찰자들은 모든 응찰서류를 100% 러시아어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봉일자에 모든 응찰서류를 개봉하여 공개한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는 응찰서류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심사 대상을 확정한다. 위원회는 심사대상 확정결정 이후 10일 이내에 심사 대상 응찰서류를 대상으로 기능, 품질, 유지관리비, 제공 조건 및 기한, 사후보증, 가격 등을 비교하여 순위를 결정하고 수주업체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결정내용은 1일 이내에 공식웹사이트를 통해 게재하게 된다. 탈락한 업체들은 탈락 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2일 이내에 소명



하여야 한다. 입찰과 관련된 서류, 심사관련 음성기록, 위원회 의사록 등은 조달기관에서 3년 이상 보관하게 된다. 탈락업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수주업체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최저가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탈락업체들의 공탁금은 5일 이내에 돌려준다.

경매(Auctions)는 현행법에서 새로이 도입한 시스템으로 네덜란드식 경매방식을 사용한다. 즉 공고한 최저가격에서 가격을 낮추어 가면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수주토록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단지 가격에 의해서만 수주여부를 결정하며, 이 방식을 적용할 조달 물품, 서비스는 러시아 연방정부가 매년 결정한다. 경매일 20일 이전에 공식웹사이트에 경매 일자 및 장소, 물품, 시작 가격, 응찰 공탁금(최대 5%, 단 전자경매는 0%) 등이 공고된다. 위원회에서 응찰업체의 제출서류 검사 후 경매 참가업체에 대해서 결과를 개별통지 및 웹 사이트에 게재한다. 통상 시작가격의 5%씩 가격을 낮추어 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수주업체는 계약서 서명을 하고 시작가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한다. 50만루블(또는 EUR 15,000)보다 적은 금액의 경매는, 공식웹사이트 상에서 전자경매를 실시하기도 한다.

공개견적요청(open requests for quotations) 방식은 평균 시장가격을 손쉽게 알 수 있거나, 조달품목의 가치가 25만루블(또는 EUR 7,500)을 넘지 않거나, 시작가격이 25만루블보다 낮은 경매가 실패했을 경우 사용하는 방법으로 웹사이트에 응찰 정보를 게재하여 응찰서류를 접수하면서 또한 축적된 과거 응찰서류를 검토하여 잠재 계약자를 발굴하여 개별적으로 응찰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경우 위원회에서 응찰서류를 검토한 후 적격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수주토록 한다. 새로운 조달법에 따라 외국기업들에게도 이론적으로 러시아 정부조달시장은 개방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조달계획이 통상 러시아어로만 공개되고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가 복잡하며 모두 러시아어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러시아내 기업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기업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지평가이다. 따라서 러 정부조달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면 진출단계에서는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또는 충분한 경험을 가진 러시아의 믿을 만한 파트너를 확보한 후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2014년부터 7월부터 건설, 기계, 경공업제품, 의료,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EEU 회원국 외 외국 기업의 러시아 공공조달 참여 제한 조치가 연이어 발표 및 발효되었다.

■ EEU외 외국산 제품 공공조달 참여 제한 조치

발표일	내용	발표 부서
2014.7.14	건설기계 등 엔지니어링 제품 제한 법령	산업통상부
2014.8.11	외국산 경공업제품 구매 제한 법령	산업통상부
2015.1.31	엔지니어링 품목 추가 법령	산업통상부
2015.2.5	해외 의료용 제품 조달품목 제한 법령	산업통상부
2015.9(발효일)	해외산 소프트웨어 조달품목 제한 법령	산업통상부

* 자료: 러시아 산업통상부

금융상의 제한

(1) 외환 및 금융거래상의 규제

2007.10월 통화거래 자유화 조치가 단행되었지만, 아직도 몇 가지 주요한 규제는 남아있다. 거주자(residents)는 러시아 시민, 거주허가를 가지고 영구적으로 러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개인들, 러시아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한 법인체 등으로 규정된다. 거주자간의 거래는 은행과의 외환거래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루블화로만 가능하다. 거주자간의 외환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직계가족과 친인척간의 거래로 국한되며 해당 거래를 위해서는 은행에 관계증명을 제출 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한다. 중앙은행은 대출, 수출입, 서비스제공 등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현



금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해 거래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지급자의 은행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의 문서를 통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의 내용은 거주자, 비거주자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환거래를 포함하고 있으며 비거주자의 경우는 국적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2) 외환반출에 대한 제한

개인이 현금을 소지하여 반입할 경우 미화 10,000달러 초과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금을 소지하여 반출시에도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10,000달러 초과금액을 미신고한후 적발될시 10,000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액 압류되며 재판에 회부되어 2배 또는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납부할 수 있음), 당초 반입시 신고 등 별도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3)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송금 규제

2001년부터 불법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간 600,000루블 이상의 자금거래 등에 대해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 은행 등은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금융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다. 2008.1.15일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개인은 기준금액 15,000루블이하의 거래(무통장송금 및 환전)는 별도의 개인 정보 입력없이 가능하며 비현금거래의 경우는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여권 정보(성명, 주소, 출생지 및 출생일자)입력이 필수사항이다. 법인은 금액에 상관없이 납세자 번호 없이는 어떤 거래도 할 수 없다.

(4) 수출대금 회수 등 결제상의 문제점

금융부문에 대한 불신과 조세 문제로 수입상들은 L/C 거래를 기피하는 성향이 강하고, 의심이 가는 거래인 경우 은행은 송금을 자의적으로 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적절한 대금결제 방법을 찾기 어렵다.

금융제도 미흡으로 신용장 방식 거래보다 T/T 및 현금거래가 보편적이며, 대부분의 바이어가 10~50%를 현금 또는 T/T 송금하고, 잔금은 제품이 러시아에 도착 후 지불하겠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당수의 바이어가 외국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L/C 개설만 고집할 경우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L/C가 개설된 경우에도 가능하면 개설은행의 순자산규모 등 은행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2013년부터 러시아 중앙은행은 소규모로 난립되어 있는 은행부문의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법령을 위반한 은행들이 면허를 취소당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우리기업이 면허가 취소된 은행에서 발행된 L/C를 근거로 수출을 한 경우에는 수출대금 회수에 큰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과도한 외상거래는 항상 위험부담이 상존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선수금 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선적 직전에 잔금을 송금하는 방법이나, B/L을 잔금 지불 후 인도하는 방법, 무역보험 가입 등 제반 안전장치 강구가 필요하다. 또한, 바이어가 관세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갑자기 계약서상이나 인보이스상의 가격보다 Undervalue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때에도 후일 분쟁예방을 위해 반드시 근거 서류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특히, 분쟁 발생시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약서상의 준거법이 어느 국가의 법을 따르는지 사전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어느 국가의 중재법원을 이용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또한 SGS 등 각종 증빙서류를 발급 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동일품목이라고 하더라도 모델명이 다를 경우 별도로 증빙서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의외로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특히, 바이어가 인증(GOST-R 또는 CU인증)을 대행할 경우 비용 지불 주체에 따라 러시아내 제품인증 권한의 주체가 변경될 가능성이 많은바, 인증 관련 업무 추진 시 동 사항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바이어가 비용을 지불할 경우 바이어 명의로, 한국 업체가 비용을 지불할 경우 한국 업체 명의로 제품인증 권한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경제제재 은행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로 VTB 등 일부 러시아 은행들이 미국 내 자산동결 조치 등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이들 은행이 비즈니스에 연계될시, 자금 조달이나 송수금 등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조세 체계

(1) 조세 체계

러시아의 세금은 크게 연방세(federal taxes), 광역단체 지방세(regional taxes), 기초단체 지방세(local taxes)로 나누어진다. 각 카테고리에서 해당하는 주요 세금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목이 있다. 부과된 세금에 불만이 있을 경우 국세청 또는 법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적정세금보다 적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 단순 착오시에는 미납세금의 20%,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미납세금의 40%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 러시아의 기본 세제

구 분	종류 및 세율
연방세	· 부가가치세: 일반적으로 18% 세율, 식품·유아용품·의료용품·정기간행물 등의 경우 10% 부과 · 법인소득세: 기본 과세율은 20% · 보험부담(2010년부터 기존 통합사회보장제 대체): 피고용자 월평균 급여의 30% 부과, 전액 고용주 부담 · 소비세: 주류, 담배, 석유, 천연가스 등에 부과 · 개인소득세: 과세율 13% · 관세, 광물추출세 등
광역단체 지방세	· 기업자산세: 최대 2.2%까지 부과 · 교통세 · 오락세
기초단체 지방세	· 토지세 · 개인자산세

❏ 각종 세금의 세율표

세금	세율
부가가치세 (VAT)	18%(일부 식품, 정기간행물, 의료용품, 유아용품의 경우 10%)
법인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	표준 과세율 20%(연방예산에 2%, 지역예산에 18% 귀속) * 광역단체의 경우 세율을 자체적으로 4%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9%, 0%이며 정부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은 15%, 9%, 0%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거주자: 표준율 13%, 배당소득 9%, 상금 등 35%, 채권소득: 9% 비거주자: 표준율 30%, 배당소득 15%
기업 재산세 (Organisation property tax)	지방세이며, 기업 재산의 최대 2.2%까지 책정되며, 대부분 지역에서는 2.2%가 적용되며,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투자촉진을 위해 세율인하·면세도 실시.
토지세 (Land tax)	토지 형태·용도·지역별로 책정하며, 0.3~1.5% 수준임
개인 재산세	개인 재산 가치의 2%까지 책정
교통세	엔진 용량이나 교통수단에 따라 세율이 차등 책정
보험 부담 (Insurance Contributions)	기존 통합사회보장세(Unified social tax)의 새로운 이름, 2012년부터 월평균 급여의 30% 적용(이중 연금보험료는 22%)
오락세	슬롯머신, 캠블링, 도박용 기기 등에 대해 책정

* 법인 소득세의 경우 경제자유구역(FEZ) 입주 기업들의 경우 최대 13.5%(일부 예외 규정 제외)

(2) 개인에 대한 과세

①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은 러시아내 거주하는 개인과 러시아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러시아내에서 소득을 수취한 개인을 포함한다.

2007.1월부터 효력을 발생한 현행 법률에 의하며 과세 목적상 러시아내 거주 개인(tax residence)이란 최근 12개월간 최소한 183일을 러시아에서 실제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과세목적상 러시아 거주자(tax residence)에 대해서는 13%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13% 단일세율 적용은 종전법률과 같이 최근 12개월보다는 캘린더 기준으로 1년간 최소 183일 거주한 자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세목적상 거주자에 대해서는 러시아 또는 외국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의 9%, 상금·보험금수령액·특정범위를 초과하는 이자수입액·기준금리보다 낮게 대출받음에 따른 소득발생 추산액의 35%가 과세된다. 비거주자가 러시아에서 수취한 소득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을 적용하나, 이민법에 따라 고숙련비자(Highly Qualified Specialists)를 받은 외국인에게는 러시아 거주자와 같은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소득 자진신고서는 매년 4.30일전까지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세금은 6.15일전까지 납부하여야한다. 세금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붙게 되는데 중앙은행 연간 재할인율의 1/300이 미납금에 일단위로 가산되도록 되어 있다.

과세소득은 총소득에서 공제액과 면세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총소득은 모든 경제행위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며, 근로소득·독립경제행위에 따른 소득·자산소득·저금리로 대출받는 등에 따른 소득, 고용주가 지급한 주거비용, 고용주로부터 이전받은 재산소득, 고용주로부터 수취한 일정금액 이상의 선물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된다. 총소득에서 공제되거나 면세되는 항목은 표준공제, 사회공제, 재산공제, 직업공제(professional tax deductions) 등 4가지이다.

표준공제는 연간소득이 4만 루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매달 400루블이 공제되며, 연간 소득이 28만 루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에 대해 각각 월 1,000루블이 공제된다. 특히 부양 자녀에 대해서는 2자녀까지는 월 1,400루블이 공제되며, 3자녀부터는 월 3,000루블이 공제된다. 사회공제는 납세자의 교육경비, 가족 의료비, 비국가연금기여액 등에 대

해 최대 12만 루블의 공제가 가능하며, 24세까지의 자녀교육비, 현금 자산기부금 등에서는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걸리는 실정이다.

3년 이상 소유한 주택 매각시 매각소득이 전액 공제되며 3년미만이라도 1백만루블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 기타의 경우 자산 종류와 보유기관에 따라 공제내용이 달라진다. 정부지급 실업·육아수당·연금, 러시아 정부국채 이자수입 등에 대해서는 면세된다.

② 사회보험료

2010.1.1부터 통합하여 부과되던 연금, 의료보험 등의 통합사회보장세가 각각의 보험료를 관련기관에 개별납부하는 사회보험료로 대체되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내 모든 고용주는 통합사회보장세가 아닌 개별 사회보험료를 각각 납부하고 있다. 한편, 고용주는 지역과 관계없이 급여지불이 러시아 이외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근로자 급여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2014년 현재 적용 보험률은 봉급액 전체의 약 30%에 이르고 있다. 사회보험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금보험료는 봉급액의 22%이며 연간소득 624,000루블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를 국가연금기금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납부는 월별로 하며, 익월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사회보험료는 봉급액의 2.9%이며 사회보험기금으로 납부하게되어 있으며 5.1%는 연방정부 의료보험기금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2012년 1.1일부터는 러 사회보장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도 연금보험료 납부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국적을 지닌 근로자가 러시아에서 근무할 경우 이들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사용자가 러 연금당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봉 2백만루블 이상의 고숙련비자를(highly-qualified foreign specialist)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는 납부가 면제되고 있다.

우리정부는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이중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와 한·러 사회보장 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2014년 9월에 2차 실무협의를 통해 연금보험료 이중납부문제를 해결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며, 3차 실무협의를 2015년에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연금기금	사회보험기금	의료보험기금		총계
			연방정부	지방정부	
2010년	20.0%	2.9%	1.1%	2.0%	26.0%
2011년	26.0%	2.9%	2.1%	3%	34.0%
2012년이후	22.0%	2.9%	5.1%	—	30.0%
2015-2017	22.0%	2.9%	5.1%	—	30.0%
2018-2022	26.0%	n/a	n/a	n/a	n/a

(3) 기업에 대한 과세

① 외국기업의 러시아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비상설 외국법인이 러시아 내에서 수취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은 20%가 대부분이며, 배당금 수입과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15%, 국제운송수단의 운용·유지·대여 수입에 대해서는 10% 부과)를 하고 있다.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로열티, 경영 및 특정의 서비스 제공 수수료, 임대 소득, 배당금, 이자 수입, 화물수송 수수료 등이 포함되고 있다. 원천징수 책임은 러시아내 비상설 외국법인에 대해 지급하는 러시아기업 또는 세무당국에 등록된 러시아내 상설 외국법인(permanent establishment)이 지게되며 소득지급 후 3일내에 원천징수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벌금은 최고 관련금액의 20%에 달한다. 비상설 외국법인이 소득수취 이전에 러시아와의 이중과세방지조약 체결국의 과세목적상 거주자(tax residence)임을 통보할 경우 해당조약에 근거한 세율로 원천징수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배당소득에 대

해서는 5%, 10%,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0%, 로열티는 5% 원천징수에 관한 조약을 맺고 있다.

원천징수세는 조세 조약의 규정에 따라 달리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조세 조약에 따라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원천징수의 원인이 되는 지급(거래)발생 이전에 러시아와의 이중과세방지조약체결국가의 과세목적상 등록법인(tax resident)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Deloitte가 발간한 ‘Doing business in Russia 2009’에 의하면 실제로는 러시아 세무당국이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른 각종 서류를 제출하여도 조약에 따른 적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조약에 따른 낮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조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 후 1개월 내에 환급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오랜 시일이 걸리는 등 환급받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1년 이내에 조속히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법인소득세(Corporate profit tax)

현행법은 러시아 내의 상설 외국법인과 러시아내 상설 외국법인이 아니더라도 러시아내에서 발생한 특정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윤세법은 자체적으로 상설 외국법인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 정의는 조세 조약에 의거 다소 수정·적용되고 있다. 상설외국법인이란 외국회사의 사무실이 러시아 당국에 반드시 등록되어야 하는 것과는 관련성이 없으며, 사무실이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상설 외국법인이 될 수 있고, 사무실이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이 부과되는 상설 외국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02년부터 새로운 이윤세법이 개정·발효되었다. 이윤세 납세자는 러시아 기관, 러시아내 상설 외국기관(permanent establishment), 상설 외국기관이 아니더라도 러시아 내에서 소득을 수취한 외국기관을 포함하

고 있다. 러시아 법인은 러시아에 등록된 법인으로서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 수취한 소득에 대해서도 납부 의무를 진다. 상설 외국기관의 개념은 OECD 모범조세조약(model tax treaty)상의 정의와 유사하다.

수취한 소득에서 소득 수취 과정에서 발생한 합리적이고도 정당성이 인정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상품이나 재화의 판매로 얻은 이익(손실)+자본자산·여타 자산·기업 매각에 따른 이익(손실)+비 영업수익-소득 수취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로 산정된다. 과세 대상 소득은 직전 4분기의 분기별 평균소득이 백만루블 이상일 경우에는 발생주의 원칙(accrual basis)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에는 발생주의 또는 현금주의를 선택할 수 있다.

2002.1.1일부터 최고 과세율이 30%에서 24%로 인하되었고,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극복대책으로 2009.1월부터 다시 20%로 인하되었다. 20%중 2% 상당의 세금이 연방정부 예산에, 18% 상당의 세금이 지방정부예산에 배정되고 있다. 한편, 지방정부가 재량으로 최대 4.5% 경감할 수 있으며 극동지역 소재 기업에게는 특정한 경우에는 0%까지 감면해줄 수 있다.

러시아 법인이 러시아인 법인 주주에게 지불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9%, 러시아 법인이 외국법인 주주에게 지불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후자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방지조약에 의해 대개 10% 또는 5%로 인하된다. 한편, 러시아내 합작기업(Joint Company)이 외국의 명목소유주에게 지불한 배당금은 외국의 명목 소유주가 러시아 관계기관에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러시아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촉진을 위해 주식보유기간이 365일이상이고 배당되는 주식총수의 50%이상을 보유하고 배당금을 지불하는 기업

이 러시아 재무부에서 지정한 off-shore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러시아는 모스크바를 국제금융센터로 조성하기 위해 주식을 보유한 기간이 5년이상이며 해당 보유기간동안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았거나 하이테크기업 주식일 경우에는 주식처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법인소득에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가지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먼저 기업의 이익 창출하는데 직접 연관된 비용이어야 하며, 둘째로 경제적인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적정한 문서로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며 2만루블 이상의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인정된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자산은 비용(expense)으로 처리되며, 토지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니다. 광고의 경우 신문, 라디오, TV, 옥외광고, 브로셔, 카탈로그, 전시회 참가 등은 제한 없이 비용공제가 가능하나 여타형태의 광고는 통상 판매수입의 최고 1%까지만 공제가 인정된다. 고객접대, 리셉션, 이사회비용 등도 납세자의 총임금지급액의 최고 4%까지만 공제가 인정된다. 특정한 R&D의 경우 결과에 관계없이 완료 후에 전액공제가 되며, 2009.1월 특정 분야의 R&D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15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특별경제구역에 따라서는 R&D비용발생시 즉각적으로 공제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자공제의 일반원칙은 동종대출의 20%를 상회하는 이자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납세자는 고정자산 유지보수, 하자이행, 회수가 의심되는 부채 등에 대한 적립금(reserves)을 유보할 수 있다.

2002.1.1일부터 최고 과세율이 30%에서 24%로 인하되었고,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극복대책으로 2009.1월부터 다시 20%로 인하되었다. 20%중 2% 상당의 세금이 연방정부 예산에, 18% 상당의 세금이

지방정부예산에 배정되고 있다. 한편, 지방정부가 재량으로 최대 13.5% 경감할 수 있으며 극동지역 소재 기업에게는 특정한 경우에는 0%까지 감면해줄 수 있다.

③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자는 러시아 내에서 상품·노동·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거나, 자사 소비를 위해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러시아 및 외국법인(대표사무소 및 지점 포함) 및 개인사업자이다. 부가가치세율은 2004.1.1일부터 20%에서 18%로 인하되었으며 기본식료품비, 아동용품, 특정의료용품, 의약, 신문, 잡지 등은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음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 공공운송(public transport), 주거장비(household utilities), 장례용품
- 보험·재보험·금융서비스, 개인연금서비스
- 자선·기부, 비영리단체에 의한 교육서비스
- 의족·의치 등 의료장비, 장애인용품, 안경의 렌즈 및 틀(선글라스 제외)
- 광고목적으로 무료로 공급된 상품의 경우 1개당 100루블을 넘지 않을 경우
- 우주탐사 관련 협정에 따라 국제협력 목적으로 수입된 상품

(4) 기업자산세(property tax)

과세대상은 러시아내에 동산 또는 부동산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러시아 및 외국 법인과 그 지점 및 대표사무소가 된다. 과세표준은 대차대조표상 연간 평균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2014.1.1일부터는 사업 및 쇼핑센터, 오피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용도로 활용되지 않는 자산 등과 같은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부 등록대상상의 가치가 과세표준이 된다. 건설중인 자산, 재고, 원자재, 상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세율은 지방 세무당국에 의해 0%에서 2.2% 사이에서 결정되는 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최고 세율 2.2%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등록대상상의 가치가 과세표준이 되는 자산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은 모스크바지역은 1.7% (2015; 2016년부터는 2.0%), 기타 지역은 1.5% (2015년 기준, 2016년부터는 2.0%) 이다.

경쟁정책

상품, 서비스 시장의 독점규제

「상품시장에서의 독점적 활동제한 및 경쟁에 관한 법」에 따라 상품시장에서의 사업자의 독점적 활동 및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고 있다. 연방 반독점청(Federal Antimonopoly Service)이 독점적 행위 및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독점적 행위에 대하여는 중앙은행(은행시장, 증권시장)이 규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상품시장에서의 독점적 활동제한 및 경쟁에 관한 법」은 원칙적으로 러시아 영토 내에서만 적용된다. 다만, 러시아인 또는 외국인에 의해서 러시아 영토 밖에서 이루어진 활동 및 협정 등이 러시아 영토 내 상품시장에 대한 경쟁 제한 또는 기타 부정적 효과를 야기한 경우 동법을 적용한다. 통상 시장지배적 위치에 대한 평가는 시장점유율로 판단되는데 1개기업이 50%이상의 시장을 점유할 경우 시장지배적 위치로 간주되며, 시장점유율이 35~50%미만일 경우에도 반독점청이 지배적 위치로 판단하게 되면 독점의 지위가 된다. 시장점유율이 35%미만일 경우에는 비시장지배적 위치로 간주되나, 만약 기업이 시장에서 상품유통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수 있을 경우와 같이 경쟁법상 근거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위치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러 반독점청은 러시아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정부기준에 근거하여 시장지배적 위치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 단일시장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10%미만일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위치로 판단하지 않게 된다.

시장지배적 지위(dominant position)외에 집합적 시장지배 지위(collective dominant position)가 있는데 이는 수개의 독립된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에 규정되게 된다.

시장 지배적 지위로 지정될 경우 이들에게는 가격상향 또는 하향과 같은 독점적 가격조정이 금지되며, 가격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상품의 회수조치, 계약 상대방에게 불리함을 야기하는 계약체결 행위, 특정 소비자에게 적절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있음에도 이를 부적절하게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물품에 대한 이중가격설정행위, 타 기업의 시장 진입과 탈퇴에 대한 장벽을 만드는 행위 등이 금지되게 된다.

불공정 경쟁

러시아 경쟁법은 상업 법인 또는 개인이 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상도의를 벗어난 불합리한 행위를 하여 다른 법인의 평판을 손상시키거나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를 불공정 경쟁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허위, 왜곡정보를 배포하여 타 법인에 손실을 주거나 법인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호도하는 행위, 타 법인 제품과의 부정확한 비교, 타 법인의 제품, 상표, 로고 등을 허락없이 사용하는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타 법인의 비밀 등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공표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경쟁법 적용 예외

경쟁법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특정법인에게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특혜가 제공될 수 있는 경우는 북극지역 및 이와

유사한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 과학 및 교육발전, 기초과학연구수행, 환경보호, 문화발전 및 문화유산 보전, 스포츠 발전, 농업생산, 국방 및 치안,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보건 및 근로자 보호, 중소기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특혜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나 지방정부는 반독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반독점청에 특혜 제공 목적, 향후 2년간 제공되는 특혜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 법에서 규정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반독점청은 모든 서류가 제출된 시점으로부터 한달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반독점청은 이러한 혜택부여가 경쟁제한을 유도한다고 믿을 경우에는 검토기간을 2달로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외에도 생산의 특성상 비경쟁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수요가 충족되는 시장(파이프라인을 통한 석유 및 석유제품과 천연가스 수송, 전력공급, 철도수송, 운송터미널·항구 및 공항 서비스, 통신 및 우편서비스)에 대하여는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에 관한 법」(1995.7. 제정)에 의거, 자연독점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와 자연독점 기업간 이해관계의 균형 유지를 위해 부분적으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서비스 시장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자국시장에 대한 높은 장벽을 설치하였고 이에따라 외국기업의 러시아 시장에 진출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러시아가 2012년 8.22일 WTO가입절차를 완료하고 WTO의 156번째 회원국이 됨에 따라 서비스 시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입장벽이 일부 완화되었다. WTO가입 협상에 따라 러시아는 11개 서비스 부문, 116개 하위 시장에 대한 접근을 양허했다. 이중 광고, 마켓 리서치, 자문과 경영서비스를 포함한 30개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접근 제한조치가 철회된 반면, 파이프라인 운송, 철도, 의료, 국내운하운송, 과학연구활동 등을 포함한 39개 시



장에 대해서는 외국기업들의 시장접근을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광물자원의 생산·개발·탐사 등에 관련된 공급, 운반 등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국기업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등 러시아내 서비스 시장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접근에 여전히 많은 규제가 있다.

WTO가입부터일로부터 러시아는 외국인이 지분을 100% 보유한 기업들이 법률, 건축, 회계, 엔지니어링, 보건, 광고, 마켓-경영 서비스, 화물 특송, 도소매 서비스 등을 포함한 전문서비스 시장 및 기업지원서비스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에너지 서비스, 컴퓨터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시장접근 허용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1) 은행업

2015.8.31일 현재 러시아 중앙은행에 등록된 금융기관은 959개로서 2014년말 대비 17개가 감소하였다. 2015.8.31일 기준 영업 중인 금융기관은 721개이다.

2015.8.31일 기준 자산규모 상위 5대 금융기관이 전체 금융기관 자산(78.4조 루블)의 54.3%(42.5조 루블)를 보유하고 있으며, 6~20위 금융기관이 21.3%, 21~50위 금융기관이 11.1%를 차지하는 등 상위 50개 금융기관이 전체 금융기관 자산의 86.7%를 보유하고 있다.

주식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은 기존에 연방금융시장감독청(Federal Service for Financial Markets)이 담당하였으나 2013.9.1부터 중앙은행으로 감독기능이 통합되었다.

러시아는 외국은행의 지점설치는 불허하고 현지법인(자회사) 설립만 허용하고 있으며, 현지법인 설립시 개별은행에 대한 지분참여 비율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외국인이 러시아 은행이나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분을 10%이상 취득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1%이상 10%미만의 주식취득은 중앙은행에 신고로 가능하다.

외국은행의 러시아내 대표사무소는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기간은 3년이며 등록은 무기한 갱신될 수 있다. 대표사무소의 영업활동범위는 러시아 경제상황 및 러시아 은행부문에 대한 연구, 국제협력증진으로 한정되나,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존고객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2015.8.31일 현재 러시아내에서 운영되는 금융기관 중 외국인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기관은 105개이며, 이 중 73개는 외국인 지분율이 100%이다. 우리나라 은행으로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조흥은행(현지법인) 등이 대표사무소 형태로 진출해 있었으나 외환위기시 모두 철수하였다. 이후 수출입은행(2002.11월), 우리은행(2003.6월)이 각각 모스크바 대표사무소를 개설하여 러시아에 재진출하였다.

수출입은행은 러시아 주요은행에 대해 전대자금 한도를 설정하여 러시아 기업들의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의 수입 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업은행도 2013.7월 모스크바 대표사무소를 재개소하여 러시아 금융시장에 대한 진출과 우리기업의 러시아 진출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민간은행 중 우리은행은 2007.12.6일 러시아 중앙은행으로부터 은행영업(기업영업) 라이선스를 획득하였으며, 2008.1.9일부터 모스크바에 현지법인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2011.5.24일 개인영업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모든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고, 2011.9월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도 지점을 개설하였으며, 2014.10월에는 블라디보스톡에 대표사무소를 개설하였다.

외환은행도 2008.4월에 모스크바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여 러시아 진출을 모색하였으며, 2014.7.7 러시아 중앙은행으로부터 은행영업(기업영업)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2014.9.1. 법인설립식을 갖고 은행영업을 시작하였다. 참고로 한국에 진출한 러시아 금융기관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2) 보험업

보험관련 법률은 “러시아연방내 보험기관에 대한 연방법”(Federal Law No. 4015-1 “On the Organization of the Insurance Business in the Russian Federation”)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보험영업에 대한 지도감독은 2013.9.1일부터는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보험기관에 대해서는 소규모 보험기관들을 통합하여 대형화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부실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소규모 보험회사들을 줄여나가고 러시아 국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재보험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보험회사들은 외국의 재보험회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외국에 관련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통해 국제보험시장으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보험회사는 현재 현지법인(자회사)형태로만 러시아 보험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러시아 국내법은 외국인 투자자가 정관자본금(charter capital)중 49%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보험회사나 외국보험회사의 러시아내 자회사에 대해서는 재산과 연관된 개인보험, 의무 국가보험 등과 관련된 보험영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외국자본 진출에 대한 또다른 제한은 외국자본이 러 보험산업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제한이 있다. 현재는 WTO가입에 따라 그 한도가 50%로 상향조정되었다. 즉 전체 러시아 보험회사의 자본중 외국인 지분이 49%이상인 기업들의 지분의 총합이 전체 보험업계의 50% 이상이 될 경우 외국 보험회사에 대한 영업허가발급을 규제당국은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경우에도 예외가 있는데 EU회원국내 모기업이 있는 러시아내 자보험회사들은 양국간 협약에 따라 동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의 WTO가입에 따라 외국회사의 러시아내 지점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나 그 시점은 러시아가 WTO에 가입한지 9년이 경과되는 2021년부터나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회사의 러시아내 현지법인은 없는 실정이다. 다만, 무역보험공사가 모스크바에 사무소를 두고 대 러시아 수출기업에 대한 보험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보험회사로는 삼성화재가 유일하게 2012.11월 모스크바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여 러시아 및 CIS 지역내 보험시장에 대한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3) 러시아 주식시장

주요시장은 MICEX(Moscow Interbank Currency Exchange)와 RTS(Russian Trading System)이다. MICEX는 '92년 중앙은행 및 주요 은행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외환거래소와 증권거래소로 구성되어있다. MICEX는 동유럽 및 CIS 지역의 최대 외환 시장이다.

RTS는 '95년에 설립된 주식시장으로서, RTS지수는 러시아 Leading index이다. MICEX와의 차이점은 RTS 주식시장에서는 달러화가 거래의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한편 2011.6.29일 모스크바은행간외환거래소인 MICEX와 러시아증권거래소인 RTS는 합병을 결정하고 Moscow-Exchange로 거듭나고 있다.

경제현대화를 국정 최고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전 대통령)는 모스크바를 국제 금융중심지로 키워 외국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길 기대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소 합병도 그 일환으로 해석된다. MICEX에 따르면, 상품거래, 파생상품, 새로운 서비스 제공 및 수익개선을 통해 현재 46억달러의 자본을 3배 성장시켜 홍콩, 미국 다음 가는 증권거래소를 만들 것이라고 한다.

(4) 보건제약 산업 및 의료서비스

러시아내 보건산업은 2012.1월 발효된 “러연방 국민들의 건강보장을 위한 기본법(Federal Law No.323-FZ On the Fundamentals of Citizens' Health Protec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과 국가 사회보건법



(No.178-FZ On State Social Care)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제약시장에 대한 관리는 의약품유통에 관한 연방법(Federal Law No.61-FZ On the Circulation of Medicines)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보건과 제약시장에 대한 관리는 러시아 보건부, 러시아 통상산업부와 연방보건감독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러시아내 조제약품의 제조·판매·사용은 러보건부에 등록한 이후에 가능하며, 등록을 위해서는 임상시험결과가 필요한데 이때 일부는 러시아내에서 실시한 임상결과가 필요하다. 조제약품의 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의약품유통에 관한 연방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의료기기의 등록은 기기 성능에 대한 증빙서류, 안정성관련 자료가 필요하며 의료기기 등록에 관한 규정(Rules for Registration of Medical Devices)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의약품의 제조허가는 연방 허가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세부절차는 의약품 제조에 허가에 대한 규정(the Regulation on Licensing the Manufacture of Medicines, approved by Government Resolution No. 686, dated 6 July 2012)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내에서는 등록된 약품을 제조하는 것만이 허용되고 있다.

의료장비 제도는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는 의료장비제조허가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Licensing the Manufacture of Medical Equipment, approved by Resolution of the Russian Government No. 33, dated 22 January 2007)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의약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의료 사용을 위한 의약품 수입에 관한 규정(the Rules of Importation of Medicines Intended for Medical Use, adopted by Resolution of the Russian Government No.771, dated 29 September 2010)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 관세동맹이 체결된 이후에는 관세동맹국가내에서 적절하게 등록된 제조약품의 수입허가는 모두 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제조약품의 러시아 지역내 반입에 있어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한편 러시아 170억달러로 추산되는 의료서비스시장의 경우 사회주의체제 붕괴이후 정부 재정지원부족 등으로 인해 구소련시절부터 축적되어 온 높은 의료기술과 전문인력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 서비스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접근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러시아는 국민의료보험제도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무상지원이 원칙이나 민간의료보험도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2009년말기준 전체 러시아인의 10%만이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90%가 직장단체보험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개인이 지출하는 비용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자발적인 의료보험 가입 규모는 1240억 루블로 2013년 대비 7.8% 증가하였으며 2015년 1분기에는 592억 루블로 전년도 동기대비 8% 증가하였다.

■ 러시아 의료서비스 시장 규모

(단위: 억\$)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시장		85	103	118	130	150	171
개인 지출	금액	47	60	67	78	91	107
	비중	55%	58%	57%	60%	61%	63%

출처: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자료, 2011년은 추정치

현재 러시아에 진출한 외국계병원은 American Medical Center(91년 모스크바), American Medical Clinic(93년 상트), European Medical Center(모스크바) 등으로 미국 및 유럽계 병원을 표방하고 있으나 엄밀하게 말하면 병원장 등 핵심인사에 외국계의료인력이 포진되어 운영되는 러시아 법인이라는 특색이 있다. 이는 러시아 보건법에서 외국인 의료진



이 러시아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부가 인정하는 의과대학에서 실시되는 정식시험을 통과해서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의 러시아내 병원설립에 대해서는 일반 회사설립과 유사한 과정을 밟도록 하고 있는 것에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 장벽

인증제도

러시아는 유럽의 CE와 같은 러시아 국가표준규격 GOST-R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GOST-R은 강제 여부에 따라 강제인증과 자율인증(적합성선언)으로 구분되어 거의 모든 품목에 적용된다.

러시아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50% 이상이 GOST-R 강제인증 대상 품목인 바, 금속, 기계, 화학제품, 전기기기 등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의무적인 인증이 요구되고 상품이 소비자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시험, 검사, 규격 표준을 규정하고 있다.

GOST-R 적합성 선언이란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그 제품이 러시아 안전 규정을 만족함을 보증하는 공식 문서이다. GOST-R 인증서뿐만 아니라, 적합성선언서 역시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며 러시아 세관 통관시 요구된다.

소비자의 생활 및 건강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장난감 등의 생활소비재와 가전제품, 화학물질, 석유가스, 건설 등을 위한 설비 등은 강제적으로 GOST-R을 획득해야 하며, 해당 제품 인증이 없는 경우 러시아내로의 통관이 불가하고 미인증 상태로 판매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13년부터는 3국 관세동맹간의 공통 인증제도인 CU(Customs Union) 인증이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CU 인증이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 관세동맹의 공통인증제도로써 CU인증서를 발급받으면 3국 내에서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인증이다. 기존의 러시아 인증(GOST-R)이 관세동맹 공통인증인 CU인증으로 순차적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대체 시기는 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서 3국 공통의 기술규제를 위해 제정하는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의 내용에 따라 상이하다. 즉 특정 품목에 대한 종전의 기술규정이 시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기술규정 내용에 명시된 만료일까지 GOST-R의 효력이 인정되며, 동 만료일 이후에는 CU인증만이 인정된다. 해당 품목에 대한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의 기술규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GOST-R이 계속 유효하다.

■ 발효 또는 시행중인 기술규정(총 35개)

연번	기술규정명	해당품목	CU기술규정 시행현황	GOST-R 만료일
1	폭죽 안전 관련 기술규정	폭죽	시행중	2013/8/15
2	포장재 안전 관련 기술규정	포장재	시행중	2014/2/15
3	유아 및 청소년 용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유아 및 청소년 용품	시행중	2014/2/15
4	장난감 안전 관련 기술규정	장난감	시행중	2014/2/15
5	개인 호신용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개인 호신용품	시행중	2014/2/15
6	제트엔진 및 그 연료(디젤)에 대한 기술규정	제트엔진, 연료(보일러 및 교통 수단)	시행중	2014/6/30
7	향수 및 화장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향수 및 화장품	시행중	2014/7/1
8	경공업 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경공업 제품	시행중	2014/7/1
9	곡물 안전성 관련 기술규정	곡물	시행중	2015/2/15
10	식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식품	시행중	2015/2/15
11	야채 및 과일음료 기술 규정	야채 및 과일음료	시행중	2015/2/15
12	유제품 기술규정	유제품	시행중	2015/2/15
13	건강 기능성 식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건강 기능성 식품	시행중	2015/2/15
14	식품 첨가물 안전 규격 관련 기술규정	식품 첨가물	시행중	2015/2/15



연번	기술규정명	해당품목	CU기술규정 시행현황	GOST-R 만료일
15	저전압 장비 안전 관련 기술규정	저전압 장비	시행중	2015/3/15
16	차량 및 차량장비 안전 관련 기술규정	차량 및 차량장비	시행중	2015/3/15
17	승강기 안전 관련 기술규정	승강기	시행중	2015/3/15
18	폭발물 취급 장비 안전 관련 기술규정	폭발물 취급 장비	시행중	2015/3/15
19	가스연료 장치 안전 관련 기술규정	가스연료 장치	시행중	2015/3/15
20	하드웨어 전자기 호환성 관련 기술규정	하드웨어 전자기 호환성	시행중	2015/3/15
21	소형선박 안전 관련 기술규정	소형선박	시행중	2015/7/31
22	고압장비 안전 관련 기술규정	고압장비	시행중	2015/8/1
23	유탄류 규격 관련 기술규정	유탄류	시행중	2015/9/1
24	우유 및 유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우유 및 유제품	시행중	2015/12/3 1
25	육류 및 육류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육류 및 육류제품	시행중	2015/12/3 1
26	폭발성 물질 및 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폭발성 물질 및 제품	시행중	2016/2/15
27	가구제품 안전 관련 기술규정	가구류	시행중	2016/3/1
28	바퀴차량 안전 관련 기술규정	바퀴차량	시행중	2016/7/1
29	철도차량 안전 관련 기술규정	철도차량	시행중	2016/8/1
30	고속열차 안전 관련 기술규정	고속열차	시행중	2016/8/1
31	철도교통 인프라 안전 관련 기술규정	철도교통 인프라	시행중	2016/8/1
32	자동차 도로 안전 기술규정	자동차 도로	시행중	2016/9/1
33	농·임업용 트랙터 및 트레일러 안전 관련 기술규정	농·임업용 트랙터 및 트레일러	시행중	2017/3/15
34	식품 라벨링 관련 기술규정	식품 라벨링	시행중	—
35	담배제품 관련 기술규정	담배제품	2016년 5월 15일부터 시행 예정	—

자료 : 유라시아경제연합

상기 표의 기술규정 및 향후 신규 제·개정될 기술규정의 내용은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일반인이 상기 규정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홈페이지(www.kotra.or.kr/kbc/moscow, 공지사항, '14.10월 게시물)에서 안내하고 있다.

2015년 1월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의 공식 출범 이후, 각 산업 및 제품별 안전 규정의 개편, 통합이 지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6년 1월부터 새로 개편된 규정들이 본격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재산권

러시아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은 개별 법률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러시아 민법 제4부 제7편 지식재산권편' 내에 총칙,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법, 품종개량에 관한 법, 집적회로 배치도에 관한 법, 영업비밀(노하우), 상표법, 지적활동 결과물의 이용법 등으로 구분하여 총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특허법 체계와 상이한 러시아의 제도로써, △ 확대된 선원 불인정 △ 특허 관련 권리 양도 계약의 서면 계약 의무화 △ 실용신안의 판단 기준(신규성만 평가) △ 공개실시권 제안시 등록료 감면 △ 발명의 단일성 판단기준(위배시 보정 통보만 하고 심사 진행) △ '유라시아특허청'의 특허권 인정 △ 발명자주의 위반시 무효사유 인정 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상세한 자료는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홈페이지(rus-moscow.mofa.go.kr, '한러 경제협력' 게시판, '14.9월 게시물)에서 입수할 수 있다.

러시아 내에서 지식재산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측면이 강해 상표권 등을 제때에 등록해 둬으로써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미국 등 선진국은 러시아의 WTO 가입 전에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TRIPs)의 이행을 요구해 러시아는 2012.8.22일부터 WTO에 정식 가입함으로써 WTO TRIPs(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



고 2013.2월부터 지적재산권 문제를 전담 해결하는 법원을 개원하였다. 그러나 각종 영화, 음악, 서적, 게임 등의 불법 복제 해적판들이 곳곳에서 공개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법률의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상호권, 특허권 관련 외국회사들의 소송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당분간 지적재산권 분야의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및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우리 기업들의 러시아 지식재산권 제도 이해 및 활용 능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13년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북(러시아편)’을 발간하였으며, 관련 인터넷 사이트(<http://www.ip-navi.or.kr>)에서 인터넷판 열람 및 모바일판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농업 보조금

러시아는 WTO 가입 이전부터 취약한 농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농업분야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2012.8월 WTO 가입 이후에는 농업보조금 지급 체계를 WTO 농업보조금 규정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따라서 모든 농업보조금은 생산 및 가격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방식으로(decoupled) 지급되어야 하므로, 농가 또는 농업경영체 단위별로 농업소득을 보전해 주는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2012.12월말 러시아 정부는 ‘2013-2020 러 연방 농업발전 계획’에 따라 2013년도 농업보조금 지급에 관한 7개의 결의안을 각각 채택하였다. 이들 결의안은 곡물 및 우유 생산, 지역 개발, 금융대출 이자, 보험, 농업용 기계 생산, 특수 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 총 7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063억루블(34억불)로 연방 및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조달하게 되어 있다. 이 중 장단기 금융대출 이자 지원에만 582억루블(18.8억불)이 투입될 계획이다.

하지만, 보조금이 실제 지급되기 위해서는 재원을 분담하고 보조금 지급을 집행하는 지방정부가 연방 농업부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구

체적인 보조금 지급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세부 매뉴얼(공식) 및 소요인력 확보 또한 지방정부가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계획만큼 보조금이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러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합작회사 형태로 진출해 있는 우리 농기업들도 당연히 러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지방정부의 보조금 지급 준비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필요서류 등을 면밀히 구비하고 러시아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위생 분야(SPS)

러시아는 WTO 가입 이전 식품 및 농수산물 수입에 대하여도 다양한 보호무역 장치를 발동하여 국내 농어업 보호를 꾀해 왔으나, 2012.8월 WTO 가입으로 SPS(식품 및 동식물 검역조치) 협정을 받아들여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는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WTO/SPS 협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공공목표 달성을 위해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대해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보장하면서도 이러한 조치들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러시아의 SPS 관련 업무는 동식물위생검역청 및 소비자권리보호청이 관세선(국경)에서 실질적인 위생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세청에서 이에 필요한 서류의 진본 여부를 승인해 주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WTO 가입 이전부터 러시아는 동식물위생감독청에서 주요 농수산물 교역국들과 상호 위생약정을 체결하여 수출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약정 체결국은 수입국의 위생검역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상대국에 상호 등록하여야 하고 이 등록시설에서 생산된 제품만이 상호 수출입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중에 있다. 러시아로 수출하는 농축수산물

등 모든 식품은 수입국인 러시아 당국이 요구하는 일정 위생검역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수출검사증명서를 수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야 하며, 보통 약정 체결국간 등록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교차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러시아 동식물위생감독청과 동물, 식물 및 수산물 3개 분야에 대해 각각 위생검역협정(MOU)을 체결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러시아로 수출하는 세계 각국의 등록시설들은 러시아 동식물검역감독청 홈페이지에 국가별로 일목요연하게 게재되어 있다.

다만, 축산물의 경우 러 동식물위생감독청은 2010.2월 우리나라의 구제역 발생을 이유로 한국으로부터의 축산물 수입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2004년 이후 러시아에서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발생하여 우리 정부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러시아를 축산물 수입금지 지역으로 지정하여 현재 양국간 축산물 수출입은 금지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러 양국 축산물 검역당국은 최근 구제역, AI 등 주요 동물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연구를 실시키로 하는 등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2015.10)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 속에서 러시아가 2014.8월 서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식료품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이 금수 조치는 2015.6월에 연장되어 2016년 8월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 수입 금지 서방산 농식품 품목

분류	주요 품목
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기타 식용설육 등
생선류	활어, 냉장 및 냉동어류, 갑각류 등
낙농품	우유, 크림, 버터, 요구르트, 치즈 등
채소류	감자, 토마토, 양파, 마늘, 쪽파, 양배추, 상추, 당근, 오이 등(신선/냉장/건조) * 단, 씨감자, 파종용 옥수수 및 콩 제외

과일류	코코넛 및 견과류,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감귤류, 포도, 메론, 사과, 배, 복숭아, 냉동 및 건조과실 등
육가공품	소시지 및 유사 품목 등
곡물류 및 기타	맥아엑스 및 관련 전분, 기타 조제품 등

자료: 러시아 산업부

벨라루스

주요 경제지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 GDP 규모(억달러)	453	608	493	547	493	632	717	719
- 실질경제성장률(%)	8.6	10.2	0.2	7.6	5.5	1.7	1.0	1.6
- 상품무역수지 (백만달러)	4,418	-6,810	-7,265	-9,600	-5,453	-413	-5,767	-4,396
수출액(백만달러)	24,275	32,571	21,304	25,284	40,294	45,991	37,232	36,392
수입액(백만달러)	28,693	39,381	28,569	34,884	45,747	46,404	42,999	40,788
- 외환보유고(백만달러)	3,952	2,687	4,831	3,431	2,986	7,388	6,289	5,042*
- 연중 환율 (벨라루스 루블 / 1달러)	2,146	2,136	2,793	2,979	5,606	8,336	8,875	10,227
- 소비자물가상승률(%)	8.4	4.8	12.9	7.8	15.0	21.8	16.5	16.2
- 총외채(백만달러)	12,548	15,168	21,099	27,065	29,856	34,116	40,609	37,935*
단기외채(백만달러)	6,394	6,553	7,230	7,543	-	13,240	15,180	19,885
총외채잔액/GDP(%)	7.7	4.9	42.8	49.5	60.6	54.0	54.8	55.3

자료: 벨라루스 통계청, 벨라루스 중앙은행(단, * 표시는 2015.10월 통계 기준)

경제 · 통상 환경

벨라루스는 EU와 러시아가 접하는 내륙국가로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서방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경쟁구조와 벨라루스 경제 · 통상 환경이 적지 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벨라루스는 구소련 시절 원자재 수입을 통한 제조업 사업을 적극 육성하여, 동유럽 굴지의 공업국으로 성장하였다. 소련 붕괴 후 동유럽 및 구소련 대다수 국가

들이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이며 경제개혁을 지향했던 것과는 달리 벨라루스는 다수의 국영기업을 유지하면서(전체 기업의 약 75~80%) 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을 늘리는 등 구소련 시절의 경제정책 기초를 상당부분 유지하여 CIS 국가중 유럽과 미국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유일한 국가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 구소련 시절의 생산기반 시설은 벨라루스의 경제 기반이 되고 있는 반면, 구소련 시절의 비효율(관료주의 및 보수적인 근로 성향, 이에 따른 낮은 생산성 등)과 노후화된 산업시설 또한 잔존하여 시장경제 전환 및 경제발전에 다소 장애가 되는 측면도 있다.

벨라루스는 구소련 시절의 생산기반, 우수한 인적 자원, 일부 시장개혁과 러시아의 저렴한 원유 및 가스 공급 등에 힘입어 한때,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도 했으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제수지 적자 누적 등으로 경제위기를 맞았다. 급기야, 2011년에는 벨라루스 루블화의 가치가 달러 대비 약 3분의 1로 하락하는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경제위기가 절정에 이르렀다.

2012년에는 벨라루스 루블화 평가 절하에 따른 수출증대,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의 구제금융 등으로 외환위기를 일단 극복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기술발전이나 경제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국가경쟁력 회복이 동반되지 못해 2013년 하반기 외환보유고가 2011년 경제위기 수준까지 다시 하락하며 환율시장이 동요하는 등 외환위기설이 다시 제기되었다. 러시아의 외환 지원, 일부 공기업 매각, 정부의 강력한 환시장 개입 등으로 급격한 위기 상황은 피한 것으로 보이나,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 서방의 대러 제재에 따른 러시아 경제의 불확실성⁸⁾ 및 국영기업 민영화에 소극적인 정부 입장 등으로 인해 2015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⁹⁾되고 있다.

8) 벨라루스 대외교역의 약 50%가 러시아에 편중되어 있으며, 원자재의 90%를 러시아로부터 수입중이다.

9) 2015년 벨라루스 경제성장 전망(15.10월 기준)

벨라루스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비교적 예측 가능한 행정체계, 저렴한 우수한 노동력¹⁰⁾ 등이 외국인 및 외국 기업의 벨라루스내 활동 환경에 있어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2015년 기업 환경지수(Doing Business Index)에서 벨라루스는 189개국 중 57위¹¹⁾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산등록의 편이(3위), 계약집행 수준(7위), 창업의 용이성(40위), 건설허가(51)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전력 획득(148위), 국제거래(145위), 대출(104위), 투자자 보호(94위)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유엔이 발표하는 2014년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에서도 벨라루스는 CIS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순위인 53위를 기록했다. 벨라루스의 대외무역은 약 45% 이상(2015.10 기준)을 차지하는 러시아가 최대의 무역상대국이며 네덜란드, 독일 등 EU 국가와의 무역도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출범

2015년 1월 벨라루스는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함께 유라시아경제연합(EEU)에 창설국가로 가입하였다. 특히, 유라시아경제연합에는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즈스탄이 연이어 가입하였으며, 현재 1억7천만 명의 소비자가 있는 거대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벨라루스는 EU와 구소련 국가들과의 협력을 위한 동방파트너십(Eastern Partnership)의 회원국으로 서방과의 관계 발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러시아와 EU를 연결하는 철로, 가스관, 도로가 지나는 요충지로서 향후 EU와 러시아·CIS로 함께 진출할 수 있는 물류 허브로 발전할 가능성도 기대할

벨라루스 정부	EBRD	IMF	WB	EABR
0.2~0.7%	-2%	-3.6%	-3.5%	-2%

10) 2015.10월 기준 벨라루스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12달러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11)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주요 신흥경제국가를 보다 높고 이탈리아, 터키, 헝가리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 있다. 또한, 유라시아경제연합 창설과 함께 일부 품목을 제외한 역내 생산품에 대한 관세, 환경규제 및 표준, 인증 관련 장벽 등이 순차적으로 철폐되기 시작하고, 공동제약시장(2016.1), 공동전기시장(2019.7), 공동 가스·원유 금융시장(2025.1) 출범이 예정되어 있어 유라시아 시장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에게 기회이자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벨라루스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문제

러시아의 WTO 가입(2012)과 카자흐스탄의 가입단계 마무리 절차로 관세동맹 회원국인 벨라루스의 WTO 가입 노력도 가속화되고 있다. 벨라루스는 1993.9월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인 GATT에 가입을 신청한 이래 WTO 가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벨라루스의 WTO 가입 추진 노력은 2005년 제7차 가입작업반 회의 이후 한동안 지체되었는데, 이는 벨라루스가 WTO 회원국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 목록 마련에 실패했고, 개별국가가 아닌 공동관세지역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WTO 협정 내용에 따라 2009년부터 벨라루스-러시아-카자흐스탄 공동 가입협상을 개시 하였으나, WTO가 이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3국이 개별적으로 가입협상에 나섰기 때문이다. 벨라루스-러시아-카자흐스탄 3국이 2011년 체결한 ‘관세동맹의 기능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관세동맹 회원국 중 한 나라가 WTO에 가입하는 순간부터 WTO 협정은 관세동맹 협정의 법적 일부를 구성하여 효력을 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WTO가입(2012.8.26.)에 따라 벨라루스는 WTO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WTO 규정에 따라 무역장벽을 낮추어야¹²⁾ 하는 반면, WTO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무역장벽 해소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벨라루스는 EU 집행위원회와 WTO 가입을 위한 향후 협의 의제를 합의(2014.5)하는 등 WTO 가입을 위한 양자, 다자 협상을 재개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 터키 등 10개국과 양자협상을 타결하고(2014.9 현재), 22개국과는 양자협의를 진행중이다.

12) 러시아의 WTO 가입 이후 관세동맹 공동관세 변동추이: 2012년 8.75% ▶ 2014년 7~6%

우리나라와는 2003년초 벨라루스측이 양자협상을 제안한 이래 2007년 및 2009년에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양자협상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서비스분야에서는 양국간 합의에 도달하였고 상품분야에서도 미타결 품목을 크게 축소하였으나, 이후 한-벨라루스 양자협상은 현재 정체되어 있다.

한-벨라루스 교역 현황

2013년 기준 양국 교역액이 1억달러¹³⁾를 달성했으나, 양국 협력 발전 가능성에 비해 활발한 교역 수준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벨라루스와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특히 KOTRA 민스크무역관이 2014.3월 정식 개소하여 양국간 교역 증대 및 우리 기업의 벨라루스 진출 확대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향후 양국간 실질 경제 교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벨라루스 교역현황

(단위: 천달러,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2014
수 출	금액	53,338	23,796	39,171	58,445	43,937	71,368	40,955
	증가율	52.1	-55.4	64.6	49.2	-24.8	62.4	-42.6
수 입	금액	16,361	8,374	30,093	9,215	38,086	29,625	44,894
	증가율	19.7	-48.8	259.4	-69.4	313.3	-22.2	51.4
총교역	금액	69,698	32,170	69,264	67,660	82,023	100,995	85,849
	증가율	44.5	-53.8	115.3	-2.3	21.2	23.1	-15
무역수지		36,976	15,422	9,078	49,230	5,850	41,742	-3,939

자료출처: KOTIS

13) 벨라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의 창설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을 통해 벨라루스에 간접수출된 물품들은 대벨라루스 수출 품목으로 계상되지 않는다. 다만 벨라루스 통계청은 이를 직접무역 통계 수치로 이용하고 있어 벨라루스 통계청 수치가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벨라루스 10대 교역 품목(2014년)

(단위: 천달러, %)

순위	수 출				수 입			
	품 목		금 액	증가율	품 목		금 액	증가율
	HS 코드	상 품	40,955	-42.6	HS 코드	상 품	44,894	51.4
1	870323	자동차(소형)	5,067	77.6	310420	염화칼륨	36,031	70.2
2	870332	자동차(중대형)	2,191	-26.0	854239	기타	3,985	-9.0
3	902790	마이크로툼	1,793	87.7	681510	비(非)전기용흑연	961	-23.0
4	901812	초음파 영상진단기	1,773	61.8	701919	유리섬유	535	121.5
5	294190	항생물질 등	1,444	-23.2	381800	화학화합물	480	95.7
6	848180	자동제어장치 등	1,432	0.0	701959	유리섬유	354	258.6
7	845530	압연기용롤	1,133	51.0	701952	유리섬유	349	9.4
8	841480	후드, 펌프 등	1,087	12.5	040410	유장과변성유장	263	391.1
9	843149	크레인, 유압브레이크 등	1,075	22.1	854150	반도체디바이스	189	25.3
10	840310	보일러	966	0.5	901320	레이저기기(광학)	156	-13.7

자료출처: KOTIS

수입정책상의 규제

자국산업 보호제도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전신인 관세동맹은 2010.1월부터 역외 국가에 대해서 자체 기준으로 상품군을 분류하여 단일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정무역의 명분을 내세운 유라시아 경제위원회의 수입규제 조치는 3국이 단일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규제 적용 여부는 유라시아 경제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고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포함하고 있다.

수입규제(주요 비관세 수단)

관세동맹 차원에서 규정된 주요 비관세 수단은 수출입 할당제, 무역허가제, 독점무역권, 6개월이내 수입금지조치, 국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의 조치 등이 있으며, 벨라루스 관세당국은 자국에 대규모로 수입되는 상품 생산업체에 제조원가명세서 제출을 요구하여 상품 원가정보공개를 통해 보호무역 및 국내 수입 상품 가격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15.8)에는 총리 훈령(No.666)을 발표하여, 수입품에 대해 수출업자가 제공하는 위생검역증 이외에 자국 특별 검역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자국상품 보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1) 수출입 할당제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관세동맹 회원국간, 그리고 회원국내 각 경제주체간 수출입 물량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제3국에 수입량을 할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3국산 상품으로 관세동맹 지역을 경유하여 관세동맹 외부로 반출되는 상품이나 자유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의 틀내에서 거래되는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무역허가제도

단일관세율 품목 중 제3국과의 거래가 금지·규제된 일부 품목은 공동관세협정에 따라 수출입허가의 대상이 된다. 주로 알콜제품, 어류 및 수산가공품, 담배제품 등이며 1년 이하로 발급되는 유효한 1회성 허가(One-time license), 1년간 유효한 일반 허가(General license), 유라시아경제위원회가 사안별로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배타적 허가(Exclusive license)가 있다.

(3) 독점적 무역권

유라시아경제공동체의 결정에 따라 무역독점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외부

에 공표된다. 현재 벨라루스에서 독점적 수입이 인정되는 품목은 알콜제품, 수산가공품, 담배제품이며 칼리비료가 독점적 수출 대상이다.

세제상의 제한

(1) 부가가치세 부과

벨라루스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는 관세에 추가하여 원칙적으로 2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다만, 벨라루스 거주 외국인을 위한 일시적인 물품 수입(최대 3개월), 벨라루스산 식료 가공품, 경제자유구역에서 생산된 물품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보다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국내소비세(Excise) 부과

아래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대신 국내소비세가 부과된다.

- 가수분해 알콜류
- 알콜함유 용해물(약품류 및 예방치료용 약물 제외)
- 알콜함유 식료품(보드카, 코냑, 포도주 등)
- 맥주류 및 담배류
- 원유, 가솔린, 디젤유 등
- 보석 세공품
- 미니버스, 승용차, 개조화물차 등

수출입 관련 제도적 문제점

벨라루스는 WTO 비회원국으로 국제무역 규제 해소나 법집행의 투명성이 모호하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애매한 해석 뿐 만 아니라, 통관 절차의 투명성 및 선진화 수준이 미흡하다. 특히,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과 함께 역내, 역외 통관 관련 행정 및 내부 규정들이 상당부분 수정



되거나 새롭게 제정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거나 공개되지 않아 중소기업자들에게 고충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혜관세 제도

2010.1월 이후 벨라루스-러시아-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은 신흥경제국 및 개도국에서 생산된 일부 품목에 대해 특혜 관세를 실시하고 있는바, 특혜 관세 적용국가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 수입관세의 75% 적용 국가

: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홍콩, 이란,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03개국

○ 0%의 수입관세 적용 국가

: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라오스, 르완다, 이디오피아 등 49개국
신흥경제국 및 개발도상국들에게 적용되는 관세율 인하조치를 이용하려면, 해당 상품 생산국가에서 발급하는 상품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상품 생산자와 수입자는 상품 생산국가내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받거나, 관세동맹 회원국 역내에서 통용되는 단일양식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품목별 수출입 장벽(수출입 금지·제한 품목)

벨라루스를 포함한 러시아, 카자흐스탄 관세동맹국들은 역외 제3국과의 교역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 금지 또는 제한¹⁴⁾을 두고 있다.

14) http://tsouz.ru/db/entr/norm-prav-doc/ediniy_perechen/Pages/default.aspx

○ 수출입 금지 품목

- 방사성 물질 등 위험성이 있는 폐기물
-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
- 군용 및 사제 무기류와 그 주요 부속, 탄약 등
- 국가 주요정보 및 선거, 불법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 생물자원 채취장비
- 포획금지 동물 가죽 등

○ 수출입 제한 품목

- 야생 채취 약제
- 야생 동·식물
- 관세동맹 외부로의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귀금속 및 보석원석, 동 귀금속과 보석원석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가공되지 않은 귀금속, 귀금속 파편 및 폐기물, 광석, 고농축된 귀금속 및 원자재
- 광물자원류
- 향정신성 약물류 및 최음제
- 민간용 전파기기 및 고주파 장비 등 기타 금지 품목

표준, 인증 관련 장벽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인간의 유전자·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 규범과 표준시스템의 발전 및 에너지 절약 요구사항에의 부합 여부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20,000여개의 국가표준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의무 인증목록에 포함된 상품의 벨라루스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인증서와 적합심사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특정 상품들은 안전성을 검증 받기 위해서 인증서 발행 대신에 정부등록이 필요하다.

상품의 품질보증 또는 안전 인증은 벨라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3국 중 한 곳에서만 인증받아도 다른 관세동맹 회원국에서 별도의 재발급 또는



재등록 절차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품질·안전 인증은 관세 동맹 회원국 내에서 제조된 상품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공유되는 반면 관세 동맹 역외의 제3국에서 수입된 품목의 품질·안전 인증은 3국간 공유에 예외가 많다.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현재까지 철도차량, 고속교통수단, 저전압장비, 완구, 아동·청소년용 제품, 차량, 식품 등의 안전심사·인증 등을 위한 21개의 관세동맹기술규칙을 채택하였으며, 2015년 기준으로 13개의 기술규칙이 추가로 발효될 예정이다.

환경 관련 규제

벨라루스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제품 및 제품 생산·실험 과정 등이 관련 기준 및 기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의무환경인증제도가 시행중이다.

환경인증제도의 검증을 통과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받게 되며,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상품은 벨라루스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의무환경인증이 필요한 제품을 벨라루스로 반입하려면, 벨라루스 소재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세관신고서와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제품의 유효기간, 판매기간, 기술·규범상 특이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나, 대량 일괄 생산품과 서비스의 경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벨라루스에서의 지식재산권은 발명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저작권 등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나 기타 국가들과 유사한 편이다.

○ 벨라루스가 적용하는 국제협약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저작권 협약, WIPO 실연·음악 조약, 파리조약, 특허협력조약, 마드리드협약, 베른협약, 올림픽마크 보호 조약, 니스협정, 로카르노협정, 스트라스부르그 협정, 부다페스트 조약, 마드리드 프로토콜, 국제식물신品種 보호조약, 제네바음반협약, 로마협약.

관세동맹 회원국 세관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대상 품목을 규정하는 단일관세목록을 구비하고 있으며, 2014.9월 기준으로 벨라루스 제품 100여 종류가 단일관세 등록처(Single Register)에 등록 되어 통관시 심사를 받고 있다. 통관절차 진행 중 단일관세목록에 규정된 지식재산권 보호대상 품목에 대한 권리침해의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상품을 통관시키지 않고 최장 10일간 위반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1회 10일 연장 가능). 또한, 관세동맹 세관은 관세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식재산권 관련 상품의 반출을 중단시킬 수 있다.

관세동맹 세관은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 중 다음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조치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 자연인이 개인용으로 들여오는 물품 및 국제우편을 통해서 수령받는 물품
- 외교사절단과 영사대표부, 기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대표기관 및 인사 등이 공적·사적 용도로 반입시키는 물품

외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법

벨라루스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며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법령으로는 “투자법”



53-3호와 “면허권(Concession)에 관한 법” 63-3호, “벨라루스내 투자 활동 촉진을 위한 추가 환경 조성”에 관한 대통령령 제10호(2009.8) 등이 있다.

2012년 발효하고 2014년 일부 개정된 투자법은 투자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벨라루스 내 투자를 위한 기본 원칙과 투자 방식을 보다 확대 규정하였다. 또한, 예외적인 투자와 투자를 통해 발생한 다른 재산에 대한 보상 조건을 재정비 하였다.

외국인 투자 촉진책 시행

벨라루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벨라루스내 투자활동 촉진을 위한 추가 환경 조성”에 관한 대통령령을 공포하였다.

- 투자 프로젝트 수행 목적으로 임대되는 국가부지는 경매(auction)없이 제공
- 투자자가 투자대상물이 위치한 부지내 녹지를 제거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무방
- 투자자 소유 건물, 시설물 등을 무상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 이익에 대한 세금 면제
-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설계자, 시공자, 하청업자를 직접 선정할 권리 보장
- 경제자유구역 개발기금,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으로 산입되던 부지 임대계약체결 권리금 면제
- 투자 프로젝트 수행 목적으로 구입하는 상품, 서비스, 재산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투자 프로젝트 수행 목적으로 수입되는 기계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공제

- 투자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국유지에 건축물이 완공된 해의 다음해 12월 31일까지 토지세 및 임대료 면제
- 투자계약 유효기간중 혁신기금(Innovation Fund) 납부의무 면제
- 투자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벨라루스인이 아닌 제3국인을 고용할 경우, 제3국인 고용시 발생하는 세금 면제
- 투자 프로젝트로 부지 사용시 야기되는 농업·임업상의 손실 보상 의무 면제
- 기타 대통령이 부과하는 인센티브 제공

외국인 투자 보호대책

투자법에 따르면 투자자는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권을 보호 받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벨라루스 법령에 따라 지불해야 할 모든 세금이나 수수료를 납부하면 잔여 수익을 본국으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재산을 국유화할 때에는 합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하며, 분쟁시 국제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CSID)나 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UNCITRAL) 등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금지

투자법에 의하면, 외국인의 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벨라루스 보건부가 규정한 약물류, 독극물류의 생산과 판매 분야
- 벨라루스 정부가 독점권을 부여한 법인에 대한 경제부의 동의없는 투자
- 벨라루스 대통령이 특별히 허용하지 않은 국방 및 안보 분야

투자 허가 절차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하기 전에 벨라루스 정부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벨라루스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투자 계약목록에 등록시켜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투자자는 투자계획 실행에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특혜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는 아래 국가기관의 결정에 의거하여 벨라루스 정부와 투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투자계획의 산업적 특성과 그 행정관할권을 고려하여, 해당 투자안에 대해 권한을 갖는 국가행정기관 및 기타 중앙정부 산하 국가기관의 결정에 근거하여 투자계약이 체결됨.
- 투자자에 대한 특혜제공 관련 내용이 벨라루스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벨라루스 각료회의의 결정에 따라 투자계약이 체결됨.

투자계획은 투자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벨라루스 각료회의의 결정에 근거하여 투자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법무부로부터 적법여부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들은 투자계획 실행을 위해 벨라루스내로 반입되는 장비와 부속품, 부가가치 등에 대한 관세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투자계획 실행을 위한 사업 부지를 경매과정 없이 임대할 수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외국인 및 외국인 회사는 토지를 제외한 사무실 등 상업용 부동산을 아무 제한없이 소유할 수 있으나, 일반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은 외국 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 개인(자연인)은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관련기관의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투자 환경 평가

기업경영여건 : Doing Business 2015

벨라루스는 '15년 57위를 기록하며 유라시아경제연합(EEC) 회원국(러시아(62위), 카자흐스탄(77위)) 들에 비해 비교적 우수한 투자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업경영여건순위		
		2015	2014	변동률
종합순위		57/189	57/189	
1	사업등록(기업등록절차)	40	35	-5
2	사업허가(상품보관창고 건축)	51	54	+3
3	전력공급(신설창고 전력공급 절차)	148	144	-4
4	재산등록(재산양도 규제)	3	3	
5	신용획득(법적권리, 신용정보)	104	99	-5
6	투자자보호(기업 거버넌스)	94	91	-3
7	조세납부(조세부과대상, 환급)	60	107	+47
8	대외무역(수출입)	145	146	+1
9	계약실행(법정 효율성)	7	7	
10	사업폐쇄(파산)	68	66	-2

자료: Doing Business 2015

IFC가 벨라루스 투자환경에 대해 중위권 이상의 평가를 내린 주요 이유는 재산등록(3), 계약이행(7), 사업등록(40), 사업허가(51)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데 기인하고 있으며, 조세납부 영역은 전년대비 47단계 상승(107 ▶ 60)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경제자유지수 : 2015 세계경제자유지수 (The Heritage Foundation)

'15년 벨라루스는 전체 조사대상국(178) 가운데 전년대비 3단계 하락한 153위에 위치¹⁵⁾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160위), 우크라이나(162위), 투르크메니스탄(172위) 등과 함께 '대부분 자유롭지 않은 그룹'(Mostly Unfree)에 분류되어 있다.

동 보고서는 벨라루스내 재산권 보호제도(20.2), 투자자유(20.0), 금융자유(10.0) 부분이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업경영여건순위		
			2015	2014	변동률
종합순위			153/178	150/178	-3
1	재산권 보호제도	법률 및 법치제도	20.2	20	
2	청렴도		29.0	24.6	
3	재정정책	정부기관 행정	86.4	89.2	
4	정부지출		54.7	61.2	
5	기업 자유	관리감독기관 효율	72.0	73.4	
6	노동 자유		80.1	77.7	
7	통화 자유		44.5	33.9	
8	무역 자유	시장 자유도	81.0	81.4	
9	투자 자유		20.0	30	
10	금융 자유		10.0	10	

자료: 2015 세계경제자유지수 (The Heritage Foundation)

15) EEU 회원국 순위 : 러시아(143위), 카자흐스탄(69위)

외국인 투자 및 통상 관련 문의처

벨라루스 국가투자민영화국

영문명: National Agency of Investment and Privatization

홈페이지: <http://www.investinbelarus.by/en/>

전화번호: +375 17 200-81-75

이메일: mail@investinbelarus.by

벨라루스 경제부

영문명: Ministry of Economy

홈페이지: <http://economy.gov.by/en>

전화번호: +375 17 200-53-16

이메일: minec@economy.gov.by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영문명: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홈페이지: <http://www.eurasiancommission.org/en/Pages/default.aspx>

전화번호: +7 495 669-24-00

이메일: info@ecommission.org



세르비아

거시경제 일반

세르비아 경제는 90년대 구유고 내전, UN의 경제제재, 코소보사태와 NATO 공습 등 국내외 정세불안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 그러나 이후 적극적인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하여 2004~2008년 동안 년 4.6% 이상의 높은 실질 GDP 성장을 시현하였다.

세르비아 경제는 근본적으로 유럽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 유럽 경제의 부침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와 이에 이은 유로존 재정위기 등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인해 2009년부터 세르비아 경제는 부진을 보인 바 있다.

2012년 세르비아 경제는 유럽경제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업부분 부진, 주요 철강공장 조업 중단 등 악재가 겹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나, 2013년에는 농업부분 회복, Fiat사 자동차 공장 생산 개시 등에 힘입어 2.6% 성장을 기록하였다.

세르비아는 2014.5월 대규모 홍수로 인해 경제활동에 큰 피해를 입어 실질 GDP는 -1.8% 성장하였다. IMF는 2015.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통해 세르비아가 2015년 0.5% 성장하고, 2016년에는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2012.5월 총선을 통해 집권하여 2014.3월 총선에서 과반수 신임을 확보한 현 정부는 EU 가입 추진, 서방 기업 투자 적극 유치 등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만성적인 재정적자 등 누적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세르비아 정부는 경제 대외 신인도 개선을 위해 2015.2월 IMF와 3년간 935.4백만 SDR(약 12억 유로) 규모의 대기성차관약정(Stand-By Arrangement)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IMF는 매 3개월마다 경제 프로그램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재정건전화 부문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구조 개혁 부문에서는 진전이 더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거시경제 지표

항목(단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GDP (백만 EUR)	29,766.3	33,423.8	31,683.1	34,262.9	33,059.1
1인당 GDP (EUR)	4,082	4,620	4,401	4,783	-
실질GDP 성장률(%)	0.6	1.4	-1.0	2.6	-1.8
수출액 (백만 EUR)	7,393.4	8,441.4	8,738.9	10,996.7	11,157.0
수입액 (백만 EUR)	12,423.5	14,250.0	14,716.7	15,469.0	15,526.3
무역수지 (백만 EUR)	-5,030.1	-5,808.6	-5,977.9	-4,472.3	-4,369.2
경상수지 (백만 EUR)	-2036.7	-3,656.0	-3,671.4	-2,098.3	-1,984.7
순 FDI (백만 EUR)	1,133.4	3,319.6	752.8	1,298.1	1,236.3
외환보유고 (백만 EUR)	10,002	12,058	10,915	11,189	9,907
공공부채 (GDP 대비 %)	41.8	45.4	56.2	59.6	70.9
평균환율 (RSD/USD)	77.91	73.34	88.12	85.17	88.54
평균환율 (RSD/EUR)	103.04	101.95	113.13	113.14	117.31
물가상승률(%)	10.3	7.0	12.2	2.2	1.7
실업률(%)	19.2	23.0	23.9	22.1	18.9

※ 자료: 세르비아 재정부

2012.3월 EU 후보국 지위를 획득한 세르비아는 2013.9월 EU와의 안정 제휴협정(SAA)이 발효되었고, 2014.1월 EU 가입협상이 시작되었다. 세르비아 정부는 2020년 EU 가입을 목표하고 있다. EU와의 가입 협상 과정에서 세르비아의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난 몇 년간 주춤했던 외국인 투자가 다시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14년말 현재 우리기업 2개사가 세르비아에 총 12백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투자잔액은 7.1백만 달러이다.

세르비아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전자기기, 채소 및 과일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자동차, 석유 및 석유제품, 가스, 전자기기 등이다. 농업 대비 제조업 분야가 취약한 편으로 무역수지는 지속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양국 간 무역액은 2014년 164백만 달러(37백만 달러 적자)이며, 2015.9월까지 160백만 달러를 보이고 있다.

세르비아는 WTO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현재 세르비아가 EU와 체결한 안정제휴협정(SAA), 여타 국가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 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다. 통상협정 체결 국가 시장규모는 8억명에 달하며, 전체 무역액에서 이들 국가와의 무역 비중은 80%를 상회한다.

- SAA: EU 28개국 * 기존 잠정무역협정은 SAA로 대체
- CEFTA(Central Europe FTA): 세르비아 외 발칸 지역 6개국(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몰도바, 코소보)
* 크로아티아는 2013년 EU 가입으로 회원국 자격 상실
- EFTA(European FTA): 북유럽 4개국(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 러시아, 터키,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개별국과 FTA 체결

한편, 미국은 세르비아산 상품에 대해 일반특혜관세(GSP)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투자유치 정책

세르비아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조건과 규정에 관한 명령(Decree on Terms and Conditions for Attracting Direct Investment)”을 2010.5월 제정하였고, 이후 지속 개정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금융 혜택(financial incentives)

세르비아 중앙정부는 제조업, 수출 관련 서비스 부문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해 금융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혜택의 수준은 기업규모, 투자금액, 고용창출 인원, 투자지역 등에 따라 다르다. 현재 경제부 산하 세르비아투자수출진흥청(SIEPA)에서 금융 혜택 부여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세르비아 정부는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에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금융 혜택에 상응한 고용 등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투자법을 개정중이다. 또한 2016.1월을 목표로 SIEPA와 지역개발청을 통합한 신설 기구 출범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기존 SIEPA 기능도 동 신설기구에 통합될 예정이다.

한편, 세르비아 지방정부도 지역 경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부지 무상 임대 등 별도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세금 혜택 (tax incentives)

법인소득세(15%), 개인소득세(10%), 부가가치세(20%)는 동유럽 최저 수준이다.

법인소득세 면제: 고정자산에 약 900만유로 이상 투자하고 투자기간 동안 100명 이상 추가 고용 시 과세가능 이익 보고 첫해부터 10년 간 법인소득세를 면제한다.



손실 이월 공제: 세금으로 인한 손실은 최대 5년 간 이익에서 차감하여 공제 가능하다.

이중과세방지: 현재 문안협약이 완료된 한-세르비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향후 서명 및 발효 시 동 협정 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투자지역으로서의 매력

지리적 이점

세르비아는 발칸지역 중심부에 위치한 관계로 발칸지역과 중유럽을 잇는 관문으로서 중유럽 진출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서유럽, 터키, 그리스를 연계하는 물류 허브인 세르비아는 EU 가입이 실현될 경우 동남부 유럽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의지

세르비아는 구유고 내전의 중심에 있었던 탓에 국가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된 바 있으나, 2000년대 초반 민주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국민 모두가 대외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세르비아 정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EU 가입을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EU 표준에 부합되도록 기존 제도 및 법률의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투자 및 통상 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질 높고 저렴한 인적 자원

세르비아는 기술 및 언어(영어) 능력을 갖춘 고급 인적자원이 풍부하며, 평균임금은 동유럽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이다. 세르비아의 평균 총 월임

금은 크로아티아 및 체코의 50% 수준이며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및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또한 세르비아인의 근로 의욕 및 노무 환경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U 가입 추진에 따른 기대이익

세르비아의 EU 가입 이전에 투자할 경우 투자와 관련된 EU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비교적 쉽게 투자가 가능하고, 이후 세르비아가 EU에 가입하게 되면 EU 시장 진출의 장점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세르비아가 EU 가입 목표로 삼고 있는 2020년 이전에 투자 최적기로 판단된다.

통상환경 일반

세르비아는 EU 가입에 대비하여 각종 법령이나 규정을 EU 기준에 맞추기 위한 개편작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입 물품의 품질 규격도 EU 표준에 일치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세르비아 수출시 수입 허가요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르비아는 오랫동안 사회주의 체제에 있다가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 사회 전반에 관료주의가 팽배해 있고, 정부기관 업무수행의 투명성이 부족하여 공기업 민영화, 각종 인허가, 수입 통관 등의 과정에서 부패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우리 기업들의 세르비아 진출 시 주의가 요망된다.

세르비아 정부 스스로도 이런 문제들이 외국기업의 對세르비아 투자 장애 요인임을 인식, 아래 과제에 대한 개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인허가 과정에서의 부패
- 지하경제(grey economy)



- 정부 관료주의 비효율성 및 복잡한 행정절차
- 비효율적인 분쟁해결절차
- 조세제도의 복잡성 및 각종 수수료 및 지방조세의 불투명성
- 시장수요에 대응한 숙련 노동력의 부족
- 사회 기반시설 부족 및 지역 간 불균형

수입 관련 장벽

통관 절차 및 관세 장벽

세르비아는 2010.5월 관세제도를 EU 표준에 근접하도록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관세 평가, 원산지 규정, 관세요율 분류, 통관절차 등에 있어서 세계무역기구(WTO), 세계관세기구(WCO) 등이 권고하는 규정에도 상당히 부합하게 되었다.

세르비아는 상품 통관 절차를 엄격히 규제하는데, 수입된 상품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부족으로 수입 상품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후 관리·감독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관 절차가 이전보다 신속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통관 절차 간소화 규정이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으나, 2010년부터 세르비아 관세청에 등록된 수출업자의 경우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있다. 다만, 동 규정은 물품세(excise tax) 부과 대상 상품의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총 만 여개 품목에서 0~30% 범위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평균 관세율은 8.7%이다. 공산품의 평균 관세율은 6.2%이나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17%이며, 국내 농산물 보호차원에서 최고 수준인 30%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세르비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료와 원부자재 등은 최저

관세율인 1~5%를 부과하고 있으며, 전체 품목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경우, 세르비아에 대한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가전제품, 폴리에틸렌, 기계류 등이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다음과 같다.

■ 주요 품목 관세율 현황

자동차	10%	에어컨	5%
중고차	12.5%	폴리에틸렌	5%
냉장고	10%	광학, 사진, 의료기기	1.87~2.67%
휴대폰	5%	기계류	1%
세탁기	5~15%	직류, 섬유원료	1~10%

수입부과금

관세 이외에 수입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VAT)를 납부해야 한다. 빵, 우유, 설탕, 계란, 식용유, 고기, 과일, 채소 등 기본 식료품과 일간지 등의 경우 10%, 나머지 대부분 제품에 대해서는 2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또한, 수입업자는 물품세법에 따라 석유 제품, 담배, 주류, 커피 등에 대해서는 물품세(excise tax)를 부담해야 한다. 이 외에도 수입업자는 통관 처리수수료와 통관처리 관련 행정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수입규제

세르비아 정부는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과도한 수입 보호조치, 그리고 재정수지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세르비아 정부는 특정물품 수입으로 자국 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동 물품의 과도한 수입을 규제하는 수량 제한 및 추가 수입세를 부과할 수 있다.



수입허가

세르비아 정부는 공공보호, 국민 및 동식물 보호, 환경 및 천연자원 보호, 그리고 금·은 거래 시 특별 규정 적용 등의 이유로 일부 제약물질, 귀금속, 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 등에 대해 수입 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허가제 실시 품목은 관세 대상 품목 10,270개 중에서 2%에 해당하는 212개이다.

수입허가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늦어도 15일 이내에 결정되며, 동 허가증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다.

자동차 수입 규제

자동차 수입에 관한 법령은 “유로 3(Euro 3)” 조건(배기가스 기준과 소음 규제 기준)을 충족하여 생산된 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할 세관은 통관 시 차량 검사, 관련서류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허가해 주고 있다.

원산지 규정

세르비아 상공회의소와 세관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EU, FTA 체결국, 러시아 등에 적용되는 특혜 지위(Preferential Status)와 일반 제3국에 적용되는 비특혜 지위(Non-Preferential Status)로 구분하여 발급하고 있다.

특혜지위 대상국가와 관련, EU 회원국과 FTA 체결 국가는 “EUR 1”로, 러시아를 비롯하여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은 “Form A”로 분류하여 발급하고 있다. 다만, EU의 섬유 및 섬유제품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세르비아 정부는 원산지 관련 법령과 규정을 EU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세르비아 정부는 과거 오랜 공산주의체제에서 만연되어 온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조달법을 제정하였으며, EU의 정부조달 지침과 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4년 정부조달법은 세르비아 국내 기업들에게 20%까지 가격상 특혜를 부여하였으나 2013.4.1 발효된 개정법은 특혜를 10%로 줄였다. 또한 2013년 개정법은 10억 디나르 이상 정부조달에 대한 감독관 기능 도입, 소액 정부조달의 투명성 강화, 최초 국방 및 안보분야 정부조달 규율 등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2014.8월 발효된 개정법은 입찰 공고 및 결과의 온라인 공지 의무화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였고, 입찰 참여자의 권리 보호 강화 등에 대해서도 개선이 이뤄졌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기업에 특혜를 부여하고 있어 외국 기업들의 정부조달 참여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아직 사회 전반에 관료주의와 부조리가 남아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르비아 정부조달 법제와 이행 사이에는 아직 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권 보호

세르비아 정부 내에서 지식재산권 이슈는 지식재산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특허, 의장, 상표, 지리적 원산지 표시, 집적회로 배치,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등의 지식재산권은 규제되고 보호된다. 세르비아의 지식재산권



관련법은 EU법과 합치되도록 개정되고 있으나, 법집행 측면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적과 관련 없이, 개인과 법인은 세르비아 내에서 민사재판을 통한 보호, 행정기관을 통한 보호, 형사재판을 통한 보호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EU법과 합치한다.

세르비아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요청 또는 직권에 의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의 통관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다.

경쟁 정책

세르비아의 경쟁보호법은 경쟁보호위원회(CPC)에 의해 집행되고 있으며, 동 위원회는 카르텔 참여자에 대한 리니언시(leniency)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2013.10월 경쟁보호법 개정을 통해 경쟁보호위원회의 조사권이 강화되었고 시장 지배적 지위의 정의가 EU규범에 가깝게 조정되었다.

한편, 국가보조는 국가보조통제위원회(CSAC)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나 구조조정 또는 민영화 과정에 있는 기업은 국가보조규정으로부터 면제되는 문제가 있다.

특정부문의 자유화와 관련, EU는 많은 수의 세르비아 사업이 사실상 또는 법적으로 특별하거나 배타적인 권리를 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에너지, 운송, 인프라, 우정서비스, 방송, 농업, 환경 등 부문에서 EU법과 조화되도록 시장자유화를 위한 추가 노력을 권고한 바 있다.

부동산 규제

기본소유권법은 외국법인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국내법인과 내국인과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 다만, 외국인의 군사시설, 국립공원 등 인접지

역 부동산 소유에는 제약이 있다.

세르비아 내 외국 법인은 해당자산의 상업용 사용과 해당 외국과의 상호주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동법에 따르면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인은 아파트 형태의 부동산을 상호주의에 따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세르비아 내 영구 또는 임시 거주 요건은 없다.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는 모든 부동산 소유권자에 대해 부과하는 부동산세(부동산 시장가치의 0.4~2%)와 소유권 이전시 부과되는 소유권이전세(부동산 시장가치의 2.5%) 및 자본이익세(실현된 이익의 15%)가 있다.

현지 법인 설립절차

세르비아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먼저 은행을 방문하여 잠정 법인구좌를 개설하여 소정 자본금(유한회사 500유로, 상장회사 10,000~25,000유로)을 기탁한다. 다음으로 회사 소재지 관할 법원을 방문하여 정관, 회사 설립 계약서 및 신청서에 대한 공증을 받고, 기업등록청을 방문하여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다.

아울러, 회사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세자로 등록하고, 산업재해청을 방문하여 피고용인 사회보장세(연금 및 산업재해보험) 납부자로 등록한다. 마지막으로 은행을 방문하여 영구 법인구좌를 개설한다. 기업등록 절차 완료에 통상 5~6일이 걸리며, 수수료로는 350유로 정도 소요된다.

세르비아 기업등록청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개발협력기금 지원을 받아 2008년 말부터 “기업등록 Business Process IT 사업”을 착수, 2010.6월에 완료하였다. 아직 복잡한 법인설립 절차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기업등록청의 절차는 대폭 간소화되었다.



기타 장벽

한국인은 무비자로 세르비아에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2009년 세르비아 외국인법에 따라 세르비아 내 90일 이상 체류를 희망하는 한국인은 임시거주비자를 받거나 체류기간 중 당국(외국인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임시거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시거주기간 만료 최소 30일 전에 연장 신청해야 하며, 1년을 상한으로 갱신할 수 있다.

2009년 외국인법에 따라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은 세르비아 내 임시거주지 도착 후 24시간 내에 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시거주지 변경에도 동일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인이 호텔 등 숙박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숙박서비스 제공 당사자가 신고를 대행한다.

한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경우, 세르비아에서 거주 허가증을 획득한 이후 관할 당국에 가서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을 위탁하고 세르비아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건강 증명서, 대사관에서 공증한 운전면허증 사본, 사진 2매, 수수료 지불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된다.

스위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한-EFTA 자유무역협정이 2006.9.1일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상품(공산품, 수산물)에 대하여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게 되었다. 그동안 스위스가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던 분야는 진주 및 귀금속류(71류), 의류와 그 부속품(62류),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의류와 그 부속품(61류), 가죽제품(42류) 등으로 최근 동 분야의 교역조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농산물 중 가공농산물의 경우는 자유교역대상으로 스위스 시장에서 100% 관세양허 대상이며 기본 농산물에 관하여는 한-스위스 간 별도의 양자 농산물협정을 체결, 스위스측은 한국 농산물 중 51%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양허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김치와 쌀 발효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사과 및 배에 대해서는 쿼터 및 계절관세의 적용을 통해 일부 양허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시장에서 생산이 없는 스위스산 치즈 4품목에 대해 쿼터(5년간 45톤, 6년째부터 60톤) 설정 후 10년내 철폐, 포도주에 대해 10년내 철폐하기로 하였다.

수입부과금

수입품에 대해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세제성 부과금은 현재 스위스에 존재하지 않는다.

원산지 규정

외국으로부터 스위스로 수입된 원료 및 부품으로 제조된 제품은 스위스에서 생산된 제품의 부가가치가 최종 판매가격의 60~80% 이내일 경우 스위산 원산지 지위를 갖고 유럽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판매될 수 있다.

스위스의 원산지 규정은 일반, EU/EFTA, GSP, FTA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98.3월부터 GSP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2006.9월 한-EFTA FTA 발효에 따라 FTA 특혜 원산지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한-EFTA 자유무역협정상 원산지 규정은 부속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된 제품, 충분한 작업 또는 공정을 거친 제품, 그리고 특별히 지정된 재료로 획득한 상품에 대해 당사국을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원산지 가격 결정기준은 공장도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협정은 역외가공 조항을 두어,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역외가공 제품에 대해 원산지 인정을 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해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했음은 물론, 향후 개성 이외 북한지역에서의 역외가공 제품에 대해서도 동 조항의 적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수입규제

1995년 UR협정 이행을 위해 스위스는 종전의 쿼터제를 관세할당제(Tariff Quota)로 전환하였다. 농산품 중 28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할당제는 야채 및 과일 등 대부분의 경우 계절별로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할당방식은 국산품 구입조건 할당, 경매, 선착순 등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점차 선착순 원칙으로 일원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반덤핑, 상계관계 및 긴급 수입제한조치

반덤핑 조치에 관하여 한-EFTA FTA는 WTO 규범보다 엄격한 수준의 조건을 규정하였는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라도 “낮은 관세

원칙(lesser duty rule)”을 준수하고, 반덤핑 혐의에 대한 조사개시 이전에 해당국에 서면통보 및 사전협의를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조치와 관련하여서도 WTO 규범 준수에 더하여 조치 개시 이전 당사국 간 협의를 규정하고 있다.

한-EFTA FTA는 또한 양자 간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치는 최초 발동 시 1년간 유효하며 최대 2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해당 조치 종료 후 3년간은 조치대상 품목에 대해 어떠한 추가조치도 취할 수 없다. 물론 WTO 체제상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회원국의 고유 권한은 존중된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기술규정 인증

스위스는 전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가입국에 적용되는 유럽공동체 마크(CE: Communautés Européennes)나 일본 산업표준(JIS: Japanese Industrial Standard), 한국표준(KS: Korean Standards)과 같이 전 품목에 걸친 규격인증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품목별로 별도의 법령에 따라 임의 또는 의무적 테스트와 인증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스위스는 제반 기술규격에 있어서 EU 규격과의 일치를 추진함으로써, 현재까지 스위스 전체 기술규격의 90% 이상이 EU 규격과 일치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EU의 유럽공동체(CE) 마킹 관련 지침 중 완구의 안전성, 가스기기, 기계류, 개인 보호장비, 이식용 의료기기, 의료장비 등 6개 지침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일한 규격을 채택하고 있다.

2002.6월부터 발효된 스위스와 EU 간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에 따라, 스위스와 EU는 기술표준규정이 상호 인정되는



분야에서 자국규정에 의한 인증으로 인증절차가 완료되도록 하였다.

우리의 수출 관심품목인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위임을 받아 스위스 전자전기기술협회(SEV)에서 운영하는 스위스 전자전기기술협회(SEV) 인증이 있다. 이 SEV 인증제도는 스위스에서 가장 광범위한 품목 그룹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 규격은 유럽공동체(CE) 마킹제도의 규격과 매우 유사하다.

SEV 규격 이외에도 식품, 자동차, 화학제품, 살충제, 비료 등에도 엄격한 기술규격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동차에 대하여는 1995년에 EU의 표준을 모델로 하여 표준을 채택했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관리국(IKS)의 검사 및 등록을 받아야 한다.

위생 관련 검사제도

위생 관련 검사제도로는 식품검사제도가 있다. 연방식품규정에 따르면 우유, 치즈, 버터를 비롯한 식품분류에 따른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수입식품의 통관 시 샘플을 추출한 후 통관되며 각 주(칸톤) 시험연구소가 검사 분석을 하여 국내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정부는 수입을 중단시킬 수 있다. 또한, 추출된 샘플과 판매품과의 불일치가 발견될 시 유통업자는 자기비용으로 동 물품을 모두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식품 검사제도는 식물, 육류, 식품 및 동물사료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물품에 따라 2개 범주에 속할 경우에는 중복검사도 받는다.

상품 라벨링

건강,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목적상 상품 라벨링 및 포장을 강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식품류와 기술 장비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하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상품

(GMO)에 대해서는 1996.10월 유전공학생산 농산품에 대한 라벨링 표시 규칙을 도입, 1997년부터 시행 중인 바, GMO 성분이 1%(threshold value) 이상인 모든 GMO 상품(단, 종자의 경우 0.35% 이상, 가축용 사료의 경우 2~3% 이상)은 유전자변형표시(comprehensive mandatory labelling)를 하게하고 있다.

환경 관련 규제

환경보존(유해가스배출량 감축 등)을 위한 다양한 세제 도입

2000.1월부터 페인트, 니스, 세제 및 화장품 등의 원료에서 발견되는 휘발성 유기물질(VOC)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VOC 세금은 주로 수입품과 내수용에 부과되며, 수출용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VOC 규정에 따라 부과대상이 결정되나 VOC로 간주되는 모든 유기물질이 그 대상은 아니다.

환경에 유해한 가스의 배출 감소를 위해 다양한 석유세가 현재 부과되고 있다. 예를 들어, 리터당 무연가솔린은 73.1센트, 디젤은 75.9센트, 경난방유는 0.3센트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 임업, 전문 어업, 허가받은 교통회사 등에서 사용되는 엔진연료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이 제공된다.

또한, 연소물질(combustibles)에 대한 CO₂ 세금(tax 형식이 아니라 동기유발조치 형식임)이 화석연료 사용 감축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도입되었으며, 2014.1월부터 화석연료를 이용한 난방시 발생하는 CO₂ 1톤당 60프랑의 CO₂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2016.1월부터 CO₂ 1톤당 84프랑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CO₂세는 관세청이 수입 난방용 화석연료에 대해 집행하고, 유해한 CO₂를 발생시키지 않는 목재 또는 바이오매스와 같은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다. 동 세금의 면제에 대한 승인문제는 연방 환경청이 담당한다.



아울러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에서 운행중인 중형차에는 총중량, 배기가스 배출수준 및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연방세인 중차량세(HVF)가 부과된다. 부과 기준으로는 3.5톤 이상의 중량, 화물운반용, 스위스 국내외에서 허가를 받고 스위스 대중도로망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차량과 트레일러는 동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군용차량, 경찰, 소방서, 엠블런스 등의 차량, 운전학습 차량 등 특정 목적의 일부차량은 면제대상이다.

기타

1996.1.1일부터 냉장고에 오존층 파괴가스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환경청(BAFU)은 환경 및 위생에 매우 해로운 수은 및 카드뮴을 방출하는 폐기 배터리에 대해 수수료 부과를 결정하였다. 그 밖에, 스위스 내 산업설비의 설치 및 운영 시 반드시 환경보호법이 고려되어야 하며, 연방 및 주(칸톤)정부가 환경 위해 요소를 통제하고 있다. 각 주정부는 공기 및 수질오염, 소음 방지, 살충제 남용 등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공해 유발시설에 대하여는 주정부의 사전승인이 요구되며, 공해 방지 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한-EFTA FTA는 정부조달 분야에 관하여 WTO 정부조달협정을 원용하고 있다. 스위스는 WTO 정부조달협정 당사국(1994년 비준)으로 연방정부의 34개 기관과 26개 주정부(칸톤)의 조달은 WTO 「정부조달협정(GPA)」 양허 하한선에 따라 외국인의 입찰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1994년 제정된 연방정부 조달법에 의거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상기 양허 하한선은 정기적으로 조정되고 있는바, 2014.1월부터 2015.12월까지 적용되는 조달 및 서비스의 양허 하한선은 23만 프랑, 건설분야는 870만 프랑 그리고 물·에너지 및 교통 분야의 기관이 계약

당사자일 경우 서비스와 조달의 양허 하한선은 70만 프랑이다. 한편, 주 정부가 계약 당사자일 경우는 2001년 개정된 주정부간 공공조달협약(revIVöB)에 의하면, 건설은 870만 프랑, 조달 및 서비스는 각각 35만 프랑이 하한선이다. 스위스 정부의 입찰공고는 연방건설물류국(www.gimap.admin.ch)에 게재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스위스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관련 각종 국제기구 회원국이자 관련협약 서명국으로서, 국제규범을 상회하는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업무는 스위스의 연방지적재산권기구(Swiss Federal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에서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추가 10년 연장 가능하며, 등록 상표권자가 상표를 5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원의 심판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의장권은 최대 15년간 보호되고, 특허권은 20년간 보호될 수 있으며 연장은 불가하다. 저작권은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간 보호된다.

2013.6.21 ‘스위스’라는 명칭을 원산지(Swiss-made, Made in Switzerland)로 표시하는 요건을 강화하는 〈Swissness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스위스를 원산지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Swiss-made로 간주되려면 공산품의 경우 생산 비용의 최소 60%가 스위스에서 발생해야 한다. 2015.9.2.연방각의는 법안 시행령을 고시하여 공산품, 농산품, 식품 등에 대한 예외규정이 포함된 세부 원산지 규정을 마련하였고, 2017.1.1.을 시행일로 발표하였다. 2017.1.1. 이전에 생산된 제품들은 2018년까지 시장에서 유통이 가능하다. ‘스위스십자’ 및 ‘스위스’ 표기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표시의무 사항은 아니다.



서비스 장벽

한-EFTA FTA 당사국들은 서비스 무역에 대해서는 GATS 수준에 더하여 DDA 2차 양허안 수준으로 양허하였다. 단, 스위스가 타 유럽 국가들과 시행 중인 각종 협력사업, 즉 도로운송, 항공운송, 건설, 엔지니어링 등 분야에서는 최혜국대우의 예외를 규정하였다(부속서 8).

투자 장벽

외국인 투자제한 분야

외국인의 투자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며 분야별로 규제하고 있다. 은행업은 스위스 은행감독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투자가 가능하며 보험업, 취업용역회사, 증권거래업, 카지노영업, 무기 및 폭약관련 업종은 주(칸톤)에 따라 주정부의 영업허가를 얻어야 한다. 스위스 국적 선박운행 및 국내 항공사의 운행 등에는 외국인의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 주주권한 및 이사회 구성상의 제한

그동안 외국인의 주주권한 및 이사회 구성상의 제한으로 작용되었던 법규정 즉, 외국인의 주식투자 제한과 현지진출 기업의 이사진 중 과반수를 스위스 국적인으로 선임해야 된다는 의무법(Code of Obligation)의 제한규정(제 711조)이 삭제되었다. 그 대신 2008.1.1일부터 이사회 멤버 중 적어도 한명이 회사를 대표하여야 하고, 대표자 중 한명은 국적과는 상관없으나 스위스에 주거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제718조)는 규정이 적용되게 되어 외국인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제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Lex Koller법에 의거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투자기업의 영업용 부동산과 투자기업의 특정 주거용에 한하여 주(칸톤)정부의 허가에 의해서만 취득이 가능하다.

세제상의 제한

우리나라와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소득세 등에는 문제가 없으나, 한국지상사의 경우에는 평균 12.1%(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절반씩 부담)의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외국인인 스위스를 떠난 후 1년 이후에 청구 시 납부한 사회보장세를 환불받을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다.

경쟁정책

국내 사업자의 독점 시도

스위스는 1996.7월 발효한 신경쟁법(Cartel Act)에 의거하여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합의, 시장지배자적 기업 및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으나, 동 법이 카르텔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경쟁을 저해하는 강성 카르텔은 완전히 금지하고 있으나 경쟁 저해 정도가 미약하고 경제적 효율을 위한 연성 카르텔은 인정하고 있으며, 재판매가격도 인정하고 있다. 시장지배력의 남용(Trade Boycotts, 가격차별, 불공정가격이나 조건부과, 생산제약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유효경쟁'을 전적으로 제한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인수합병(M&A)은 경쟁위원회(ComCo: Competition Commission)에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2002.9.27일 스위스 의회가 경쟁위원회에 벌금조치 제재 등 보다 강력한 권한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카르텔을 형성하는 독과점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의 카르텔 규제는 상기 Cartel Act를 통해 EU의 독과점 규제정책과 전반적인 조화를 모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독과점 규제 법률인 국내시장규율법(Internal Market Act)을 통해 보다 활발한 기업 간 경쟁을 유도하면서, 아올러 칸톤 등 지방 차원의 독과점 근절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스위스의 국내 물가는 EU보다 최고 40% 이상 높은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어, 스위스 정부는 이러한 고물가 문제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도 EU 및 미국의 독과점 규제제도를 준용하여 기업 간 경쟁을 한층 강력히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쟁법의 역외적용

신 경쟁법 제2조에 의거 경쟁 저해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스위스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역외적용을 하나, 현재까지 동 조항이 적용된 사례는 없다.

기타 장벽

전시회 참가 외국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환불

외국인이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참가하였을 경우 전시장 임차료, 전기, 수도료 및 장치비 등 제반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불해 주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양국 간 협정이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환불해 주지 않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관련 국내법 개정으로 1999.1월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게 됨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하에 양국 간 외국인 사업자(자국 내에 사업장이 없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상용비자 취득관련 애로

3개월 이내 체류 시는 비자취득이 필요 없으나 그 이상 체류 시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연방정부, 주(칸톤)정부 및 외사경찰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로 인하여 통상 2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기존 상사주재원의 교체로 인한 신규부임주재원의 비자발급 시에도 동일한 절차와 시일 소요). 게다가 스위스는 체류허가 비자 발급 시 EU와 EFTA국, 그리고 북미지역 국민과 비교하여 이들 이외의 국민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다.

한-스위스 사회보장협정 체결

2014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의 스위스 국민방문 계기에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은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2015년 6월 발효했다.

사회보장협정이 발효하면, 스위스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이 스위스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1인당 연간 최대 2290만원의 스위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스위스시장 특성(취리히무역관 분석)

고품질 시장

스위스는 인구 약 824만의 소규모 시장이나 1인당 GDP가 8만 4천 달러 대로, 소비자의 구매력이 매우 높은 시장이다. 스위스 경제의 원동력이 수출과 민간소비로 간주될 만큼 기업 및 일반 소비자의 수요 및 구매는 꾸준히 유지되어 오고 있다.

기업 및 일반 소비자는 구매력이 높은 만큼 고품질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소비추세는 롤렉스(Rolex), 이베체(IWC), 오메가(Omega) 등 명품 시계, 네스프레소(Nespresso), 스프링리(Sprüngli), 린트(Lindt) 등 고급 초콜렛이 세계적 명품제품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또한 의약품, 기계류, 화학제품 등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수적인 시장

스위스 소비자들은 제품 구입시 품질에 중요성을 두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면 품질을 확신할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스위스나 선진국 시장에서 검증된 브랜드 제품이 아니면 스위스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

이러한 소비자의 보수성 때문에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인근 유럽 국가들과 미국 제품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인지도가 있고 산업 및 기술 수준이 유사하므로 품질의 우수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까다로운 다문화 시장

스위스 소비자 및 바이어들은 제품 구입 시 고품질, 디자인의 세련성, 안전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엄격히 점검하고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 관련하여 전자/전기 제품, 식품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EU 수준을 넘어선 보다 엄격한 기술, 안정, 위생규격이 요구되고 있다.

스위스는 이러한 소비자 및 바이어들의 까다로움과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의 3개 언어가 통용되는 문화적 다양성 때문에 유럽의 ‘테스트 마켓’으로 통하고 있다. 즉 스위스 시장에서의 높은 시장성은 기타 유럽 국가들에서도 유통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스위스 내 거래선 확보는 유럽 전역 진출을 위한 홍보효과가 크다.

환경 및 윤리경영이 중요시 되는 시장

스위스는 친환경 및 윤리경영이 전 분야에 걸쳐 제품구매의 근본적인 고려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스위스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업체들은 환경 친화성 및 그린/윤리 마케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식품 분야에서는 유기농 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2배 이상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콥(Coop), 미그로(Migros)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앞다투어 자체 유기농 제품을 생산 확대하고 있다.

2015년 9월 발생한 폭스바겐 사태에서 스위스 정부는 환경을 이유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폭스바겐 디젤차 판매를 금지할 만큼 친환경 경영을 중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나라

스위스는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6%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이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대기업이 0.5%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국기업의 파트너로 중소기업을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중소기업에도 불구하고 기계, 화학, 시계 등의 분야에서 세계 틈새시장을 이끌어 가는 기업이 많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혁신의 선두 주자

스위스 정부는 기업의 R&D투자 및 혁신을 지원하고 있어서 여러 첨단 분야에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스위스는 세계 유수의 경쟁력 지표에서 선두 주자 그룹에 속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2015년 9월에 발표한 글로벌혁신지수에서 141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금융기관 진출 관련

스위스 은행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은행들이 거의 모든 유형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universal banking’이라고 할 수 있다. 스위스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는 예금, 대출, 대금 지불, 주식거래, 채권거래 및 자산관리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망라하고 있다. 스위스의 이러한 은행시스템은 상업적 금융업무와 투자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영어권 국가들이나 일본의 은행들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스위스의 양대 은행인 UBS와 크레딧 스위스는 스위스 국내는 물론 세계 금융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 두 은행그룹의 규모는 스위스 전체 은행 활동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UBS는 부유층 고객을 중심으로 한 개인고객의 자산관리와 투자금융 및 채권거래 부문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크레딧 스위스는 국내는 물론 특히 해외의 개인·기업 고객들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활동망을 넓히고 있다.

아울러 스위스에는 지방정부가 고도의 자치를 누리는 전형적인 연방국가답게 총 24개의 칸톤은행(Cantonal Banks)들이 있다. 칸톤은행은 국가의 지급보증 기반 위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관반민적(semi-governmental) 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실제 영업활동은 기본적으로 상업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은행을 중심으로 한 스위스의 금융산업은 자율적 규율(self-regulation)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스위스 은행들은 정부의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청(FINMA: Swiss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발적인 내부 규율 원칙 아래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적 규율은 궁극적으로 도덕적이고 적법한 금융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일종의 은행의 행동준칙이자 가이드라인인 CDB(Agreement on Due Diligence)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 스위스 경제동향

2011년에 스위스 최대무역대상지인 유로지역의 채무위기, 스위스프랑의 초강세로 스위스 수출이 큰 위기를 맞이하면서 스위스 경제가 전반적으로 위축

- 2009년도 경제성장률: -1.9%
- 2010년도 경제성장률: 3.0%
- 2011년도 경제성장률: 1.8%
- 2012년도 경제성장률: 1.1%
- 2013년도 경제성장률: 1.8%
- 2014년도 경제성장률: 1.9%

2012년 초반만 해도 다소 안정세를 보이던 유로지역 경제위기가 2012년 중반에 들어서 그리스, 스페인 등에서 경제문제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유로지역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했었다. 2008년 세계금융 위기 발발 이후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둔화되어 있는 가운데 지정학적 긴장(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및 중동지역) 및 스위스 프랑의 강세 지속(환율불안정) 등 여러 위험요소가 있으며 특히 주요교역국인 독일 경제의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져서 대독일 수출이 부진했다.

스위스는 무역의존도가 높으며, 이중 EU로의 대외무역 비중이 높아 (스위스 수출의 45%, 수입의 66%) 유로지역의 경기침체는 스위스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2015.1.15 스위스 중앙은행(SNB)의 대 Euro 최저환율제 포기 이후 스위스프랑의 급격한 평가절상과 국제외환 시장에서 유로 및 달러에 대해 스위스프랑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화폐로 평가되어 선호되면서 스위스프랑 강세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스위스 프랑의 강세는 스위스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스위스는 물가 및 고용시장안정에 기반을 둔 견고한 내수시장 덕택에 2014년 1.9%의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스위스 연방경제부는 2015년 상반기 스위스프랑의 급격한 평가절상으로 인한 환율불안정으로 인해 스위스 경기가 2015년 초부터 둔화되고 대외무역도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2015년 하반기에도 경기가 여전히 활력을 찾지 못하며 2016년에야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2015년 경제성장률을 0.9%, 2015년 성장률을 1.5%로 발표하였다 (2015.9.17)

대외무역은 2014년 수출 3.5%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으나 2015년 상반기에는 스위스 중앙은행의(SNB) 최저환율제 포기 이후 스위스프랑이 절상됨에 따라 대 유로존 수출품 가격경쟁력 약화영향으로 유로존 수출 8% 감소했으나 전체적으로 177억 스위스 프랑 흑자를 기록했다.

- 2013년 수출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2,012억 스위스프랑, 2014년에 수출은 3.5% 증가한 2,083억 스위스프랑을 기록했지만, 이후 2015년 상반기 수출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
- 2014년도 무역수지는 297억 스위스프랑 흑자 기록

연방경제정책청(SECO)은 스위스 노동시장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실업률은 3.2% 수준으로 낮게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나(여타 유로권 국가들의 평균실업률은 10.9%, EU28개국 평균실업률 9.5%), 2015.1.15. 대유로고정환율제 폐지 이후 강한 스위스 프랑의 영향으로 경기가 부진해 2015.9.15 현재 2015년 실업률을 3.3%, 2016년 실업률을 3.6%로 상향 전망하였다

※ 스위스의 주요 경제지표(2014년말)

- GDP: 6,422억 스위스프랑(CHF)
- 1인당 GDP: 78,432 스위스프랑(CHF)
- GDP 성장률: 1.9%
- 실업률: 3.2%

- 수출: 2,083억 스위스프랑

- 수입: 1,786억 스위스프랑

출처: 연방경제정책청, 관세청, 통계청

(참고) 한·스위스 교역현황

한-스위스 무역 동향

가. 최근동향

- (무역동향) 2014년 말 기준 한국의 주력수출품목인 승용차, 반도체부품 등 주요 수출품목 대부분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선박의 수출이 전무하여 전체 수출은 64% 감소. 한편, 2015년 7월말 기준 대 스위스 수출은 주요품목 대부분 수출의 증가와 2014년에 전무했던 선박 수출의 발생으로 급증하였고, 대 스위스 수입은 2015년 7월말 기준 시계, 의약품 등 주요품목 수입이 감소하면서 7.4% 감소

■ 對스위스 대외무역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7월
수출(증감률)	402(-64.5)	872(117.1)	313(-64.0)	1,299(567.3)
수입(증감률)	2,581(1.0)	2,715(5.2)	2,755(1.5)	1,465(-7.4)
무역수지	△2,178	△1,843	△2,411	△165

* '13년 수출 급증사유 : 선박 수출 증가 ('12년 87 → '13년 597백만달러)에 기인

* '15년 수출 급증사유 : 선박 수출 증가 ('14년 0 → '15년 7월 기준 1,068백만달러)에 기인

- (수출동향) 對스위스 수출은 특이치인 선박수출이 발생하면서 2015.7월말 기준 전년 동기대비 567.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수입동향) 對스위스 수입은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5년 1월부터 강세를 이어온 스위스 프랑 등의 영향으로 수입은 7월 말 기준 7.4% 감소함

나. 세부 수출현황

- 2015년 7월말 승용차, 직접회로반도체, 기타정밀화학원료 등 큰 폭으로 증가
 - 10대 주요품목 대부분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승용차, 직접회로반도체, 기타정밀화학원료 등의 수출은 급증
 - 특히 기타정밀화학 원료는 2014년에 전년 대비 358.5% 증가한데 이어 2015년 7월 기준 동기 대비 945.7% 수출이 증가
 - 2014년에 수출이 전무했던 선박은 2015년 7월 기준 수출이 급증

■ 우리나라의 對스위스 주요 수출품목

(단위: 천달러, MTI 4)

순위	품목명	2014년		2015년 1-7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313,643	-64.0	1,299,487	567.3
1	승용차	86,753	14.1	81,287	49.5
2	기타정밀화학원료	4,281	358.5	10,435	945.7
3	금	13,966	130.0	10,123	20.0
4	기타플라스틱제품	13,457	36.7	10,099	18.2
5	시계	12,480	0.4	8,822	1.6
6	귀금속장식품	8,262	47.9	6,970	39.1
7	의약품	7,211	-1.0	6,062	8.6
8	염료	6,457	24.7	5,719	89.4
9	집적회로반도체	4,188	166.9	4,759	144.9
10	기타화학공업제품	8,255	124.5	4,373	-16.0
	선박	0	-100.0	1,068,596	

자료 : 한국무역협회

다. 세부 수입현황

- 2015년 7월말 펌프, 의료용기기, 농약 등 수입 증가
 - 2014년에도 수입이 증가한 시계, 의약품, 계측기 등은 2015.7월말 기준 전년도보다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14년에 수입이 감소했던 펌프, 밸브 등은 2015.7월말 기준 전년 대비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스위스 주요 수입품목

(단위: 천달러)

순위	품목명	2014년		2015년 1-7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2,755,335	1.5	1,465,455	-7.4
1	시계	492,018	18.2	258,511	-6.3
2	의약품	302,638	3.1	192,932	-4.8
3	금	302,802	-12.1	108,702	-38.9
4	펌프	91,696	-31.5	83,519	59.5
5	의료용기기	71,327	2.3	45,335	12.3
6	금속절삭가공기계	110,039	-10.3	45,215	-21.6
7	농약	71,263	77.5	42,207	21.1
8	계측기	63,060	12.9	34,211	-1.6
9	귀금속장식품	58,407	12.1	33,191	4.1
10	밸브	42,470	-3.7	28,214	29.8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스위스 투자동향

- (한국의 대스위스 투자) 2015.8월말 누계기준 제조업, 도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음
 - 2015년 8월말 누계기준 제조업 및 도매,소매업 투자가 각 20.5억달러, 10.4억달러로 가장 많음

- 스위스는 우리나라의 62위 투자 대상국으로서 투자규모가 미미하나, 2015.8월 누계치로 439백만달러 투자신고
 - 스위스 시장의 소규모성, 높은 물가수준, 非EU 회원국 지위, 언어적 장벽 등에 기인하여 소규모 투자 유지

■ 우리나라의 對스위스 투자현황

(단위: 백만달러)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8월말	전체누계
신고건수	12	13	11	13	4	139
신고금액	16.8	16.1	68.2	13.9	102.5	439.0
투자금액	27.0	9.0	53.8	14.3	102.5	391.7

자료 : 수출입은행

- (스위스의 대한 투자)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투자 집중
 - 2006년 및 2007년에 Credit Suisse 및 UBS 등 스위스 대형은행의 금융계 대규모 투자가 있는 후 감소하던 스위스의 對韓 투자가 2010년부터 회복세로 전환, 2011-2012년 연간 1.4~1.8억달러 수준이었으나 2013년에는 50% 이상 급감하였으나 2014년에는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 됨.
 - 스위스 대한 투자 주요 기업은 선들러그룹(엘리베이터), 대트빌러(자동차부품), 맘무트(아웃도어) 등임

■ 스위스의 對韓 투자동향

(단위: 백만달러)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8월말	전체누계
신고건수	39	42	36	30	12	701
신고금액	188	144	70	135	80	2,394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슬로바키아

경제동향

슬로바키아의 경제성장률은 2014년 2.4%를 기록, 2013년 1.4%에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의 높은 성장세(2007년 10.7%, 2008년 5.4%)를 달성하기는 당분간 곤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경제성장은 수년간 부진을 보였던 민간소비와 투자가 회복됨에 따른 내수 회복에 기인한다. 그러나 수출증가는 독일 등 슬로바키아의 주요 무역파트너들의 수요 감소로 인해 약세를 보였다.

2013년 마이너스 성장(-0.8%)을 보였던 고용률도 경제성장률이 상승함에 따라 2014년 1.4% 증가하였고 실업율도 다소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13%를 상회하고 있다. 2014년 월평균 명목임금은 858유로로 상승하였고 금융 및 보험분야가 가장 높은 명목임금 상승률은 보였다.

소비자 물가(HICP) 상승률은 2013년 1.5%에서 2014년 사상 최저수준인 -0.1%를 기록하였다.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반전된데는 주로 비가공 음식물 가격 하락과 석유 등 에너지 가격의 하락에 주로 기인한다. 2014년 경상수지는 흑자(1억 유로)를 시현했지만 2013년 11억 유로의 흑자규모에 비하면 큰폭으로 줄었으며, 흑자폭의 감소는 외국인 직접투자자들에게 대한 높은 배당금 지급 등 투자소득계정(Investment Income Account)의 유출이 주 원인으로 작용했다. 상품 수출 성장세도 더딘 흐름을 보이며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5억유로)하는데 그쳤다. 부문별로 보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014년 자동차 수출은 소폭 증가하였고 전기

및 전자산업은 최대 수출증가세를 보였다. 수출대상국별로 보면 여타 비세그라드 그룹, 특히 체코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및 아시아 시장에 대한 수출 또한 감소였다. 수출의 더딘 증가는 수입에도 영향을 미쳐 수출입은 똑같이 전년대비 0.7% 상승하였고 무역수지 흑자도 사실상 전년과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 슬로바키아 주요 경제지표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GDP 성장률(%)	4.8	2.7	1.6	1.4	2.4
소비자물가지수(%)	0.7	4.1	3.7	1.5	-0.1
실업률(%)	14.4	13.6	14.0	14.2	13.2
무역수지(10억유로)	0.1	1.0	3.6	3.5	3.5
경상수지(10억유로)	-2.3	-1.4	1.6	1.1	0.1
경상수지/GDP(%)	-3.5	-2.0	2.3	1.4	0.1
재정적자/GDP	-7.5	-4.1	-4.2	-2.6	-2.9
정부부채/GDP	40.9	43.4	52.1	54.6	53.6

자료 :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교역 및 투자 현황

대외 무역

슬로바키아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수출 및 수입 증가세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은 2014년 0.1% 증가하는데 그쳤고 수출도 0.9% 증가하였다. 슬로바키아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2014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수출은 86%, 수입은 79.8%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 및 수입 모두 EU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으로 전체 수출 중 EU 지역이 84.1%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의 경우 63.0%를 차지하였다.

반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14년 5.2%로서 전년(5.9%)대비 소폭 하락한 반면, 수입 비중은 2014년 23.9%로 전년(22.9%)대비 4.4% 증가하였다. 기계, 전자장비, 자동차, 철강, 광물성 제품, 플라스틱 제품 등이 주요 수출입 품목이라고 할 수 있다.

연도별 수출입 현황

구 분		2011	2012	2013	2014
GDP 총액(억유로)		702	722	736	752
수출	금액(억유로)	567.8	621.4	641.7	647.2
	증감율(%)	17.6	9.4	3.3	0.9
수입	금액(억유로)	557.7	585.9	599.4	600.2
	증감율(%)	16.4	5.1	2.3	0.1
무역수지(억유로)		10.1	35.5	42.3	47.0

자료 : 슬로바키아 통계청(수출입통계), 슬로바키아 중앙은행(GDP 총액)

2014년 슬로바키아 통계청에 따르면 슬로바키아의 주요 수출국은 독일(22%)과 인근국인 체코(12.7%), 폴란드(8.2%), 헝가리(6.1%), 영국(5.1%) 순이었으며, 주요 수입국은 독일(15.5%), 체코(10.8%), 러시아(8.2%), 중국(8.2%), 한국(7.3%) 순이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우리나라가 2013년 슬로바키아의 4대 수입국(8.6%)이었으나 2013년 4대 수입국이었던 중국(7.4%)이 우리나라를 제치고 4대 수입국으로 부상한 점이다.

우리나라와의 교역 및 투자 현황

우리나라는 슬로바키아의 교역상대국 중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로서 2014년 42.8억 유로의 적자를 보였다. 다만 슬로바키아의 우리나라로부터 수입은 2013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HS 코드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 슬로바키아 주요 수출품은 광학기기, 기계·컴퓨터, 자동차, 전기제품, 화

항공업품 순이었으며, 주요 수입품은 기계·컴퓨터, 자동차, 전기제품, 고무제품, 신발류 등이었다.

2002년 삼성전자, 2004년 기아자동차 및 2007년 삼성 LCD의 진출로 슬로바키아는 유럽 국가들중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이 되었으며, 전자업종의 경우 삼성전자가 위치해 있는 갈란타(Galanta)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자동차 업종의 경우 기아자동차가 위치해 있는 질리나(Zilina)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등 지역별로 진출업종이 차별화되어 있다. 특히 슬로바키아의 경제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산업인 자동차 산업(전체 산업생산의 43%, 전체 수출의 35% 차지, 2014년 슬로바키아 투자무역개발청(SARIO))에서 기아자동차는 2014년 323,000대의 자동차를 생산하였고 매출액은 45.9억 유로를 달성하여 생산 및 매출액 규모에 있어 폴크스바겐에 이어 2위 업체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6월말 신고금액 기준으로 총 12.9억불(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를 슬로바키아에 투자하였으며 슬로바키아에는 약 80여개 우리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 슬로바키아의 한국과의 교역 현황

구 분		2011	2012	2013	2014
수출	금액(백만유로)	98.7	91.5	83.5	108.7
	증감율(%)	6.7	-7.3	-8.7	30.2
수입	금액(백만유로)	4,183.2	5,600.8	5,170.5	4,390.5
	증감율(%)	10.4	33.9	-7.3	-15.1
무역수지(백만유로)		-4,084.5	-5,509.3	-5,087.0	-4,281.8

자료 : 슬로바키아 통계청

수입정책상의 장벽

슬로바키아는 WTO 가입(1995.1월), OECD 가입(2000.12월)을 통해 기본적으로 외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 자유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아울러 EU 및 유럽경제지역(EEA) 가입국으로 유럽국가내에서 대부분의 제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있다. 유럽경제지역(EEA) 내 거래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EU 일반관세율표(Common Customs Tariff)가 유럽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된다.

세계은행은 2015년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인 “Doing Business 2015”에서 슬로바키아의 국제교역(Trading across Borders) 부문을 전세계 189개국 중 71위로, 인근국인 체코(순위 58위) 보다는 낮지만 헝가리(72위) 보다는 앞선 것으로 평가하였다. 세계은행은 국제교역 부문 평가에 있어 수출 및 수입 관련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서류 등을 평가요소로 하였다.

비관세 장벽

슬로바키아는 2004년 5월 유럽연합(EU)에 가입함으로써 반덤핑 또는 반보조금 조치와 같은 EU 공동의 무역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EU는 다소 자유로운 대외 무역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수입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일부 품목, 예를 들면 농산물에 대해서는 공동 농업정책(Common Agriculture Policy)의 시행에 따라 일부 제한된다.

슬로바키아는 국내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 허가제도를 가지고 있고 수출입 허가는 슬로바키아 경제부(Ministry of Economy)가 관할하고 있다.

수입품에 대한 인증

특정품목을 수입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절차(certification procedure)를 거쳐야 한다. 수입품목이 슬로바키아 기술표준에 부합됨을 증명하기



위해 슬로바키아 세관당국은 수입전 품목인증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인증서는 시험을 거친 후 해당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만일 해당 제품이 슬로바키아 표준과 일치하는 외국 인증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사전 시험을 거치지 않고 슬로바키아 표준에 부합된다는 인증서(a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급받게 된다.

라벨링과 마킹

슬로바키아에서 생산된 또는 외국에서 수입된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CE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모든 전기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에너지 효율”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1995년 국어법(State Language Law)에 따라 국내 생산 또는 수입 제품의 내용물, 제품 설명서(product manuals), 제품 보증과 여타 소비자 관련 정보를 슬로바키아어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일반적으로 특허, 저작권, 상표, 서비스마크, 영업비밀과 반도체 칩 디자인 등은 슬로바키아 법률과 관행에 의해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두 개의 정부부서에서 지적재산권(IPR)을 관할하고 있다. 산업재산국(Industrial Property Office)은 특허와 관련된 대부분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문화부(Ministry of Culture)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저작권을 담당하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WTO, 유럽특허기구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가입국이다. 슬로바키아는 WTO TRIPS 협정이 슬로바키아내에서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베른협약 등 여타 주요한 지적재산권 협정을 준수하고 있다.

특허의 보호기간은 20년이며 상표는 10년간 보호되며 추가로 10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디자인은 5년간 보호되며 최장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저작권은 작가의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간 보호된다.

투자 인센티브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슬로바키아 경제부(The Ministry of Economy)가 잠재적 또는 기존 외국인 투자자와 협상을 책임지고 있으며, 경제부 산하 슬로바키아 투자무역개발청(SARIO)이 슬로바키아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투자지원책의 목적은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실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새로운 투자의 긍정적 영향은 일자리 창출, 졸업생들의 취업기회 증가, 해당 지역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기회의 창출이다.

지원대상

투자지원법(The Slovak Act on Investment Aid)에 따르면 지원대상 프로젝트는 ① 산업생산(Industry production), ② 기술센터(Technology Centers), ③ 전략적서비스센터(Strategic service centers), ④관광(Tourism) 등 4개 분야이다. 농업 및 어업, 석탄산업, 조선, 운송, 생산·유통 및 에너지 인프라는 EU 규정에 의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지원 형태는 세금감면, 현금지원,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저렴한 가격에 공공유재산의 양도 등이다.

투자지원 규모 산정을 위한 적격 투자비용(Eligible cost)에는 토지, 건물, 기계 및 기술 장비 형태의 유형 고정재산과 특허, 라이선스, 권리, 노하우 및 비특허 기술지식 등 형태의 무형재산이 포함된다. 적격투자비용에 포함되는 모든 생산 및 기술 장비들은 시장가격으로 인수된 것으로 제조된지 2년이 넘지 않은 장비로 제한하고 있다. 무형재산들은 개인간 또는 경제적으로 관련된 당사자로부터 구입한 것은 제외된다. 상기 적격 투자비용의 대안으로 2년간 신규 고용인원의 총 임금비용이 될 수 있다.

지원대상 프로젝트별 최소투자 금액

1) 산업생산

산업생산부문에 대한 최소투자금액은 특정지역의 실업율에 따라 달라진다. 산업투자 프로젝트들은 공통적으로 모든 지역내에 4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기존 사업장을 확대하는 경우 투자는 생산규모 또는 매출액에 있어 15% 증가로 연결되어야 한다. 한편 슬로바키아의 수도인 브라티슬라바 지역은 모든 투자지원 제도에서 제외되어 있다.

■ 지역별 최소투자 금액

(단위 : 백만 유로)

구 분	최소투자금액		신규 기계 및 장비 비중	투자자 고유 자본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평균실업율 미만 지역	10	5	60%	5	2.5
평균실업율 초과 지역	5	2.5	50%	2.5	1.25
평균실업율 35% 초과지역	3	1.5	40%	1.5	0.75

자료 : SARIO

2) 기술센터와 전략적 서비스센터

슬로바키아 전지역에 있어 두 부문의 최소투자금액은 동일하며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기술센터	전략적서비스센터
최소투자금액(유로)	500,000	400,000
투자자 고유자본(유로)	최소 250,000	최소 200,000
대학교육을 받은 취업자 의무 채용비율(%)	70%	60%
최소 신규일자리 창출 수(개)	30	40

자료 : SARIO

투자지원율

최대 투자지원율은 적격투자비용에 대한 최대 투자유치 지원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최대 투자지원율은 특정지역 1인당 GDP에 의해 결정되며, 슬로바키아에서 브라티슬라바 지역을 제외한 서부, 중부 및 동부 지역은 투자지원 적격 대상 지역이다.

지역별 투자지원 형태 및 지원율

구분	서부 지역	중부 지역	동부 지역
최대 투자지원율(전체)	25%	35%	35%
최대 현금지원	25%	35%	35%
최대 소득세 감면	25%	35%	35%
재산 이전	25%	35%	35%

자료 : SARIO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슬로바키아는 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가능 최대 지원액은 실업율이 높을수록 높다. 다음은 산업생산의 경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금액이다.

구분	서부 지역	중부 지역	동부 지역
지역 A	15,000	30,000	30,000
지역 B	6,000	10,000	10,000
지역 C	5,000	9,000	90,000
지역 D	—	—	—

출처 : SARIO

기업 설립

슬로바키아에서 설립할 수 있는 기업형태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진다.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Spoločnosť s ručením

obmedzeným, 약칭 s.r.o),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 : Akciová Spoločnosť, 약칭 a.s),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 Verejná obchodná Spoločnosť, 약칭 v.o.s),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 Komanditná Spoločnosť) 등이며 유한회사가 가장 일반적으로 설립되는 회사 형태이며 한국 투자기업들에게도 가장 많이 이용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유한회사는 1인(자연인이나 법인)이나 2인 이상에 의해 설립될 수 있으며, 국적과 무관하게 주주는 50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각 주주의 권리와 의무는 영업지분(Business interest)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기업은 주주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주주의 책임은 상업등기부에 등록된 납입자본중에 납입되지 않은 자본금액으로 한정된다. 하지만 기업은 의무위반에 대해서 기업의 총자산으로 책임을 분담한다.

최소 등록 자본금(registered capital)은 5,000유로이며 등기된 자본은 각 주주의 정해진 납입자본금으로 구성되어 지며 각주주의 최소 납입자본은 750유로이다. 기업은 최초이익을 창출하는 시점에 법정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유한회사의 기관으로는 주주총회가 가장 중요한 권한을 부여받은 최고의 기관이다. 회사의 법정기관은 주주총회에서 임명한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대표이사(오직 자연인만 가능)이다. 회사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해 기업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 정관이 다르게 정하지 않는다면 각각의 대표이사는 개별적으로 회사를 대표한다.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각 주주는 정관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다면 등록자본(registered capital)의 납입자본에 비례하여 이익을 배당받을 권한이 있다.

슬로바키아 SARIO는 유한회사 설립전 주요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경영진의 범죄 기록 관련 서류 준비 → ② 설립 회사명의 중복성 여부 확인 → ③ 정관 작성 → ④ 등록 사무소 확보 → ⑤ 등기자본의 납입 → ⑥ 등기소(Registry Court)에서 상업등기부(Commercial Register)에 법인 등록 ⑦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위한 과세당국에 등록 ⑧ 지역 사회보험사무소에 사회보험 등록 → ⑨ 건강보험회사에 건강보험 등록

조세 정책

슬로바키아 정부는 세금 납부와 관련하여 2012년 부가가치세에 대해 전자 세금신고제도를 도입하고 2013년에는 사회보장 및 건강보험기여금에 대해 전자 신고 및 납부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납세 편의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토지평가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기업들의 납세 부담은 일부 증가된 측면이 있다. 슬로바키아의 조세행정은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에서 담당하고 있다

법인세

슬로바키아의 법인세는 과세소득에 의해 계산되어지면 법정세율은 22%이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세무상 감가상각비, 처분된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 고용주가 지불한 사회보장보험 납입액, 종업원에 대한 건강 및 사회시설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 광고비, 특정한 형태의 미지급 비용 및 충당금 등은 손금항목으로 과세소득에서 공제되고 있다.

한편 정부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프로그램하에서 기업들은 법인세의 1.5% 또는 2.0%를 비영리단체(NGO)에 직접 기탁할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은 자체 CS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프로그램을 잘 활용함에 따라 비영리단체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



사회보장기여금

슬로바키아에 고용된 개인은 슬로바키아의 사회보장 및 건강관리 시스템의 적용대상이며, 고용인은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료로 최대 부담한도는 월급여의 35.2%, 종업원의 납부액은 최대부담한도로 월급여의 13.4%를 적용한다.

한국과 슬로바키아 사회보장협정이 2010년 3월부터 발효되었다. 상기 협정은 파견근로자 등의 양국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및 양국 연금가입 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에 관한 혜택이 규정되어 있다. 즉, 한국에서 설립된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슬로바키아에 있는 회사(혹은 슬로바키아의 종속회사 포함)에 파견하는 경우, 최초 60개월동안 그 개인은 모국(한국)의 사회보장 시스템에 계속 적용되어 슬로바키아 사회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는 한국과 슬로바키아 사회보장기관간 2014년 4월 사회보험료 면제 기간 연장에 합의에 따라 사회보험료 면제기간은 최장 90개월로 연장되었다. 절차상으로 한국의 협정 가입증명서와 함께 예외적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슬로바키아 사회보장기관에 제출하면 면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 연락하면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슬로바키아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영업의 인보이스 가격에 부과되며 EU내의 상품 취득 및 EU밖으로부터 상품 수입에도 부과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과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은 20%이다. 특정 약품이나 의료 관련 제품, 교육, 금융서비스, 문화서비스, 보험 및 재보험 등에 대해서는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반적인

로 기업의 소재지, 영업 장소 및 고정된 사업장이 슬로바키아에 있는 경우 지난 12개월 동안 총 매출이 49,790유로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부가가치세 등록을 해야 한다.

개인소득세

개인의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과세소득이 35,022 유로(2014년, 매년 변동)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19%의 세율이 35,022 유로를 초과하는 잔여 소득에 대해서는 25%가 부과된다. 건강보험료, 퇴직보험, 주택구입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은 과세소득 산정에 있어 공제되는 항목이다.

■ 슬로바키아의 주요 세목별 법정 세율

세목	법정세율	과세표준	비고
법인세	22%	과세소득 (taxable income)	온라인 신고
사회보장기여금	35.2%(고용인) 13.4%(피고용인)	총급여 (gross salaries)	
부가가치세	20%	인보이스 가격	온라인 신고
개인소득세	19%(35,022 유로이하) 25%(35,022 초과분)	과세소득 (taxable income)	
이자소득세	19%	이자소득 (interest income)	

자료: World Bank Group "Doing Business 2015 – Economic Profile 2015: Slovak Republic)

노동시장 규제

슬로바키아 노동법이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이다. 노동법은 고용계약 체결, 해고, 노동시간, 연간 휴가일수, 근로조건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다.

고용계약(Employment Contract)

고용관계는 서면 고용계약서에 의해 체결된다. 양 당사자는 고용계약을 통해 직무기술서, 작업장, 근로개시일, 임금 등에 대한 합의를 한다. 고용계약기간은 유한(a fixed term)하게 체결하거나 제한기간 없이(indefinite term) 체결될수 있다. 고정된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대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며 동 2년의 기간내에 최대 2회 연장 및 갱신될 수 있다. 고용계약 기간은 서면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기한 계약기간으로 간주된다.

근로시간 및 휴가일수

근로시간은 주당 최고 40시간이며, 2교대 근무(a two-shift) 근로자의 경우 주당 38.75시간, 3교대 근무(a three-shift)의 경우에는 주당 37.5시간으로 제한된다. 초과 근무(over time)는 연간 150시간까지 가능하며 취업원과의 계약에 의해 250시간을 가산할 수 있어 연간 최장 추가 근무시간은 4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1년에 최소 휴가일수는 4주이며, 33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최소 5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국경일의 경우 기본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유급 휴가로 인정된다.

고용계약 종료

고용계약은 ①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② 종료 통지(notice on termination), ③ 즉시 종료(immediate termination), ③ 수습기간(Probation Period)의 종료에 의해 서면으로 종료될 수 있다. 고정된 근로계약의 만기시에도 고용계약이 종료된다. 수습기간(근로자의 경우 3개월, 경영진의 경우 6개월)중에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최소 3일전 서면으로 계약 종료를 통지해야 한다.

즉시 종료의 경우, 예를 들면 종업원이 고의적인 범죄를 저질러 법정형을 받거나 업무규칙의 심각한 위배가 있었던 경우 고용주는 그 사유를 인정한 날부터 2개월이내 늦어도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한다.

한편 종료 통지의 경우 근로자는 고용계약의 종료 사유를 적시하지 않더라도 종료할 수 있으나 고용주는 사업을 정리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업무 효율성 제고 또는 조직상의 변화 등으로 근로자가 정리해고 대상이 된 경우, 근로자의 장기간 지속되는 건강상 이유, 근로 조건의 위반 등의 경우에는 문서화된 통지에 의해서 종료할 수 있다.

노동법상 사전통지 기간은 최소 한달이나 5년 이상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최장 3개월까지 증가된다. 통지 기간은 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달 1일부터 기산한다.

만일 고용관계가 조직상 또는 건강상 이유로 종료될 경우 고용주는 근로년수에 따라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2015년 슬로바키아 월 최저임금은 380유로이며 2016년에는 405유로로 인상될 전망이다.

공공조달시장

슬로바키아는 1999년 공공조달법을 제정, 2000년 중앙정부기관으로 조달청(UVO)으로 하여금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물자구매를 일원화하였다. 슬로바키아는 2004년 WTO의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였다. EU 집행위는 슬로바키아의 2013년 공공부문(General Government)의 공공

조달 지출 규모를 8.48억 유로로 추계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의 2014년 회원국의 공공조달 시장 여건을 ① 단독 입찰자(One Bidder) 비율, ② 제한 입찰(No Call for Bids) 비율, ③ 공공부문 구매자들의 공동구매 비율(Aggregation), ④ 가격요소 이외에 다른 낙찰 기준의 구비 여부(Award Criteria), ⑤ 구매자들의 의사결정 시간(Decision Speed), ⑥ 공공구매자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질(Reporting Quality) 등 6가지 지표로 평가하였다. 평가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인근국인 체코, 헝가리 등과 함께 공공조달 시장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것(Unsatisfactory)으로 나타났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 슬로바키아 국가보고서(Country Report)에서 슬로바키아내의 공공기관들이 전반적으로 공공조달과 관련 충분한 전문성이 없으며 효과적인 공공의 감독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복잡한 구매를 위한 비차별적 입찰공고를 보장할 템플릿(Template)도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 관련 정책

외환 및 송금 관련 정책

미국 국무부의 2015년 슬로바키아 투자환경보고서(Slovakia Investment Climate Statement 2015)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2009년 1월 유로존 가입국가이며 OECD 회원국으로 환전 및 이전정책에 있어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법(Foreign Exchange Act)이 외환거래를 규율하고 있고 투자와 관련된 자금의 용이한 환전 및 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환 및 외국환의 수출입에 대한 제한도 없다. 슬로바키아 거주자들은

해외 계좌 개설이 허용되며 해외에서 획득한 금융자산을 슬로바키아내로 이전할 의무도 없다. 비거주자들도 외환계좌를 가질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슬로바키아는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11개 EU 국가중 하나이며 금융거래세는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의 은행 및 자금세탁방지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상업은행과 신용기관(credit institutions)들을 규율하는 규정들을 제외하면 자본거래에 대한 통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시장 감독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은 2006년 슬로바키아 중앙은행으로 통합되었다. 이러한 개혁에 의해 금융시장청(Financial Market Authority)은 해체되었고 은행, 자본시장, 보험 및 연금 관련 감독 권한 및 책임이 모두 중앙은행으로 이전되었다.

슬로바키아 은행시스템은 슬로바키아 은행법(Slovak Banking Act)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상업은행은 전통적인 상업거래 및 대출 뿐만 아니라 투자은행 및 중개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외국계 은행들은 사무소 또는 지점을 설립할 수 있다. 사무소의 경우 모 은행 서비스에 대해 고객에게 자문 및 정보 제공으로 업무가 제한되지만, 지점의 경우 모 은행이 허용한 금융거래를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계 모 은행은 지점의 재무건전성을 효과적으로 보증해야 하며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기타 장벽

노동허가

EU 회원국 이외의 외국인으로서 슬로바키아에 파견되는 경우 서면으로 해당 노동사회가족부 사무소(Office of Labor, Social Affairs and Family)에 본인 또는 장래 고용주 등을 통해서 노동허가(work permit)를 신청해야 한다. 고용주는 노동허가를 신청하기전 15일전에 관할 노동사회가족부 사무소에 구직상황(job vacancy)임을 보고해야만 한다. EU 회원국 출신 외국인은 노동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노동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노동사회가족부 사무소는 외국인의 근무소재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이다.

노동허가 발급 신청서에는 외국인을 고용하겠다는 고용주의 증명서(promissory statement)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해당 노동사회가족부 사무소는 현재 공석인 자리에 구직자 등록을 한 구직자에 의해 보충될 수 없는 경우에 외국인에 대해 노동허가를 발급해 주게 된다. 노동허가 발급에 있어 해당 사무소는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해야 하며 노동허가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노동허가의 유효기간은 발급기간의 경과, 고용계약의 종료, 체류허가(residence permit)의 유효기간 경과 또는 여타 사유로 인한 체류허가의 종료로 소멸하게 된다. 노동허가 기간은 통상 2년이다. 노동허가의 갱신 유효기간도 최대 2년이다.

체류허가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 이외의 외국인들은 일시(temporary) 또는 영구(permanent) 체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일시체류허가는 사업(최장 3년), 고용 및 연구개발(최장 2년), 학업(최장 6년) 등 체류목적에 따라 체류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다.

일시체류 허가 신청의 예외의 하나로 슬로바키아 정부는 중요한 외국인 투자 기업(significant foreign investor)에 90일 이내 고용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허가 신청을 면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예외를 인정받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노동허가를 받아야만 근무를 시작할 수 있다. 일시체류 허가의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계절 노동자의 경우 최대 180일, 추정적 체류기간이 최소 3년일 경우 최대 3년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체류허가는 국경 및 외국인 경찰청(Office of Border and Foreign Police)에서 담당하고 있다. 경찰청은 체류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복잡한 경우에는 추가로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중요한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자나 근로자에 대해서는 30일 이내 결정할 수 있다. 체류허가 연장 신청은 체류허가 기간 최종일까지 해야 한다. 모든 신청서류는 공식적으로 슬로바키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2007년 11월에 발효된 「한-슬로바키아 운전면허상호인정 교환각서」에 근거하여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별도의 시험절차 없이 소정의 신청양식에 따라 슬로바키아 운전면허증으로 쉽게 교환할 수 있다. 우리국민에게 발급되는 슬로바키아 운전면허증은 EU 회원국 내에서 공히 사용할 수 있다.

2015 외국의 통상환경

－ 유럽 －

◆ 인 쇄 | 2015년 12월

◆ 발 행 | 2015년 12월

◆ 발행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 인쇄처 | (주)나모기획 (044-998-6998)

2015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5

유럽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